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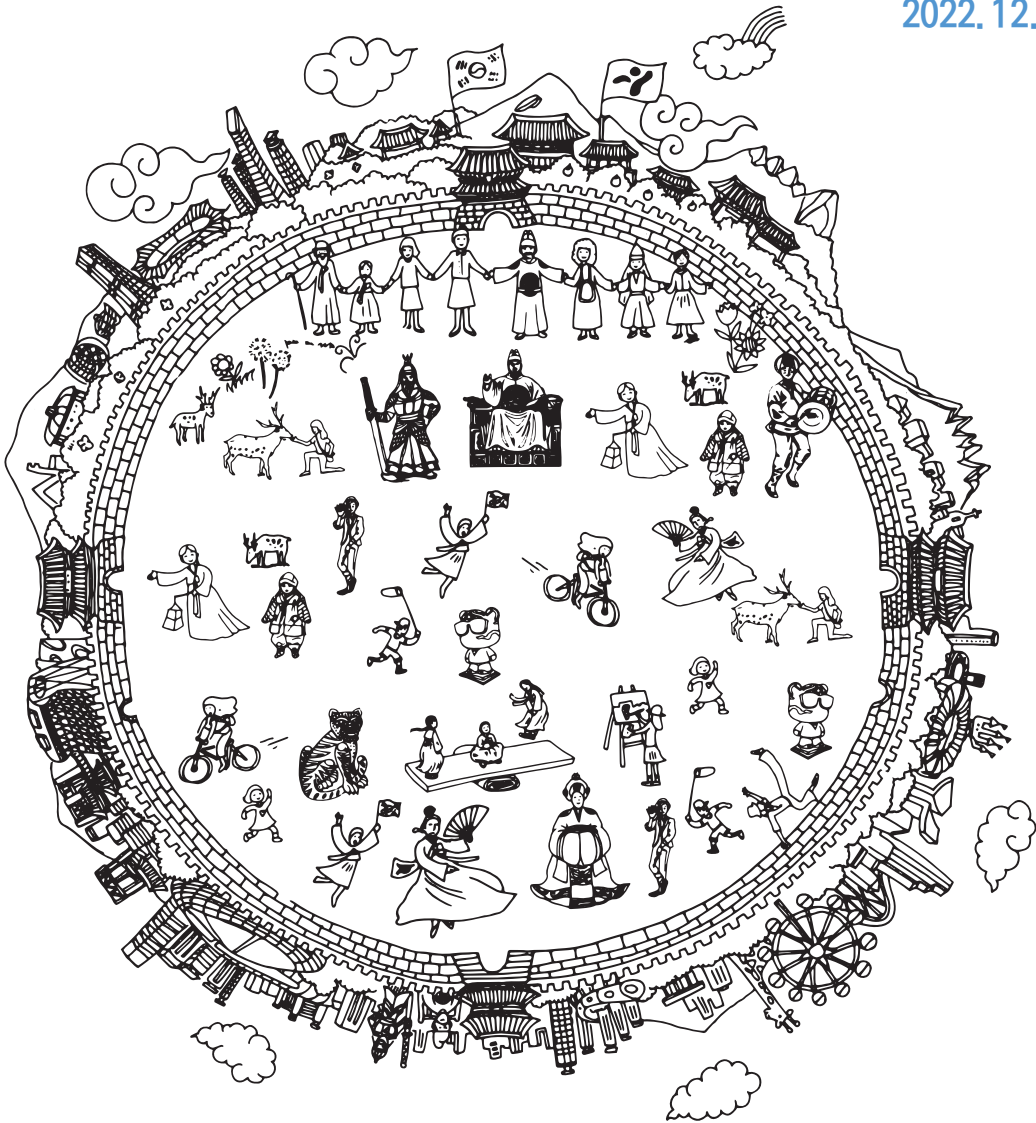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40호
2022. 12. 29.(목)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523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5

[입법예고]

제2022-3482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22-3490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제2022-3491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 고 시

제2022-5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0
제2022-521호	도시관리계획(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
제2022-5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25
제2022-523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6
제2022-5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29
제2022-525호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0
제2022-526호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3
제2022-527호	보라매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7
제2022-528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1
제2022-529호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121
제2022-530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123
제2022-53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오류천)	136
제2022-532호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9
제2022-534호	버스전용차로 변경(해제) 고시	154
제2022-5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59

제2022-536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81
제2022-537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8
제2022-539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양지병원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0
제2022-54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238
제2022-541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41
제2022-542호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262
제2022-54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266
제2022-54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269

◆ 공 고

제2022-3376호	도시관리계획(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272
제2022-342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73
제2022-3440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275
제2022-344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283
제2022-3450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84
제2022-345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99
제2022-34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 공고	301
제2022-346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302
제2022-346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303
제2022-3469호	도시관리계획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304
제2022-3477호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306
제2022-3486호	천왕 도시개발사업 2차 공사완료 공고	308
제2022-3487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공고	310
제2022-3495호	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311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22-1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고시	314
제2022-358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325

◆ 구 고 시

제2022-12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327
제2022-12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구)	334
제2022-19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336
제2022-21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	339
제2022-24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342
제2022-24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344
제2022-1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346
제2022-20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 (구로구)	351
제2022-1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55
제2022-1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58
제2022-2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61
제2022-2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66
제2022-2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69
제2022-2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72
제2022-2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77
제2022-2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89
제2022-2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92
제2022-2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95
제2022-2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398
제2022-2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402
제2022-24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405
제2022-2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407
제2022-246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409
제2022-232호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412

◆ 구 공 고

제2022-1426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광진구)	418
제2022-2047호	도시관리계획(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은평구)	421

제2022-1751호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열람·공고(마포구)	422
제2022-2330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및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안)을 위한 열람공고(강서구)	428
제2022-227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구로구)	442
제2022-225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영등포구)	448
제2022-20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450
제2022-204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동작구)	454
제2022-2059호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동작구) ...	459

◆ 사업소고시

제2022-4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60

◆ 사업소공고

제2022-44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61

◆ 기 타

제2022-43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62
제2022-44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63
제2022-44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64

자치법규**[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523호****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 을 “입법담당관” 으로 한다.

제11조제6호 중 “세미나 등” 을 “세미나 및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 종합 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사무분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정책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해제(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사무 분장 개정(안 제11조)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82호****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때 자문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과율 조정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자문이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현재 상설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안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다.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이 있을 때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한강수계기금 관련 사항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마.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치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41

(2) E-mail: 20090715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치수안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02-2133-3769)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90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05년 청계천 복원시 장단기 과제 수립 및 청계천 주변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 청계천은 이미 안정화된 하천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신규 안전이나 협의사항 등이 저조하여 현재 위원회가 미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청계천시민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청계천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제12조), 회의(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소위원회(제14조의2)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안·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치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 (1) FAX: 02)2133-1041
- (2) E-mail: sinnerman@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청사1동 8층) 치수안전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02-2133-3870)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91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05년 청계천 복원시 장단기 과제 수립 및 청계천 주변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 청계천은 이미 안정화된 하천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신규 안전이나 협의사항 등이 저조하여 현재 위원회가 미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청계천시민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청계천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제4조)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치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 (1) FAX: 02)2133-1041
- (2) E-mail: sinnerman@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청사1동 8층) 치수안전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02-2133-3870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이하 “서고시”) 제2018-127호(2018.4.26.)로 실시계획인가, 서고시 제2018-376호(2018.11.22.), 서고시 제2021-215호(2021.05.06.), 서고시 제2021-690호(2021.12.16.), 서고시 제2022-323호(2022.07.28)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수색로(대로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01-19~275-1 주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수색로(대로1-4호선) 확·포장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없음)

- 도로확장 연장 0.6km, 폭 40.5~47.0m(6~8차로→10차로 확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 예정일 : (당초) 2022년 12월 31일 → (변경) 2023년 06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133-808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 2부(☎ 031-901-453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1호

**도시관리계획(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21-1214호(2021.7.8.)로 열람 공고한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22-1987호(2022.11.24.)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취지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22,362.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 설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공급 및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2,362.6	-	22,362.6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8.1	-	1,508.1	6.7	기결정 공원 용도지역의 면적 증감 없는 위치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0,854.5	감) 19,138.8	1,715.7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138.8	19,138.8	85.6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19,138.8	250.0%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의 노후된 주택지 정비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송파구 거여동 6~7일원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 지역	1,508.1	150.0%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에 따라 구역 내 기결정 공원의 위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03 (150)	거여동 5-11	거여동 4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1	8~10	국지 도로	203 (150)	거여동 5-11	거여동 4	일반 도로	-	-	일부구 간 확폭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32	거여동 135-38	거여동 1	일반 도로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232	거여동 135-38	거여동 1	일반 도로	-	-	도로가 각 일부변 경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69	거여동 136-102	거여동 136-1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69	거여동 136-102	거여동 136-19	일반 도로	-	-	도로가 각 일부변 경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7	거여동 3-9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144	거여동 135-11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5	8~10	국지 도로	389	거여동 665-6	거여동 6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46	거여동 665-6	거여동 127-2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451 (174)	거여동 178-13	거여동 5-1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6	8~13	국지 도로	451 (174)	거여동 178-13	거여동 5-10	일반 도로	-	-	일부구 간 확폭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97	거여동 135-11	거여동 127-43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144	거여동 135-11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2	4	국지 도로	96	거여동 7	거여동 6-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3	4	국지 도로	61	거여동 8-3	거여동 8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4	4	국지 도로	79	거여동 9	거여동 9-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5	4	국지 도로	79	거여동 10-12	거여동 10-3	일반 도로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2)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	소로 2-1	• 도로 폭원 변경 - 기정 : B=8m, L=203m - 변경 : B=8~10m, L=203m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소로 2-2	소로 2-2	• 도로 가각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내부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 가각 일부 변경
소로 2-3	소로 2-3	• 도로 가각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내부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 가각 일부 변경
소로 2-4	소로 2-4	• 도로 연장 변경 - 기정 : B=8m, L=47m - 변경 : B=8m, L=144m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 및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통합에 따른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2-5	소로 1-1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기정 : B=8~10m, L=389m - 변경 : B=10m, L=246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내부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2-6	소로 2-6	• 도로 폭원 변경 - 기정 : B=8m, L=451m - 변경 : B=8~13m, L=451m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소로 3-1	소로 2-4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기정 : B=6m, L=97m - 변경 : B=8m, L=144m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 및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통합에 따른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3-2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소로 3-3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소로 3-4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소로 3-5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2) 주차장(신설)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6-7일원	-	증)1,508.1	1,508.1	-	· 어린이공원 중복결정

■ 주차장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127-30일원	층수	-	지하1~2층	지하1~2층	-	· 공동주택용지 지하 일부 입체적결정
				면적(㎡)	-	증)4,947.2	4,947.2		

※ 입체적 결정하는 주차장 면적 및 층수는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확정함

2)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주변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지하 중복결정 및 공동주택 지하 일부 입체적결정

나. 공간시설(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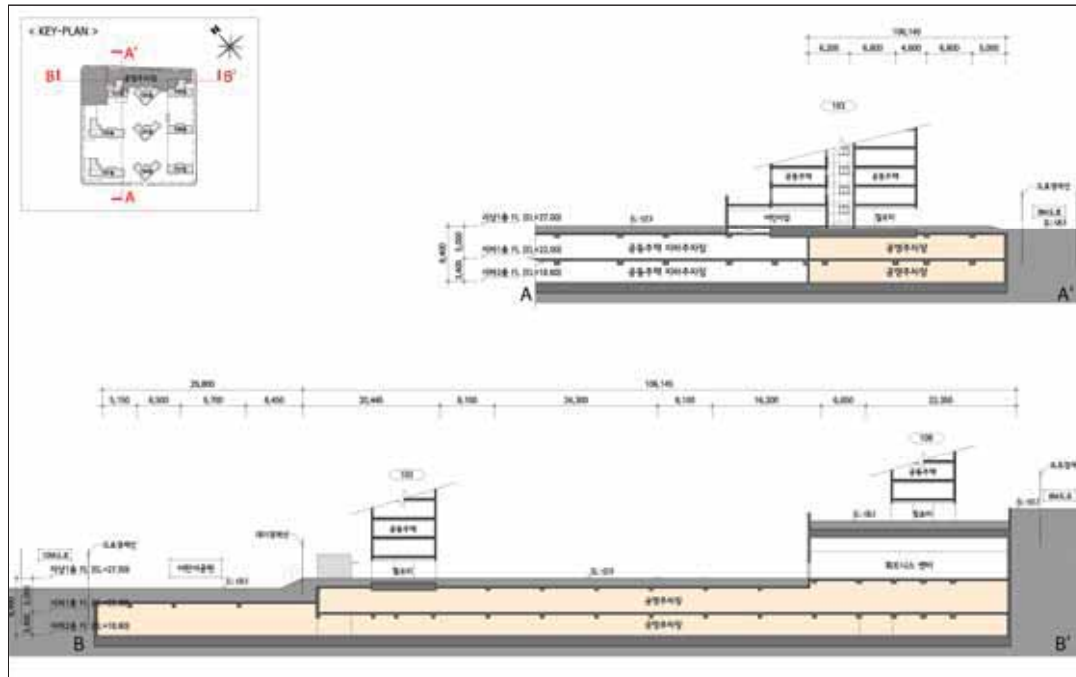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큰바위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송파구 거여동 6-7일원	1,508.1	-	1,508.1	서고시 제1995-141호 ('95.5.20.)	어린이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2)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큰바위 어린이공원	· 위치 변경 - 송파구 거여동 7번지 → 송파구 거여동 6-7일원 · 공원하부 지하주차장(공영)과 중복결정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라 구역 내 기존공원의 위치 변경 ·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주차장 중복결정 및 입체적 결정 범위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	A-1	19,138.8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19,138.8	공동주택
신설	-	A-2	370.3	송파구 거여동 5-10, 5-11	370.3	근린생활시설

나.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 설	· 획지계획 면적 - A-1 : 19,138.8㎡ - A-2 : 370.3㎡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라 획지단위개발 지정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용도	I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II	·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종교시설	

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불허용도	a	· 허용용도 외 불허	

2.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계획

1)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A-1 (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A-2 (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나.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1 (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A-2 (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00% 이하	-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토지 + 0.7 × α 현금건축물)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 및 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계	1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2.5.) 개발사업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4%	
지능형 건축물 4등급	6%	

다. 높이 계획

1)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A-1 (공동주택)	-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층수 25층 이하(평균층수 20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A-2 (근린생활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이면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단, 남측 오금로53길변 4m 이격)	결정도 참고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형 태	1층부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야간조명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색 채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	

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폭원 : 3~4m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 보행통로	· 기존도로 폐지에 따른 보행자 편의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폭원 : 6m (24시간 개방)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주차출입구 외 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비상차량 차량출입구 예외)	결정도 참조

3. 공공시설 부담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시설 등 조성 및 제공	• 순부담률 : 25.1% (5,158.1㎡) - 도로 : 5.2% (1,062.8㎡) - 주차장 : 17.9% (부속토지+환산부지면적 3,677.9㎡) - 공공주택 : 2.0% (부속토지+환산부지면적 417.4㎡)	결정도 참조

※ 측량성상에 따라 면적 및 순부담률이 변경될 수 있음

⑥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조경식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8. 대지내·외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V.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99), 서울시청 공공주택과(☎02-2133-7865),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1. 내무부고시 제449호(1958.11.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호(1971.04.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47호(1986.04.10.)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강동구고시 제2015-65호(2015.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호(2016.01.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강동구고시 제2017-29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4호(2017.06.01.), 제2019-126호(2019.04.18.), 제2019-440호(2019.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 명칭 :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일원(변경없음)

- 시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5-4(생태공원교차로)
- 종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94-4(서울시계)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폭원 50m~93m, 연장 1,940m, 면적 28,64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2.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4. 06. 30.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3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서초구	방배동 977, 978, 980 일대	27,190		
			16,916	‘22. 1. 20.	
			10,274	‘22. 12. 29.	구역 확대 ※ 제9차 전문가 사전자문 ‘22. 12. 15. (의견: 적정)

2. 권리산정기준일 : 2022. 12. 29. (구역 확대 10,274㎡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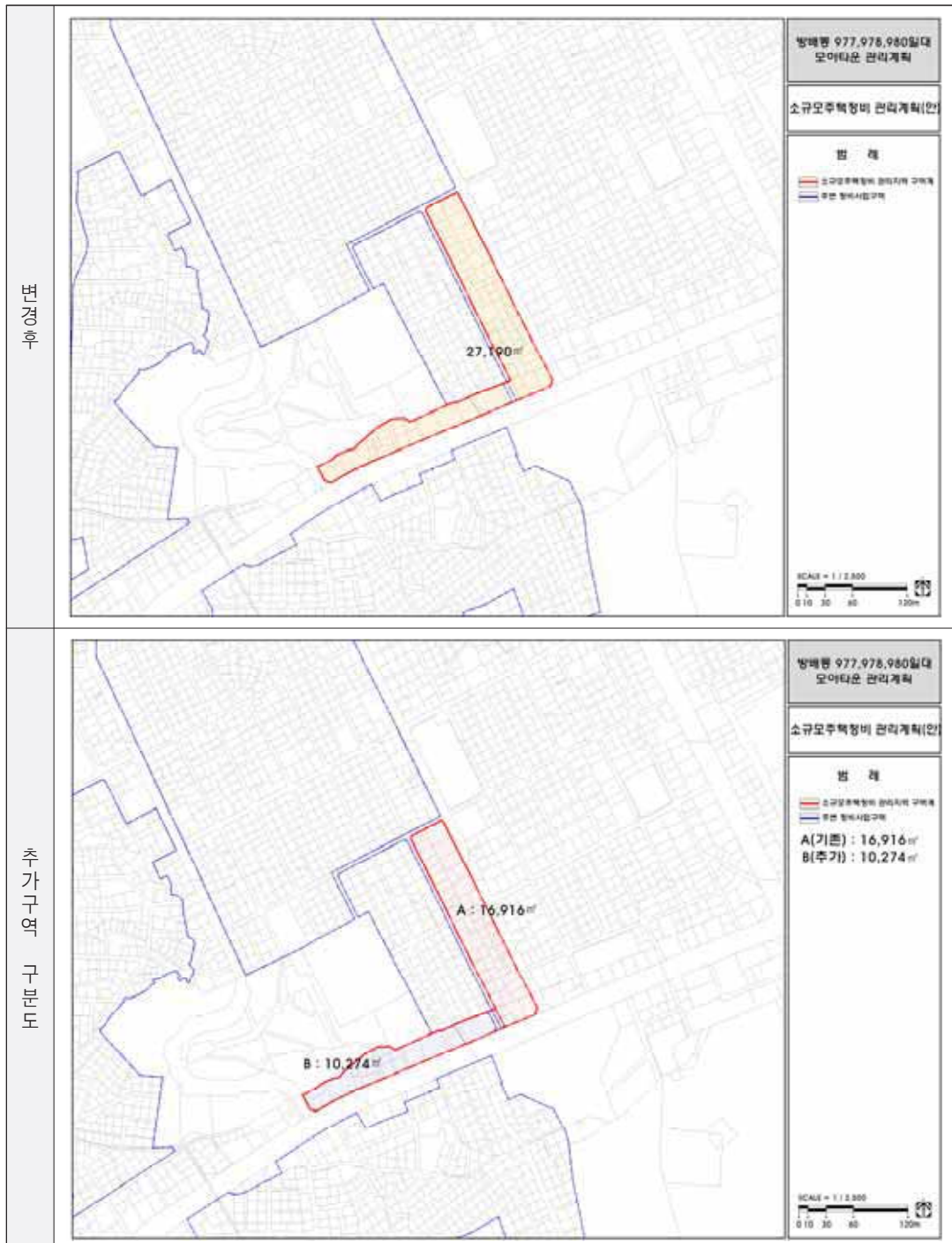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1. 방배동 977, 978, 980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9호(2018.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8-190호(2018.6.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9-184호(2019.6.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제2020-296호(2020.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제2021-51호(2021.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제2021-703호(2021.12.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제2022-379호(2022.9.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외 8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나. 사업시행지 :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외 8필지

다. 사업의 내용 : 캠핑장 등 공원조성

라. 규모 : 11,561㎡

마.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사무수임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내용 :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2.12.31.
 - 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3. 6.30.

○ 변경사유 : 절대공기 부족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5호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90호(2004.9.18.)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7호(2005.12.2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 및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	267,543.0	16,139.2	211,079.5	40,324.3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대표자성명		주 소	비 고
기 정	변 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현 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현 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공동시행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 병 용	경기도 의정부시장 김 동 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1) 시행기간(변경)

구 분	사업시행기간		비 고
	기 정	변 경	
총 사업 시행기간	2004.09.18. ~ 2022.12.31.	2004.09.18. ~ 2024.12.31.	증 2년
1공구	2004.09.18. ~ 2016.12.01.	2004.09.18. ~ 2016.12.01.	사업부분준공완료 (서울시공고 제2016-2318호)
2공구	2004.09.18. ~ 2019.03.14	2004.09.18. ~ 2019.03.14	사업부분준공완료 (서울시공고 제2019-723호)
3공구	2004.09.18. ~ 2022.12.31.	2004.09.18. ~ 2024.12.31.	증 2년

(2)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2.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나. 사업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상계·장암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 및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	267,543.0	16,139.2	211,079.5	40,324.3	

라. 시행자(변경)

대표자성명		주 소	비 고
기 정	변 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현 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현 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공동시행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 병 용	경기도 의정부시장 김 동 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마. 시행기간(변경)

구 분	사업시행기간		비 고
	기 정	변 경	
총 사업 시행기간	2004.09.18. ~ 2022.12.31.	2004.09.18. ~ 2024.12.31.	증 2년
1공구	2004.09.18. ~ 2016.12.01.	2004.09.18. ~ 2016.12.01.	사업부분준공완료 (서울시공고 제2016-2318호)
2공구	2004.09.18. ~ 2019.03.14	2004.09.18. ~ 2019.03.14	사업부분준공완료 (서울시공고 제2019-723호)
3공구	2004.09.18. ~ 2022.12.31.	2004.09.18. ~ 2024.12.31.	증 2년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생략

아.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변경없음) : 생략

자.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관계기관(부서)과 사전 협의사항 이행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지형도면) (변경없음) : 생략

카. 그 밖의 세부 도시관리계획 도면 및 조서(변경없음) : 생략

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02)2133-8497),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 02)2116-3783),
 - 의정부시청 균형개발과 (☎ 031)828-8725),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9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6호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2007.6.28.)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2009.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문정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I. 문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문정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총사업 시행기간	2007. 6. 28. ~ 2022. 12. 31.	2007. 6. 28. ~ 2024. 12. 31.	증 2년
1공구	2007. 6. 28. ~ 2017. 5. 18.	2007. 6. 28. ~ 2017. 5. 18.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 제2017-1164호)
2공구	2007. 6. 28. ~ 2022. 7. 14.	2007. 6. 28. ~ 2022. 7. 14.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 제2022-2039호)
3공구	2007. 6. 28. ~ 2022. 12. 31.	2007. 6. 28. ~ 2024. 12. 31.	증 2년

※ 변경사유: 문정도시개발사업 3공구 준공처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 7.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변경없음) : 생략
-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변경없음)
-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 11.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02)2133-8497
 - 송파구청 전략개발과 ☎ 02)2147-2165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92

II. 문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 문정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 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 면적 : 548,239.7m²

4.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5. 시행기간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총사업 시행기간	2007. 6. 28. ~ 2022. 12. 31.	2007. 6. 28. ~ 2024. 12. 31.	증 2년
1공구	2007. 6. 28. ~ 2017. 5. 18.	2007. 6. 28. ~ 2017. 5. 18.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 제2017-1164호)
2공구	2007. 6. 28. ~ 2022. 7. 14.	2007. 6. 28. ~ 2022. 7. 14.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 제2022-2039호)
3공구	2007. 6. 28. ~ 2022. 12. 31.	2007. 6. 28. ~ 2024. 12. 31.	증 2년

※ 변경사유: 문정도시개발사업 3공구 준공처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변경없음) : 생략

8.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변경없음) :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02)2133-8497
 - 송파구청 전략개발과 ☎ 02)2147-2165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9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7호
보라매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86-265호(1986.6.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27호(2022.5.26.)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보라매근린공원 내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기증 정신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생명나눔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원

3. 공원면적 : 413,352㎡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6) 및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300-5535)에서 관련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합계			413,352.00	162,252.53			14,649.67	29,730.98	87			413,352.00	162,252.53			14,649.67	29,730.98	87	
	소계			57,647.94								57,647.94	57,647.94						
	도로			44,651.44							전지역	44,651.44	44,651.44						
	목교	파								파									
	보라매광장	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428.00	5,428.00					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428.00	5,428.00						
기반시설	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568.50	7,568.50					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568.50	7,568.50							
	나-1	■	(992)	(992)					나-1	■	(992)	(992)							
	나-2	■	(1,653)	(1,653)					나-2	■	(1,653)	(1,653)							
	나-3	■	(677)	(677)					나-3	■	(677)	(677)							
	나-4	■	(197)	(197)					나-4	■	(197)	(197)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5	■	(556)	(556)						나-5	■	(556)	(556)											
	나-6	■	(418)	(418)						나-6	■	(418)	(418)											
	나-7	■	(392)	(392)						나-7	■	(392)	(392)											
	나-8	■	(796)	(796)						나-8	■	(796)	(796)											
	나-9	■	(551)	(551)						나-9	■	(551)	(551)											
	나-1 0	■	(291)	(291)						나-1 0	■	(291)	(291)											
	나-1 1	■	(937)	(937)						나-1 1	■	(937)	(937)											
	나-1 2		(108.50)	(108.50)						나-1 2		(108.50)	(108.50)											
	소 계		41,504.50	41,504.50					15			41,504.50	41,504.50						15					
보림 잔디광장 연못및 음각문수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384.00	23,384.00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384.00	23,384.00											
	라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1,286.00	11,286.00						라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1,286.00	11,286.00											

구분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수경시설	사	2,541.00	2,541.00							사	2,541.00	2,541.00						
	(계류·바닥분수)	사-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38)							사-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38)	(1,538)					
		사-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08)							사-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08)	(508)					
	(연못·계류)	사-3	산 144-8	(495)						사-3	산 144-8	(495)	(495)						
	벽천	바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19.00							바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19.00	819.00					
		바-1		(374)							바-1		(374)	(374)					
		바-2		(445)							바-2		(445)	(445)					
	무궁화원	아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020.00							아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020.00	1,020.00					
	장미원	차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00.00							차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00.00	400.00					
	그늘시렁	①	전지역	(78.5)						3	①	전지역	(78.5)	(78.5)					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①-1	■	(37.5)	(37.5)	목재					(1)		
	①-2	■	(25)	(25)	목재					(1)		
	①-3	■	(16)	(16)	목재					(1)		
팔각정자	②	전지역	(35.5)	(35.5)	목재					2		
	②-1	■	(14.8)	(14.8)	목재					(1)		
	②-2	■	(20.7)	(20.7)						(1)		
데크	④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064.50	2,064.50						5		
	④-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19)	(219)						(1)		
	④-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24)	(1,524)						(1)		
조경시설	④-3	산 143	(85.5)	(85.5)						(1)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4	산 143	(126)	(126)					(1)	㉠-4	산 143	(126)	(126)					(1)	
	㉠-5	산 144-8	(100)	(100)					(1)	㉠-5	산 144-8	(100)	(100)					(1)	
	㉠	산 143	(15)	(15)					1	㉠	산 143	(15)	(15)					1	
	㉡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	(23)					1	㉡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	(23)	(23)				1	
사각파괴조	㉢	전지역	(60.75)	(60.75)					3	㉢	전지역	(60.75)	(60.75)	(60.75)				3	
	㉢1	"	(20.25)	(20.25)				(1)		㉢1	"	(20.25)	(20.25)	(20.25)			(1)		
	㉢2	"	(40.5)	(40.5)				(2)		㉢2	"	(40.5)	(40.5)	(40.5)			(2)		
소 계			2,763.55	2,387.79				14				2,763.55	2,387.79			938.97	3,264.35	14	
공원유계소	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51.70	115.73	철근 콘크리트	지하1 지상1	115.73	212.16		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51.70	115.73	철근 콘크리트	지하1 지상1	115.73	212.16		
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휴 게 소	카		1,294.00	1,294.00		카		1,294.00			
	카-1	■	(133)	(133)		카-1	■	(133)			
	카-2	■	(285)	(285)		카-2	■	(285)			
	카-4	■	(232)	(232)		카-4	■	(232)			
	카-5	■	(126)	(126)		카-5	■	(126)			
	카-6	산 143	(400)	(400)		카-6	산 143	(400)			
	카-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3)	(83)		카-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3)			
	카-8	〃	(35)	(35)		카-8	〃	(35)			
임간휴게소	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6.00	56.00		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6.00			
	타'-2	■	(56)	(56)		타'-2	■	(56)			
장 의 자	③	전지역				③	전지역				1
로포명석	⑥	시설부지내				⑥	시설부지내				1

구분	변경			전			변경							비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평상	㉞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	(9)					1	㉞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	(9)					1	
	㉞	전지역							11	㉞	전지역							11	
남부노인 복지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61.85	922.06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823.24	3,052.19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61.85	922.06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823.24	3,052.19		
	소 계		2,402.27	2,402.27					9			2,402.27	2,402.27					9	
유아 놀이공간	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402.27	2,402.27					9	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402.27	2,402.27					9	
	소 계		27,671.83	27,671.83					24			27,671.83	27,671.83					24	
테니스장	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811.50	3,811.50					7	가'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811.50	3,811.50					7	
X-Game World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80.00	880.00					1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80.00	880.00					1	
합계																			

구 분	전								변					경				비 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보 우 시 설 비	라'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227.23	2,227.23						라'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227.23	2,227.23					
	라'-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27.23)	(727.23)						라'-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27.23)	(727.23)					
	라'-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630)	(630)						라'-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630)	(630)					
	라'-3	산 143	(89)	(89)						라'-3	산 143	(89)	(89)					
	라'-4	산 143	(151)	(151)						라'-4	산 143	(151)	(151)					
	라'-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44)	(344)						라'-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44)	(344)					
	라'-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8.5)	(88.5)						라'-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8.5)	(88.5)					
	라'-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73)	(173)						라'-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73)	(173)					
안	라'-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4.5)	(24.5)						라'-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4.5)	(24.5)					

구 분	전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서울특별시	마'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190.00	1,190.00						1,190.00	1,190.00					
	바'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350.00	7,350.00						7,350.00	7,350.00					
	사'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513.50	5,513.50						5,513.50	5,513.50					
	아'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928.00	928.00						928.00	928.00					
	자'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800.00	800.00						800.00	800.00					
	차'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22.00	1,322.00						1,322.00	1,322.00					
	카'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60.00	360.00						360.00	360.00					
	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516.60	2,516.60					1	2,516.60	2,516.60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배드민턴장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73.00	773.00							다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73.00	773.00					
	㉔	전지역							15	㉔	전지역							15	
	소계		21,851.84	20,020.22			10,278.43	22,543.67	15			21,872.82	20,041.20			10,278.43	22,543.67	16	시설면적 증 20.98㎡ 공작물 1기 증
강당	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979.68	657.85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1층	657.85	657.85		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979.68	657.85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1층	657.85	657.85		
	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889.00	3,889.00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3,090.00	5,260.00		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889.00	3,889.00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3,090.00	5,260.00		
	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744.00	1,744.00	라멘 조슬라브	지상 2층	819.42	2,011.02		7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744.00	1,744.00	라멘 조슬라브	지상 2층	819.42	2,011.02		
전지도체관	㉔	9개소	1,830	1,830					9	㉔	9개소	1,830	1,830					9	
	㉔-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73)	(573)					(1)	㉔-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73)	(573)					(1)	
	㉔-2	"	(106)	(106)					(1)	㉔-2	"	(106)	(106)					(1)	
전시용비행기	㉔-3	"	(79)	(79)					(1)	㉔-3	"	(79)	(79)					(1)	

교 양 시 설

구 분	번				경				전				번				경				비 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4	■	(95)	(95)					(1)	㉠-4	■	(95)	(95)						(1)		
	㉠-5	■	(272)	(272)					(1)	㉠-5	■	(272)	(272)						(1)		
	㉠-6	■	(106)	(106)					(1)	㉠-6	■	(106)	(106)						(1)		
	㉠-7	■	(145)	(145)					(1)	㉠-7	■	(145)	(145)						(1)		
	㉠-8	■	(177)	(177)					(1)	㉠-8	■	(177)	(177)						(1)		
	㉠-9	■	(277)	(277)					(1)	㉠-9	■	(277)	(277)						(1)		
시민안전 체험관	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586.00	4,586.00						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4,586.00	4,586.00				지하 1층, 지상 3층	2,171.00	8,020.77		
기뵐탑	9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03.60	13.00					1	9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03.60	13.00						1		
충무탑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3.00	22.00					1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53.00	22.00						1		
예술조형물	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48.86	36.19					1	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48.86	36.19						1		
산재회생자 조형물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12.00	36.48					1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12.00	36.48	화강석보론 조스테인레 시스템					1		

구 분	번			경			전			번			경			비 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장기기종인 기밀비										㉔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0.98	20.98	알루미늄 포천석 부식강판				1	시설면적 증 20.98㎡ 공작물 1기 증
	1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92.96	392.96		지상 2층	392.96	413.71		15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92.96	392.96		지상 2층	392.96	413.71		
	3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82.56	782.56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773.76	1,441.56		3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82.56	782.56		지하 1층, 지상 2층	773.76	1,441.56		
	3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833.00	1,833.00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4층	816.44	2,446.72	2	3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833.00	1,833.00		지하 1층, 지상 4층	816.44	2,446.72	2	
남부정예인 복지관	4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44.74	2,344.74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2,330.76	3,733.69		4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44.74	2,344.74		지하 1층, 지상 2층	2,330.76	3,733.69		
	아 "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635.00	2,635.00						아 "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635.00	2,635.00						
소 계			5,037.53	5,037.53			535.06	535.06	11			5,037.53	5,037.53			535.06	535.06	11	
	9	전지역	863.93	863.93			429.06	429.06		9	전지역	863.93	863.93			429.06	429.06		

구	번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화정길	9-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1.53)	(131.53)	시멘트벽돌조	지상 1층	(91.96)	(91.96)		9-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1.53)	(131.53)	시멘트벽돌조	지상 1층	(91.96)	(91.96)				
	9-2	■	(91.96)	(91.96)	시멘트벽돌조	지상 1층	(131.53)	(131.53)		9-2	■	(91.96)	(91.96)	시멘트벽돌조	지상 1층	(131.53)	(131.53)				
	9-3	■	(84.91)	(84.91)	시멘트벽돌조	지상 1층	(84.91)	(84.91)		9-3	■	(84.91)	(84.91)	시멘트벽돌조	지상 1층	(84.91)	(84.91)				
	9-4	■	(28.98)	(28.98)	연와 조	지상 층	(28.98)	(28.98)		9-4	■	(28.98)	(28.98)	연와 조	지상 층	(28.98)	(28.98)				
	9-5	■	(420.55)	(420.5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91.68)	(91.68)		9-5	■	(420.55)	(420.5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91.68)	(91.68)				
	9-6	■	(106)	(106)	시멘트벽돌조	지상 1층	(106)	(106)		9-6	■	(106)	(106)	시멘트벽돌조	지상 1층	(106)	(106)				
	가*	■	397.00	397.00					1	가*	■	397.00	397.00					1			
	@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6)	(36)					9	@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6)	(36)					9			
	@-1	■	(4)	(4)					(1)	@-1	■	(4)	(4)					(1)			
	@-2	■	(4)	(4)					(1)	@-2	■	(4)	(4)					(1)			
금수대																					

편 이 시 정

편 이 시 정

구	분	번				경				전				번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㉔-3	·	(4)	(4)					(1)	㉔-3	·	(4)	(4)					(1)				
		㉔-4	·	(4)	(4)					(1)	㉔-4	·	(4)	(4)					(1)				
		㉔-5	·	(4)	(4)					(1)	㉔-5	·	(4)	(4)					(1)				
		㉔-6	·	(4)	(4)					(1)	㉔-6	·	(4)	(4)					(1)				
		㉔-7	·	(4)	(4)					(1)	㉔-7	·	(4)	(4)					(1)				
		㉔-8	·	(4)	(4)					(1)	㉔-8	·	(4)	(4)					(1)				
		㉔-9	·	(4)	(4)					(1)	㉔-9	·	(4)	(4)					(1)				
		타	산 143	187.00	187.00						타	산 143	187.00	187.00									
		나 ¹	전지역	3,589.60	3,589.60						나 ¹	전지역	3,589.60	3,589.60									
주차장		나 ¹ -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49.5)	(2349.5)					나 ¹ -1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349.5)	(2349.5)										
		나 ¹ -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69.04)	(769.04)					나 ¹ -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769.04)	(769.04)										
		나 ¹ -3	·	(115.64)	(115.64)					나 ¹ -3	·	(115.64)	(115.64)										

구분	번			경			전			번			경			후		비고 (시설면적 증가)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공공시설관리시설	나-4	■	(193.1)	(193.1)						나-4	■	(193.1)	(193.1)								
	나-5	■	(162.32)	(162.32)						나-5	■	(162.32)	(162.32)								
	⑤		(1.44)	(1.44)					1	⑤		(1.44)	(1.44)					1			
	소계			2,939.89				2,939.89	4,392.97	2			4,405.58	2,939.89			2,939.89	4,392.97	2		
	변전실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43.30	133.20		지상 1층	133.20	166.50		10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43.30	133.20		지상 1층	133.20	166.50			
	관리사무소	1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07.00	927.81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	927.81	2,270.37		12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507.00	927.81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	927.81	2,270.37			
	구민회관	14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164.00	1,487.60	철근 콘크리트	지상 1층	1,487.60	1,487.60		14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2,164.00	1,487.60	철근 콘크리트	지상 1층	1,487.60	1,487.60			
	공원등	⑩	전지역							1	⑩	전지역								1	
	쓰레기통	⑬	전지역							1	⑬	전지역								1	
	환경교육자 대기실·창고	1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91.28	391.28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391.28	468.50		16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391.28	391.28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391.28	468.50			

공 원 관 리 시 정

구 분	번			경			전			번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 밖 이 시 설	소 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빈려건물이터	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00.00						하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300.00	1,300.00						
녹지	소 계		248,766.96									248,745.98							감 20.98㎡
	녹지		전지역	247,505.75							전지역	247,484.77							감 20.98㎡
철도시설 계	1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261.21							18	여의대방로 20길 33일대	1,261.21							
	105정거장 외부출입구1	18-1	▪	(61.90)						18-1	▪	(61.90)							
105정거장 외부출입구2	18-2	▪	(61.90)							18-2	▪	(61.90)							
	105정거장 외부E\1	18-3	▪	(28.50)						18-3	▪	(28.50)							
105정거장 외부E\2	18-4	▪	(28.18)							18-4	▪	(28.18)							
	105정거장 환기구1	18-5	▪	(8.16)						18-5	▪	(8.16)							
105정거장 환기구2	18-6	▪	(16.80)							18-6	▪	(16.80)							
	105정거장 환기구3	18-7	▪	(13.44)						18-7	▪	(13.44)							
105정거장 환기구4	18-8	▪	(9.36)							18-8	▪	(9.36)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시설면적 증감)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차량기지 환기구1	18-9	■	(16.20)					18-9	■	(16.20)										
	차량기지 환기구2,3	18-1 0	■	(14.44)					18-1 0	■	(14.44)										
	차량기지 비상출입구1	18-1 1	■	(32.62)					18-1 1	■	(32.62)										
	차량기지 검수동출입구	18-1 2	■	(213.71)					18-1 2	■	(213.71)										
	차량기지 환기구4,5	18-1 3	■	(34.56)					18-1 3	■	(34.56)										
	차량기지 환기구6,7	18-1 4	■	(18.24)					18-1 4	■	(18.24)										
	차량기지 환기구8	18-1 5	■	(8.74)					18-1 5	■	(8.74)										
	차량기지 환기구9	18-1 6	■	(16.20)					18-1 6	■	(16.20)										
	차량기지 비상출입구2	18-1 7	■	(23.25)					18-1 7	■	(23.25)										
	중환자실 출입시설통출	18-1 8	■	(655.00)					18-1 8	■	(655.00)										
	철도시설 차량기지	19	■	(12,073)					19	■	(12,073)								중환자실 지하부분 (면적제외)		
	철도시설 본선	20	■	(8,458.0)					20	■	(8,458.0)										
	철도시설 105정거장	21	■	(2,256.9)					21	■	(2,256.9)										
	철도시설 관제동	22	■	(1,685.9)					22	■	(1,685.9)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0,779.10	44,651.44				
당초	중로	소 계			368	5,424				
당초		3	1	13	204	2,652	주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광장 나-1	
당초		3	2	13	32	416	진입로	광장 나-1	광장 나-2	
당초		2	3	17	30	510	진입로	광장 나-5	소로 3-6	
당초		1	1	23	47	1,081	진입로	광장 나-9	광장 나-6	
당초		2	4	15	14	210	진입로	바닥분수	보라매광장	
당초		2	5	15	21	315	진입로	보라매광장	소로3-24	
당초		3	3	12	20	240	진입로	소3-3	관리사무소	
당초		소 계			4,241.9	26,927				
당초	소로	2	1	8	41	328	보차도	광장 나-1	광장 나-4	
당초		3	29	6	179	1,074	보차도	부지경계	부지북측	
당초		2	3	10	444	4,440	보도	부지경계	광장 나-8	
당초		2	4	10	25	250	보도	산책로21	소로 2-3	
당초		3	1	6	56	336	보차도	전자도서관	광장 나- 4	
당초		3	2	4	11	44	보도	광장나-4	관리사무소	
당초		3	3	6	320	1,920	보도	광장 나- 2	광장 나-5	
당초		3	4	5	23	115	보차도	소로 3-5	청소년회관	
당초		3	5	7	67	469	보차도	광장 나-6	광장 나-5	
당초		3	6	8	60.5	484	보차도	중로 2-3	주차장-2	
당초		3	7	7	47	329	보도	구민회관	소로 3-2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8	4	66	264	산책로	구민회관	소로 3-29	
당초		3	9	5	125.4	627	보도	광장 나- 3	바닥분수	
당초		3	10	5	342	1,710	보도	바닥분수	소로 2-3	
당초		3	11	8	171	1,368	산책로	광장 나-6	소로 2-3	
당초		3	12	6	90	540	산책로	소로 2-3	소로 3-13	
당초		3	13	6	467	2,802	보도	공원 동남측경계	장미원	
당초		3	14	6	21	126	보도	공원 남측경계	소로 3-13	
당초		3	15	5	117	585	보차도	공원 남측경계	소로 3-16	
당초		3	16	5	156	780	보차도	장미원	광장 나-7	
당초		3	17	6	250	1,500	보도	광장 나-7	장미원	
당초		3	18	8	23.5	188	보차도	소로3-31	소로 3-22	
당초		3	19	6	16	96	보도	소로 3-20	장미원	
당초		3	20	8	132	1,056	보차도	소로 3-13	광장 나-8	
당초		3	22	8	152	1,216	보도	광장 나-8	광장 나-3	
당초		1	1	11.5	36	414	시설간 연결로	광장 나-2	광장 나-3	
당초		3	24	5	503	2,515	보차도	광장 나-8	소로 3-11	
당초		3	25	4	25	100	보도	산39	중3-3	
당초		3	26	5	83	415	보도	소로 3-3	소로 3-27	
당초		3	27	5	36	180	보도	에어파크	바닥분수	
당초		3	28	5	30	150	보도	바닥분수	청소년회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30	4	10	40	보도	소3-3	중3-3	
당초		3	31	4	116.5	466	보차도	산책로35	소로3-18	
변경		소 계			6,169.20	12,300.44				
당초			1	2.4	38	91.2	산책로	소로 3-3	에어파크	
당초			2	4.4	13	57.2	산책로	산책로 109		
당초			3	2.5	27	67.5	산책로	테니스장 바 ^a	소로 2-1	
당초			4	3	8	24	산책로	소로 1-1	강당	
당초			5	5	19	95	산책로	광장 나-3	강당	
당초			6	1.5	22	33	산책로	소로 3-9	강당	
당초			7	2	55.5	111	산책로	소로 2-3	녹지	
당초			8	2	70.5	141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7	
당초	산책로		9	1.8	27	48.6	산책로	광장 나-11	광장 나-11	
당초			10	1.5	423	634.5	산책로	전자도서관 7		
당초			11	1.5	272.5	408.75	산책로	산책로 108	산책로 108	
당초			12	1.5	168	252	산책로	광장 나-3	중로 2-5	
당초			13	1.5	163	244.5	산책로	중로 2-5	소로 3-11	
당초			14	1.5	22	33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2	
당초			15	2.5	22	55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22	
당초			16	4	178	712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7	
당초			17	4	129	516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23	
당초			18	1.5	56	84	산책로	산책로 109	구민회관 14	
당초			19	1.5	10.5	15.75	산책로	산책로 108	목교 다 ^a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0	1.5	360	540	산책로	목교다"	주차장 나-4	
당초			21	4	120	480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16	
당초			22	1	12.5	12.5	산책로	휴게소카-7	녹지	
당초			23	4	178	712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21	
당초			24	1	8.5	8.5	산책로	화장실9-4	산책로 3	
당초			29	2	54	108	산책로	소로 2-3	소로 3-13	
당초			30	3	183	549	산책로	소로 3-20	산책로 29	
당초			31	3	61	183	산책로	소로 3-13	산책로 30	
당초			32	3	9	27	산책로	소로 3-20	장미원	
당초			33	2	12	24	산책로	소로 3-20	소로 3-17	
당초			34	1.5	67	100.5	산책로	소로 3-17	산책로 54	
당초			35	2.5	20	50	산책로	소로 3-18	신대방 460-29	
당초			36	2	29	58	산책로	산책로 35	소로 3-17	
당초			39	1.5	57	85.5	산책로	무궁화원	소로3-25	
당초			40	1.5	46	69	산책로	소로3-25	관리사무소	
당초			41	2.5	39	97.5	산책로	강당	바닥분수	
당초			42	1.5	17	25.5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2	
당초			43	1.5	23	34.5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13	
당초			44	2	188	376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0	
당초			45	2	9	18	산책로	공원동쪽 경계	산책로 44	
당초			46	2	31	62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11	
당초			47	2	30	60	산책로	연못	소로 3-1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8	1.5	13	19.5	산책로	데크	산책로 16	
당초			49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0	1.5	7	10.5	산책로	데크	산책로 21	
당초			51	1.5	13	19.5	산책로	데크	산책로 23	
당초			52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3	1.5	4	6	산책로	소로 2-3	데크	
당초			54	1.5	25	37.5	산책로	산책로 34	산책로 55	
당초			55	5	2.5	12.5	산책로	산책로 54	남부 수도사업소	
당초			56	1.5	24.5	36.75	산책로	산책로 55	남부 수도사업소	
당초			57	1.5	62.2	93.3	산책로	산책로 54	산책로 61	
당초			58	1.5	195.6	293.4	산책로	산책로 57	휴게공간5	
당초			59	1.5	92	138	산책로	산책로 58	산책로 58	
당초			60	1.5	60.6	90.9	산책로	산책로 58	체력단련장4	
당초			61	2.5	114.24	285.6	산책로	산책로 57	데크 4	
당초			62	3	164.6	493.8	산책로	산책로 61	휴게공간 5	
당초			63	2	15	30	산책로	산책로 62	산책로 61	
당초			64	2	65	130	산책로	휴게공간 5	산책로 76	
당초			65	2	87	174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68	
당초			66	2	52	104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73	
당초			67	2	8	16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66	
당초			68	1.5	101.7	152.55	산책로	산책로 65	신동아 아파트	
당초			69	3	22.6	67.8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7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70	2	50	100	산책로	산책로 66	약수터	
당초			71	2	46	92	산책로	산책로 70	우성1차 아파트	
당초			72	1	66	66	산책로	체력단련장 4	산책로 74	
당초			73	1.5	47.8	71.7	산책로	산책로 66	산책로 74	
당초			74	1	87	87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72	
당초			75	1.5	71.3	106.95	산책로	산책로 73	산책로 64	
당초			76	3	110	330	산책로	휴게공간 5	부진입로	
당초			77	1.5	58	87	산책로	휴게공간 5	대천교회	
당초			78	1.5	57.2	85.8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76	
당초			79	1.5	46.8	70.2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86	
당초			80	1.5	36	54	산책로	데크 3	산책로 86	
당초			81	1	357	357	산책로	산책로 61	데크 3	
당초			82	1	34	34	산책로	산책로 81	산책로 81	
당초			83	1	10	10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4	1	7.8	7.8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5	1	3.1	3.1	산책로	산책로 81	부지내	
당초			86	1	4.4	4.4	산책로	산책로 62	체력단련장3	
당초			89	2	28	56	산책로	공원휴게소	축구장	
당초			90	1.5	67	100.5	산책로	소로 3-24	소로 3-24	
당초			91	1.5	120	180	산책로	산책로 90	산책로 16	
당초			92	1.5	13	19.5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93	1.5	18	27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94	1.5	8	12	산책로	산책로 91	산책로 16	
당초			95	1.5	4	6	산책로	산책로 91	소로 3-24	
당초			96	1.5	34	51	산책로	산책로 90	산책로 97	
당초			97	3	13	39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8	
당초			98	1.5	27	40.5	산책로	산책로 97	산책로 99	
당초			99	1.5	24	36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16	
당초			100	1.5	15	22.5	산책로	산책로 97	데크 2	
당초			101	1.5	18	27	산책로	산책로 97	산책로 16	
당초			102	1.5	45.26	67.89	산책로	산책로 31	유아 놀이공간	
당초			103	1.5	26	39	산책로	산책로102	소로 3-13	
당초			104	1.5	53	79.5	산책로	산책로 102	산책로 31	
당초			105	3	31	93	산책로	소로3-3	관리사무소	
당초			106	2	11	22	산책로	산책로 102	소로3-13	
당초			107	2.5	22	55	산책로	산책로 102	소로3-13	
당초			108	2	52	104	산책로	산책로 102	산책로 31	
당초			109	4	32	128	산책로	소로3-3	관리사무소	

조성계획도(변경전)

보라매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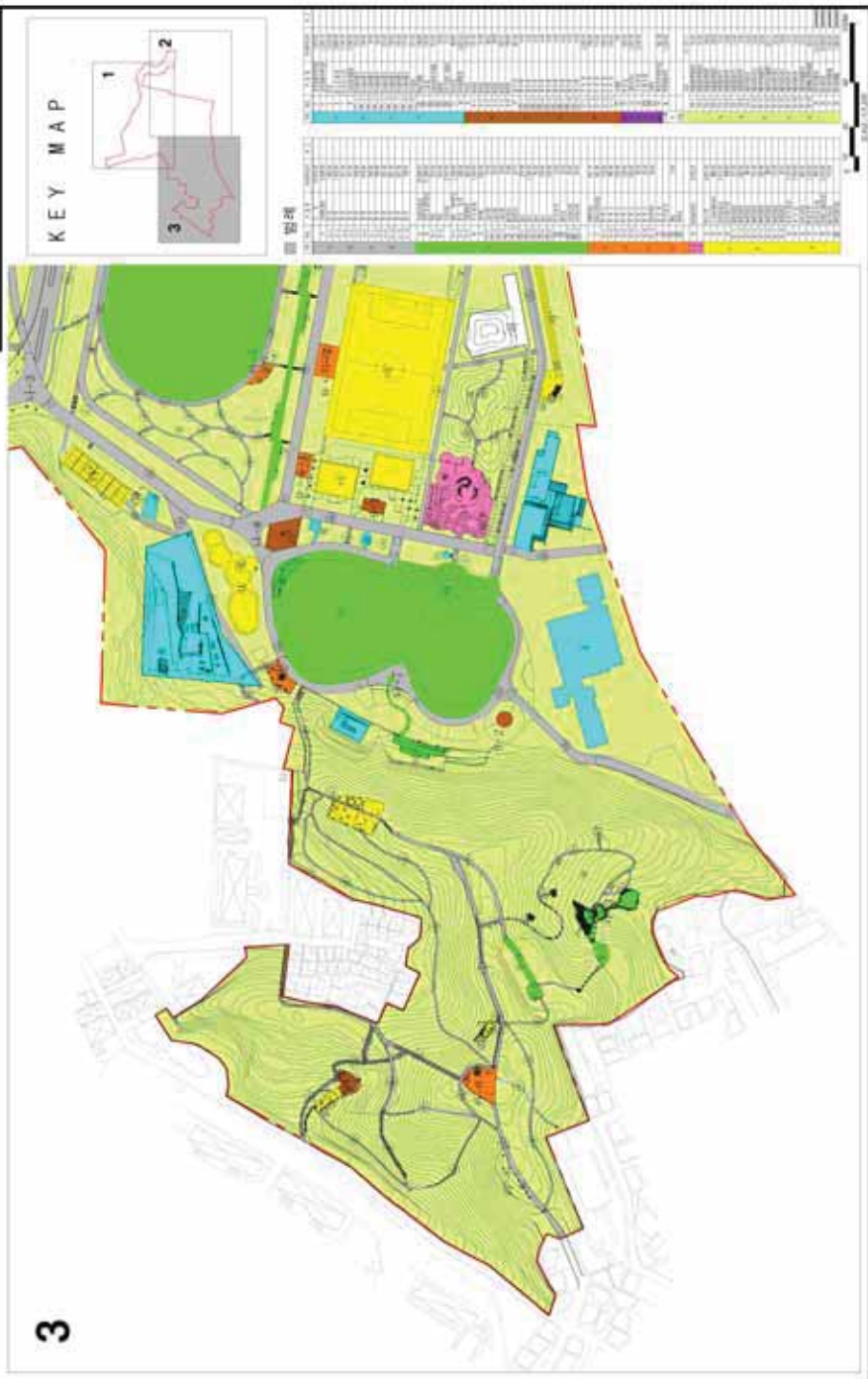
부분계획도2(변경후)

보라매근린공원



부분계획도3(변경후)

보라매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8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9호(2004.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0호(2006.12.2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6호(2007.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8호(2008.6.1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0호(2009.12.1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2호(2010.11.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9호(2011.6.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332호(2012.12.1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7호(2013.5.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3호(2013.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3호(2014.3.2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5호(2014.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1호(2015.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4호(2015.12.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0호(2016.12.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7호(2017.6.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7호(2017.9.2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6호(2017.12.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01호(2018.12.1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9호(2019.05.0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50호(2019.12.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3호(2020.03.1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1호(2020.04.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7호(2020.12.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19호(2021.12.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강일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결정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강일 도시개발구역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일원
- 면 적 : 895,638.3㎡(1공구 675,412.7㎡, 2공구 28,930.1㎡, 3공구 103,704.4㎡, 4공구 84,270.1㎡, 5공구 3,321.0㎡)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2003.11.10. ~ 2022.12.31.
 - 변경) 2003.11.10. ~ 2024.12.31.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 기간	-1공구 : 2003.11.10.~2018.04.05. -2공구 : 2003.11.10.~2020.03.12. -3공구 : 2003.11.10.~2020.04.23. -4공구 : 2003.11.10.~2022.12.31. -5공구 : 2003.11.10.~2022.12.31.	-1공구 : 2003.11.10.~2018.04.05. -2공구 : 2003.11.10.~2020.03.12. -3공구 : 2003.11.10.~2020.04.23. -4공구 : 2003.11.10.~2024.12.31. -5공구 : 2003.11.10.~2024.12.31.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증)24개월 -증)24개월

(3)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결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 대표자의 성명 : 김현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변경						구성비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총 계		895,638.30	675,412.70	28,930.10	103,704.40	84,270.10	3,321.00	100.0%	
강 일 도 시 개 발 사 업	합 계	879,391.70	675,412.70	12,683.50	103,704.40	84,270.10	3,321.00	100.0%	98.2%
	주거 용지								
	소 계	373,855.10	292,579.10	9,811.00	71,465.00	-	-	42.5%	-
	공동주택	373,524.60	292,248.60	9,811.00	71,465.00	-	-	42.5%	-
	근린생활시설	330.50	330.50	-	-	-	-	0.0%	새마을금고
	상업 용지								
	소 계	11,226.00	11,226.00	-	-	-	-	1.3%	-
	상업용지	11,226.00	11,226.00	-	-	-	-	1.3%	-
	도시 기 반 사 업								
	소 계	494,310.60	371,607.60	2,872.50	32,239.40	84,270.10	3,321.00	56.2%	· 도로·하천 중복결정 (1,244.8㎡) 제외 · 근린공원·저류시설 중복결정 (11,717.6㎡) 제외
	도 로	156,459.50	134,420.90	53.20	15,165.40	6,820.00	-	17.8%	하천 중복결정(1,244.8㎡)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663.60	2,506.10	1,157.50	-	-	-	0.4%	-
	공공청사	2,572.00	2,572.00	-	-	-	-	0.3%	2개소
	체육시설	2,480.90	-	-	2,480.90	-	-	0.3%	1개소
	사회복지시설	5,226.30	5,226.30	-	-	-	-	0.6%	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984.00	-	-	1,984.00	-	-	0.2%	1개소
	학 교	49,531.00	37,692.00	-	-	11,839.00	-	5.6%	초2, 중1, 고1개소
	유치원	1,187.00	645.00	-	-	542.00	-	0.1%	2개소(1개소 존치, 강일어린이집)
	종교용지	7,509.10	5,100.10	-	2,409.00	-	-	0.9%	8개소
	광 장	1,493.30	1,493.30	-	-	-	-	0.2%	1개소
	근린공원	120,797.30	86,205.70	-	3,818.60	30,773.00	-	13.7%	2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11,717.6㎡) 포함
	어린이공원	10,615.20	7,437.70	-	3,177.50	-	-	1.2%	4개소
	완충녹지	24,018.70	19,806.20	49.70	3,204.00	958.80	-	2.7%	10개소
	경관녹지	14,547.40	13,789.40	46.80	-	711.20	-	1.7%	11개소
	연결녹지	8,596.40	7,031.10	1,565.30	-	-	-	1.0%	2개소
	공공공지	1,297.90	1,297.90	-	-	-	-	0.1%	1개소
	하 천	33,870.90	-	-	-	33,870.90	-	3.9%	도로중복결정 (1,244.8㎡)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4,542.90	4,542.90	-	-	-	-	0.5%	3개소
	자동차정류장	33,855.90	33,855.90	-	-	-	-	3.8%	존치(공영차고지)
	주 차 장	7,985.10	7,985.10	-	-	-	-	0.9%	1개소
	저류시설	11,717.60	3,201.50	-	-	8,516.10	-	1.3%	2개소, 근린공원 중복결정 (11,717.6㎡) 포함
	변전시설	3,321.00	-	-	-	-	3,321.00	0.4%	1개소

일 단 의 주 택 지 조 성 사 업	합 계		16,246.60	-	16,246.60	-	-	-	100.0%	1.8%
	주거 용지	소 계	11,216.80	-	11,216.80	-	-	-	69.0%	-
		단독주택	11,216.80	-	11,216.80	-	-	-	69.0%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5,029.80	-	5,029.80	-	-	-	30.9%	-
		도 로	4,098.70	-	4,098.70	-	-	-	25.2%	-
		원충녹지	650.9	-	650.9	-	-	-	4.0%	2개소
		경관녹지	280.2	-	280.2	-	-	-	1.7%	1개소

[토지이용계획]

강 일 도 시
개 발 사 업

토지이용계획도



나. 주택건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84,741.4	292,248.6	21,027.8	71,465.0	-	-	6,824	5,141	414	1,269	-	-	19,107	14,394	1,159	3,554	-	-	2.8인/호
강일지구	373,524.6	292,248.6	9,811.0	71,465.0	-	-	6,756	5,141	346	1,269	-	-	18,917	14,394	969	3,554	-	-	
일단의주택지	11,216.8	-	11,216.8	-	-	-	68	-	68	-	-	-	190	-	190	-	-	-	

● 주택규모별 계획(변경없음)

구 분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 고
합 계			6,824	19,107	2.8인/호
강일지구	공동주택		6,756	18,917	
	60㎡이하	소 계	3,980	11,144	
		전용 12평 이하	346	969	
		전용 12평	980	2,744	
		전용 15평	1,308	3,663	
		전용 18평	1,346	3,768	
	60~85㎡	전용 25평	2,306	6,457	
	85㎡초과	전용 34평	470	1,316	
일단의주택지	단독주택		68	190	

● 주택공급계획(변경없음)

획지번호	면 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층 고	비 고
합계	-	373,524.6	6,756	18,917	-	15층이하
A1	3공구	24,550.0	282	790	160	15층이하
A2	1공구	34,098.3	442	1,238	160	15층이하
A3	3공구	46,915.0	987	2,764	200	15층이하
A4	1공구	38,390.0	748	2,094	200	15층이하
A5	1공구	36,913.0	722	2,022	200	15층이하
A6	1공구	29,879.0	553	1,548	200	15층이하

임대
·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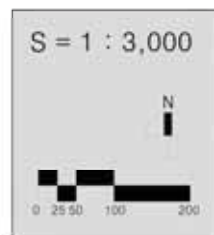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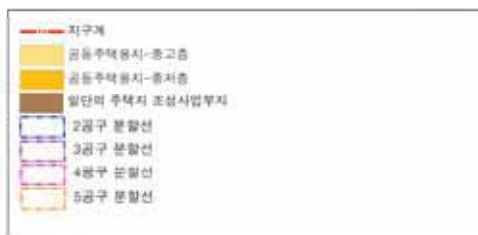
획지번호		면 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층 고	비 고
A7	1공구	32,357.0	731	2,046	200	15층이하	
A8	1공구	27,450.9	410	1,148	160	15층이하	
A9	1공구	52,188.6	841	2,355	180	15층이하	
A10	1공구	40,971.8	694	1,943	200	15층이하	
A11	2공구	9,811.0	346	969	180	10층이하	

[주택공급계획도]



강 일 도 시
개 발 사 업

주택공급계획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1	계	-	330.5	330.5	-	새마을금고
		1공구	강동구 강일동 470 일원	330.5	330.5	-	새마을금고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라.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5개소	11,226	11,226	-	-	
	1공구	5개소	11,226	11,226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상업 용지	1	계	-	1,093	1,093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4-2 일원	1,093	1,093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2	계	-	3,053	3,053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4-2 일원	3,053	3,053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3	계	-	3,290	3,290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4-1 일원	3,290	3,290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4	계	-	2,572	2,572	-	-	
		강동구 강일동 306-1 일원	2,572	2,572	-	-	
		-	-	-	-	-	
		-	-	-	-	-	
		-	-	-	-	-	
		-	-	-	-	-	
	5	계	-	1,218	1,218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6-11 일원	1,218	1,218	-	-
		2공구	-	-	-	-	-
		3공구	-	-	-	-	-
5	4공구	-	-	-	-	-	
	5공구	-	-	-	-	-	

마. 도시기반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폭원 (m)	합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계	-	34	8,052	164,221.8	28	7,531	160,123.1	6	521	4,098.7	-	
	1공구	-	23	6,421	136,927.0	23	6,421	136,927.0	-	-	-	-	
	2공구	-	7	649	5,309.4	1	128	1,210.7	6	521	4,098.7	-	
	3공구	-	3	746	15,165.4	3	746	15,165.4	-	-	-	-	
	4공구	-	1	236	6,820.0	1	236	6,820.0	-	-	-	-	
	5공구	-	-	-	-	-	-	-	-	-	-	-	
일반 도로	계	계	-	29	7,726	155,706.3	23	7,205	151,607.6	6	521	4,098.7	일단의주택지의 소로 일부가 강일지구 내 포함
		1공구	-	19	6,223	129,569.0	19	6,223	129,569.0	-	-	-	
		2공구	-	6	521	4,151.9	-	-	53.2	6	521	4,098.7	
		3공구	-	3	746	15,165.4	3	746	15,165.4	-	-	-	
		4공구	-	1	236	6,820.0	1	236	6,820.0	-	-	-	
		5공구	-	-	-	-	-	-	-	-	-	-	
	대로 3류	계	25	2	1,115	31,959.7	2	1,115	31,959.7	-	-	-	-
		1공구	25	2	1,115	31,959.7	2	1,115	31,959.7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소계	계	-	14	5,181	110,616.0	14	5,181	110,616.0	-	-	-	-
		1공구	-	11	4,261	89,146.2	11	4,261	89,146.2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2	715	14,649.8	2	715	14,649.8	-	-	-	-
		4공구	-	1	205	5,460.6	1	205	5,460.6	-	-	-	-
		5공구	-	-	-	-	-	-	-	-	-	-	-
	1류	계	20~22	7	4,130	96,615.8	7	4,130	96,615.8	-	-	-	-
		1공구	20~22	5	3,389	77,892.0	5	3,389	77,892.0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20~22	1	505	11,903.8	1	505	11,903.8	-	-	-	-
		4공구	20~22	1	236	6,820.0	1	236	6,820.0	-	-	-	-
		5공구	-	-	-	-	-	-	-	-	-	-	-
	2류	계	15	2	302	4,625.2	2	302	4,625.2	-	-	-	-
		1공구	15	1	123	1,879.2	1	123	1,879.2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15	1	179	2,746.0	1	179	2,746.0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3류	계	12	5	749	9,375.0	5	749	9,375.0	-	-	-	-
		1공구	12	5	749	9,375.0	5	749	9,375.0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구 분			폭원 (m)	합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소로	소계	계	-	13	1,430	13,130.6	7	909	9,031.9	6	521	4,098.7	-	
		1공구	-	6	847	8,463.1	6	847	8,463.1	-	-	-	-	
		2공구	-	6	521	4,151.9	-	-	53.2	6	521	4,098.7	-	
		3공구	-	1	62	515.6	1	62	515.6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1류	계	10	4	295	2,992.9	4	295	2,992.9	-	-	-	-	
		1공구	10	4	295	2,992.9	4	295	2,992.9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2류	계	8	8	1,057	9,722.5	3	614	6,011.5	5	443	3,711.0	-	
		1공구	8	2	552	5,470.2	2	552	5,470.2	-	-	-	-	
		2공구	8	5	443	3,736.7	-	-	25.7	5	443	3,711.0	-	
		3공구	8	1	62	515.6	1	62	515.6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3류	계	6	1	78	415.2	-	-	27.5	1	78	387.7	-	
		1공구	-	-	-	-	-	-	-	-	-	-	일단의 주택지 내 소로(3-10호선) 가 강일지구 내 포함	
		2공구	6	1	78	415.2	-	-	27.5	1	78	387.7		
		3공구	-	-	-	-	-	-	-	-	-			
		4공구	-	-	-	-	-	-	-	-	-			
		5공구	-	-	-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계	계	-	5	326	3,664	5	326	3,664	-	-	-	-	
		1공구	-	4	198	2,506	4	198	2,506	-	-	-	-	
		2공구	-	1	128	1,158	1	128	1,158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중로	2류	계	15	2	149	2,240.3	2	149	2,240.3	-	-	-	-
			1공구	15	2	149	2,240.3	2	149	2,240.3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소로	소계	계	-	3	177	1,423.3	3	177	1,423.3	-	-	-	-
			1공구	-	2	49	265.8	2	49	265.8	-	-	-	-
			2공구	-	1	128	1,157.5	1	128	1,157.5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2류	계	9	1	128	1,157.5	1	128	1,157.5	-	-	-	-
			1공구	-	-	-	-	-	-	-	-	-	-	-
			2공구	9	1	128	1,157.5	1	128	1,157.5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구 분			폭원 (m)	합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계	6	2	49	265.8	2	49	265.8	-	-	-	-
		1공구	6	2	49	265.8	2	49	265.8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3류											
		계	-	-	-	-	-	-	-	-	-	-	-
기타도로부지		1공구	-	-	-	4,851.9	-	-	4,851.9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계	-	-	-	-	-	-	-	-	-	-	-

●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주차장	1	계	-	7,985.1	7,985.1	-	-
		1공구	강일동 292-7 일원	7,985.1	7,985.1	-	노외주차장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자동차정류장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자동차 정류장	1	계	-	33,855.9	33,855.9	-	-
		1공구	강일동 565-4 일원	33,855.9	33,855.9	-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광장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광 장	1	계	-	1,493.3	1,493.3	-	-
		1공구	강일동 304-2 일원	1,493.3	1,493.3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공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합계	계	7개소	131,412.5	131,412.5	-	-	-
	1공구	4개소	93,643.4	93,643.4	-	-	-
	2공구	-	-	-	-	-	-
	3공구	2개소	6,996.1	6,996.1	-	-	-
	4공구	1개소	30,773.0	30,773.0	-	-	-
	5공구	-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근린공원	소계	계	3개소	120,797.3	120,797.3	-	-	-
		1공구	1개소	86,205.7	86,205.7	-	-	-
		2공구	-	-	-	-	-	-
		3공구	1개소	3,818.6	3,818.6	-	-	-
		4공구	1개소	30,773.0	30,773.0	-	-	-
		5공구	-	-	-	-	-	-
	1	계	-	34,591.6	34,591.6	-	'04.12.27	-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강일동 332-5 일원	3,818.6	3,818.6	-	'04.12.27	-
		4공구	강일동 332-5 일원	30,773.0	30,773.0	-	-	-
		5공구	-	-	-	-	-	-
	2	계	-	86,205.7	86,205.7	-	-	-
		1공구	강일동 산8-1 일원	86,205.7	86,205.7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어린이공원	소계	계	4개소	10,615.2	10,615.2	-	-	-
		1공구	3개소	7,437.7	7,437.7	-	-	-
		2공구	-	-	-	-	-	-
		3공구	1개소	3,177.5	3,177.5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1	계	-	3,049.3	3,049.3	-	-	-
		1공구	강일동 333-22 일원	3,049.3	3,049.3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2	계	-	3,177.5	3,177.5	-	-	-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강일동 317-1 일원	3,177.5	3,177.5	-	'04.12.27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3	계	강일동 448-1 일원	2,588.4	2,588.4	-	-	-
		1공구	강일동 448-1 일원	2,588.4	2,588.4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4	계	-	1,800.0	1,800.0	-	-	-
		1공구	강일동 429-1 일원	1,800.0	1,800.0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4공구	-	-	-	-	-	-
		5공구	-	-	-	-	-	-

•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합계		계	23개소	48,093.6	47,162.5	931.1	-	-
		1공구	15개소	40,626.7	40,626.7	-	-	-
		2공구	5개소	2,592.9	1,661.8	931.1	-	-
		3공구	1개소	3,203.3	3,203.3	-	-	-
		4공구	2개소	1,670.0	1,670.0	-	-	-
		5공구	-	-	-	-	-	-
완충녹지	소계	계	10개소	24,669.6	24,018.7	650.9	-	-
		1공구	5개소	19,806.2	19,806.2	-	-	-
		2공구	3개소	700.6	49.7	650.9	-	-
		3공구	1개소	3,204.0	3,204.0	-	-	-
		4공구	1개소	958.8	958.8	-	-	-
		5공구	-	-	-	-	-	-
	1	계	-	1,508.4	1,508.4	-	-	-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강일동 300-3 일원	1,508.4	1,508.4	-	'04.12.27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3	계	-	2,067.0	2,067.0	-	-	-
		1공구	강일동 450-6 일원	2,067.0	2,067.0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4	계	-	1,547.2	1,547.2	-	-	-
		1공구	강일동 449-1 일원	1,547.2	1,547.2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5	계	-	1,590.7	1,590.7	-	-	-
		1공구	강일동 469 일원	1,590.7	1,590.7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5공구	-	-	-	-	-
	6	계	-	-	-	-	-
		1공구	강일동 419-1 일원	12,266.6	12,266.6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6	계	-	958.8	958.8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419-1 일원	958.8	958.8	-	'04.12.27
		5공구	-	-	-	-	-
	7	계	-	1,565.0	1,565.0	-	-
		1공구	강일동 371 일원	1,565.0	1,565.0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8	계	-	769.7	769.7	-	-
		1공구	강일동 368-9 일원	769.7	769.7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9	계	-	284.1	42.6	241.5	-
		1공구	-	-	-	-	-
		2공구	강일동 331-1 일원	284.1	42.6	241.5	'04.12.27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10	계	-	615.6	615.6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28-14 일원	615.6	615.6	-	'04.12.27
		4공구	-	-	-	-	-
		5공구	-	-	-	-	-
	11	계	-	1,496.5	1,087.1	409.4	-
		1공구	-	-	-	-	-
		2공구	강일동 328-8 일원	416.5	7.1	409.4	'02. 9.26
		3공구	강일동 328-8 일원	1,080.0	1,080.0	-	'02. 9.26
		4공구	-	-	-	-	-
		5공구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경관녹지	소계	계	11개소	14,827.6	14,547.4	280.2	-	-
		1공구	9개소	13,789.4	13,789.4	-	-	-
		2공구	1개소	327.0	46.8	280.2	-	-
		3공구	-	-	-	-	-	-
		4공구	1개소	711.2	711.2	-	-	-
		5공구	-	-	-	-	-	-
	2	계	-	711.2	711.2	-	-	-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강일동 348-27 일원	711.2	711.2	-	'04.12.27	-
		5공구	-	-	-	-	-	-
	3	계	-	1,283.8	1,283.8	-	-	-
		1공구	강일동 396 일원	1,283.8	1,283.8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5	계	-	677.1	677.1	-	-	-
		1공구	강일동 469-2 일원	677.1	677.1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6	계	-	327.0	46.8	280.2	-	-
		1공구	-	-	-	-	-	-
		2공구	강일동 327-2 일원	327.0	46.8	280.2	'02. 9.26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7	계	-	200.0	200.0	-	-	-
		1공구	강일동 433 일원	200.0	200.0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8	계	-	182.8	182.8	-	-	-
		1공구	강일동 470-5 일원	182.8	182.8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9	5공구	-	-	-	-	-
		계	-	-	-	-	-
		1공구	강일동 471-3 일원	2,158.8	2,158.8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10	계	-	5,505.0	5,505.0	-	-
		1공구	강일동 288-2 일원	5,505.0	5,505.0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11	계	-	987.7	987.7	-	-
		1공구	강일동 565 일원	987.7	987.7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12	계	-	846.1	846.1	-	-
		1공구	강일동 541 일원	846.1	846.1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13	계	-	1,948.1	1,948.1	-	-
		1공구	강일동 450-5 일원	1,948.1	1,948.1	-	'10.11.11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연결녹지	소계	계	2개소	8,596.4	8,596.4	-	-
		1공구	1개소	7,031.1	7,031.1	-	-
		2공구	1개소	1,565.3	1,565.3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1	계	-	7,031.1	7,031.1	-	-
		1공구	강일동 325-48 일원	7,031.1	7,031.1	-	'09.04.09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2	계	-	1,565.3	1,565.3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1공구	-	-	-	-	-	-
	2공구	강일동 409 일원	1,565.3	1,565.3	-	'13.05.30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공공공지	1	계	-	1,297.9	1,297.9	-	-
		1공구	강일동 306-10 일원	1,297.9	1,297.9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전기 공급 설비	1	계	-	3,321	3,321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강일동 543-2 일원	3,321	3,321	-	'04.12.27

● 유치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2개소	1,187	1,187	-	-	-
	1공구	1개소	645	645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1개소	542	542	-	-	-
	5공구	-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유치원	1	계	-	542	542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348-1 일원	542	542	-	-
		5공구	-	-	-	-	-
유치원	2	계	-	645	645	-	-
		1공구	강일동 435-4 일원	645	645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학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4개소	49,531	49,531	-	-	-
	1공구	3개소	37,692	37,692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1개소	11,839	11,839	-	-	-
	5공구	-	-	-	-	-	-
중학교	1	계	-	11,839	11,839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347-3 일원	11,839	11,839	-	'04.12.27
		5공구	-	-	-	-	-
초등학교	2	계	-	11,042	11,042	-	-
		1공구	강일동 414-4 일원	11,042	11,042	-	'14.03.20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초등학교	3	계	-	12,575	12,575	-	-
		1공구	강일동 373-3 일원	12,575	12,575	-	'92.10.22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고등학교	4	계	-	14,075	14,075	-	-
		1공구	강일동 439-2 일원	14,075	14,075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	2,572	2,572	-	-	-
	1공구	2 개소	2,572	2,572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공공청사	1	계	-	1,252	1,252	-	-
		1공구	강일동 304-13 일원	1,252	1,252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공공청사	2	계	-	1,320	1,320	-	-
		1공구	강일동 304-5 일원	1,320	1,320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청소년수련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청소년 수련시설	1	계	-	1,984	1,984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01 일원	1,984	1,984	-	'09.04.09
		4공구	-	-	-	-	-
		5공구	-	-	-	-	-

●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3 개소	5,226.3	5,226.3	-	-
		1공구	3 개소	5,226.3	5,226.3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사회복지 시설	1	계	-	1,455.4	1,455.4	-	-
		1공구	강일동 465-4 일원	1,455.4	1,455.4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사회복지 시설	2	계	-	1,227	1,227	-	-
		1공구	강일동 302-1 일원	1,227	1,227	-	'06.12.21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사회복지 시설	3	계	-	2,543.9	2,543.9	-	-
		1공구	강일동 470 일원	2,543.9	2,543.9	-	'09.04.09 공간적 범위결정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체육시설	1	계	-	2,480.9	2,480.9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01 일원	2,480.9	2,480.9	-	'04.12.27
		4공구	-	-	-	-	-
		5공구	-	-	-	-	-

• 유수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 류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저류 시설	기정	계	2개소	11,717.6	11,717.6	-	-
			1공구	1개소	3,201.5	3,201.5	-	근린공원2 중복결정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1개소	8,516.1	8,516.1	-	근린공원1 중복결정
			5공구	-	-	-	-	-
유수지	저류 시설	1	계	-	8,516.1	8,516.1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279 일원	8,516.1	8,516.1	-	근린공원1 중복결정
			5공구	-	-	-	-	-
유수지	저류 시설	2	계	-	3,201.5	3,201.5	-	-
			1공구	강일동 446-2 일원	3,201.5	3,201.5	-	근린공원2 중복결정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지방 하천	1	기정	계	강일동 346-1 (강일동 63-15)	고덕동 108 (강일동 89-22)	-	1.30 (0.86)	41,264 (33,870.9)	'01.2.28 () 강일지구내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강일동 346-1 (강일동 63-15)	고덕동 108 (강일동 89-22)	-	1.30 (0.86)	41,264 (33,870.9)	'01.2.28 () 강일지구내
			5공구	-	-	-	-	-	-

● 종교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계	계		8개소	7,509.1	7,509.1	-	-	-
	1공구		6개소	5,100.1	5,100.1	-	-	-
	2공구		-	-	-	-	-	-
	3공구		2개소	2,409	2,409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종교시설	1	계	-	660	660	-	-	-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강일동 281-8 일원	660	660	-	'04.12.27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종교시설	2	계	-	660	660	-	-	-
		1공구	강일동 333-12 일원	660	660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종교시설	3	계	-	1,749	1,749	-	-	-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강일동 300-2 일원	1,749	1,749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종교시설	4	계	-	660	660	-	-
		1공구	강일동 290 일원	660	660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5	계	-	660	660	-	-
		1공구	강일동 445 일원	660	660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6	계	-	660.2	660.2	-	-
		1공구	강일동 549 일원	660.2	660.2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7	계	-	1,799.5	1,799.5	-	-
		1공구	강일동 446-2 일원	1,799.5	1,799.5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8	계	-	660.4	660.4	-	-
		1공구	강일동 466 일원	660.4	660.4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자동차관련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계	계	3 개소	4,542.9	4,542.9	-	-	-
	1공구	3 개소	4,542.9	4,542.9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자동차 관련시설	1	계	-	1,569.2	1,569.2	-	-
		1공구	강일동 551-7 일원	1,569.2	1,569.2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자동차 관련시설	2	계	-	1,552.9	1,552.9	-	-
		1공구	강일동 541 일원	1,552.9	1,552.9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자동차 관련시설	3	계	-	1,420.8	1,420.8	-	-
		1공구	강일동 546-12 일원	1,420.8	1,420.8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7)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2. 강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생략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생략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생략
 (4) 시행자 (변경없음) : 생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3.11.10.(개발계획수립고시일)
 • 준공예정일 : 기정) 2022.12.31.
 변경) 2024.12.31.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 기간	-1공구 : 2003.11.10.~2018.04.05. -2공구 : 2003.11.10.~2020.03.12. -3공구 : 2003.11.10.~2020.04.23. -4공구 : 2003.11.10.~2022.12.31. -5공구 : 2003.11.10.~2022.12.31.	-1공구 : 2003.11.10.~2018.04.05. -2공구 : 2003.11.10.~2020.03.12. -3공구 : 2003.11.10.~2020.04.23. -4공구 : 2003.11.10.~2024.12.31. -5공구 : 2003.11.10.~2024.12.31.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증)24개월 -증)24개월

(6) 사업 시행방식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변경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총 계			895,638.30	675,412.70	28,930.10	103,704.40	84,270.10	3,321.00	100.0%	
강 일 도 시 개 발 사 업	합 계		879,391.70	675,412.70	12,683.50	103,704.40	84,270.10	3,321.00	100.0%	98.2%
	주거 용지	소 계	373,855.10	292,579.10	9,811.00	71,465.00	-	-	42.5%	-
		공동주택	373,524.60	292,248.60	9,811.00	71,465.00	-	-	42.5%	-
		근린생활시설	330.50	330.50	-	-	-	-	0.0%	새마을금고
	상업 용지	소 계	11,226.00	11,226.00	-	-	-	-	1.3%	-
		상업용지	11,226.00	11,226.00	-	-	-	-	1.3%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494,310.60	371,607.60	2,872.50	32,239.40	84,270.10	3,321.00	56.2%	· 도로· 하천 중복결정 (1,244.8㎡) 제외 · 근린공원저류시설중복결정 (11,717.6㎡)제외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변경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도 로	156,459.50	134,420.90	53.20	15,165.40	6,820.00	-	17.8%	하천중복결정(1,244.8㎡)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663.60	2,506.10	1,157.50	-	-	-	0.4%	-	
	공공청사	2,572.00	2,572.00	-	-	-	-	0.3%	2개소	
	체육시설	2,480.90	-	-	2,480.90	-	-	0.3%	1개소	
	사회복지시설	5,226.30	5,226.30	-	-	-	-	0.6%	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984.00	-	-	1,984.00	-	-	0.2%	1개소	
	학 교	49,531.00	37,692.00	-	-	11,839.00	-	5.6%	초2, 중1, 고1개소	
	유치원	1,187.00	645.00	-	-	542.00	-	0.1%	2개소(1개소 존치, 강일어린이집)	
	종교용지	7,509.10	5,100.10	-	2,409.00	-	-	0.9%	8개소	
	광 장	1,493.30	1,493.30	-	-	-	-	0.2%	1개소	
	근린공원	120,797.30	86,205.70	-	3,818.60	30,773.00	-	13.7%	2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11,717.6㎡) 포함	
	어린이공원	10,615.20	7,437.70	-	3,177.50	-	-	1.2%	4개소	
	완충녹지	24,018.70	19,806.20	49.70	3,204.00	958.80	-	2.7%	10개소	
	경관녹지	14,547.40	13,789.40	46.80	-	711.20	-	1.7%	11개소	
	연결녹지	8,596.40	7,031.10	1,565.30	-	-	-	1.0%	2개소	
	공공공지	1,297.90	1,297.90	-	-	-	-	0.1%	1개소	
	하 천	33,870.90	-	-	-	33,870.90	-	3.9%	도로중복결정(1,244.8㎡)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4,542.90	4,542.90	-	-	-	-	0.5%	3개소	
	자동차정류장	33,855.90	33,855.90	-	-	-	-	3.8%	존치(공영차고지)	
	주 차 장	7,985.10	7,985.10	-	-	-	-	0.9%	1개소	
	저류시설	11,717.60	3,201.50	-	-	8,516.10	-	1.3%	2개소, 근린공원 중복결정(11,717.6㎡) 포함	
	변전시설	3,321.00	-	-	-	-	3,321.00	0.4%	1개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합 계		16,246.60	-	16,246.60	-	-	-	100.0%	1.8%
	주거용지	소 계	11,216.80	-	11,216.80	-	-	-	69.0%	-
		단독주택	11,216.80	-	11,216.80	-	-	-	69.0%	-
	도시기반시설용지	소 계	5,029.80	-	5,029.80	-	-	-	30.9%	-
		도 로	4,098.70	-	4,098.70	-	-	-	25.2%	-
		완충녹지	650.9	-	650.9	-	-	-	4.0%	2개소
		경관녹지	280.2	-	280.2	-	-	-	1.7%	1개소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강일지구내 위치하고 있으나 강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별도의 사업구역임.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1) 주택유형별 배분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84,741.4	292,248.6	21,027.8	71,465.0	-	-	6,824	5,141	414	1,269	-	-	19,107	14,394	1,159	3,554	-	-	2.8인/호
강일지구	373,524.6	292,248.6	9,811.0	71,465.0	-	-	6,756	5,141	346	1,269	-	-	18,917	14,394	969	3,554	-	-	
일단의 주택지	11,216.8	-	11,216.8	-	-	-	68	-	68	-	-	-	190	-	190	-	-	-	

2) 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없음)

획지번호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층 고	비 고
합계	-	373,524.6	6,756	18,917	-	15층이하	
A1	3공구	24,550.0	282	790	160	15층이하	임대 · 일반
A2	1공구	34,098.3	442	1,238	160	15층이하	
A3	3공구	46,915.0	987	2,764	200	15층이하	
A4	1공구	38,390.0	748	2,094	200	15층이하	
A5	1공구	36,913.0	722	2,022	200	15층이하	
A6	1공구	29,879.0	553	1,548	200	15층이하	
A7	1공구	32,357.0	731	2,046	200	15층이하	
A8	1공구	27,450.9	410	1,148	160	15층이하	
A9	1공구	52,188.6	841	2,355	180	15층이하	
A10	1공구	40,971.8	694	1,943	200	15층이하	
A11	2공구	9,811.0	346	969	180	10층이하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1	계	-	330.5	330.5	-	새마을금고
		1공구	강동구 강일동 470 일원	330.5	330.5	-	새마을금고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라. 상업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5개소	11,226	11,226	-	-
	1공구	5개소	11,226	11,226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상업 용지	1	계	-	1,093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4-2 일원	1,093	-	-
		2공구	-	-	-	-
		3공구	-	-	-	-
		4공구	-	-	-	-
		5공구	-	-	-	-
	2	계	-	3,053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4-2 일원	3,053	-	-
		2공구	-	-	-	-
		3공구	-	-	-	-
		4공구	-	-	-	-
		5공구	-	-	-	-
	3	계	-	3,290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4-1 일원	3,290	-	-
		2공구	-	-	-	-
		3공구	-	-	-	-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4공구	-	-	-	-
		5공구	-	-	-	-
	4	계	-	2,572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6-1 일원	2,572	-	-
		2공구	-	-	-	-
		3공구	-	-	-	-
		4공구	-	-	-	-
		5공구	-	-	-	-
	5	계	-	1,218	-	-
		1공구	강동구 강일동 306-11 일원	1,218	-	-
		2공구	-	-	-	-
		3공구	-	-	-	-
		4공구	-	-	-	-
		5공구	-	-	-	-

마. 도로계획 (변경없음)

구 분			폭원 (m)	합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계	-	34	8,052	164,221.8	28	7,531	160,123.1	6	521	4,098.7	-	
	1공구	-	23	6,421	136,927.0	23	6,421	136,927.0	-	-	-	-	
	2공구	-	7	649	5,309.4	1	128	1,210.7	6	521	4,098.7	-	
	3공구	-	3	746	15,165.4	3	746	15,165.4	-	-	-	-	
	4공구	-	1	236	6,820.0	1	236	6,820.0	-	-	-	-	
	5공구	-	-	-	-	-	-	-	-	-	-	-	
일반 도로	계	-	29	7,726	155,706.3	23	7,205	151,607.6	6	521	4,098.7	-	
		-	19	6,223	129,569.0	19	6,223	129,569.0	-	-	-	-	
		-	6	521	4,151.9	-	-	53.2	6	521	4,098.7	일단의주택지의 소로 일부가 강일지구 내 포함	
		-	3	746	15,165.4	3	746	15,165.4	-	-	-	-	
		-	1	236	6,820.0	1	236	6,820.0	-	-	-	-	
		-	-	-	-	-	-	-	-	-	-	-	
	대로 3류	계	25	2	1,115	31,959.7	2	1,115	31,959.7	-	-	-	-
		1공구	25	2	1,115	31,959.7	2	1,115	31,959.7	-	-	-	-
		2공구	-	-	-	-	-	-	-	-	-	-	-

구 분			폭원 (m)	합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종로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소계	계	-	14	5,181	110,616.0	14	5,181	110,616.0	-	-	-	-
		1공구	-	11	4,261	89,146.2	11	4,261	89,146.2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2	715	14,649.8	2	715	14,649.8	-	-	-	-
		4공구	-	1	205	5,460.6	1	205	5,460.6	-	-	-	-
		5공구	-	-	-	-	-	-	-	-	-	-	-
	1류	계	20~22	7	4,130	96,615.8	7	4,130	96,615.8	-	-	-	-
		1공구	20~22	5	3,389	77,892.0	5	3,389	77,892.0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20~22	1	505	11,903.8	1	505	11,903.8	-	-	-	-
		4공구	20~22	1	236	6,820.0	1	236	6,820.0	-	-	-	-
		5공구	-	-	-	-	-	-	-	-	-	-	-
	2류	계	15	2	302	4,625.2	2	302	4,625.2	-	-	-	-
		1공구	15	1	123	1,879.2	1	123	1,879.2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15	1	179	2,746.0	1	179	2,746.0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3류	계	12	5	749	9,375.0	5	749	9,375.0	-	-	-	-
		1공구	12	5	749	9,375.0	5	749	9,375.0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소로	소계	계	-	13	1,430	13,130.6	7	909	9,031.9	6	521	4,098.7	-
		1공구	-	6	847	8,463.1	6	847	8,463.1	-	-	-	-
		2공구	-	6	521	4,151.9	-	-	53.2	6	521	4,098.7	-
		3공구	-	1	62	515.6	1	62	515.6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1류	계	10	4	295	2,992.9	4	295	2,992.9	-	-	-	-
		1공구	10	4	295	2,992.9	4	295	2,992.9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구 분			폭원 (m)	합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2류	5공구	-	-	-	-	-	-	-	-	-	-	-
		계	8	8	1,057	9,722.5	3	614	6,011.5	5	443	3,711.0	-
		1공구	8	2	552	5,470.2	2	552	5,470.2	-	-	-	-
		2공구	8	5	443	3,736.7	-	-	25.7	5	443	3,711.0	-
		3공구	8	1	62	515.6	1	62	515.6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3류	계	6	1	78	415.2	-	-	27.5	1	78	387.7	-
		1공구	-	-	-	-	-	-	-	-	-	-	-
		2공구	6	1	78	415.2	-	-	27.5	1	78	387.7	일단의 주택지 내 소로(3-10호선) 가 강일지구 내 포함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6공구	-	-	-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계	-	5	326	3,664	5	326	3,664	-	-	-	-
		1공구	-	4	198	2,506	4	198	2,506	-	-	-	-
		2공구	-	1	128	1,158	1	128	1,158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중로 2류	계	15	2	149	2,240.3	2	149	2,240.3	-	-	-	-
		1공구	15	2	149	2,240.3	2	149	2,240.3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소로	계	-	3	177	1,423.3	3	177	1,423.3	-	-	-	-
		1공구	-	2	49	265.8	2	49	265.8	-	-	-	-
		2공구	-	1	128	1,157.5	1	128	1,157.5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계	9	1	128	1,157.5	1	128	1,157.5	-	-	-	-
		1공구	-	-	-	-	-	-	-	-	-	-	-
		2공구	9	1	128	1,157.5	1	128	1,157.5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구 분			폭원 (m)	합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3류	5공구	-	-	-	-	-	-	-	-	-	-	-
		계	6	2	49	265.8	2	49	265.8	-	-	-	-
		1공구	6	2	49	265.8	2	49	265.8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기타도로부지	계	-	-	-	4,851.9	-	-	4,851.9	-	-	-	-
		1공구	-	-	-	4,851.9	-	-	4,851.9	-	-	-	-
		2공구	-	-	-	-	-	-	-	-	-	-	-
		3공구	-	-	-	-	-	-	-	-	-	-	-
		4공구	-	-	-	-	-	-	-	-	-	-	-
		5공구	-	-	-	-	-	-	-	-	-	-	-

바.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주차장	1	계	-	7,985.1	7,985.1	-	-	-
		1공구	강일동 292-7 일원	7,985.1	7,985.1	-	'00.3.20	노외주차장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사. 자동차정류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자동차 정류장	1	계	-	33,855.9	33,855.9	-	-	-
		1공구	강일동 565-4 일원	33,855.9	33,855.9	-	'98.10.7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아. 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광 장	1	계	-	1,493.3	1,493.3	-	-
		1공구	강일동 304-2 일원	1,493.3	1,493.3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자.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합계	계	7개소	131,412.5	131,412.5	-	-	-
	1공구	4개소	93,643.4	93,643.4	-	-	-
	2공구	-	-	-	-	-	-
	3공구	2개소	6,996.1	6,996.1	-	-	-
	4공구	1개소	30,773.0	30,773.0	-	-	-
	5공구	-	-	-	-	-	-
근린공원	소계	계	3개소	120,797.3	120,797.3	-	-
		1공구	1개소	86,205.7	86,205.7	-	-
		2공구	-	-	-	-	-
		3공구	1개소	3,818.6	3,818.6	-	-
		4공구	1개소	30,773.0	30,773.0	-	-
		5공구	-	-	-	-	-
	1	계	-	34,591.6	34,591.6	-	'04.12.27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32-5 일원	3,818.6	3,818.6	-	'04.12.27
		4공구	강일동 332-5 일원	30,773.0	30,773.0	-	-
		5공구	-	-	-	-	-
	2	계	-	86,205.7	86,205.7	-	-
		1공구	강일동 산8-1 일원	86,205.7	86,205.7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5공구	-	-	-	-	-	-
어린이 공원	소계	계	4개소	10,615.2	10,615.2	-	-	-
		1공구	3개소	7,437.7	7,437.7	-	-	-
		2공구	-	-	-	-	-	-
		3공구	1개소	3,177.5	3,177.5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1	계	-	3,049.3	3,049.3	-	-	-
		1공구	강일동 333-22 일원	3,049.3	3,049.3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2	계	-	3,177.5	3,177.5	-	-	-
		1공구	-	-	-	-	-	-
		2공구	-	-	-	-	-	-
		3공구	강일동 317-1 일원	3,177.5	3,177.5	-	'04.12.27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3	계	강일동 448-1 일원	2,588.4	2,588.4	-	-	-
		1공구	강일동 448-1 일원	2,588.4	2,588.4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4	계	-	1,800.0	1,800.0	-	-	-
		1공구	강일동 429-1 일원	1,800.0	1,800.0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차.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합계	계	23개소	48,093.6	47,162.5	931.1	-	-
	1공구	15개소	40,626.7	40,626.7	-	-	-
	2공구	5개소	2,592.9	1,661.8	931.1	-	-
	3공구	1개소	3,203.3	3,203.3	-	-	-
	4공구	2개소	1,670.0	1,670.0	-	-	-
	5공구	-	-	-	-	-	-
완충녹지	소계	계	10개소	24,669.6	24,018.7	650.9	-
		1공구	5개소	19,806.2	19,806.2	-	-
		2공구	3개소	700.6	49.7	650.9	-
		3공구	1개소	3,204.0	-	-	-
		4공구	1개소	958.8	958.8	-	-
		-	-	-	-	-	-
	1	계	-	1,508.4	1,508.4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00-3 일원	1,508.4	1,508.4	-	'04.12.27
		4공구	-	-	-	-	-
		5공구	-	-	-	-	-
	3	계	-	2,067.0	2,067.0	-	-
		1공구	강일동 450-6 일원	2,067.0	2,067.0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4	계	-	1,547.2	1,547.2	-	-
		1공구	강일동 449-1 일원	1,547.2	1,547.2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5	계	-	1,590.7	1,590.7	-	-
		1공구	강일동 469 일원	1,590.7	1,590.7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4공구	-	-	-	-	-
		5공구	-	-	-	-	-
	6	계	-	12,266.6	12,266.6	-	-
		1공구	강일동 419-1 일원	12,266.6	12,266.6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6	계	-	958.8	958.8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419-1 일원	958.8	958.8	-	'04.12.27
		5공구	-	-	-	-	-
	7	계	-	1,565.0	1,565.0	-	-
		1공구	강일동 371 일원	1,565.0	1,565.0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8	계	-	769.7	769.7	-	-
		1공구	강일동 368-9 일원	769.7	769.7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9	계	-	284.1	42.6	241.5	-
		1공구	-	-	-	-	-
		2공구	강일동 331-1 일원	284.1	42.6	241.5	'04.12.27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10	계	-	615.6	615.6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28-14 일원	615.6	615.6	-	'04.12.27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4공구	-	-	-	-	-
		5공구	-	-	-	-	-
	11	계	1,496.5	1,087.1	409.4	-	-
		1공구	-	-	-	-	-
		2공구	강일동 328-8 일원	416.5	7.1	409.4	'02. 9.26
		3공구	강일동 328-8 일원	1,080.0	1,080.0	-	'02. 9.26
		4공구	-	-	-	-	-
		5공구	-	-	-	-	-
경관녹지	소계	계	11개소	14,827.6	14,547.4	280.2	-
		1공구	9개소	13,789.4	13,789.4	-	-
		2공구	1개소	327.0	46.8	280.2	-
		3공구	-	-	-	-	-
		4공구	1개소	711.2	711.2	-	-
		5공구	-	-	-	-	-
	2	계	-	711.2	711.2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348-27 일원	711.2	711.2	-	'04.12.27
		5공구	-	-	-	-	-
	3	계	-	1,283.8	1,283.8	-	-
		1공구	강일동 396 일원	1,283.8	1,283.8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5	계	-	677.1	677.1	-	-
		1공구	강일동 469-2 일원	677.1	677.1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6	계	-	327.0	46.8	280.2	-
		1공구	-	-	-	-	-
		2공구	강일동 327-2 일원	327.0	46.8	280.2	'02. 9.26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7	계	-	200.0	200.0	-	-	-
		1공구	강일동 433 일원	200.0	200.0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8	계	-	182.8	182.8	-	-	-
		1공구	강일동 470-5 일원	182.8	182.8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9	계	-	2,158.8	2,158.8	-	-	-
		1공구	강일동 471-3 일원	2,158.8	2,158.8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10	계	-	5,505.0	5,505.0	-	-	-
		1공구	강일동 288-2 일원	5,505.0	5,505.0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11	계	-	987.7	987.7	-	-	-
		1공구	강일동 565 일원	987.7	987.7	-	'04.12.27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12	계	-	846.1	846.1	-	-	-
		1공구	강일동 541 일원	846.1	846.1	-	'04.12.27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13	계	-	1,948.1	1,948.1	-	-	-
		1공구	강일동 450-5 일원	1,948.1	1,948.1	-	'10.11.11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연결녹지	소계	계	2개소	8,596.4	8,596.4	-	-	-
		1공구	1개소	7,031.1	7,031.1	-	-	-
		2공구	1개소	1,565.3	1,565.3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1	계	-	7,031.1	7,031.1	-	-	-
		1공구	강일동 325-48 일원	7,031.1	7,031.1	-	'09.04.09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2	계	-	1,565.3	1,565.3	-	-	-
		1공구	-	-	-	-	-	-
		2공구	강일동 409 일원	1,565.3	1,565.3	-	'13.05.30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카.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공공공지	1	계	-	1,297.9	1,297.9	-	-
		1공구	강일동 306-10 일원	1,297.9	1,297.9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타. 학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4개소	49,531	49,531	-	-
		1공구	3개소	37,692	37,692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1개소	11,839	11,839	-	-
		5공구	-	-	-	-	-
중학교	1	계	-	11,839	11,839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347-3 일원	11,839	11,839	-	'04.12.27
		5공구	-	-	-	-	-
초등학교	2	계	-	11,042	11,042	-	-
		1공구	강일동 414-4 일원	11,042	11,042	-	'14.03.20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초등학교	3	계	-	12,575	12,575	-	-
		1공구	강일동 373-3 일원	12,575	12,575	-	'92.10.22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고등학교	4	계	-	14,075	14,075	-	-
		1공구	강일동 439-2 일원	14,075	14,075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파.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	2,572	2,572	-	-
		1공구	2 개소	2,572	2,572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공공청사	1	계	-	1,252	1,252	-	-
		1공구	강일동 304-13 일원	1,252	1,252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공공청사	2	계	-	1,320	1,320	-	-
		1공구	강일동 304-5 일원	1,320	1,320	-	'04.12.27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3 개소	5,226.3	5,226.3	-	-	-
	1공구	3 개소	5,226.3	5,226.3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사회복지시설	1	계	-	1,455.4	-	-	-
		1공구	강일동 465-4 일원	1,455.4	-	'04.12.27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사회복지시설	2	계	-	1,227	-	-	-
		1공구	강일동 302-1 일원	1,227	-	'06.12.21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사회복지시설	3	계	-	2,543.9	-	-	-
		1공구	강일동 470 일원	2,543.9	-	'09.04.09	공간적 범위결정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체육시설	1	계	-	2,480.9	-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01 일원	2,480.9	-	'04.12.27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청소년수련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청소년수련시설	1	계	-	1,984	1,984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01 일원	1,984	1,984	'09.04.09	-
		4공구	-	-	-	-	-
		5공구	-	-	-	-	-

하. 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전기공급설비	1	계	-	3,321	3,321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강일동 543-2 일원	3,321	3,321	'04.12.27	-

거. 유수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저류시설	기정	계	2개소	11,717.6	11,717.6	-	-
			1공구	1개소	3,201.5	3,201.5	-	근린공원2 중복결정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1개소	8,516.1	8,516.1	-	근린공원1 중복결정
			5공구	-	-	-	-	-
유수지	저류시설	1	계	-	8,516.1	8,516.1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279 일원	8,516.1	8,516.1	-	근린공원1 중복결정

구분	시설의 종 류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5공구	-	-	-	-	-	-
유수지	저류 시설	2	계	-	3,201.5	3,201.5	-	-	-
			1공구	강일동 446-2 일원	3,201.5	3,201.5	-	-	근린공원2 중복결정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너. 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지방 하천	1	기정	계	강일동 346-1 (강일동 63-15)	고덕동 108 (강일동 89-22)	-	1.30 (0.86)	41,264 (33,870.9)	'01.2.28	() 강일지구내
			1공구	-	-	-	-	-	-	-
			2공구	-	-	-	-	-	-	-
			3공구	-	-	-	-	-	-	-
			4공구	강일동 346-1 (강일동 63-15)	고덕동 108 (강일동 89-22)	-	1.30 (0.86)	41,264 (33,870.9)	'01.2.28	() 강일지구내
			5공구	-	-	-	-	-	-	-

더.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계	계	8개소	7,509.1	7,509.1	-	-	-
	1공구	6개소	5,100.1	5,100.1	-	-	-
	2공구	-	-	-	-	-	-
	3공구	2개소	2,409	2,409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종교시설	1	계	660	660	-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281-8 일원	660	660	-	'04.12.27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2	계	660	660	-	-	-
		1공구	강일동 333-12 일원	660	660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3	계	1,749	1,749	-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강일동 300-2 일원	1,749	1,749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4	계	660	660	-	-	-
		1공구	강일동 290 일원	660	660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5	계	660	660	-	-	-
		1공구	강일동 445 일원	660	660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6	계	660.2	660.2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1공구	강일동 549 일원	660.2	660.2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7	계	-	1,799.5	1,799.5	-	-
		1공구	강일동 446-2 일원	1,799.5	1,799.5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종교시설	8	계	-	660.4	660.4	-	-
		1공구	강일동 466 일원	660.4	660.4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자동차관련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주택지		
계	계	3 개소	4,542.9	4,542.9	-	-	-
	1공구	3 개소	4,542.9	4,542.9	-	-	-
	2공구	-	-	-	-	-	-
	3공구	-	-	-	-	-	-
	4공구	-	-	-	-	-	-
	5공구	-	-	-	-	-	-
자동차 관련시설	1	계	-	1,569.2	1,569.2	-	-
		1공구	강일동 551-7 일원	1,569.2	1,569.2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자동차 관련시설	2	계	-	1,552.9	1,552.9	-	-
		1공구	강일동 541 일원	1,552.9	1,552.9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자동차 관련시설	3	계	-	1,420.8	1,420.8	-	-
		1공구	강일동 546-12 일원	1,420.8	1,420.8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 유치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계	계	2개소	1,187	1,187	-	-	-
	1공구	1개소	645	645	-	-	-
	2공구	-	-	-	-	-	-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강일지구	일단의 주택지		
	3공구	-	-	-	-	-	-
	4공구	1개소	542	542	-	-	-
	5공구	-	-	-	-	-	-
유치원	1	계	542	542	-	-	-
		1공구	-	-	-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강일동 348-1 일원	542	542	-	-
		5공구	-	-	-	-	-
유치원	2	계	645	645	-	-	-
		1공구	강일동 435-4 일원	645	645	-	-
		2공구	-	-	-	-	-
		3공구	-	-	-	-	-
		4공구	-	-	-	-	-
		5공구	-	-	-	-	-

(7)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 생략

(8)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지형도면고시 도서의 열람장소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02-2133-8495)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02-3425-6024)
 - 서울도시주택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9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29호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고시명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2. 일 자 : 2022. 12. 29.(목)

3. 사 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됨

4. 청량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 지역의 명칭 :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동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420,892㎡	-

-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2019년 ~ 2022년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 상인 및 시장재생

<1. 상인중심의 시장 재생기반 구축>

- 1-1. 상인 중심의 시장재생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1-2. 상인+거리가게+주민이 모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력적 재생기반 구축

<2. 특화자원 기반의 신사업 발굴 및 지원>

- 2-1. 기존 시장상품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창업지원을 위해 차세대상인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
- 2-2. 시장 상품개발 교육 및 홍보지원

- 미래고객 유치

<3. 미래 변화에 대비한 문화+재미가 있는 시장 조성>

- 3-1. 지역자원인 도시한옥들을 활용하여 전시, 체험, 공공상가 등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 3-2. 시장별 품목특성을 기반으로 1시장 1특화 테마거리 조성
- 3-3. 체험프로그램, 축제 등 행사와 홍보를 통한 시장별 특성 관광자원화 및 홍보강화
- 3-4. 지역행사 개최, 관광코스 개발 등 서울한방진흥센터 거점기능 강화

○ 현재고객 배려

<4. 고객이 배려받는 시장 조성>

- 4-1. 비 안맞는 쇼핑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구축
- 4-2. 어르신들의 건강문화 및 복지를 위한 시니어 건강문화거리 조성
- 4-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매고객을 위한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 4-4.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IoT결합 공유주차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0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21개소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및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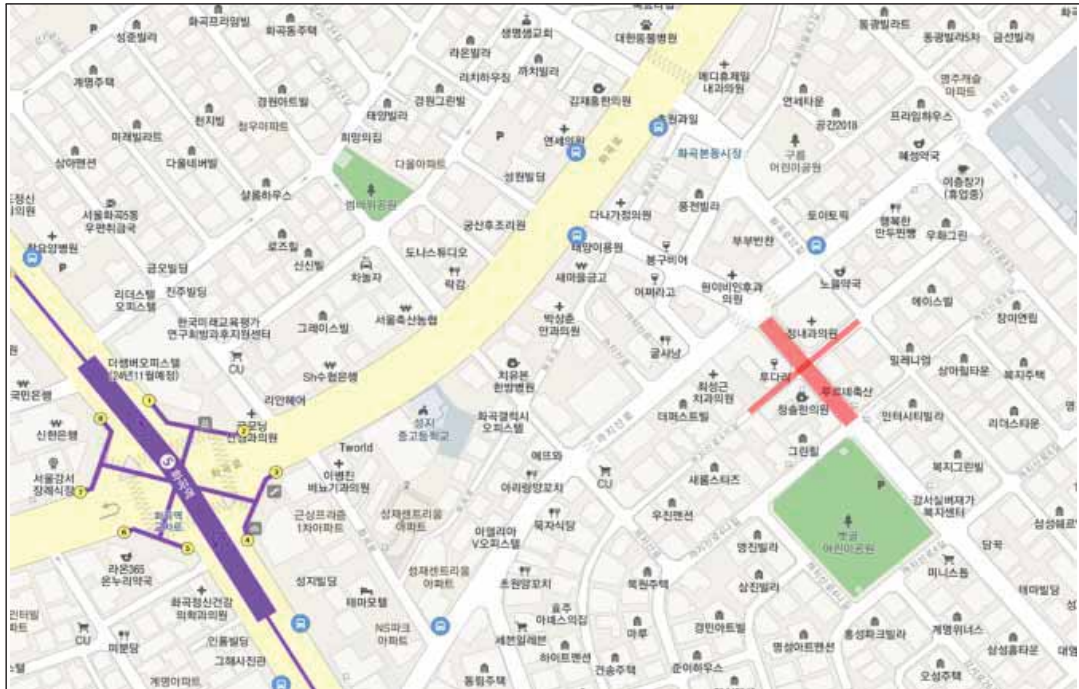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및 위치도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강서구	까치산로4길	4~10	140
2	강서구	등촌로13길	7~8	180
3	강서구	까치산로24길	7~8	220
4	강서구	강서로45가길	7~8	150
5	강서구	강서로54길	7~8	550
6	강서구	강서로52길	7~8	450
7	강서구	초록마을로	7~8	120
8	강서구	화곡로61길	8	150
9	영등포구	신풍로8길	7	100
10	영등포구	영등포로34길 일대	7	390
11	영등포구	영중로4길, 영중로10길 일대	6~7	1,910
12	영등포구	당산로52길	3	100
13	영등포구	대림로7길	5	380
14	영등포구	당산로30길 일대	4~6	1,100
15	강동구	고덕로38길	10	330
16	강동구	동남로65길	8	160
17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6	270
18	강동구	암사길	8~10	850
19	강동구	천중로12길	6~9	210
20	강동구	양재대로141길 일대	6~9	440
21	강동구	상암로4가길 일대	6~7	240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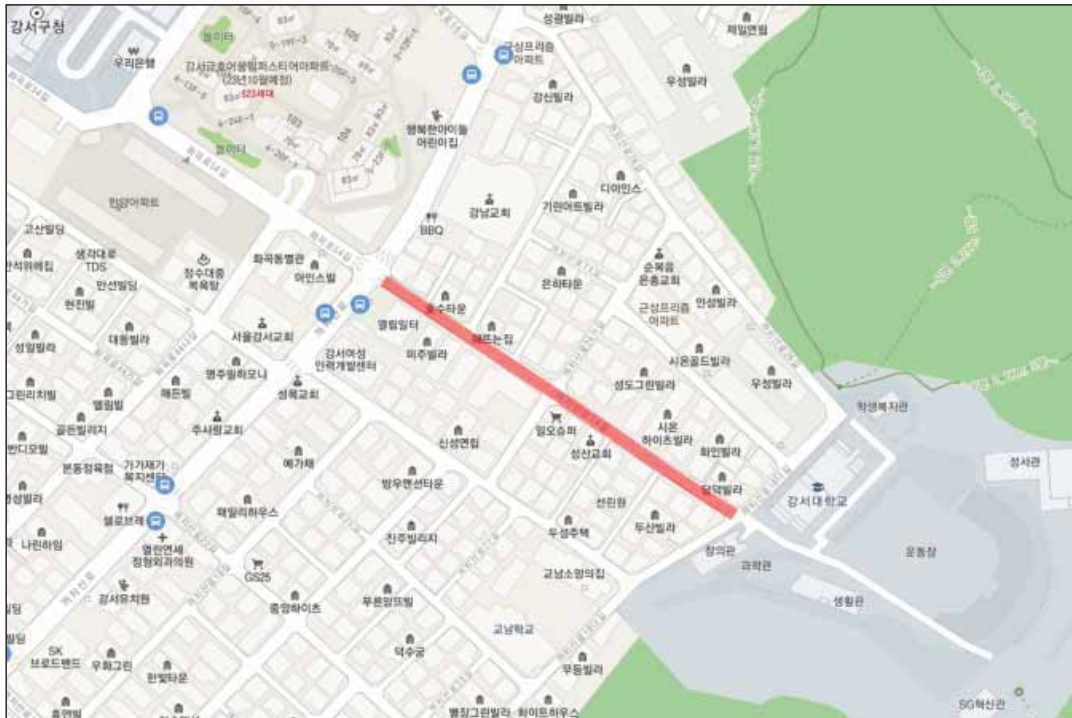
1) 강서구 까치산로4길



2) 강서구 등촌로13길



3) 강서구 까치산로24길



4) 강서구 강서로45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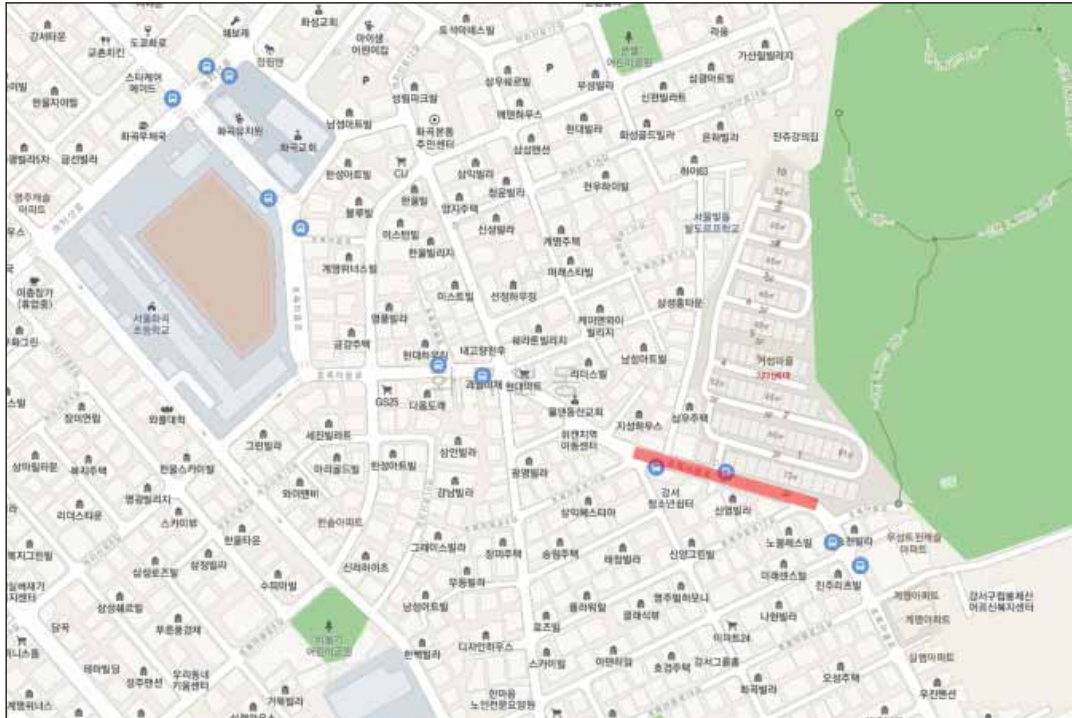
5) 강서구 강서로54길



6) 강서구 강서로52길



7) 강서구 초록마을로



8) 강서구 화곡로61길



9) 영등포구 신봉로8길



10) 영등포구 영등포로34길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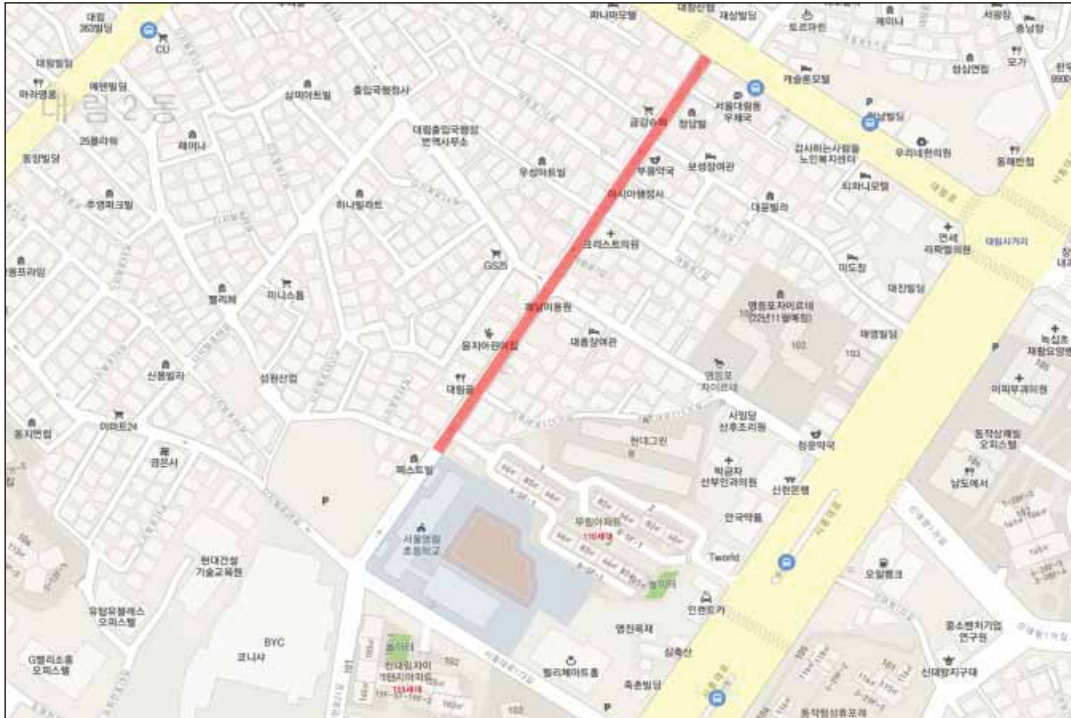
11) 영등포구 영중로4길, 영중로10길 일대



12) 영등포구 당산로52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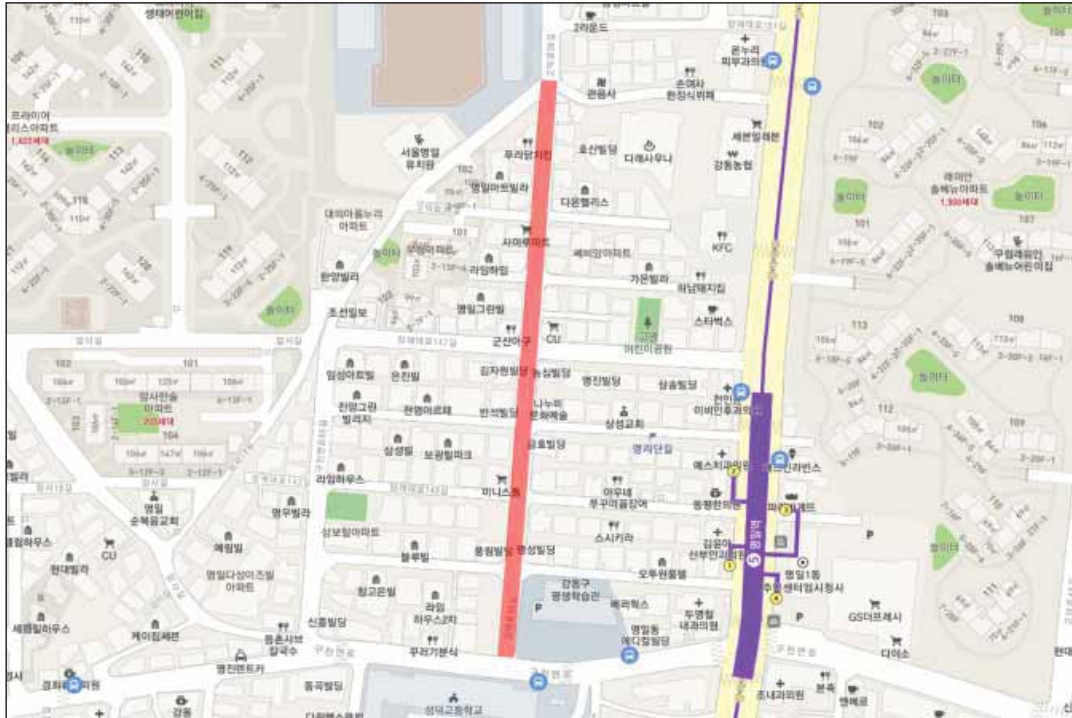
13) 영등포구 대림로7길



14) 영등포구 당산로30길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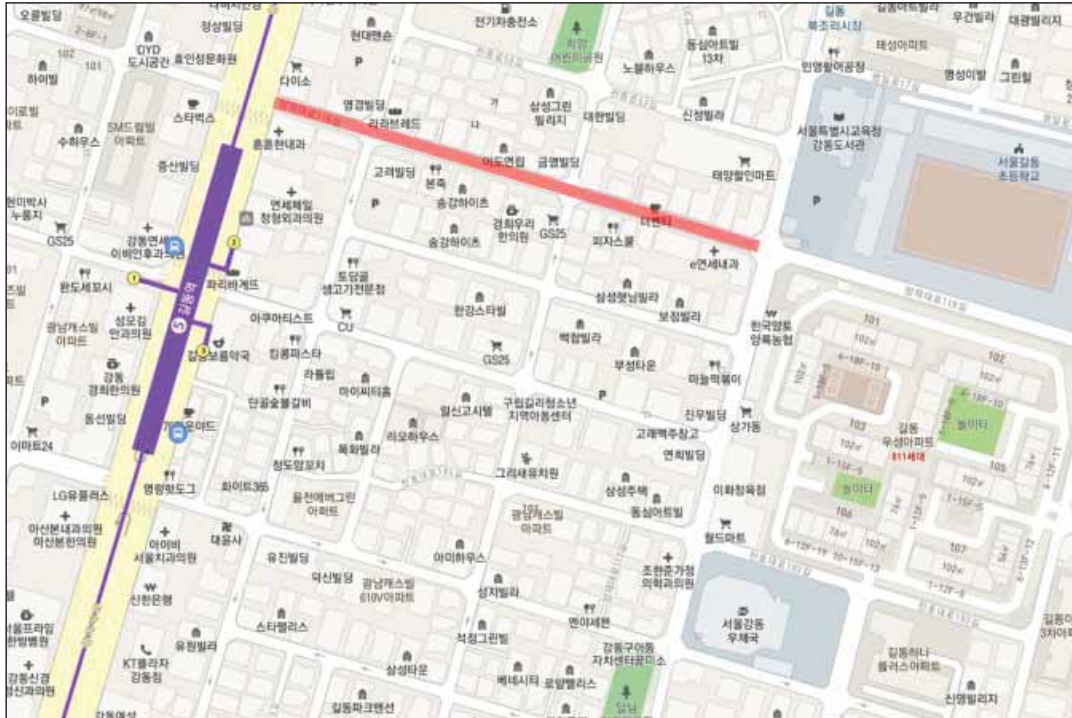
15) 강동구 고덕로38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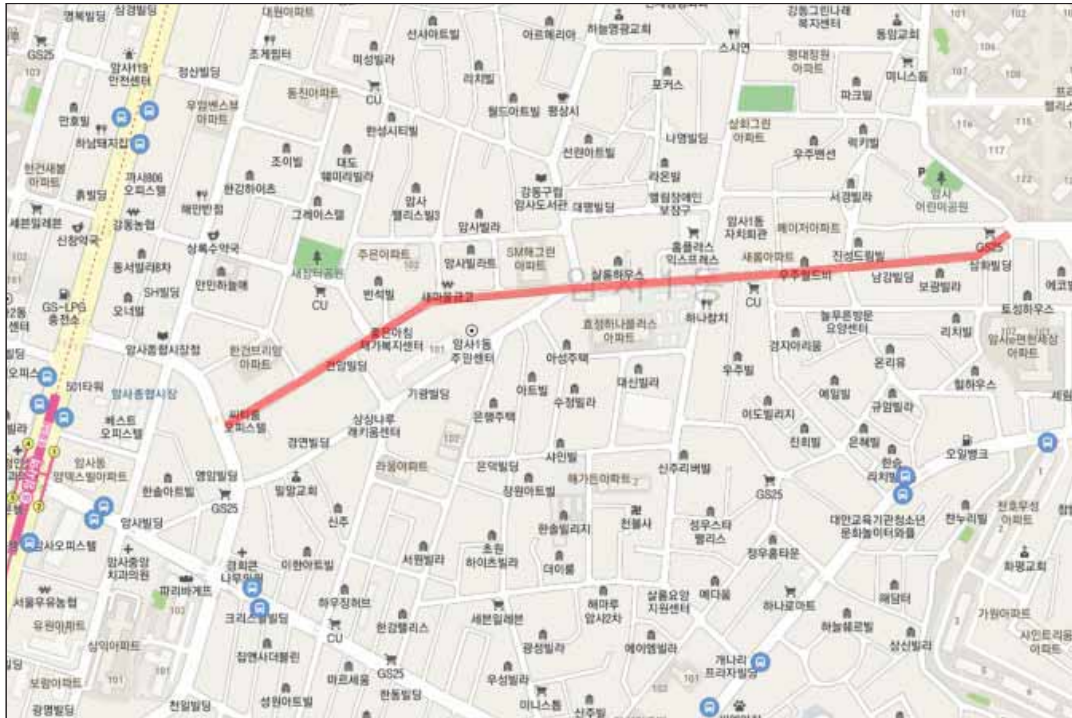
16) 강동구 동남로65길



17)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18) 강동구 암사길



19) 강동구 천중로12길



20) 강동구 양재대로141길 일대



21) 강동구 상암로4가길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오류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오류천 단면확장 사업(3단계)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오류천의 통수능 개선을 통해 하천의 치수안정성 확보 및 수해피해 예방
 - 나. 하천공사의 개요

하천명	사업개요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수 및 준공예정	
		시점	종점	단면확장	착수	준공
오류천	오류천 단면확장 사업 (3단계)	구로구 공동 17-1	구로구 개봉동 195-7	암거확장·신설 연장 783m □3.0x3.5m~□5.5x4.5m 제방축제 연장 551m 폭4~6m, 높이0.9~2.4m	'22.12	'29.4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일원(별첨 위치도 참조)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하천공사 시행자 : 구로구청
 - 나. 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2022. 12. 15. - 준공예정일 : 2029. 4. 15.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과 소유자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명세 : 해당없음
7. 관계도서(실시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지형도면 등) 열람 및 문의처
 - 구로구청 치수과 치수팀 ☎ 02-860-2262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전 체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사업비	36,121	3,100	5,784	6,000	5,000	5,000	5,000	5,000	1,237	설계비 785백만원 제외

9. 공사예정공정표 :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하천시설 관리(공사기간 동안)

11. 폐천부지등 발생예상면적 :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2호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73호(2022.11.10.)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2년 제17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12.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 구역내 기 결정된 공항동 50-5번지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해제, 환원(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3호, 2022.02.17.)됨에 따라 2020.4.9. 변경결정 고시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일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123,119.3	증) 412.0	123,531.3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증 412.0㎡)	서고시 제2022-63호(공항동 50-1번지 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환원(서고시 제2000-26호)된 계획에 대하여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에 준하여 금회 변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3,119.3	증) 412.0	123,531.3	100.0	-
주거 지역	소계	53,229.1	증) 412.0	53,641.1	43.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191.0	-	13,191.0	10.7	-
	제2종일반주거지역	799.0	증) 412.0	1,211.0	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9,790.1	-	9,790.1	7.9	-
	준주거지역	29,449.0	-	29,449.0	23.8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8,571.0	-	68,571.0	55.5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19.2	-	1,319.2	1.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2종일반주거 지역	•면적 변경 : 799.0㎡ → 1,211.0㎡ 증) 412.0㎡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으로 인한 면적증가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규모 계획

(1) 적정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권장대지규모	비고
	C-14, RC-15	
기정	120 ~ 150㎡	서고시제2022-63호(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 이전으로 환원
폐지	삭제	-

(2)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최대개발규모	비고
기정	간선변	RC-5, C-1,-3,-5,-9,-10,-11	3,000㎡	공향대로변, 개화동로, 방화동로변
	이면부	RC-1,-2,-3,-4 C-4,-7,-8, R-1,-2	1,500㎡	내부도로변
	C-14, RC-15		1,500㎡	서고시 제2022-63호(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 이전으로 환원
변경	간선변	RC-5, C-1,-3,-5,-9,-10,-11,-12	3,000㎡	공향대로변, 개화동로, 방화동로변
	이면부	RC-1,-2,-3,-4 C-4,-7,-8, R-1,-2	1,500㎡	내부도로변

주) 최대개발규모 적용제외 ① 특별계획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
 ③ 기존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 ④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 공동개발),
 ⑤ 공동개발 지정 대지

■ 개발규모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적정개발규모	• 삭제	서고시 제2022-63호(공향동 50-1번지 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환원(서고시 제2000-26호)된 계획에 대하여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에 준하여 금회 변경
최대개발규모	• C-14는 C-12로 가구번호가 변경되고, 간선변 최대개발규모 계획적용 • RC-15는 RC-5로 편입되면서, 간선변 최대개발규모 계획 적용	

나. 공동개발계획

(1)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기준	비고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필지 • 기 개발(건축허가) 필지	-
공동개발(권장)	• 통로, 건축선,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단독개발이 곤란한 필지 • 맹지형, 부정형, 과소필지	-
공동개발(특별지정)	• 기반시설(도로) 확보	-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계획 수립 - 다음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 ① 부정형, 세장형(단변:장변 1:3이상) ② 인접필지가 맹지, 부정형, 세장형이 되는 경우	-

주)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자침에 따름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지 번		기 정	변 경	
C-12	공향동 50-1대	774	-	공동개발 (지정)	C-14 → C-12 가구번호 변경
	공향동 53-52대	24	-		
	공향동 432-4대	48	-		
RC-5	공향동 49-1대	233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	변경없음
	공향동 49-2대	317			
	공향동 49-3대	202			
	공향동 49-4대	76			
	공향동 49-7대	306			
	공향동 51-8대	224			
	공향동 51-53대	2			
	공향동 51-54대	17			
	공향동 51-55대	76			
	공향동 51-58대	186	-	-	
	공향동 51-60대	144	-	-	
	공향동 51-71대	254	-	-	
	공향동 51-72대	29	-	-	
	공향동 51-74대	196	-	-	
	공향동 50-3대	393	-	공동개발 (권장)	RC-15 → RC-5 편입
	공향동 50-5대	1,322	-		

※ 가구 RC-1,-2,-3,-4,C-1,-3,-4,-5,-6,-7,-8,-9,-10,-11, R-1,-2는 변경없음

■ 공동개발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C-14, RC-15	- 가구번호(C-14 → C-12) 변경 및 공동개발 지정 - 가구 RC-15를 가구 RC-5로 편입 - 공향동 50-3, 50-5번지를 공동개발(권장)으로 계획 - 공향동 50-5번지 면적 증가 : 910㎡ → 1,322㎡ (증 412㎡)	서고시 제2022-63호(공향동 50-1번지 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환원(서고시 제2000-26호)된 계획에 대하여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에 준하여 금회 변경

다. 대지의 분할 : 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 및 건축물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1)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 지정

도면표시	불허용도	비고
A (개화동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이면부 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B (간선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의 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에서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연장 - 단독, 다세대주택	C-14
C (간선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이면부 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D (이면부 주거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의 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에서 - 숙박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동주택	RC-15

- 주1) 관련법령(용도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참조
 주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건축물용도가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불허용도를 동시에 적용한다
 주3)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지침에 따름

■ 변경

도면표시	불허용도	비고
A (개화동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B (이면부 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C (간선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D (이면부 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 주1) 관련법령(용도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참조
 주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건축물용도가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불허용도를 동시에 적용한다
 주3)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지침에 따름

■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B(간선변)	• 불허용도 삭제	서고시 제2022-63호(공향동 50-1번지 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환원(서고시 제2000-26호)된 계획에 대하여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에 준하여 급회 변경
D(이면부 주거지역)	• 불허용도 삭제	

(2)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 기정

도면표시	권장용도	비고
가 (개화동로 및 공항대로 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나 (방화동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다 (이면부 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과점, 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노유자시설	-
라 (이면부 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과점, 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2	• 업무시설	C-14
4	• 근린생활시설	RC-15

※ 권장용도의 인정

- 권장용도의 면적은 당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권장용도가 20%이상인 경우에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권장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상이한 제한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권장용도를 적용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지침에 따름

■ 변경

도면표시	권장용도	비고
가 (개화동로 및 공항대로 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나 (방화동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도면표시	권장용도	비고
다 (이면부 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과점, 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노유자시설	-
라 (이면부 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과점, 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권장용도의 인정

- 권장용도의 면적은 당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권장용도가 20%이상인 경우에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권장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상이한 제한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권장용도를 적용한다.

※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지침에 따름

■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권장용도 삭제	서고시 제2022-63호(공향동 50-1번지 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환원(서고시 제2000-26호)된 계획에 대하여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에 준하여 급회 변경
4	•권장용도 삭제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근린상업지역	공향대로변	500%이하	-	600%이하	-	-
	개화동로변	300%이하	-	500%이하	-	-
	내부필지	500%이하 (300%이하)	-	600%이하 (500%이하)	-	()는 도시계획조례제정 이전 변경지역임
	C-14a	550%이하	삭제	700%이하	삭제	개별계획 삭제
주거지역	개화동로변	300%이하	-	360%이하	-	-
	내부필지	300%이하	-	360%이하	-	-
	C-14b, RC-15	300%이하	삭제	360%이하	삭제	개별계획 삭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	250%이하	-	250%이하	-	-
	제2종일반주거	200%이하	-	200%이하	-	-
자연녹지지역		50%이하	-	50%이하	-	-

- 주1)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1991.05.11.이후)된 지역에서 주거 및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함
- 주2) 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 전체면적의 20%이상
- 주3)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 용적률의 10%이상(지상부 설치)
- 주4)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대지 합병, 공동개발 및 용도지역 상향 등에 의해 대지에 서로 다른 기준/허용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및 허용용적률의 면적대비 가중평균값을 적용함
- 주5)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
- 주6)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별표3]' 및 '서울시고시 제2019-312, 313호(2019.09.19.)' 사항을 적용함
- 주7)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계획지침에 따름

상한용적률 산정방식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 α 토지+0.7× α 현금·건축물)이내
- *가중치=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 α 토지=공공시설(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후 대지면적
- * α 현금·건축물=공공시설(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토지) 제공후 대지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에서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설치·조성(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C-12a	• 가구 C-14a(공항동 50-1, 53-52, 432-4)에 근린상업지역 공항대로변 계획 적용 (기준 500%이하 / 허용 600%이하)	서고시 제2022-63호(공항동 50-1번지 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환원(서고시 제2000-26호)된 계획에 대하여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에 준하여 금회 변경
	C-12b	• 가구 C-14b(공항동 50-1, 53-52, 432-4), 가구 RC-15(공항동 50-3, 50-5)에 준주거지역 내부필지 계획 적용 (기준 300%이하 / 허용 360%이하)	
	RC-5	• 구역에 새로 편입된 공항동 50-5번지에 제2종일반주거 계획 적용 (기준 200%이하 / 허용 200%이하)	

■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사항 (변경없음)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4)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최고높이	간선도로변	해발 57.86m 미만	-	공항시설법에 의한 높이제한을 따름
	C-14a	공항고도제한 (해발 57.86m 미만)	삭제	개별계획 삭제
	이면주거용지	해발 57.86m 미만	-	공항시설법에 의한 높이제한을 따름
	C-14b, RC-15	해발 30m	삭제	개별계획 삭제

■ 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C-12a	• 가구 C-14a(공항동 50-1, 53-52, 432-4)에 간선도로변 높이계획 적용 (해발 57.86m 미만)	서고시 제2022-63호(공항동 50-1번지 청년주택 해제)에 따라 환원(서고시 제2000-26호)된 계획에 대하여 서고시 제2020-139호(재정비)에 준하여 금회 변경
	C-12b	• 가구 C-14b(공항동 50-1, 53-52, 432-4), 가구 RC-15(공항동 50-3, 50-5)에	
	RC-5	이면주거용지 높이계획 적용 (해발 57.86m 미만)	

다.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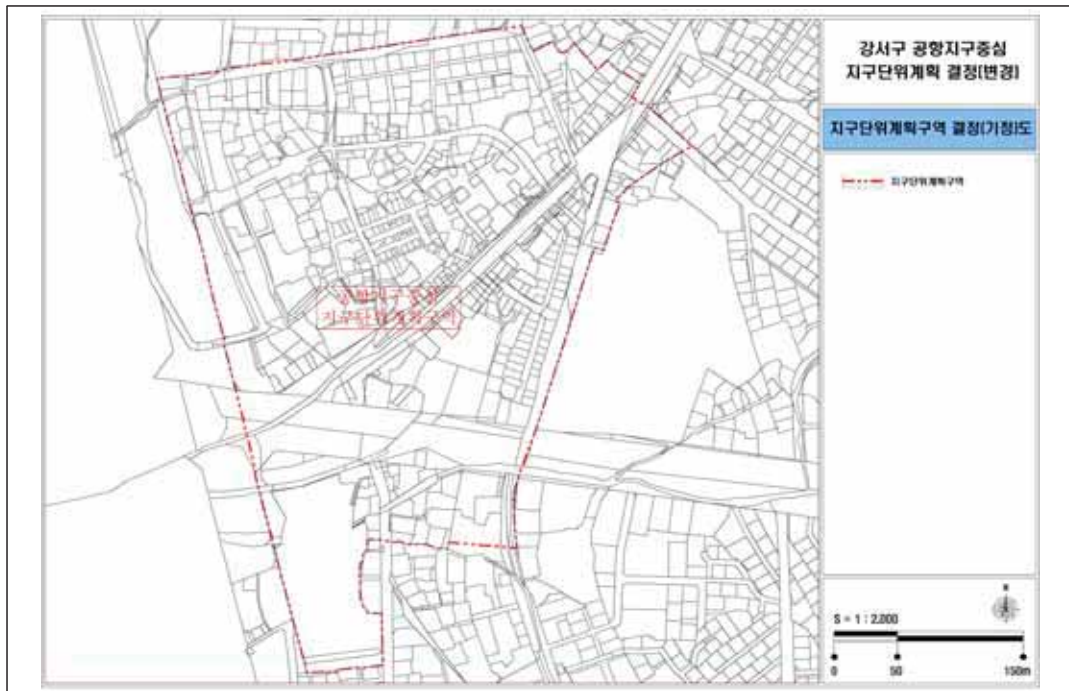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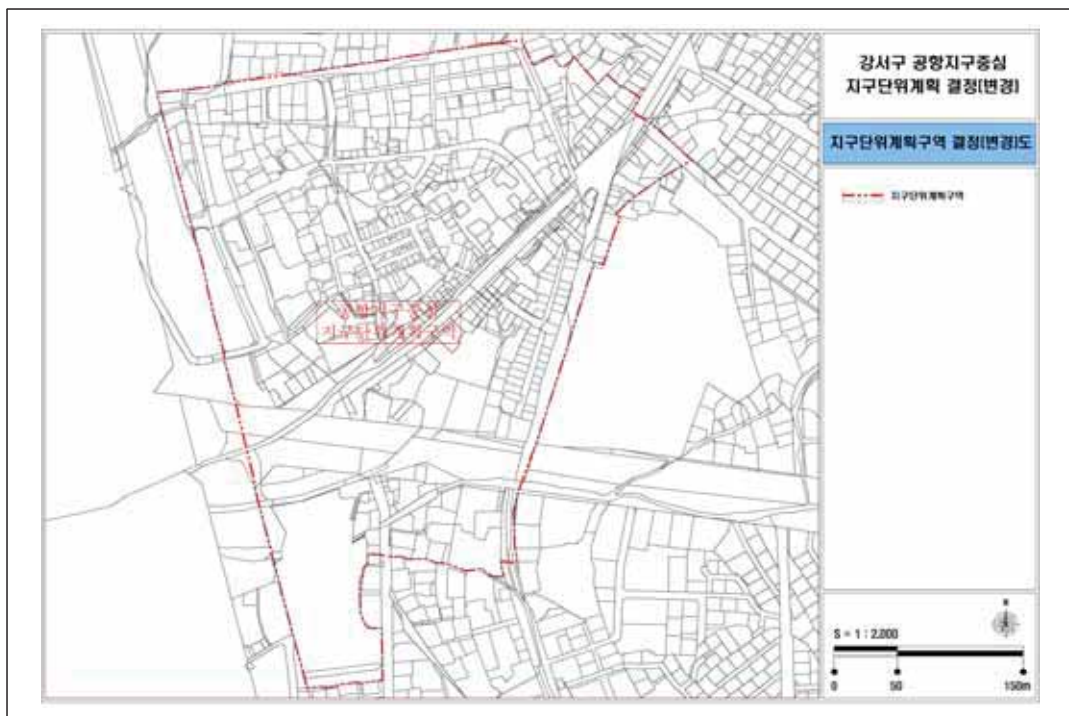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조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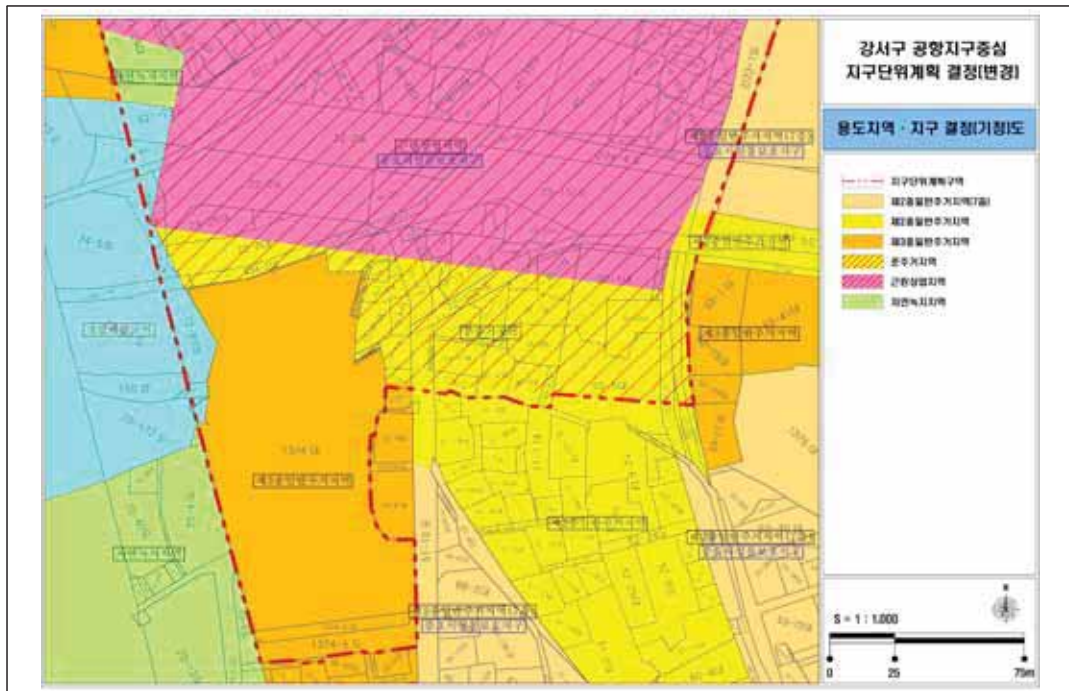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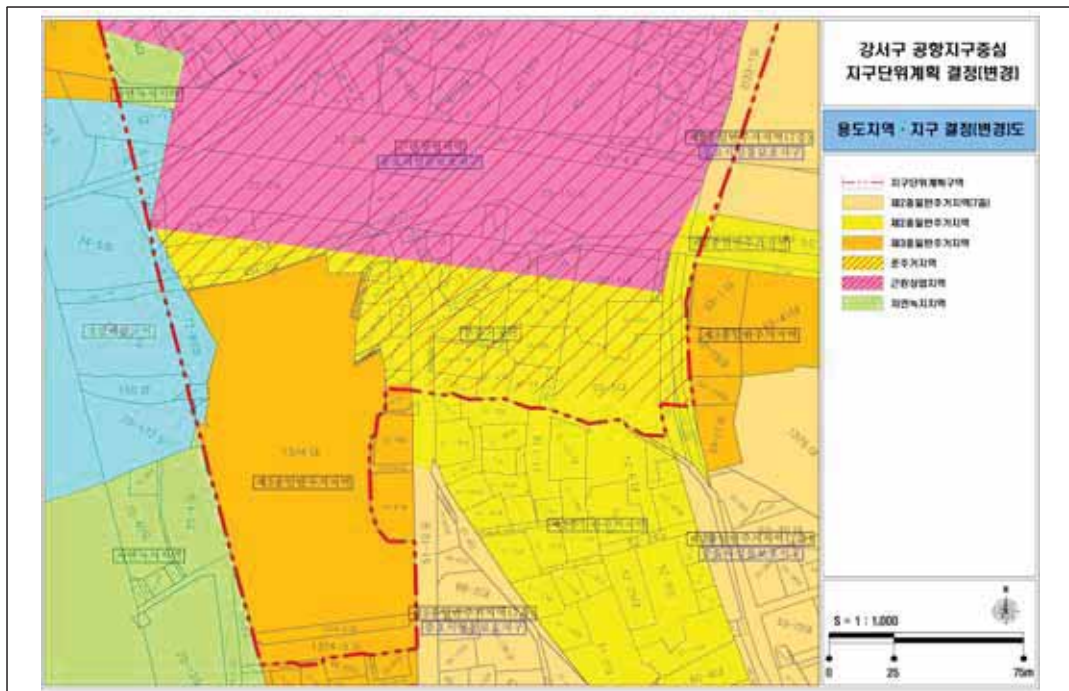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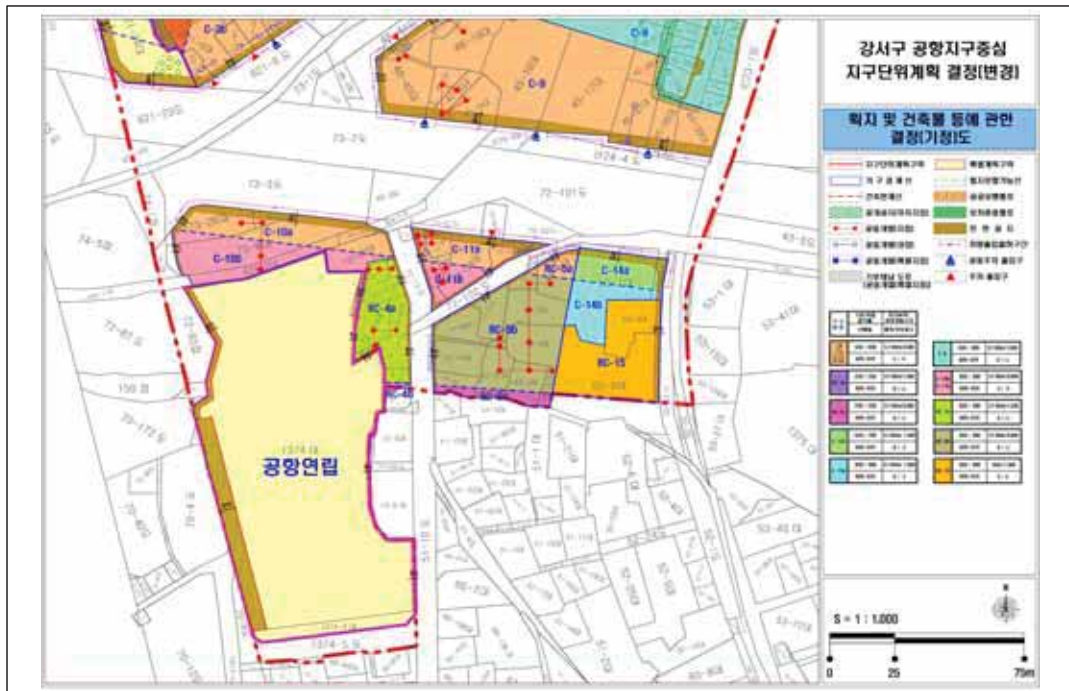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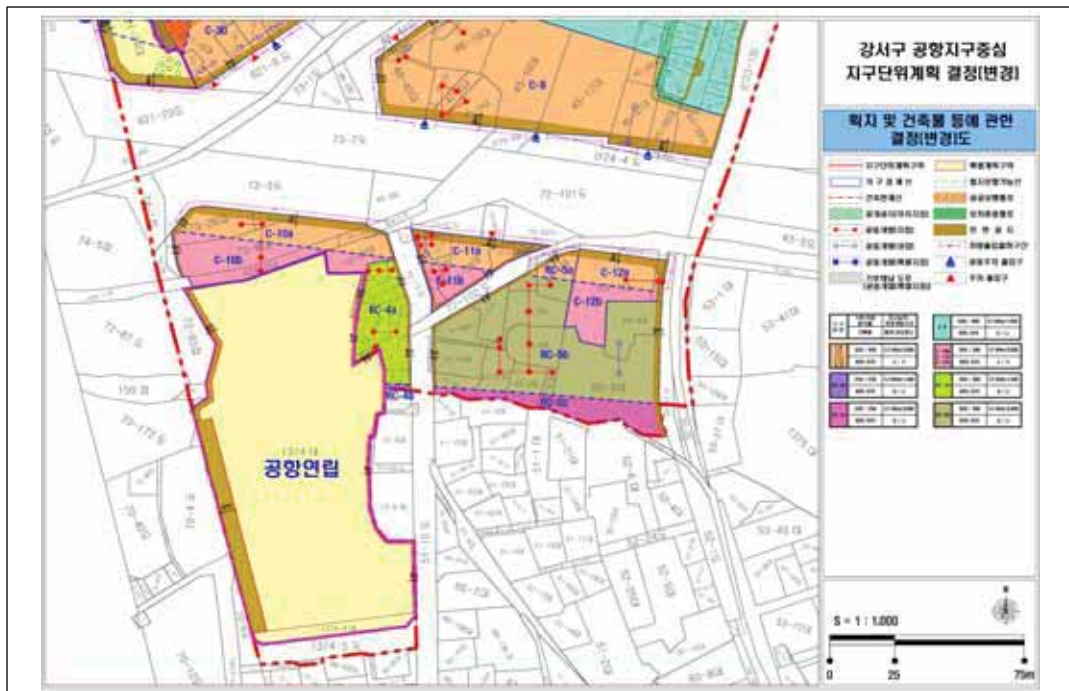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4호
버스전용차로 변경(해제) 고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변경과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변경(해제)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버스전용차로 해제

도로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km)	전용차로종류	시행일
일반도로	한양대학교교차로→ 행당삼부아파트앞	왕십리로	0.4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22. 12.

나.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현황

전일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로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과천대로	남태령전원마을 → 시계	0.9	' 93. 2.
현충로	국립현충원R → 한강대교남단	1.9	' 93. 8.
노량진로	영등포R ~ 대방역3	1.1	' 94. 8.
퇴계로	회현역 ~ 광희동4	3.0	' 94. 5.
한남로	한남5 → 한남초교	0.6	' 94. 5.
망우로	청량리R → 시조사3	1.1	' 94. 8.
강남대로	영동1교남단 ~ 염곡4	1.0	' 94. 12.
남대문로	광교R ~ 송례문교차로	1.5	' 95. 4.
사평로	강남성모병원3 ~ 반포IC	1.3	' 95. 4.

전일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양 평 로	양평동4 ~ 영등포전화국4	1.5	' 95. 4.
압구정로	한양APT4 ~ 한남대교남단	2.5	' 95. 4.
남부순환로	시흥IC ~ 까치고개	7.3	' 95. 4.
올림픽로	삼성4 ~ 잠실역4	3.3	' 95. 5.
	축협풍납 ~ 올림픽회관	1.0	' 99. 12.(' 07. 8. 전일제 변경)
대 학 로	이화R → 혜화R	1.5	' 96. 8.
	종로4가 → 이화R	0.6	' 03. 7.
창경궁로	종로4가 → 혜화R	0.5	' 03. 7.
관 악 로	봉천4 ~ 숭실대3	2.0	' 98. 2.(' 07. 1. 전일제 변경)
영등포로	영등포R ~ 오목교	3.1	' 95. 5.(' 07. 8. 전일제 변경)
영동대로	영동대교남단 ~ 학여울역4	3.5	' 95. 5.(' 07. 8. 전일제 변경)
풍 납 로	천호4 ~ 축협풍납	1.2	' 99. 12.(' 07. 8. 전일제 변경)
소 계	21개 구간	40.4	

시간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왕십리로	성동교북단 → 한양대학교교차로	0.6	' 93. 8.(' 18. 5. 편방향 폐지)
	대중약국(하왕십리동860) → 서울중앙시장(퇴계로433)	0.7	' 93. 8.(' 18. 5. 편방향 폐지)
	신당역교차로 → 한양공고앞교차로	0.4	' 93. 8.(' 18. 5. 편방향 폐지)
용 호 로	원효대교남단 ~ 여의교	1.0	' 94. 8.(' 00. 2. 시간제 변경)
현 릉 로	염곡4 ~ 내곡IC	2.9	' 95. 4.(' 00. 2. 시간제 변경)
등 촌 로	등촌3 ~ 목동역	2.9	' 95. 4.(' 00. 2. 시간제 변경)
월 계 로	월계초교입구 ~ 을지병원4	2.0	' 95. 4.(' 98. 9. 시간제 변경)
화 곡 로	화곡역4 ~ 양원초교앞	1.5	' 96. 8.(' 03. 2. 시간제 변경)
	강서구청입구4 ~ 화곡역4	1.9	' 95. 5.(' 07. 8. 시간제 변경)
원 효 로	원효대교북단 ~ 남영역	2.7	' 96. 8.(' 00. 2. 시간제 변경)

시간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동 일 로	수락파출소 ~ 망우로	10.2	' 96. 8.(' 98. 9. 시간제 변경)
남부순환로	양재역4 ~ 학여울역4	3.7	' 96. 8.(' 00. 2. 시간제 변경)
강 서 로	발산역4 ~ 화곡역4	2.1	' 96. 8.(' 98. 9. 시간제 변경)
도산대로	신사역 4 ~ 안세병원 4	0.9	' 98. 2.(' 07. 1. 구간축소)
종 암 로	종암경찰서 ~ 고대입구3	1.3	' 99. 12.
성 산 로	성산1교 ~ 사천고가	1.5	' 94. 5.(' 07. 8. 시간제 변경)
은 평 로	서부세무서 ~ 녹번역3	0.7	' 95. 5.(' 07. 8. 시간제 변경)
올림픽로	올림픽회관 ~ 잠실4	1.5	' 99. 12.(' 07. 8. 시간제 확장)
화 랑 로	월릉교 4 ~ 삼육대학교	4.4	'14. 11.
소 계	19개 구간	42.9	

24시간 전일제(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0시~24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도 봉 로	의정부시계 ~ 미아4	10.0	' 04. 7.
동소문로	미아4 ~ 혜화R	4.0	' 04. 7.
창경궁로	혜화R → 원남4	1.3	' 04. 7.
망 우 로	망우역4 → 청량리R	4.9	' 05. 7.
	시조사3 → 망우역4	3.3	' 05. 7.
	망우역4 ~ 구리시계	2.2	' 10. 8.
왕 산 로	동대문R ~ 청량리R	3.4	'11. 12.
천호대로	신답R ~ 아차산역4	4.5	' 96. 2.
	신답철교 ~ 신답R	0.7	' 03. 7.
	강동역 ~ 서울시계	5.1	' 11. 3.
	아차산역4 ~ 천호대교 남단	2.6	' 18. 5.
	신설동R ← 신답철교	1.7	' 03. 7.
	응두역(동대문구청역) → 신답철교	0.3	' 05. 9.
	천호대교 남단 ~ 강동역	1.2	' 20. 9.
송파대로	잠실대교 남단 ~ 성남시계	6.3	' 08. 1.

24시간 전일제(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0시~24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도 로 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삼일대로	퇴계로2가 ~ 종로2가	1.0	' 04. 5.
	남산1호터널 북단 → 퇴계로2가	0.7	' 18. 1.
강남대로	신사역4 ~ 영동1교남단	4.8	' 04. 7.
신반포로	이수교차로 ~ 논현역4	3.5	' 09. 6.
동작대로	이수교차로 ~ 사당역	2.7	' 09.11.
과천대로	사당역 ~ 과천시계	2.1	' 18. 9.
시흥대로	대림3 ~ 안양시계	6.5	' 05. 12.
여의대방로	대림아파트 앞(대방동 383) ~ 대림3	2.5	' 05. 12.
한강대로	한강대교노들섬 ~ 서울역남단	4.1	' 06. 12.
	서울역남단 ~ 서울역북단	0.5	' 09. 7.
세종대로	송례문교차로 → 서울역북단	0.5	' 09. 7.
노량진로	대방역3 ~ 한강대교남단	2.8	' 09. 5.
경 인 로	영등포R ~ 오류C	5.0	' 05. 7.
마포대로	마포대교북단 ~ 아현교차로	3.1	' 06.12.
양 화 로	양화대교 ~ 신촌R	4.0	' 09.12.
신 촌 로	신촌R ~ 아현교회	1.2	' 09.12.
	아현교회 ~ 충정로사거리	1.2	'14. 11.
충 정 로	충정로사거리 ~ 미동초교	0.5	'14. 11.
공 항 로	등촌중학교 ~ 양화교	2.5	' 09. 4.
	발산역4 ~ 등촌중학교	2.3	' 10. 8.
	김포공항입구 ~ 공항전화국	1.0	'12. 12.
	강서구청입구4(북단)	0.1	'15. 4.
	발산역4 ~ 공항전화국	1.8	'15. 8.
수 색 로	고양시계 ~ 사천교	3.9	' 04. 7.
성 산 로	사천교 ~ 이대후문	2.9	' 04. 7.
통일로	고양시계 ~ 박석고개	2.4	' 08. 10.
	박석고개 ~ 녹번역3	3.3	' 10. 12.
	녹번역3 ~ 서소문4	5.4	'11. 12.
새문안로	미동초교 ~ 세종대로4	1.2	' 17. 4.
종 로	세종대로4 ~ 등대문R	2.8	' 18. 1.
소 계	45개 구간	124.2	

기타 구간

- ☐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양방향)
 ○ 평일, 토요일·공휴일 07:00부터 ~ 21:00까지
 ○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07:00부터 ~ 다음날 01:00까지
- ☐ 김포대로(서울 방향)
 ○ 평일 07:00~10:00, 17:00~21: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도로명	운영구간	거리(km)	운영개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서초IC	2.6	' 04. 7. : 최초 시행 ' 08. 7. : 평일 확대 시행 ' 08. 10. : 운영시간 변경 ' 11. 1. : 운영시간 변경
	서초IC ~ 한남대교 남단	4.2	' 08. 7. : 최초 시행 ' 08. 10. : 운영시간 변경 ' 11. 1. : 운영시간 변경
김 포 대 로	서울시계 → 개화교	0.2	' 22. 1.
소 계	2개 도로	7.0	

다. 전체 구간

구 분	운영구간	거리(km)
전일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21	40.4
시간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19	42.9
중앙버스전용차로	45	124.2
기타구간 (경부고속도로, 김포대로)	2	7.0
합계	87	214.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교통운영과(2133-24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78호(1972.03.0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건설부고시 제6호(1972.05.22.)로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65호(2020.06.25.)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0호(2021.03.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6호(2021.08.05.)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18호(2022.05.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헌릉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169호(2022.08.04.), 제2022-3164호(2022.12.01.)로 열람공고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33	50~ 61	주 간선 도로	7,580	광1-28 강남구 양재동	광1-29 송파구 장지동	일반 도로	-	1973.3.6. (건고 78)	
변경	광로	1	33	50~ 61	주 간선 도로	7,580	광1-28 강남구 양재동	광1-29 송파구 장지동	일반 도로	-	1973.3.6. (건고 78)	일부 폭원 변경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33	- 도로면적 변경(일부 폭원 변경) : 111,719㎡→110,538㎡(감 1,181㎡, 1.30%)	- 일부 토지 제척 및 분할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단위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현릉로 확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내곡IC ~ 강남구 세곡동 현릉IC

3) 사업의 규모(변경)

- 폭 8~10차로(일부 폭원 변경), 연장 1.46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청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5년 6월 31일까지
- (변경)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별도 첨부

7) 위 치 도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지형도면(변경) : 별도 첨부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0)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8077).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건설과(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02-6438-21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서초구 내곡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1	1-1680	1-1680	도	도	6,687.0	6,687.0	1273.0	89,759	-1,181					
2	1-3048	1-3048	도	도	2,674.0	2,674.0	1527.0	1527.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3	1-1699	1-1699	전	전	102.0	102.0	17.0	17.0		국	국	국	국	기존 도로
										이*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66번길 **, *층 (인계동)	이*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66번길 **, *층 (인계동)	
4	1-297	1-297	도	도	8,836.0	8,836.0	7413.0	7413.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5	1-3024 (ㄱ7)	1-3244	도	도	2,654.0	2,654.0	2654.0	2654.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	산12-177 (ㄷ)	산12-777	임	임	301.0	301.0	301.0	301.0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7	1-2702 (ㄹ5)	1-3231	도	도	91.0	91.0	91.0	91.0		공	서초구	공	서초구	
8	1-310 (ㄱ)	1-3199	답	답	245.0	245.0	245.0	245.0		박*홍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 (문원 동)	박*홍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 (문원동)	
9	1-1706	1-1706	도	도	8,738.0	8,738.0	8738.0	8738.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0	1-2811 (ㅇ5)	1-3233	답	답	188.0	188.0	188.0	188.0		석*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안길 ** (염곡동)	석*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안길 ** (염곡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소유자 당초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1-311 (ㄱ)	1-3200	답	답	523.0	523.0	523.0	523.0		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동 ***호 (자곡동, 엘에이치강남힐스테이트)	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동 ***호 (자곡동, 엘에이치강남힐스테이트)	
12	1-312 (표)	1-3201	전	전	437.0	437.0	437.0	437.0		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동 ***호 (자곡동, 엘에이치강남힐스테이트)	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동 ***호 (자곡동, 엘에이치강남힐스테이트)	기존 도로
13	1-3026 (오7)	1-3245	도	도	161.0	161.0	161.0	161.0		공	서초구	공	서초구	기존 도로
	가지번 (ㄱ7)		도		5.0	5.0			-5.0	공	서초구			
	가지번 (ㄷ7)		도		3.0	3.0			-3.0	공	서초구			
	가지번 (표7)		도		25.0	25.0			-25.0	공	서초구			
14	1-700	1-700	전	전	79.0	79.0	79.0	79.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5	1-701 (ㄱ1)	1-3205	전	전	1,568.0	1,568.0	1,568.0	1,568.0		박*진 외 1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평대로14길 12, ***동 ***호 (반포동, 반포에스케이뷰아파트)	박*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평대로14길 12, ***동 ***호 (반포동, 반포에스케이뷰아파트)	기존 도로
												박*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0-*** 청구빌라	
16	1-2956	1-2956	도	도	459.0	459.0	459.0	459.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소유자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	산12-528 (△1)	산12-784	임	임	165.0	165.0	165.0	165.0		박*우	반포동 718-**	박*우	반포동 718-**	기존 도로
18	산12-411 (○)	산12-411	천	천	377.0	15,549.0	377.0	331.0	-46.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19	산12-720	산12-720	천	천	209.0	209.0	209.0	209.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20	산12-729	산12-729	도	도	375.0	375.0	375.0	37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21	산12-527 (□1)	산12-783	임	임	690.0	690.0	690.0	690.0		정*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6-13 방배서리폴 이-편한세상 ****-****	정*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6-13 방배서리폴 이-편한세상 ****-****	기존 도로
22	1-679 (□1)	1-3203	대	대	270.0	270.0	270.0	270.0		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	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	기존 도로
23	1-680	1-680	전	전	408.0	408.0	392.0	392.0		심*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	심*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	기존 도로
24	산12-466 (ㄱ1)	산12-781	임	임	2,798.0	2,798.0	2798.0	2798.0		박*민	반포동 718-**	박*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	기존 도로
										김*숙		김*숙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8-*	
										박*문		박*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103-***	
										박*희		박*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8-**	
										정*임		정*임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8-*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소유자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5	산12-725	산12-725	도	도	514.0	514.0	514.0	514.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26	1-737 (사2)	1-3214	전	전	33.0	33.0	33.0	33.0	홍*연 외 1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9길 18-**, ***호(성내동)	홍*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9길 18-**, ***호(성내동)	기존 도로
												남*민	서울특별시 중구 정계전로 400, ***동 ****호 (형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27	1-2964	1-2964	도	도	72.0	72.0	72.0	72.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28	1-65 (ㄷ)	1-3198	전	전	298.0	298.0	298.0	298.0	박*주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동 ****호 (병배동, 래미안병배아트힐)	박*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동 ****호 (병배동, 래미안병배아트힐)	기존 도로
29	1-2950	1-2950	도	도	597.0	597.0	597.0	59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30	1-2951	1-2951	도	도	138.0	138.0	138.0	13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31	산12-728 (사2)	산12-789	도	도	228.0	228.0	228.0	228.0	국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32	1-2965	1-2965	도	도	1.0	1.0	1.0	1.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3	1-742 (ㄲ2)	1-3215	전	전	8.0	8.0	8.0	8.0		홍*연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로9길 18-**, ***호(성내동)	홍*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로9길 18-**, ***호(성내동) 서울특별시 중구 정계천로 400, ***동 *****호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34	1-670	1-670	전	전	4.0	4.0	4.0	4.0		홍*연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로9길 18-**, ***호(성내동)	홍*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로9길 18-**, ***호(성내동) 서울특별시 중구 정계천로 400, ***동 *****호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35	1-731	1-731	도	도	198.0	198.0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36	1-2952	1-2952	도	도	4.0	4.0	4.0	4.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7	1-671 (ㄱ1)	1-3202	답	답	6.0	6.0	6.0	6.0		홍*연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로9길 18-**, ***호(성내동)	홍*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로9길 18-**, ***호(성내동) 서울특별시 중구 정계천로 400, ***동 *****호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38	1-2961 (ㄷ6)	1-3239	천	천	165.0	165.0	165.0	16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39	산12-525 (ㄷ1)	산12-782	임	임	7.0	7.0	7.0	7.0		박*우	반포동 718-**-**	박*우	
40	산13-352	산13-352	도	도	45.0	45.0	45.0	45.0		국	국토교통부	국	기존 도로
41	산13-356 (ㄸ4)	산13-364	도	도	65.0	65.0	65.0	65.0		국	국토교통부	국	
	산13-355		도		47.0		47.0		-47.0	국	국기정보원		
42	산13-252 (ㄹ3)	산13-361	임	임	54.0	54.0	54.0	54.0		국	국기안전기획부 (국기정보원)	국	
43	가지번 (ㄹ4)	산13-362	임	임	79.0	79.0	79.0	79.0		국	국기안전기획부 (국기정보원)	국	
44	1-3021 (ㄹ6)	1-3021	도	도	9,572.0	9,572.0	9,572.0	9,572.0		공	서울특별시	공	기존 도로
	1-3021 (ㄹ7)		도		7,252.0		1076.0		-1,076.0	공	서울특별시		
45	1-292 (ㄹ)	1-292	도	도	954.0	954.0	954.0	954.0		공	서울특별시	공	기존 도로
46	산13-346 (ㄹ4)	산13-363	도	도	65.0	65.0	65.0	65.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국	
47	1-3022 (ㄹ7)	1-3022	도	도	659.0	659.0	659.0	659.0		공	서울특별시	공	기존 도로
48	1-3025	1-3025	도	도	234.0	234.0	234.0	234.0		공	서울특별시	공	기존 도로
49	1-2646	1-2646	도	도	80.0	80.0	80.0	80.0		공	서울특별시	공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소유자		비고
										변경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0	1-699 (㉑1)	1-3204	전	전	36.0	36.0	36.0	36.0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기존 도로	
51	1-1714 (㉑3)	1-3220	전	전	53.0	53.0	53.0	53.0	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	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	기존 도로	
52	산12-535 (㉑1)	산12-785	임	임	90.0	90.0	90.0	90.0	박*우	반포동 718-**-**	박*우	반포동 718-**-**	기존 도로	
	1-735 (㉑2)		답		3.0	3.0			-3.0	임*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동 ****호(한라아 파트)			
53	가제번 (㉑2)	1-3212	답	답	44.0	3.0	44.0	3.0	-41.0	임*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동 ****호 (한라아파트)	임경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동 ****호 (한라아파트)	
54	1-2963 (㉑6)	1-3242	도	도	226.0	226.0	226.0	226.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55	산12-736	산12-736	도	도	41.0	41.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56	산12-737 (㉑2)	산12-793	도	도	298.0	298.0	298.0	29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57	산12-747 (㉑3)	산12-800	도	도	50.0	50.0	50.0	50.0		공공	서초구	공공	서초구	
58	산12-464 (㉑)	산12-780	임	임	18.0	18.0	18.0	18.0		박*우 외 1인	반포동 718-**-**	박*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	
												김*숙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8-**-**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9	산12-465 (ㄱ)	산12-465	도	도	7,035.0	7,035.0	7035.0	7035.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 도로
60	산12-743 (ㄹ3)	산12-798	임	임	231.0	231.0	231.0	23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1	가지번 (ㄴ3)	산12-797	임	임	11.0	11.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62	가지번 (ㄴ3)	산12-796	임	임	713.0	713.0	713.0	71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63	1-62 (ㄱ)	1-3197	도	도	4,390.0	46.0	46.0	46.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64	1-734 (ㅎ1)	1-3210	도	도	25.0	25.0	25.0	2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5	가지번 (ㄱ2)	1-3211	도	도	201.0	201.0	201.0	20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66	1-1731 (ㄱ4)	1-3226	도	도	179.0	179.0	179.0	179.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7	1-1728 (ㄱ4)	1-3224	도	도	18.0	18.0	18.0	1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8	1-2962 (ㄱ6)	1-3241	도	도	1,117.0	1,117.0	1117.0	111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69	1-2960 (표5)	1-3237	도	도	513.0	513.0	513.0	51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0	가지번 (ㅎ5)	1-3238	도	도	577.0	577.0	577.0	57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당초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1	1-1727 (표3)	1-3223	도	도	103.0	103.0	103.0	103.0	10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2	1-1725	1-1725	도	도	13.0	13.0	11.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3	1-1735 (표4)	1-3227	도	도	10.0	10.0	10.0	10.0	10.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4	1-2959 (표5)	1-3234	도	도	670.0	670.0	670.0	670.0	670.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5	가지번 (표5)	1-3235	도	도	38.0	38.0	38.0	38.0	3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76	1-1737 (표4)	1-3228	도	도	18.0	18.0	18.0	18.0	1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7	1-1738 (표4)	1-3229	답	답	40.0	40.0	40.0	40.0	40.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8	산12-731 (표2)	산12-791	도	도	289.0	289.0	289.0	289.0	289.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79	1-711 (표1)	1-3206	답	답	16.0	16.0	16.0	16.0	16.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80	1-1739 (표4)	1-3230	도	도	75.0	75.0	75.0	75.0	7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81	1-1278 (표3)	1-3219	도	도	98.0	98.0	98.0	98.0	9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82	1-2991 (표6)	1-3243	도	도	90.0	90.0	90.0	90.0	90.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83	산12-739	산12-739	도	도	123.0	123.0	81.0	81.0	81.0		국	서초구	국	서초구	국	서초구	기존 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당초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4	1-2729 (ㄴ5)	1-3232	도	도	13.0	13.0	13.0	13.0		공공	서초구	공공	서초구	기존 도로
85	산12-748 (ㄷ3)	산12-801	도	도	13.0	13.0	13.0	13.0		공공	서초구	공공	서초구	기존 도로
86	산12-738 (ㄴ3)	산12-794	도	도	441.0	441.0	441.0	44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87	1-3028 (표7)	1-3248	도	도	25.0	25.0	25.0	25.0		공공	서초구	공공	서초구	기존 도로
88	가지번 (ㄷ7)	1-3247	도	도	3.0	3.0	3.0	3.0		공공	서초구	공공	서초구	
89	가지번 (ㄷ4)	산13-254	임	임	272.0	272.0	272.0	272.0		공공	서울특별시	공공	서울특별시	
90	1-732 (ㄱ1)	1-3207	도	도	117.0	117.0	117.0	11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91	가지번 (ㄷ1)	1-3208	도	도	29.0	29.0	29.0	29.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92	1-3076 (ㅎ7)	1-3249	도	도	6.0	6.0	6.0	6.0		공공	서초구	공공	서초구	
93	산12-410 (ㄹ)	산12-779	임	임	2,860.0	2,860.0	2,860.0	2,860.0		이*선 외 14 인	강남구 논현동 263-2, ***호	김*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래로45길 2, ***동 ***호	기존 도로
												박*준	(병래동 삼호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7, ***동 ***호 (대치동 포스코디스플레이파트)	

입원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유자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7, ***동 ***호 (대치동 포스코더샵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4 셋별 마일 ***-***		
											미합중국 미니소터주 알버트리시 잭슨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효저촌 ***-***		
											경기도 고양주시 경춘로 488-40, ***동 ****호 (다산동 힐스테이트 황금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50, ***동 ****호 (구미동, 무지개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 로2길 **, *층(일도이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 로 54, ***동 ****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14차아파트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 아파트 ***-***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소유자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숙*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대로16 번길 56, ***동 ****호 (다산 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	
												이영*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대로16 번길 56, ***동 ****호 (다산 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	
												이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문당로 201번길 17, ***동 ***호(서현 동, 효자환)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 길 *, ***호(역삼동, 강남역두 신위브셋타운)	
												이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동 ***호 (분당동, 셋별마을)	
												이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 아파트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버서버	서초대로73길 **, ***호	
												리	(서초동, 서초성우빌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코릴팩크	서초대로73길 **, ***호	
												홍영*	(서초동, 서초성우빌딩)	
													-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소유자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4	산12-570 (㉮1)	산12-570	수	수	215.0	215.0	215.0	215.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95	산12-574 (㉮1)	산12-786	구	구	569.0	569.0	569.0	569.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96	1-202	1-202	도	도	1,468.0	1,468.0	956.0	956.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97	1-3019	1-3019	도	도	2,850.0	2,850.0	125.0	12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98	1-200	1-200	도	도	179.0	179.0	179.0	179.0		재무부	재무부	국	기획재정부	기존도로
99	1-295	1-295	도	도	53.0	53.0	53.0	53.0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기존도로
100	1-2955	1-2955	도	도	43.0	43.0	43.0	4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01	1-2990	1-2990	도	도	248.0	248.0	248.0	248.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02	산12-732	산12-732	도	도	17.0	17.0	17.0	1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03	1-1712	1-1712	도	도	714.0	714.0	714.0	714.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04	산12-730	산12-730	도	도	54.0	54.0	54.0	54.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05	1-1716	1-1716	도	도	165.0	165.0	165.0	165.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06	1-2953	1-2953	도	도	138.0	138.0	138.0	13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07	산12-723	산12-723	도	도	121.0	121.0	121.0	12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08	1-2954	1-2954	도	도	313.0	313.0	313.0	31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09	산12-724	산12-724	도	도	185.0	185.0	185.0	185.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0	1-3020	1-3020	도	도	도	119.0	119.0	54.0	119.0	65.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11	1-1709	1-1709	도	도	도	20.0	20.0	20.0	20.0		김*수	서울 강남구 내곡동 1-****	김*수	서울 강남구 내곡동 1-****	기존도로	
112	1-2645	1-2645	도	도	도	113.0	113.0	113.0	113.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13	1-2694	1-2694	도	도	도	483.0	483.0	483.0	483.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14	산12-619	산12-619	도	도	도	29.0	29.0	29.0	29.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15	산12-623	산12-623	도	도	도	105.0	105.0	105.0	105.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16	산12-733	산12-733	도	도	도	28.0	28.0	28.0	2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17	산12-726 (ㄹ2)	산12-726	천	천	천	645.0	645.0	645.0	645.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18	1-2989 (ㄱ6)	1-2989	천	천	천	18.0	18.0	18.0	18.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19	산12-727 (ㄱ2)	산12-727	천	천	천	26.0	26.0	26.0	26.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20	산12-467	산12-467	도	도	도	5,217.0	5,217.0	5217.0	5217.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21	1-1715	1-1715	답	답	답	1.0	1.0	1.0	1.0	백*현	백*현	마포구 동교동 133-*	백*현	경기도 과천시 부림4길 **, 지 층 * 호 (부림동)	기존도로	
													백*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안로 131, ***동 ***호(양산물금부 영서랑으로2단지)	기존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당초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2	1-164	1-64	답	답	557.0	557.0	557.0	557.0		백*학	마포구 동교동 133-*	백*현	경기도 과천시 부림4길 64, 지 층 * 호 (부림동)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으로 131, ***동 ***호(양산물금부 영사광으로2단지)	기존도로
123	1-1698	1-1698	도	도	56.0	56.0	56.0	56.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24	1-2721	1-2721	도	도	9.0	9.0	9.0	9.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25	산12-742	산12-742	임	임	34.0	34.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26	1-1718 (△3)	1-3221	도	도	104.0	104.0	104.0	104.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27	1-1717	1-1717	도	도	678.0	678.0	678.0	678.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28	1-1065 (▽3)	1-3218	도	도	71.0	71.0	71.0	71.0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기존도로
129	1-1721 (△3)	1-3222	도	도	2.0	2.0	2.0	2.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30	1-1720 (△3)	1-1720	도	도	956.0	956.0	956.0	956.0		국	서울특별시	국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31	산12-463	산12-463	도	도	288.0	288.0	288.0	288.0		공	서울특별시	국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32	1-1734	1-1734	도	도	17.0	17.0	17.0	1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33	1-1733	1-1733	도	도	3.0	3.0	3.0	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 유 자			비고
										당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유 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4	1-786 (표2)	1-3217	도	도	128.0	128.0	128.0	12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35	1-749	1-749	도	도	731.0	731.0	731.0	731.0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기존도로
136	1-784 (≡2)	1-3216	도	도	417.0	417.0	417.0	41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37	1-751	1-751	답	답	4.0	4.0	4.0	4.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38	1-2384 (≡4)	1-2384	천	천	95.0	95.0	95.0	95.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39	산12-721 (ㄷ2)	산12-788	도	도	487.0	487.0	487.0	487.0	홍*득 외 1인	서초동 산90 우성아파트 *동 ***	홍*득	서초동 산90 우성아파트 *동 ***	기존도로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140	산12-441	산12-441	도	도	4,066.0	4,066.0	4,066.0	4,066.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41	1-1722	1-1722	천	천	43.0	43.0	43.0	4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42	1-2389 (ㄷ5)	1-2389	천	천	377.0	377.0	377.0	377.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43	1-1742	1-1742	천	천	30.0	30.0	30.0	30.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44	1-1741	1-1741	도	도	155.0	155.0	155.0	155.0	국	재무부	국	재무부	기존도로
145	산13-250	산13-250	도	도	1,388.0	1,388.0	1,388.0	1,388.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46	1-1730	1-1730	도	도	30.0	30.0	30.0	30.0	최*귀	서대문구 녹번동 17-***	최*귀	서대문구 녹번동 17-***	기존도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유자 당초		소유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7	1-1726	1-1726	도	도	4,196.0	4,196.0	4196.0	4196.0	4196.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48	1-1736	1-1736	도	도	708.0	708.0	708.0	708.0	708.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49	산12-443	산12-443	도	도	397.0	397.0	397.0	397.0	397.0	홍*득 외 1인	서초동 산90 우성아파트 *등 ***	홍*득	서초동 산90 우성아파트 *등 ***	기존도로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150	1-1740	1-1740	도	도	3.0	3.0	3.0	3.0	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51	산12-664	산12-664	도	도	50.0	50.0	50.0	50.0	50.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52	1-752	1-752	도	도	814.0	814.0	814.0	814.0	814.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53	1-2728	1-2728	도	도	43.0	43.0	43.0	43.0	43.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54	1-1703	1-1703	도	도	3.0	3.0	3.0	3.0	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55	1-3070	1-3070	도	도	15.0	15.0	15.0	15.0	15.0	공	서울특별시	공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56	산12-719	산12-719	도	도	110.0	110.0	110.0	110.0	110.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57	산12-688 (하1)	산12-787	임	임	34.0	34.0	34.0	34.0	34.0	국*하	대전시 중구 태평동 422-7 버드 내마을아파트 ****-*****	국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기존도로
158	산13-357 (상4)	산13-365	도	도	31.0	31.0	31.0	31.0	31.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강남구 세곡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유자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1	468-43	468-43	도	도	865.0	865.0	149.0	20,779	0	공공	서울특별시	공공	서울특별시	기준도로
2	468-42	468-42	임	임	262.0	262.0	11.0	11.0		공공	서울특별시	공공	서울특별시	기준도로
3	산52-46 (ㄹ)	산52-57	임	임	1,978.0	1,978.0	1,978.0	1,97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기준도로
4	산52-1 (ㄱ)	산52-55	임	임	1,094.0	1,094.0	1,094.0	1,094.0		주식회사한 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주식회사한 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5	가지번 (ㄴ)	산52-56	임	임	224.0	224.0	224.0	224.0		주식회사한 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주식회사한 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6	산52-52	산52-52	임	임	16,514.0	16,514.0	4,558.0	4,558.0		공공	서울특별시	공공	서울특별시	기준도로
7	468-28	468-28	도	도	900.0	900.0	717.0	717.0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기준도로
8	475-17	475-17	도	도	73.0	73.0	73.0	73.0		공공	서울특별시	공공	서울특별시	기준도로
9	468-26	468-26	도	도	1,071.0	1,071.0	1,037.0	1,037.0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기준도로
10	389-5	389-5	도	도	6,854.0	6,854.0	6,361.0	6,361.0		공공	서울특별시	공공	서울특별시	기준도로

11	619	619	천	천	20,297.0	20,297.0	20,297.0	6.0	6.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2	274-1	274-1	천	천	1,769.0	1,769.0	1,769.0	16.0	16.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3	468-29	468-29	천	천	519.0	519.0	519.0	519.0	519.0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건설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4	산52-53 (H)	산52-58	임	임	266.0	266.0	266.0	266.0	266.0		농업법인행 음반주식 복합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9-2,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9-2, 3층	기존도로
15	475-28	475-28	도	도	371.0	371.0	371.0	371.0	371.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16	475-18	475-18	답	답	64.0	64.0	64.0	64.0	64.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7	475-30	475-30	답	답	115.0	115.0	115.0	115.0	115.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8	468-30	468-30	도	도	592.0	592.0	592.0	592.0	592.0		국	건설부(국토교통부)	건설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19	475-29	475-29	도	도	1,583.0	1,583.0	1,583.0	1,503.0	1,503.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0	산52-49	산52-49	임	임	278.0	278.0	278.0	278.0	278.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1	산52-48	산52-48	임	임	13.0	13.0	13.0	13.0	13.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2	475-31	475-31	도	도	7.0	7.0	7.0	7.0	7.0		국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기존도로
23	468-31	468-31	도	도	143.0	143.0	143.0	143.0	143.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4	475-19	475-19	도	도	175.0	175.0	175.0	175.0	175.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5	470-9	470-9	도	도	436.0	436.0	436.0	436.0	436.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26	470-15	470-15	전	전	313.0	313.0	313.0	73.0	73.0		국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존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6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8호(2022.10.0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 명 칭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 유 형 : 주거지형(시범 뉴타운지구)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49.3㎡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시행기간
 - 당초 : 2004.02.25 ~ 2022.12.31
 - 변경 : 2004.02.25 ~ 2025.12.31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붙임1」 과 같음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 과 같음

5. 지구별 주택 공급계획(변경 없음)

6.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변경 없음)

7.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8.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정책팀(전화:02-2133-7217) 및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351-7403),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기획부(전화:02-3410-757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49.3㎡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1지구 : 2004.02.25 ~ 2017.12.31
- 2지구
 - 당초 : 2005.12.30 ~ 2022.12.31
 - 변경 : 2005.12.30 ~ 2023.12.31
- 3지구
 - 당초 : 2006.12.28 ~ 2022.12.31
 - 변경 : 2006.12.28 ~ 2025.12.31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와 같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정책팀(전화:02-2133-7217),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351-7403),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기획부(전화:02-3410-7578)
 -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도면과 같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 없음
10.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 「붙임3」와 같음
11.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사항 이행할 것.

「붙임1」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3,492,649.3	-	3,492,649.3	100.00	
주거 용지	소 계	1,353,647.7	-	1,353,647.7	38.76	
	주 택 용 지	1,309,014.3	-	1,309,014.3	37.49	
	단독주택용지	66,415.6	-	66,415.6	1.90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1,242,598.7	-	1,242,598.7	35.59	
	준주거시설용지	36,776.5	-	36,776.5	1.05	
	근린생활 시설용지	7,856.9	-	7,856.9	0.22	
상업 용지	소 계	78,751.5	-	78,751.5	2.25	
	일반상업	78,751.5	-	78,751.5	2.25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928,939.6	-	1,928,939.6	55.22	
	도로	508,158.3 (526,818.9)	-	508,158.3 (526,818.9)	14.55 (15.08)	· 중복 결정된 도로 17,787.8㎡는 하천(11,469.8㎡), 근린공원(6,318.0㎡**) 면적에 편입 · 구거용지 내 도로 872.8㎡는 구거용지 면적에 편입
	주차장	20,961.1	-	20,961.1	0.60	7개소 · 주차장③의 중복입체 결정된 사항은 구파발역 연결통로임
	자동차정류장	19,751.4	-	19,751.4	0.57	2개소
	철도시설	4,159.1 (28,941.3)	-	4,159.1 (28,941.3)	0.12 (0.83)	· 철도본선(19,771.1㎡)은 하천 1,236.6㎡*, 도로 16,017.6㎡, 근린공원 2,313.3㎡, 완충녹지 100.4㎡, 연결녹지 103.2㎡에 편입 · 구파발역(3,975.5㎡)는 도로 3,838.2㎡, 공원 137.3㎡에 편입 · 구파발역과 입체결정된 1,035.6㎡는 상업용지에 편입
	완충녹지	36,317.0	-	36,317.0	1.04	
	연결녹지	26,052.7 (26,111.7)	-	26,052.7 (26,111.7)	0.75 (0.75)	· 중복 결정된 연결녹지 59.0㎡는 하천면적에 편입
	경관녹지	135.8	-	135.8	-	
	도시자연공원	9,160.5	-	9,160.5	0.26	· 서오능 도시자연공원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 기반 시설 용지	근린공원	775,698.6	-	775,698.6	22.21	
	문화공원	65,279.7	-	65,279.7	1.87	
	소공원	1,392.0	-	1,392.0	0.04	
	공공공지	672.1	-	672.1	0.02	
	자원회수시설	8,512.5	-	8,512.5	0.24	1개소
	수도시설	- (7,856.5)	-	- (7,856.5)	- (0.22)	1개소 · 중복 결정된 수도시설 7,856.5㎡는 근린공원 면적에 편입
	공동구	520.4	-	520.4	0.01	관리사무소, 환기구 (매설연장 : 990m)
	공공청사	73,210.3	-	73,210.3	2.10	9개소
	학교	145,069.4	-	145,069.4	4.15	초4, 중3, 고4
	박물관	- (6,530.1)	-	- (6,530.1)	- (0.19)	1개소 · 중복 결정된 박물관①은 6,503.1㎡는 문화공원 면적에 편입
도시 기반 시설 용지	문화시설	16,554.5	-	16,554.5	0.47	1개소
	체육시설	8,039.3 (19,575.2)	-	8,039.3 (19,575.2)	0.23 (0.56)	2개소 · 중복 결정된 체육시설③(11,535.9㎡)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에 편입
	도서관	1,324.6	-	1,324.6	0.04	1개소
	사회복지시설	16,171.5	-	16,171.5	0.46	4개소
	하천	145,349.5	-	145,349.5	4.16	
	유수지	13,300.6 (22,509.3)	-	13,300.6 (22,509.3)	0.38 (0.64)	3개소 · 중복 결정된 유수지(2개소) : 9,208.7㎡는 근린공원에 편입
	종합의료시설	21,612.8	-	21,612.8	0.62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1,535.9	-	11,535.9	0.33	1개소
	소 계	131,310.5	-	131,310.5	3.77	
기타 시설 용지	주차장용지	1,969.7	-	1,969.7	0.06	부설주차장 3개소
	종교시설	31,137.8	-	31,137.8	0.89	25개소
	주유소	4,741.6	-	4,741.6	0.14	4개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유치원	3,889.3	-	3,889.3	0.11	6개소
공익시설	6,569.8	-	6,569.8	0.19	3개소
군사시설	3,913.3	-	3,913.3	0.11	5개소
편익시설	35,694.5	-	35,694.5	1.02	8개소
자동차관련	8,478.9	-	8,478.9	0.24	3개소
커뮤니티 시설용지	398.5	-	398.5	0.01	2개소
업무시설용지	3,351.8	-	3,351.8	0.10	1개소
구거용지	10,686.3	-	10,686.3	0.31	
문화복합용지	20,479.0	-	20,479.0	0.59	

주1 : * 철도와 중복 결정된 하천 1,236.6㎡ 중 947.9㎡는 도로와 중복 결정됨

주2 : ** 도로와 중복 결정된 근린공원 6,318.0㎡ 중 46㎡는 수도시설과 중복 결정됨

주3 : ()는 중복결정 및 입체결정 면적 포함

「붙임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없음)

3. 용도지역(변경 없음)

4. 도시계획시설(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없음)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140	29,760.4	526,818.9	
일 반 도 로	소 계		-	5	5,958.6	201,606.6	
	대로	1 류	37~50	2	2,634.0	110,085.2	
		3 류	20~35	3	3,324.6	91,521.4	
	소 계		-	35	15,386.7	265,858.1	
	중로	1 류	20~26	9	7,147.7	162,193.0	※ 중복결정된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하천, 공원 면적에 편입 (하천:11,469.8㎡, 공원:6,318.0㎡)
		2 류	15~22.5	12	3,047.2	36,633.0	
		3 류	12~20	14	5,191.8	67,032.1	
	소 계		-	100	8,415.1	59,354.2	
	소로	1 류	8~16.7	13	899.0	9,936.0	※ 구거용지 내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구거용지 면적에 편입(872.8㎡)
		2 류	8~9	19	2,573.9	22,004.0	
		3 류	2~8	68	4,942.2	27,414.2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6	4	특수 도로	33.2	소3-18 진관동 125-2	구역계 진관동 125-2	보행자전 용 도로		서고시377 07.10.1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3	46	4	국지 도로	33.2	소3-18 진관동 125-2	구역계 진관동 125-2	보행자우 선 도로		서고시377 07.10.18	

※ 상기 시설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기재 생략)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46	소로3-46	- 기능 - 특수도로 → 국지도로 - 사용형태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및 유지관리청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 및 사용 형태를 변경

2) 주차장(변경 없음)

3) 철도(변경 없음)

4) 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마. 방재시설(변경 없음)

사. 보건위생시설(변경 없음)

아.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5. 기타시설(변경 없음)

「붙임3」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2. 주택공급계획(변경 없음)
3. 도시관리계획(변경) : 「붙임2」와 같음
4.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4」와 같음
5.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 변경 없음

「붙임4」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 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단독 3	㉔	-1	진관동 132-13 일원	329.9	-	329.9	존치시설
변경	단독 3	㉔	-1	진관동 132-13 일원	329.9	-	329.9	한옥지정구역

※ 상기 용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기재 생략)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단독3-㉔-1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라, 단독3-㉔-1 존치시설 해제 및 해당 용지를 한옥지정구역으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 용지(변경 없음)
- 상업 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 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 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 용지(변경 없음)
- 수도시설 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 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 용지(변경 없음)
- 유치원 용지(변경 없음)
- 학교 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시설 용지(변경 없음)
- 박물관 용지(변경 없음)
- 문화시설 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 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변경 없음)
- 종교 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 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 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 용지(변경 없음)
- 군사시설 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 용지(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 용지(변경 없음)
- 유수지 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시설 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커뮤니티시설 용지(변경 없음)
- 업무시설 용지(변경 없음)
- 문화복합 용지(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 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단독	단독 1 ⑨~⑩ 단독 2 ②~④ 단독 3 ②-1	용도	◦ 지정용도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2층 이하(8m이하)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배치	-	
			형태	◦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변경	단독	단독 1 ⑨~⑩ 단독 2 ②~④	용도	◦ 지정용도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 3 ②-1 제외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2층 이하(8m이하)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배치	-	
			형태	◦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 상기 용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기재 생략)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단독3-②-1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라, 단독3-②-1 존치시설 해제 및 해당 용지를 한옥지정구역으로 변경

• 단독주택 용지(한옥지정구역) (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단독	단독 1 ①-8~12, ②, ③, ④, ⑤-3, ⑥, ⑦, ⑧ 단독 2 ① 단독 3 ④-8~14, ⑤, ⑥	용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2가구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2가구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등의 소매점(공방포함)에 한하며 바닥면적 합계 300㎡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하며 바닥면적 합계 300㎡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형 한옥건축 용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 대지 내 북측 진입을 지양	
			형태	◦ 한옥건축지정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변경	단독	단독 1 ①-8~12, ②, ③, ④, ⑤-3, ⑥, ⑦, ⑧ 단독 2 ① 단독 3 ②-1, ④-8~14, ⑤, ⑥	용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2가구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2가구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등의 소매점(공방포함)에 한하며 바닥면적 합계 300㎡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하며 바닥면적 합계 300㎡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형 한옥건축 용지 단독 3 ②-1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배치	◦ 대지 내 북측 진입을 지양	
			형태	◦ 한옥건축지정 : 한옥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함.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 상기 용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기재 생략)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단독3-②-1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라, 단독3-②-1 존치시설 해제 및 해당 용지를 한옥지정구역으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 용지(변경 없음)
- 상업 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 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 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 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시설 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 용지(변경 없음)
- 학교시설 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 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용지(변경 없음)
- 문화시설 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 용지(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 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변경 없음)
- 종교 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 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 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 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편익	편익 8, 11-2	용도	◦ 지정용도 : 특화시설(20% 이상) ◦ 완화용도 : 업무시설(바닥면적 제한 완화, 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노유자시설 ※ 특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육외 골프연습장 제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완화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변경	편익	편익 8, 11-2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5m	
			용도	◦ 지정용도 : 특화시설(20% 이상) ◦ 완화용도 : 업무시설(바닥면적 제한 완화, 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노유자시설 ※ 특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육외 골프연습장 제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완화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5m	

※ 상기 용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 없음(기재 생략)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편익8, 11-2	◦ 은평구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중 “요양병원”을 제외함

- 군사시설 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 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 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커뮤니티시설 용지(변경 없음)
 - 업무시설 용지(변경 없음)
 - 문화복합 용지(변경 없음)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음)
- 4)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음)
- 5)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7호(2005.12.0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6호(2022.10.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없음)
1. 아파트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나. 위치 :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	1,064,793.8	-	1,064,793.8	

2.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지구 면적표(변경없음)

구분	계	면 적(㎡)			
		청담주구	삼성주구	역삼주구	도곡주구
기정	1,064,793.8	104,200.8	290,643.3	425,326.5	244,623.2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전체 토지이용계획표(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64,793.8	-	1,064,793.8	100.0	-
주거용지	소계	806,251.6	-	806,251.6	75.7	-
	주택용지	806,251.6	-	806,251.6	75.7	-
중심시설용지	소계	38,053.8	-	38,053.8	3.6	-
	주구중심	29,418.8	-	29,418.8	2.8	-
	분구중심	8,635.0	-	8,635.0	0.8	-
도시계획시설 용지	소계	220,488.4	-	220,488.4	20.7	-
	도로용지	95,232.9	-	95,232.9	8.9	-
	공원용지	47,255.7	-	47,255.7	4.4	-
	학교용지	59,065.4	-	59,065.4	5.6	-
	공공청사용지	17,514.4	-	17,514.4	1.6	-
	공공공지	770.0	-	770.0	0.1	-
	사회복지시설용지	650.0	-	650.0	0.1	-

나) 고밀도 지역(변경없음) : 생략

다) 저밀도 지역(변경없음) : 생략

라) 청담주구(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4,200.8	-	104,200.8	100.0	-
주거 용지	소 계	78,928.8	-	78,928.8	75.7	-
	주택용지	78,928.8	-	78,928.8	75.7	-
중심 시설 용지	소 계	3,686.0	-	3,686.0	3.5	-
	주구중심	3,686.0	-	3,686.0	3.5	-
	분구중심	-	-	-	-	-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21,586.0	-	21,586.0	20.7	-
	도로용지	3,414.0	-	3,414.0	3.3	-
	공원용지	17,402.0	-	17,402.0	16.7	-
	학교용지	-	-	-	-	-
	공공청사용지	-	-	-	-	-
	공공공지	770.0	-	770.0	0.7	-
	사회복지시설용지	-	-	-	-	-

마) 삼성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역삼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도곡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3) 용도지역(변경없음) : 생략

나.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 생략

다. 건축물 규제사항(변경없음) : 생략

II.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1. 사업명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구분	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강남구 청담동 134-18 번지 일원	61,978.0	감) 154.1	61,823.9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청담주구)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978.0	감)154.1	61,823.9	100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청담주구)
획지	소 계	51,098.0	-	51,098.0	82.4	
	공동주택	51,098.0	-	51,098.0	82.4	
정비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0,880.0	감)154.1	10,725.9	17.3	
	도로	2,123.0	감)154.1	1,968.9	3.2	
	공원	7,987.0	-	7,987.0	12.9	
	공공공지	770.0	-	770.0	1.2	

4.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1,978.0	감)154.1	61,823.9	100.0	-
주거 지역	소계	61,978.0	감)154.1	61,823.9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8,757.0	-	8,757.0	14.2	-
	제3종일반주거지역	53,221.0	감)154.1	53,066.9	85.8	-

※ 정비구역 면적 감소에 따라 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

5.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a	6~12 (6)	집산 도로	641 (211)	청담동 133-3	청담동 130-22	일반 도로	-	학동로 101길
변경	중로	3	a	6~12 (6)	집산 도로	641 (204)	청담동 133-3	청담동 133-22	일반 도로	-	학동로 101길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132	청담동 134-26	청담동 134-13	일반 도로	-	-

※ ()안은 구역 내 해당하는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3-a	중로 3-a	◦ 정비구역 내 해당하는 도로 연장 변경 - 641m(211m) ⇒ 641m(204m)	◦ 정비구역 일부 제척에 따라 구역 내 중로 3-a 연장 감소

나. 공원(변경없음)

(1)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청담동 134-13 일원	17,402.0 (7,987.0)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청수 근린공원

※ ()안은 구역 내 해당하는사항임

(2)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공공지	-	청담동 134-18 일원	770.0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61,97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원	12	-	-	12	-	
변경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61,82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원	12	-	-	12	-	

8.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기준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주택용지	51,098.0	청담동 134-18 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00	255.36	299.84	110.6 /35층																
변경	주택 용지	51,098.0	청담동 134-18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00	254.58	299.27	111.09 /3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 주택공급계획 : 1,230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tr><th>구분</th><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h>비고</th></tr><tr><td>계</td><td>1,230</td><td>100.0</td><td></td></tr><tr><td>60㎡이하</td><td>270</td><td>22.0</td><td>소형임대주택 140세대 포함</td></tr><tr><td>60~85㎡이하</td><td>472</td><td>38.4</td><td></td></tr><tr><td>85㎡초과</td><td>488</td><td>39.7</td><td></td></tr></table> - 건설비용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등은 2013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 과를 반영한 계획이며,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1,230	100.0		60㎡이하	270	22.0	소형임대주택 140세대 포함	60~85㎡이하	472	38.4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1,230	100.0																							
60㎡이하	270	22.0	소형임대주택 140세대 포함																						
60~85㎡이하	472	38.4																							
85㎡초과	488	39.7																							
			변경	■ 주택공급계획 : 1,261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tr><th>구분</th><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h>비고</th></tr><tr><td>계</td><td>1,261</td><td>100.0</td><td></td></tr><tr><td>60㎡이하</td><td>294</td><td>23.3</td><td>소형임대주택 144세대 포함</td></tr><tr><td>60~85㎡이하</td><td>479</td><td>38.0</td><td></td></tr><tr><td>85㎡초과</td><td>488</td><td>38.7</td><td></td></tr></table> - 건설비용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변경)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1,261	100.0		60㎡이하	294	23.3	소형임대주택 144세대 포함	60~85㎡이하	479	38.0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1,261	100.0																							
60㎡이하	294	23.3	소형임대주택 144세대 포함																						
60~85㎡이하	479	38.0																							
85㎡초과	488	38.7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기준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심의완화 사항				■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2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지정					
				구 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 고	
				도로변		경계선에서 3m		도면 참고	

－ 건축시설계획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정비계획용적률 - 255.36% ⇒ 254.58% [감] 0.78%]	◦ 구역 내 청담삼익상가 소유 도로 부지 제척에 따라 공공시설 순부담면적 감소로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84% ⇒ 299.27% [감] 0.57%]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계획 변경에 따른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 관련 법령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의무 면적 이상 확보 및 기정 계획 대비 추가 공급
	◦ 높이(m) - 110.6m ⇒ 111.09m [증] 0.49m]	◦ 정비구역 내 최고높이인 108동의 2층, 33층 층고 및 파라펫 길이 조정에 따른 높이 변경 ※ 건축설계 변경을 수반함
	◦ 주택공급계획 - 1,230세대 ⇒ 1,261세대 [증] 31세대]	◦ 평형별 공급면적 변경으로 인한 총 세대수 변경 ※ 건축설계 변경을 수반함

9. 용적률 계획(변경)

- 기 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주택용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61,978.0㎡	51,098.0㎡	10,880.0㎡	-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면적 : 10,880.0㎡ (순부담률 17.6%) = 계획정비기반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주택용지 적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 + 1.3 × α토지) + (0.7 × α건축물)] = 200% + [(1 + 1.3 × 0.2129) + 0] = 255.36%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율 = 10,880.0 / 51,098.0 = 0.2129 - 상한용적률 : 255.36% - 법적상한 용적률 : 299.84% (300% 미만)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소형주택 건립용적률	용적률 22.24%(연면적 11,364.2㎡) 이상 [예정법적상한용적률(299.84%) - 정비계획용적률(255.36%)] × 0.5 = 22.24%				

- 변 경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주택용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61,823.9㎡	51,098.0㎡	10,725.9㎡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면적 : 10,725.9㎡ (순부담률 17.3%) = 계획정비기반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구분	산정내용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00%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주택용지 적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 + 1.3 × α토지) + (0.7 × α건축물)] = 200% + [(1 + 1.3 × 0.2099) + 0] = 254.58%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율 = 10,725.9 / 51,098.0 = 0.2099 ●상한용적률 : 254.58% ●법적상한 용적률 : 299.27% (300% 미만) ※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변경)시 조정될 수 있음
소형주택 건립용적률	●용적률 22.35%(연면적 11,420.4㎡) 이상 [예정법적상한용적률(299.27%) - 정비계획용적률(254.58%)] × 0.5 = 22.35%

10.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라. 소형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출근거(변경)

－ 기정

구분		내용			
정비계획용적률		• 255.36%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84%			
소형 임대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84% - 255.36% = 44.48%			
	증가된 용적률의 50%	• 44.48% × 0.5 = 22.24%			
	의무 연면적	• 51,098.0㎡ × 22.24% = 11,364.2㎡			
소형임대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49㎡	69.05㎡	28세대	1,933.6㎡
		59㎡(A)	83.94㎡	67세대	5,624.5㎡
		59㎡(B)	85.01㎡	45세대	3,825.6㎡
		∴ 11,383.8㎡ > 11,364.2㎡(의무연면적)			

- 변경

구분		내용			
정비계획용적률		• 254.58%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27%			
소형 임대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27\% - 254.58\% = 44.69\%$			
	증가된 용적률의 50%	• $44.69\% \times 0.5 = 22.35\%$			
	의무 연면적	• $51,098.0\text{m}^2 \times 22.35\% = 11,420.4\text{m}^2$			
소형임대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49㎡	67.6304㎡	30세대	2,028.912㎡
		59㎡(A)	82.0174㎡	64세대	5,249.114㎡
		59㎡(B)	83.0098㎡	50세대	4,150.490㎡
		∴ 11,428.52㎡ > 11,420.4㎡(의무연면적)			

마. 임대주택 공급계획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임대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11.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도시 경관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서울시 경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관계획 수립
환경 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 계획구역의 입지상 한강변에 위치하나 기존 제방시설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음. 그러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 해당사항 없음 •화재 -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나.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생태 환경	1.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향상	○	•비오톱유형평가도상 4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도 상 평가제지지역 •비오톱 유형도 상 주택지 비오톱	•사업시행후에도 주택지비오톱으로 변화없음 •체계적인 조경녹지 등 비오톱 공간을 확보함 으로 생태적 기능이 확보예상	
	2.생태 네트워크	녹지 · 수생태 연결성 확보	○	•기존의 공동주택부지로 단지내 수목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노거수로, 정비구역 승인 이후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대상지내 식생은 분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내 조경계획 시 녹지평가지표 산정기준 중 평가항목 2가지가 1등급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계획	
생활 환경	3.토지이용	상위 및 관련계획의 부합성	○	•용도지역현황 :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및 공공공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의 토지이용현황 : 주택지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고려하여 용도지역계획 수립 •청담삼익상가 소유 도로 제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소	
	4.지형·지질	지형변동의 최소화	○	•현지반고 EL.21.53m~ 31.24m •계획고 EL.22.0m, EL.25.7m, EL.31.4m	•사업대상지 자연지형의 구배를 최대한 보존 및 활용 •지하굴착시 굴착고를 2단으로 계획하여 토공량 발생 최소화	
	5.물순환	생태 면적률 30%이상 확보	○	•사업시행후 녹지조성 및 식재계획, 투수성포장재 시공 •지상층 및 옥상층에 녹지 확보(생태면적률 33.81% 확보)	•공사시 우수 및 지하수는 청소용수나 살수용수로 사용 •운영시 투수성 포장재, 침투시설 설치, 지상층 및 옥상층에 녹지 확보	
	6.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수질오염총량 대상구역임(한강H유역) •사업대상지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연계처리되는 탄천배수구역내 청담소배수분구에 속 •사업시행에 따른 우수유출량은 30년빈도로 산정하여 공사시 침사지의 적정용량을 산정	•토공사시 우수배제시설의 선 시행(침사지 등) •공사시 발생오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운영시 하수처리 : 공공하수관을 통해 탄천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7.대기질 및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	○	- 초미세먼지는 2019년 1월 ~ 3월에 환경기준(24시간평균)을 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산업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모든 달이 환경기준(24시간평균)을 만족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해 배출가스 발생	- 공사차량 제한 및 규제 - 세륜·세차시설 - 방음판넬위에 방진망 설치 - 주기적인 살수 -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 실내공기오염 저감방안 - 환경정화수중 식재 - 에너지절약계획수립	

12.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증가예상 세대수		
				현황	변경	증가
기정	재건축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88세대	1,230세대	342세대
변경	재건축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88세대	1,261세대	373세대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범위	내용	비고
응도제한을 통한 교육 환경보호	정비구역 전체	물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안마원) 등 교육 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절대 정화 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상대 정화 구역	
		- 설정기준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 호텔,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설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청담동 134-18 번지 일원	61,978	감) 154.1	61,823.9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변경전 구역명	변경후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감소 － 61,978.0㎡ ⇒ 61,823.9㎡ (감) 154.1㎡)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결한 청담삼익상가 소유 도로 부지 제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1,978.0	감)154.1	61,823.9	100.0	-
주거 지역	소계	61,978.0	감)154.1	61,823.9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8,757.0	-	8,757.0	14.2	-
	제3종일반주거지역	53,221.0	감)154.1	53,066.9	85.8	-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감소에 따라 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감소

나. 용도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종결정일	비고
기정	－	경관 지구	역사문화 특화경관 지구	강남 도로	782,400 (3,454)	32,600 (287)	양측 12	건고 제739호 (1971.12.30.)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a	6~12 (6)	집산 도로	641 (211)	청담동 133-3	청담동 130-22	일반 도로	-	학동로 101길
변경	중로	3	a	6~12 (6)	집산 도로	641 (204)	청담동 133-3	청담동 133-22	일반 도로	-	학동로 101길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132	청담동 134-26	청담동 134-13	일반 도로	-	-

※ ()안은 구역 내 해당하는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3-a	중로3-a	◦ 정비구역 내 해당하는 도로 연장 변경 - 641m(211m) ⇒ 641m(204m)	◦ 정비구역 일부 제척에 따라 중로 3-a 내 해당구간 감소

(2)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청담동 134-13 일원	17,402.0 (7,987.0)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청수 근린공원

※ ()안은 구역 내 해당하는사항임

(3)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공공지	-	청담동 134-18 일원	770.0	서고 제2005-369호 (2005.12.1.)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A	A	61,978.0	1	청담동 134-18번지 일원	51,098.0	주택용지
변경	A	A	61,823.9	1	청담동 134-18번지 일원	51,098.0	주택용지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가)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분	지 역	건폐율	비고
획지1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획지1	200 이하	255.36 이하	299.84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획지1	200 이하	254.58 이하	299.27 이하	

(다) 높이 계획(변경)

구분	위 치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정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110.6m 이하
변경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111.09m 이하

※ 향후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검토향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생태 환경	1.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향상	○	•비오톱유형평가도상 4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도 상 평가제지지역 •비오톱 유형도 상 주택지 비오톱	•사업시행후에도 주택지비오톱으로 변화없 음 •체계적인 조경녹지 등 비오톱 공간을 확보 함으로 생태적 기능이 확보예상	
	2.생태 네트워크	녹지 · 수생태 연결성 확보	○	•기존의 공동주택부지로 단지내 수목들이 있 었으나 대부분 노거수로, 정비구역 승인 이 후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대상지내 식 생은 분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내 조경계획 시 녹지평가지표 산정기준 중 평가항목 2가지가 1등급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계획	
생활 환경	3.토지이용	상위 및 관련계획의 부합성	○	•용도지역현황 :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일반주 거지역, 공원 및 공공공지는 제1종일반주거 지역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의 토지이용현황 : 주택지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고 려하여 용도지역계획 수립 •첨단삼익상가 소유 도로 제척으로 제3종일 반주거지역 감소	
	4.지형·지질	지형변동의 최소화	○	•현지반고 EL.21.53m~ 31.24m •계획고 EL.22.0m, EL.25.7m, EL.31.4m	•사업대상지 자연지형의 구배를 최대한 보 존 및 활용 •지하굴착시 굴착고를 2단으로 계획하여 토 공량 발생 최소화	
	5.물순환	생태 면적률 30%이상 확보	○	•사업시행후 녹지조성 및 식재계획, 투수성포 장재 시공 •지상층 및 옥상층에 녹지 확보(생태면적률 33.81% 확보)	•공사시 우수 및 지하수는 청소용수나 살수 용수로 사용 •운영시 투수성 포장재, 침투시설 설치, 지 상층 및 옥상층에 녹지 확보	

검토했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6.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수질오염총량 대상구역임(한강H구역) •사업대상지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연계처리되는 탄천배수구역내 청담소배수분구에 속 •사업시행에 따른 우수유출량은 30년빈도로 산정하여 공사시 침사지의 적정용량을 산정	•토공사시 우수배제시설의 선 시행(침사지 등) •공사시 발생오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운영시 하수처리 : 공공하수관을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	
7.대기질 및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	○	•초미세먼지는 2019년 1월 ~ 3월에 환경기준(24시간평균)을 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산업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모든 달이 환경기준(24시간평균)을 만족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해 배출가스 발생	•공사차량 제한 및 규제 •세륜세차시설 •방울판넬위에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실내공기오염 저감방안 •환경정화수종 식재 •에너지절약계획수립	

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1)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4)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전용면적)			계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구성비 (%)	세대수	구성비 (%)	세대수	구성비 (%)
세 대 수	계		1,230	100.0	1,090	88.6	140	11.4
	60㎡이하	소 계	270	22.0	130	10.6	140	11.4
		49㎡	28	2.3	－	－	28	2.3
		59㎡	242	19.7	130	10.6	112	9.1
	60㎡~85㎡이하		472	38.4	472	38.4	－	－
	85㎡초과		488	39.7	488	39.7	－	－

- 변경

구 분 (전용면적)			계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구성비 (%)	세대수	구성비 (%)	세대수	구성비 (%)
세 대 수	계		1,261	100.0	1,117	88.6	144	11.4
	60㎡이하	소 계	294	23.3	150	11.9	144	11.4
		49㎡	30	2.4	—	—	30	2.4
		59㎡	264	20.9	150	11.9	114	9.0
	60㎡~85㎡이하		479	38.0	479	38.0	—	—
	85㎡ 초과		488	38.7	488	38.7	—	—

※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1-3-3),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 후 강남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5) 임대주택 공급계획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임대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토지이용계획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5.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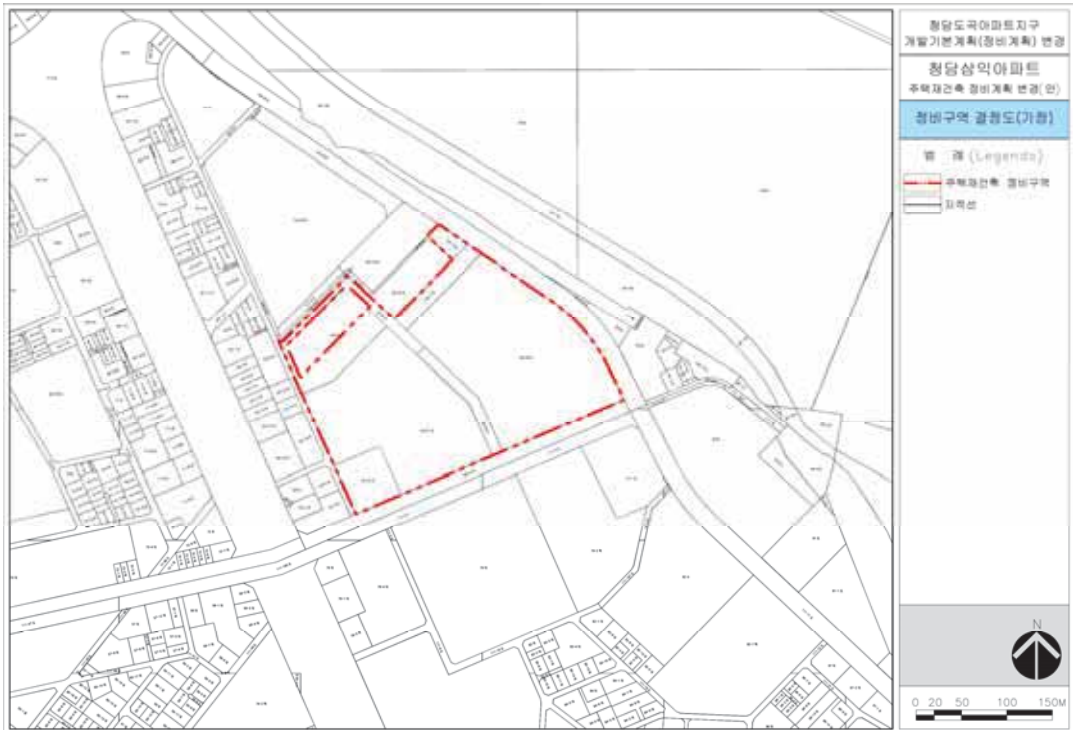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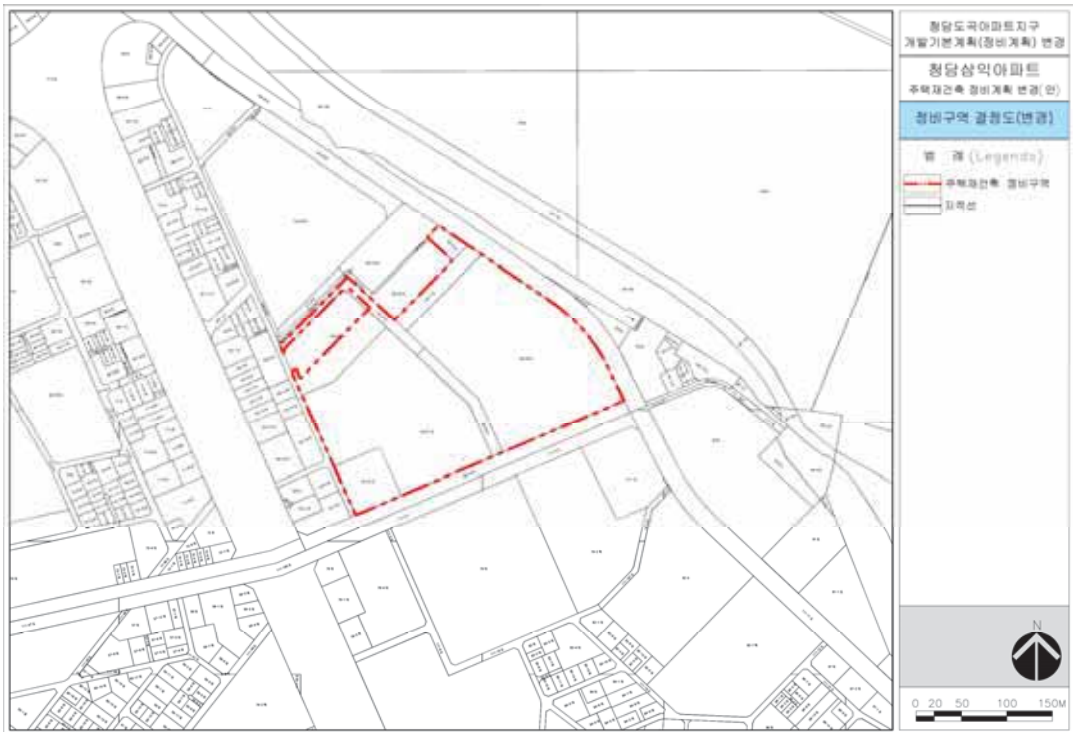
VI. 열람장소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286)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3423-6076)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토지이용계획도(기정)]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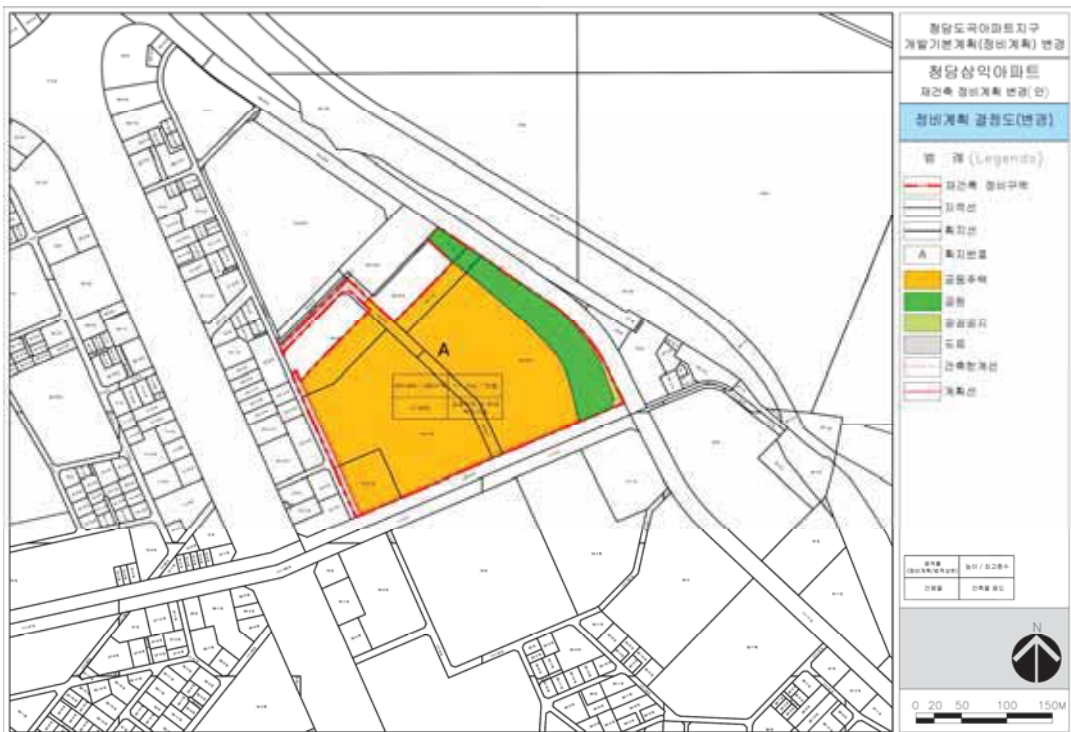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9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3호(1996.08.14.)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1998-153호(1998.05.27.)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73호(2007.10.18.)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재정비)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29호(2009.04.02.)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1.9.) 및 재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료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499,765	증195	499,960	서고 제231호 (1996.08.14.)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499,960 (증 195㎡)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결정 시 누락된 양지병원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하여 계획과 현황의 정합성 확보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변경

■ 용도지역 총괄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499,765.0	증) 195.0	499,960.0	100.0	
주거지역	소 계	352,981.6	증) 195.0	353,176.6	7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5,770.5	-	35,770.5	7.1	
	제3종일반주거지역	76,956.6	-	76,956.6	15.4	
	준주거지역	240,254.5	증) 195.0	240,449.5	48.1	
상업지역	소 계	146,783.4	-	146,783.4	29.4	
	일반상업지역	146,783.4	-	146,783.4	29.4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4,516.1	-	4,516.1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5.0	감) 195.0	-	-	
	준주거지역	4,321.1	증) 195.0	4,516.1	100.0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5.0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특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된 10-275번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특별계획구역 내 통일성 있는 단일건축물 증축
준주거지역	4,321.1	4,516.1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 도로 총괄표

류별	규모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151	15,109.1	134,487.6 (174)	-	-	-	7	2,064	22,903	144	13,045.1	111,584.6 (174)

류별	규모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광로	2	809	33,820	-	-	-	-	-	-	2	809	33,820
대로	1	771	19,275	-	-	-	-	-	-	1	771	19,275
중로	3	1,103	15,975	-	-	-	2	913	13,695	1	190	2,280
소로	145	12,426.1	65,417.6 (174)	-	-	-	5	1,151	9,208	140	11,275.1	56,209.6 (174)

주) 괄호는 구역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43	4	국지 도로	45	신림동 858-11	신림동 10-501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343	6	국지 도로	45	신림동 858-11	신림동 10-501	일반 도로	-	-	도로폭원 확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343	소로 3-343	노선일부 폭원 확장 (B=4 → 6m)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부지내 일부 폭원 확장을 통한 도로기능 강화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기여)

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지번	면적(㎡)		
기정	42 신림동도곽 (E)	19,397.7	10-206답	1,730.1	지정	과소필지 해소 적정개발규모 유도 보차혼용도로 계획
			10-207대			
			10-678도			
			1411-30대			
			10-345대	1,160.0	지정	부정형 필지 해소 적정개발규모 유도 소유주 고려 (10-377, 10-501, 11-9 동일소유)
			10-377종			
			10-501종			
			11-9종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지번	면적(㎡)		
			10-715대	1,431.0	-	-
변경	42 신림동도곡 (E)	19,592.7	10-206답	4,516.1	특별 계획 구역	신림생활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지병원 증축을 위하여 공동개발(지정) 삭제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10-275번지는 금회 신규 포함 (면적 : 195㎡)
			10-207대			
			10-678도			
			1411-30대			
			10-345대			
			10-377종			
			10-501종			
			11-9종			
			10-715대			
			10-275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가구번호 42(신림동) 면적 변경 - 19,397.7 → 19,592.7 (증 195㎡) 공동개발(지정) 삭제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신림생활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지병원 증축을 위하여 공동개발(지정) 삭제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0-715번지 일대	-	증)4,516.1	4,516.1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신설	관악구 신림동 10-715번지 일대	4,516.1	신림생활권의 의료서비스 제공 거점으로서의 기능 확충 기존 병원시설의 증축을 통한 병상 확보 및 이용편의시설 추가 조성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신설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면적		4,516.1㎡	
공공기여		기부채납 순부담 25%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 한함) - 공공기여면적 = 195㎡ × 25% = 48.75㎡ 이상	
건축물용도		불허용도 U3 / 권장용도 3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준주거 간선부 계획을 따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247.84% 이하	
	허용	345.68% 이하	
	상한	400.00%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건축한계선		남부순환로(광로2-19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남부순환로 184길(소로3-343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기타사항	대지내공지	쌈지형공개공지 2개소 (세부위치는 계획지침도 참조)	
	차량진출입	남부순환로 변 공동차량출입구 지정 차량출입구 외 남부순환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단,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진출입만 허용)	
	공공통로	보차혼용통로 (세부위치는 계획지침도 참조)	
	기타	이면부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로 조성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0-715번지 일대	-	증)4,516.1	4,516.1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신설	관악구 신림동 10-715번지 일대	4,516.1	신림생활권의 의료서비스 제공 거점으로서의 기능 확충 기존 병원시설의 증축을 통한 병상 확보 및 이용편의시설 추가 조성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4,516.1	-	4,516.1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5.0	감) 195.0	-	-	
	준주거지역	4,321.1	증) 195.0	4,516.1	100.0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5.0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지역의 용도지역 반영 특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된 10-275번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특별계획구역 내 통일성 있는 단일건축물 증축
준주거지역	4,321.1	4,516.1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43	4	국지 도로	45	신림동 858-11	신림동 10-501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343	6	국지 도로	45	신림동 858-11	신림동 10-501	일반 도로	-	-	도로폭원 확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343	소로 3-343	노선일부 폭원 확장 (B=4 → 6m)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부지내 일부 폭원 확장을 통한 도로기능 강화

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번호		지번	면적(㎡)	비고
기정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4,516.1	10-206답	17.0	
			10-207대	1,456.0	
			10-678도	25.0	
			1411-30대	232.1	
			10-345대	145.0	
			10-377종	142.0	
			10-501종	119.0	
			11-9종	754.0	
			10-715대	1,431.0	
			10-275대	195.0	
변경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4,342.1	10-206답	17.0	
			10-207대	1,456.0	
			10-678도	25.0	
			1411-30대	232.1	
			10-345대	120.2	도로면적 24.8 제외
			10-377종	117.7	도로면적 24.3 제외

구분	획지번호	지번	면적(㎡)	비고
		10-501종	71.1	도로면적 47.9 제외
		11-9종	686.1	도로면적 67.9 제외
		10-715대	1,421.9	도로면적 9.1 제외
		10-275대	195.0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획지 구분 (기부채납 도로 174㎡ 제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내용 반영한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관악구 신림동 10-715번지 일대	불허용도 (U3)	• 기숙사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좌동
		관장용도 (3)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남부순환도로 및 신림로변에 한함) • 노유자시설	• 좌동

3)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 건폐율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 60% 이하	• 좌동 (계획건폐율 59.54%)

■ 용적률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 기준 / 허용 / 상한용적률 - 247.84% / 345.68% / 400.00%	• 좌동 (계획용적률 357.41%)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 기부채납 순부담 25%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 한함) - 공공기여면적 = $195\text{m}^2 \times 25\% = 48.75\text{m}^2$ 이상 - 양지병원 이용객 및 주변시민 이용을 위한 필요공공시설 조성	기반시설(도로) 제공토지 : 174m^2

■ 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최고높이 60m 이하	좌동 (계획높이 59.95m)

4)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 남부순환로(광로2-19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 남부순환로 184길(소로3-343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좌동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	- 대지내공지 - 쏟지형공개공지 (세부위치는 계획지침도 참조)	좌동 (위치 지정된 쏟지형공개공지 설치 및 조성)
	- 차량진출입 - 남부순환로 변 공동차량출입구 지정 - 차량출입구 외 남부순환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단,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진출입만 허용)	좌동
	- 공공통로 - 보차혼용통로 (세부위치는 계획지침도 참조)	- 좌동 (위치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설치 및 조성) - 폭원 : 4 ~ 6m
	- 기타 - 이면부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로 조성	좌동

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점	세부개발계획
도면번호		•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4,321.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준주거지역 (195㎡)	• 준주거지역 (4,516.1㎡)
면적		• 4,516.1㎡	• 4,516.1㎡
공공기여		• 기부채납 순부담 25%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 한함) - 공공기여면적 = 195㎡ × 25% = 48.75㎡ 이상 • 양지병원 이용객 및 주변시민 이용을 위한 필요 공공시설 조성	• 기반시설(도로) 제공토지 : 174㎡
건축물 용도		• 불허용도 U3 / 권장용도 3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준주거 간선부 계획을 따름)	• 불허용도 U3 / 권장용도 3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준주거 간선부 계획을 따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계획건폐율 59.54%)
용적률	기준	• 247.84% 이하	• 247.84% 이하
	허용	• 345.68% 이하	• 345.68% 이하
	상한	• 400.00% 이하	• 358% 이하 (계획용적률 357.41%)
최고높이		• 60m 이하	• 60m 이하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광로2-19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 남부순환로 184길(소로3-343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남부순환로(광로2-19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 남부순환로 184길(소로3-343호선) 변 - 도시계획시설로부터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기타 사항	대지내공지	• 썸지형공개공지 2개소 (세부위치는 계획지침도 참조)	• 썸지형공개공지 2개소 (위치지정된 썸지형 공개공지 설치 및 조성)
	차량진출입	• 남부순환로 변 공동차량출입구 지정 • 차량출입구 외 남부순환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단,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 동차의 진출입만 허용)	• 남부순환로 변 공동차량출입구 지정 • 차량출입구 외 남부순환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단,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 동차의 진출입만 허용)
	공공통로	• 보차혼용통로 (세부위치는 계획지침도 참조)	• 보차혼용통로 (위치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설치 및 조성)
	기타	• 이면부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로 조성	• 이면부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보행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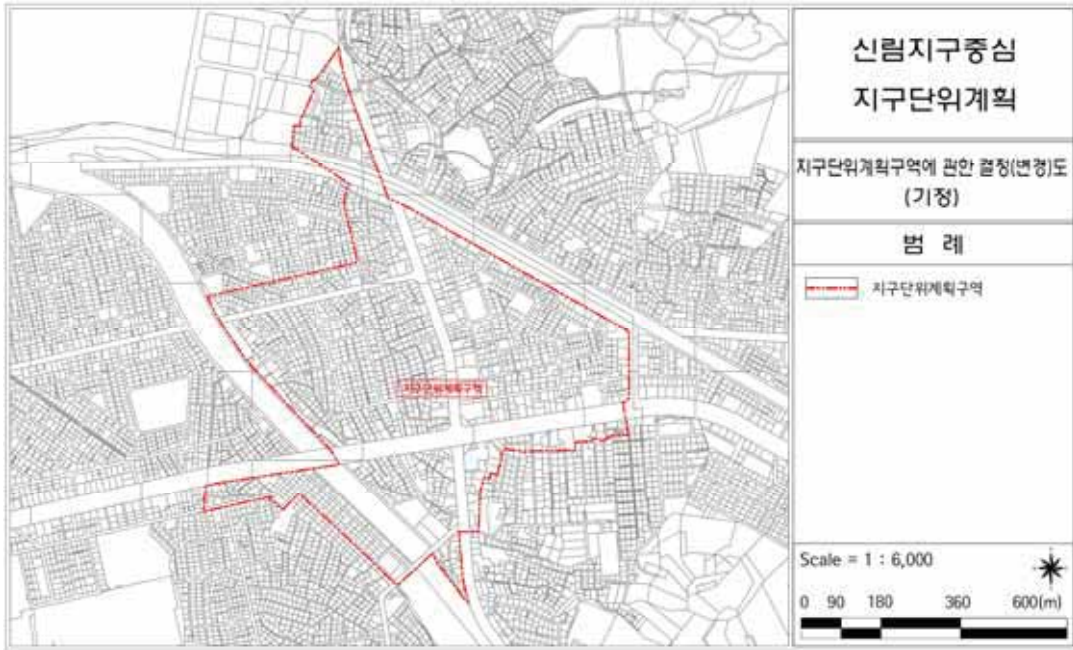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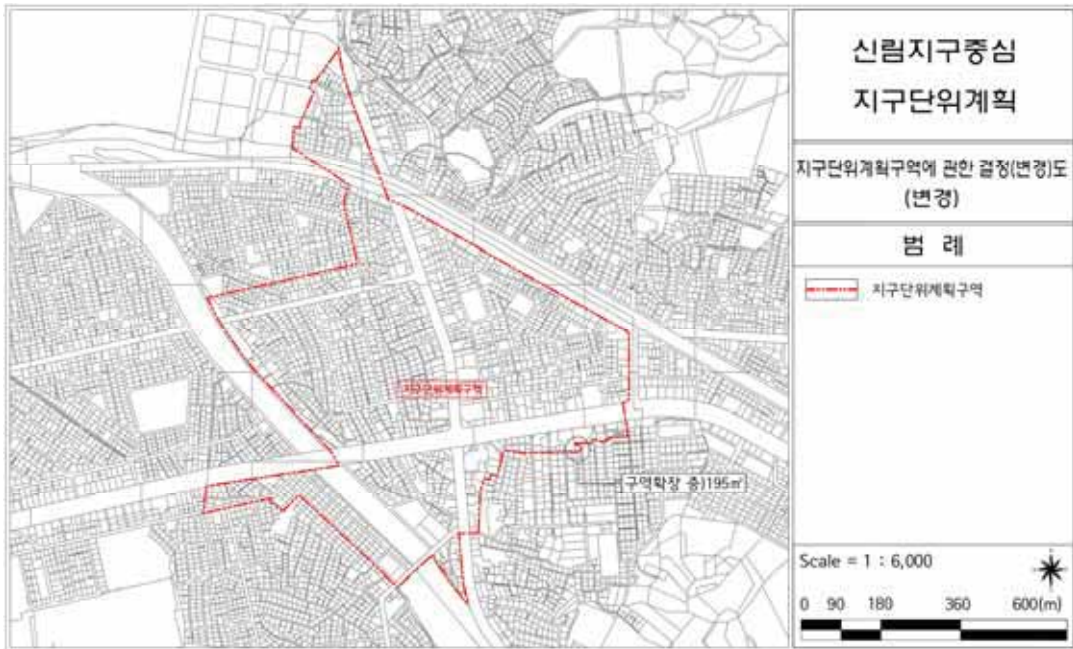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0)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36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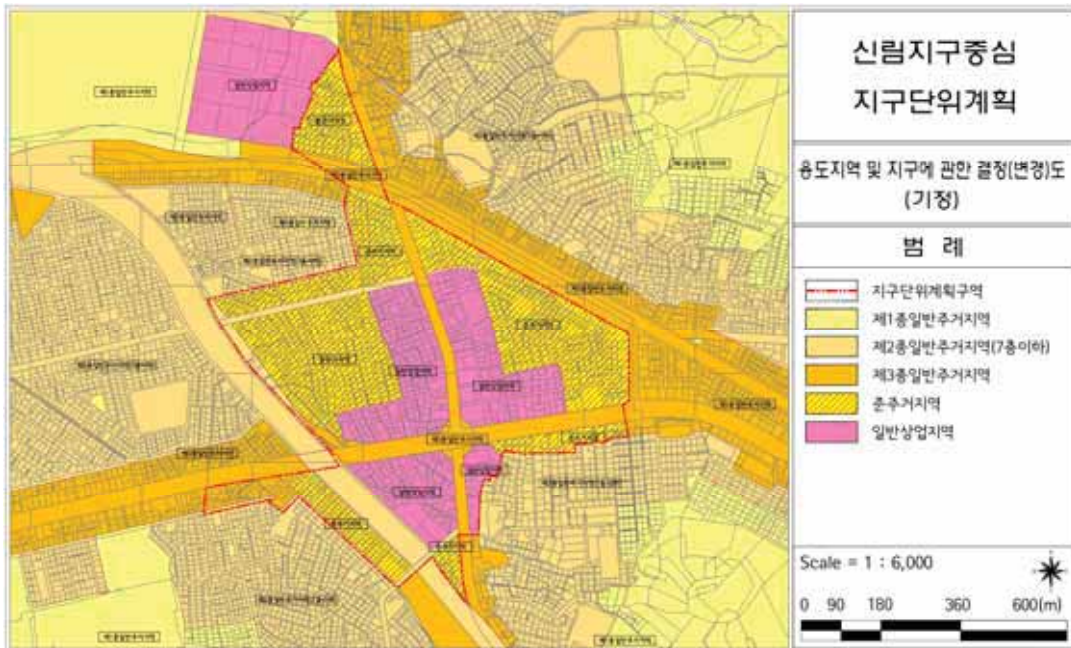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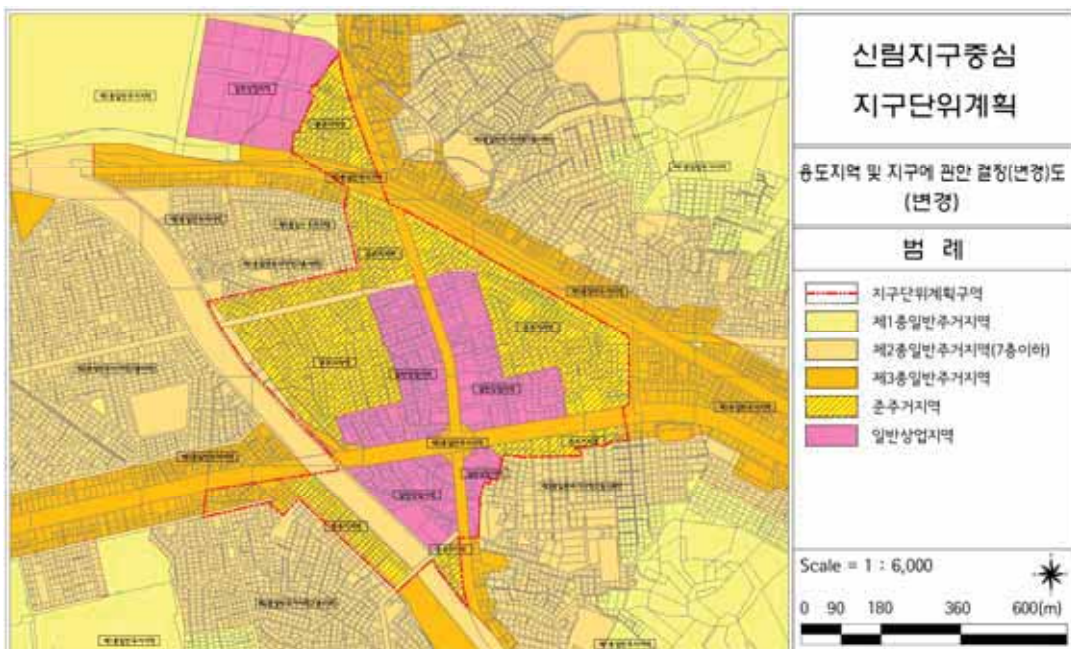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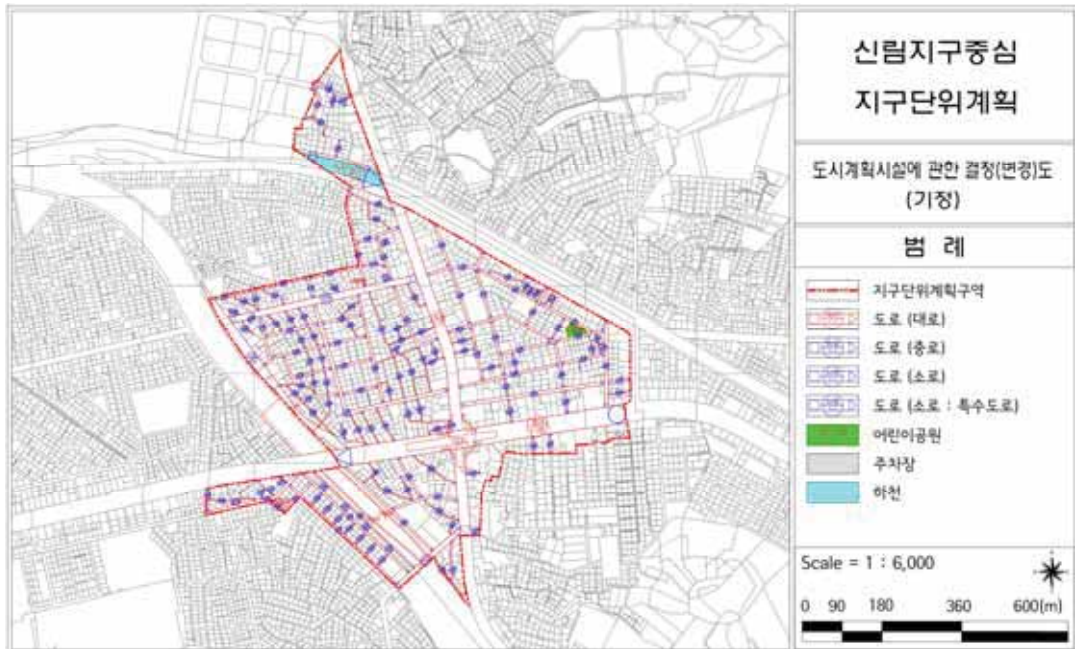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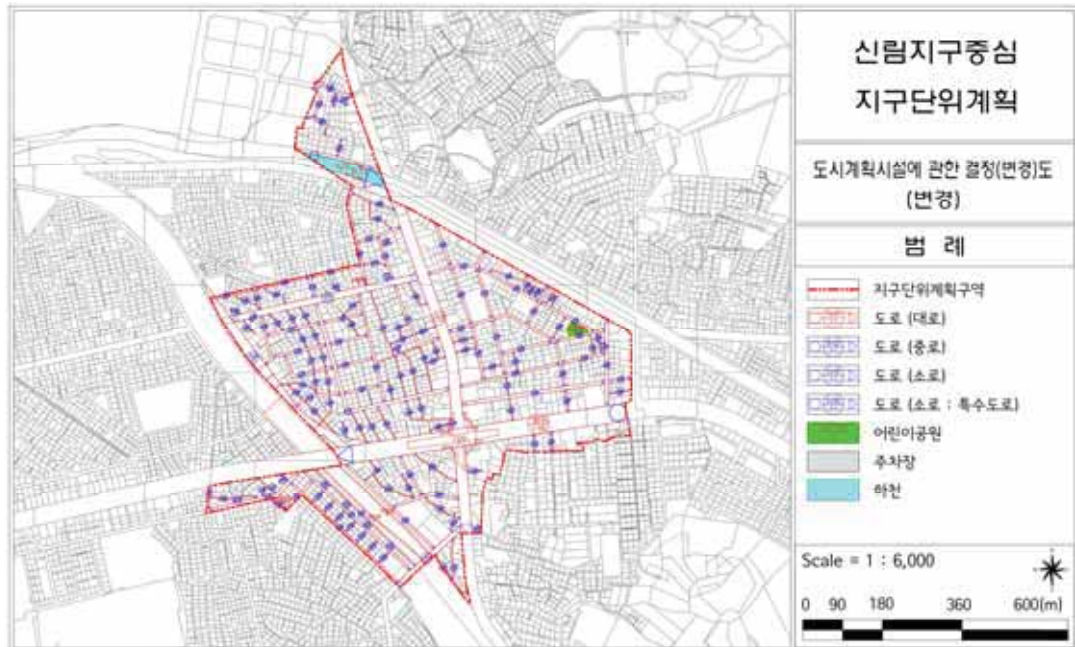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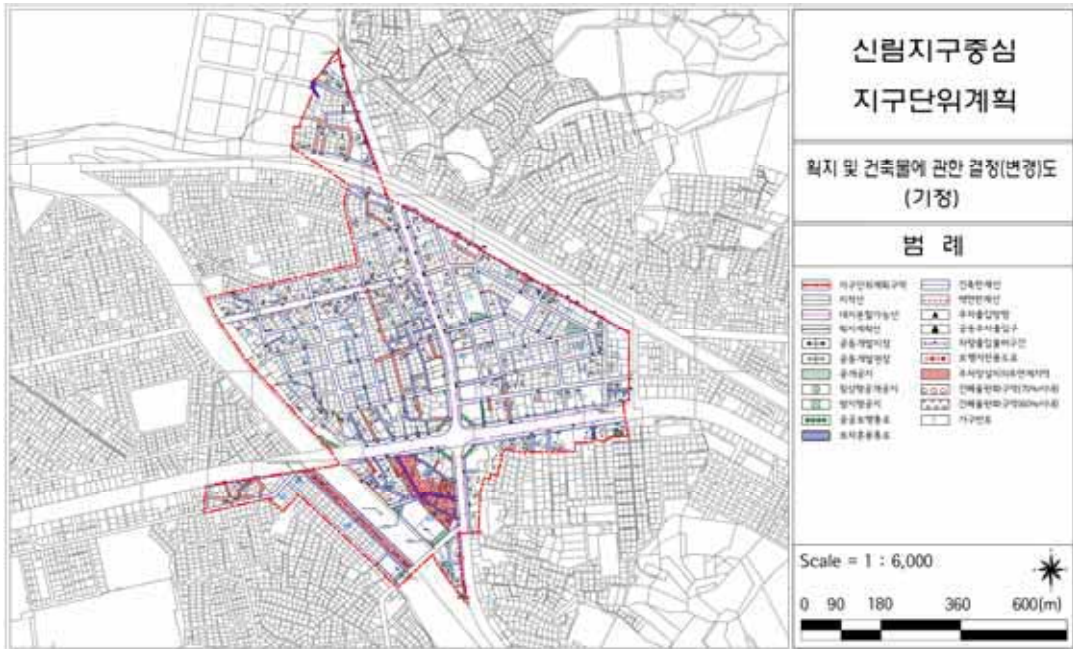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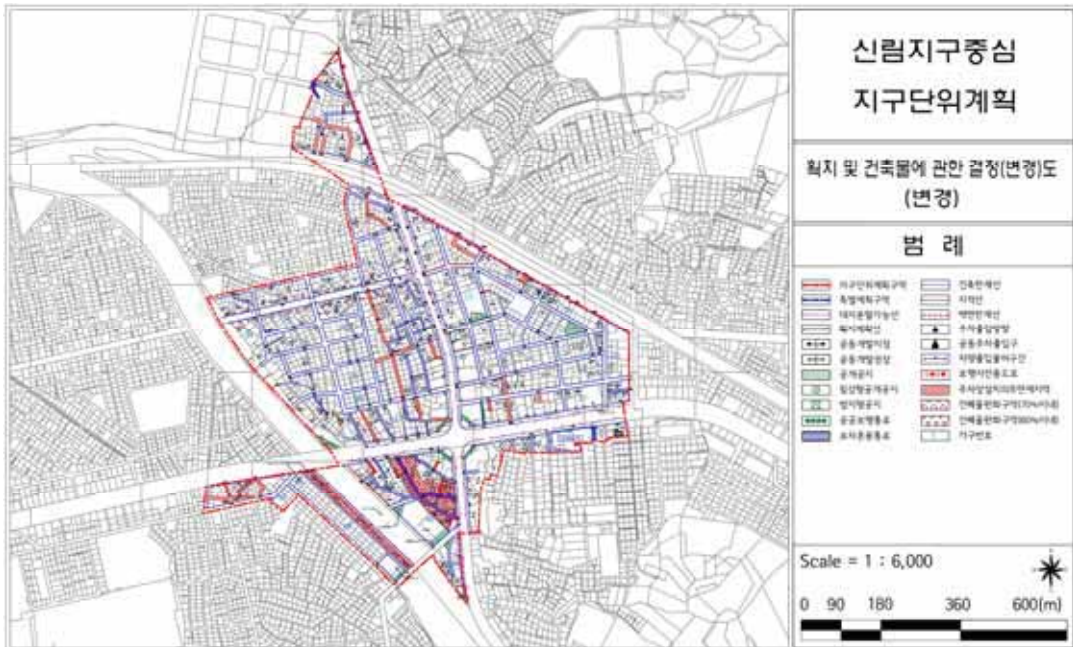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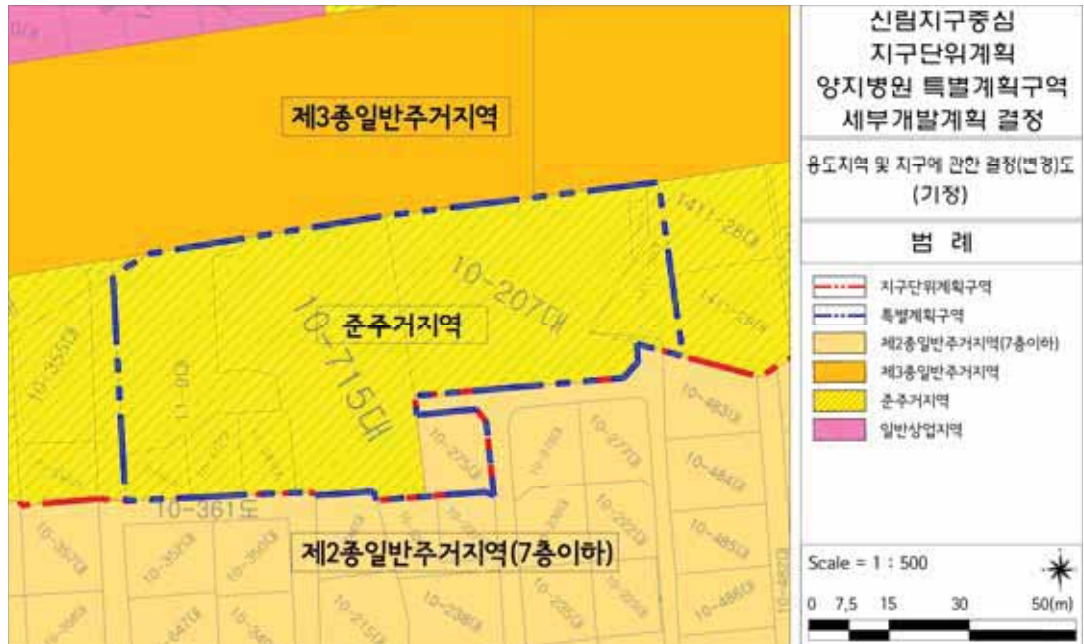
■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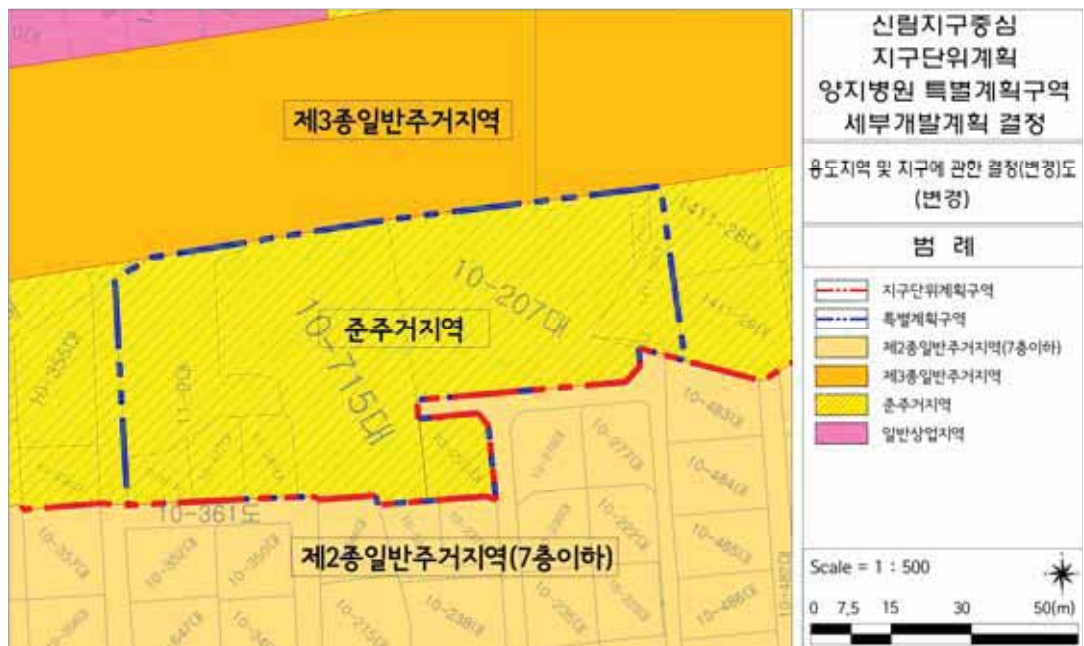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12.27.)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36호('21.12.28.)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시흥동 810번지 일대	38,859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신규)로 선정된 시흥동 810번지 일대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시흥동 810번지 일대	65,899.6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고
기정	2021. 9. 23.	38,859	· 변경되어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기존 지역 변경 없음)
변경	2021. 9. 23. (기존 지역) 2022. 12. 29. (추가 편입지역)	65,899.6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2) 또는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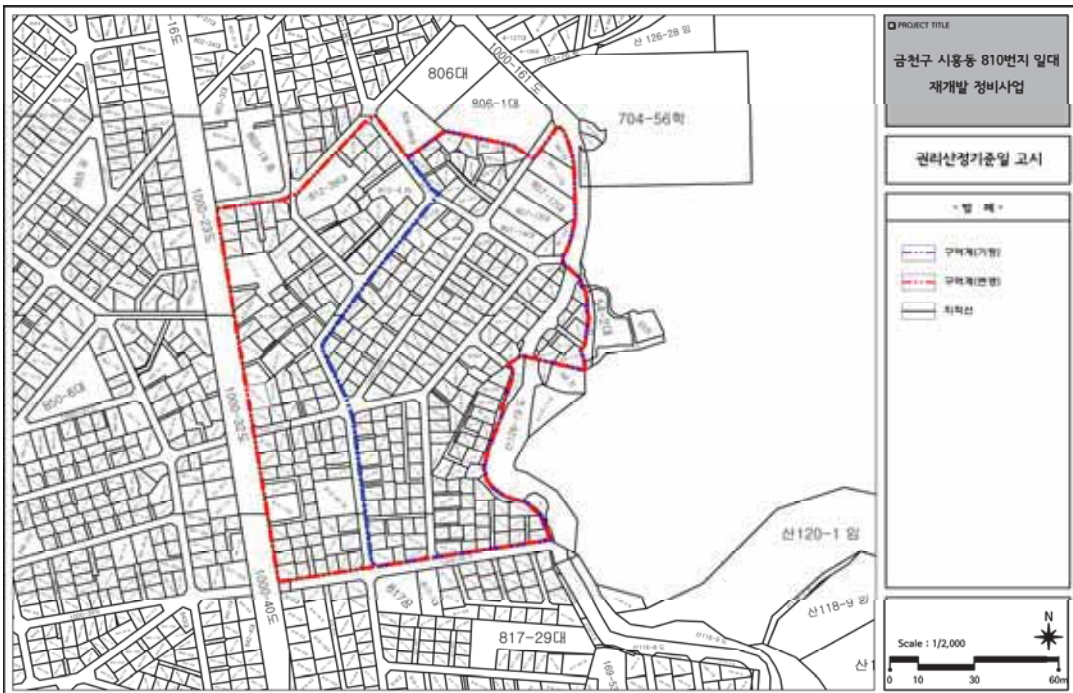
■ 관계도면

○ 시흥동810 (시흥동 810번지 일대)

- 기 정



- 변 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1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1호(2022.4.21.)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	385,352.5	-	385,352.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II.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III.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IV.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2.8	-	385,352.8	100.0	-
개발용지	소 계	244,042.8	-	244,042.8	63.3	-
	첨단업무복합	73,076.3 [5,684.0]	-	73,076.3 [5,684.0]	18.9	-
	첨단업무지원	38,591.0	-	38,591.0	10.0	-
	상업업무복합	94,995.0	-	94,995.0	24.7	-
	주 거 복 합	37,380.5	-	37,380.5	9.7	-
공공용지	소 계	141,310.0	-	141,310.0	36.7	-
	공공문화복합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공 원	13,436.7	-	13,436.7	3.5	-
	광 장	1,897.1	-	1,897.1	0.5	-
	공공공지	1,293.4	-	1,293.4	0.3	-
	주 차 장	1,037.0 (2,820)	-	1,037.0 (2,820)	0.3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입체공공시설	1,900.0	-	1,900.0	0.5	복합문화시설
	도 로	107,334.8	-	107,334.8	27.9	-

※ []는 용지내 공공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

※ ()는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면적임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27	-	4,327	10,422	-	10,422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64	-	2,664	7,032	-	7,032	세대당 : 2.64인
	60㎡ 이하	1,153	-	1,153	3,044	-	3,044	
	85㎡ 이하	1,160	-	1,160	3,062	-	3,062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85㎡ 초과	351	-	351	926	-	926	
존치 정비구역	소 계	-	-	-	-	-	-	
	60㎡ 이하	-	-	-	-	-	-	
	85㎡ 이하	-	-	-	-	-	-	
	85㎡ 초과	-	-	-	-	-	-	
존치 관리구역	-	1,663	-	1,663	3,390	-	3,390	기존세대수용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1,310.0	-	141,310.0	36.7	
교통시설	소 계	108,371.8 (2,820.0)	-	108,371.8 (2,820.0)	28.2	
	도 로	107,334.8	-	107,334.8	27.9	
	주차장	1,037.0	-	1,037.0	0.3	
	(공원지하주차장)	(2,820.0)	-	(2,820.0)	(0.7)	
	(철 도)	(4,360.0)	증) (135.0)	(4,495.0)	(1.7)	선형 조정 및 면적 변경
공간시설	소 계	16,627.2	-	16,627.2	4.3	
	공 원	13,436.7	-	13,436.7	3.5	
	광 장	1,897.1	-	1,897.1	0.5	
	공공공지	1,293.4	-	1,293.4	0.3	유치원 예비용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 계	16,311.0 (5,684)	-	16,311.0 (5,684)	4.2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1,900.0	-	1,900.0	0.5	
	광진구청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입체적공공시설 (공공청사)	(5,684)	-	(5,684)	(1.4)	

※ ()는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면적 및 공공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공공공지(유치원 예비용지)는 사업시행 인가 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위치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구분	명 칭	개 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	-	10	16,627.2	-	16,627.2	
공 원	소 계	5	-	5	13,436.7	-	13,436.7	
	소공원	2	-	2	1,118.0	-	1,118.0	
	주제공원	3	-	3	12,318.7	-	12,318.7	
광 장		2	-	2	1,897.1	-	1,897.1	
공공공지		3	-	3	1,293.4	-	1,293.4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5,352.8	-	385,352.8	100.0	
주거지역	소계	314,128.8	-	314,128.8	81.5	
	제1종일반주거지역	50,284.0	-	50,284.0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953.0	-	2,953.0	0.8	
	제2종일반주거지역	7,230.0	-	7,230.0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59.2	-	53,359.2	13.8	
	준주거지역	200,302.6	-	200,302.6	52.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1,224.0	-	71,224.0	18.5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준	최대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업무, 주거	60이하	173	493.6	- / -	15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업무	60이하	400이하		- / -	100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321	500 (444)	- / -	100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업무, 주거	60이하	164	399	- / -	100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250	400	- / -	100	

※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 적용시 최대용적률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없음)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원 및 광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준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47.8	113,242.8	61,689.0	30,105.5	8,295.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234.0 (-14,153)	27.3 (-8.4)
촉진 구역	소 계	169,247.8	113,242.8	61,689.0	30,105.5	8,295.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234.0 (-14,153)	27.3 (-8.4)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	58,443	25,388 {26,755}	15,609	4,095	-	5,684 [5,646] {7,051}	-	- (4,112)	- (12,394)	25,388 (8,882) {26,755}	32.5 (11.4) {34.2}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	-	15,266	855	-	-	14,411	-	948	14,318	-	-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원 및 광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2.2	8,315.4	2,496.8	1,561.8	소공원 862	73	-	-	24.6	164.4	2,307.8	21.3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55,151	38,591	16,560 {20,406}	11,090	2,820 [5,640] {4,327}	750	-	1,900 [5,900] {4,239}	- (13,466)	- (30,415)	16,560 (-27,321) {20,406}	30.0 (-49.5) {37.0}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주1) []:입체공공시설,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의 건축 연면적

주2)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1,367㎡), 자양5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2,339㎡) 및 지하주차장(1,507㎡)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행복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2,664	1,561	803	562	241	-	30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64	1,561	803	562	241	-	30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363	631	432	289	143	-	30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	-	-	-	-	-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840	538	302	233	69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78,147.0	-	78,147.0	-

(2)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8,147.0	-	78,147.0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9,704.0	-	19,704.0	25.2	-
	도 로	15,609.0	-	15,609.0	20.0	
	공 원	4,095.0	-	4,095.0	5.2	
획지	소 계	58,443.0 [5,684.0]	-	58,443.0 [5,684.0]	74.8	-
	획 지 1-1	55,348.0 [5,684.0]	-	55,348.0 [5,684.0]	70.8	-
	획 지 1-2	3,095.0	-	3,095.0	4.0	행복주택

※ []는 공공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도로	264 [675]	자양동781-4 [자양동216-26]	자양동245-12 [구의동244-6]	1966.6.21	아차산로
변경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도로	1,200 [264]	자양동216-26 [자양동781-4]	구의동244-6 [자양동245-12]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도로	152 [435]	자양동683-9 [자양동680-72]	구의동592-39 [구의동592-3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뚝섬로
변경	중로	1	450	25	보조간선도로	575 [152]	자양동680-72 [자양동683-9]	구의동593-20 [구의동592-39]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592-39	자양동781-1		아차산로58길 (새마을길)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157 [434]	자양동680-81 [자양동716]	구의동591-29 [구의동591-29]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변경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157]	자양동716 [자양동680-81]	구의동591-29 [구의동591-29]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332 [408]	자양동680-81 [자양동683-6]	자양동781-4 [자양동781-4]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변경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332]	자양동683-6 [자양동680-81]	자양동781-4 [자양동781-4]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는 자양1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변경사유 : 기 결정 내용의 오기 정정

■ 철 도(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시청	잠실역	-	48.8km	-	건고 제203호 (1975.12.20.)	-
기정	②	구의동 정차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	210m	4,360㎡	건고 제232호 (1977.12.01.)	대3-54와 중복결정
변경	②	구의동 정차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	210m	4,495㎡	건고 제232호 (1977.12.01.)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폭(m)	연장	높이	면적	
신설	②	구의동 정거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5.6	29	19.0~31.9	157.4	-
세부 사항	○ 입체적결정 범위 - 지상부 : A = 152.3㎡(증 152.3㎡) / H = 해수면기준(+)21.15m~31.9m - 지하부 : A = 119.1㎡(증 119.1㎡) / H = 해수면기준(+)19.0m~21.15m								

※ 기정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추가한 사항(최초결정일 : 1977.12.01. [건설부고시 제232호])

■ 공 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	소공원	자양동 781-3 일대	256	-	256	서고제2009-225호 (2009.6.4)	
기정	③	-	소공원	자양동 680-83 일대	605	-	605	-	
기정	⑥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234	-	3,234	서고제2009-225호 (2009.6.4)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④	공공청사	자양동 680-63 일대	대지 지분	5,684	-	5,684	서고 제2017-332호 (2017.9.14)	
				층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연면적	32,908	-	32,908		

※ 공공청사 대지지분 및 연면적은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78,147.3	-	58,443.3 [5,684]	자양동 680-63 번지 일대	15	-	-	15	-	

※ []는 공공청사 복합화(광진구 종합청사)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78,147	1-1	55,348 [5,684]	자양동 680-63번지일대	510,000 이하	업무, 주거	60 이하	493.6 이하	150 이하	
			1-2	3,095							
건축물 용도별 비율 (지상연면적 기준)			주거		상업			업무			교육·연구, 문화·집회등
					합계	판매	숙박	합계	일반업무 (오피스텔 5%)	공공 업무	
			48.1%		11.7%	6.6%	5.1%	35.0%	25.4%	9.6%	5.2%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일반주택 : 631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270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361세대 · 임대주택 : 432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14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289세대 · 행복주택 : 300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300세대 ○ 건설비율 · 일반주택 : 46.3% · 임대주택 : 31.7% · 행복주택 : 22.0% ○ 건립예정세대수 : 1,363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는 공공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연면적은 지상지하 연면적 포함 면적임

(4)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결정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18년	토지등소유자	1,258	이상없음	현황세대 (99)

나)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2.5	-	385,352.5	2006.10.19 (서고제2006-357호)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2.5	-	385,352.5	100.0
주거지역	소 계	314,128.5	-	314,128.5	81.5
	제1종일반주거지역	50,284.0	-	50,284.0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53.0	-	2,953.0	0.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7,230.0	-	7,230.0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59.2	-	53,359.2	13.8
	준주거지역	200,302.3	-	200,302.3	52.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1,224.0	-	71,224.0	18.5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81,187.9	-	181,187.9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기 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 일대	47,824.7	-	47,824.7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 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55,151	-	55,151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1	16	35~38	주간선 도로	5,910 (664)	성동교 (자양동219-18)	자양동 강변 (자양동680-72)	1972.9.1	아차산로 자양로
기정	대로	3	90	29~34	보조간선 도로	1,650 (310)	모진동 (자양동779-7)	능동 (자양동769-8)	1971.4.7	자양로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 도로	1,200 (675)	구의동 (자양동216-26)	광장동 (구의동244-6)	1966.6.21	아차산로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 도로	575 (435)	자양동680-72 (자양동680-72)	구의동593-20 (구의동592-3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뚝섬로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592-39	자양동781-1		아차산로 58길 (새마을길)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자양동 683-6	자양동 781-4	"	
기정	중로	3	470	12	국지도로	270	자양동 680-86	자양동 680-83	"	
기정	소로	2	구의1	8	국지도로	170	자양동 779-2	자양동 779-24	"	
기정	소로	2	구의2	8	국지도로	70	구의동246-104	구의동 246-25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구의3	8	국지도로	70	구의동 246-63	구의동 246-25	"	
기정	소로	2	구의4	8	국지도로	72	구의동 246-3	구의동 246-1	"	
기정	소로	3	구의1	6~8	국지도로	346	자양동 778-18	자양동 777-1	"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구의동 243-78 일대	1,037.4	-	1,037.4	서고제2002-162호 (2002.5.8)	-
기정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자양동 680-81 일대	2,820	-	2,820	서고제2018-15호 (2018.1.18)	중복결정 ●지상 : 문화공원 ●지하 : 노외주차장 - 지하1층 ~ 지하2층

(3) 철도 (변경)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시청	잠실역	-	48.8km	-	건고 제203호 (1975.12.20.)	-
기정	②	구의동 정차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	210m	4,360㎡	건고 제232호 (1977.12.01.)	대3-54와 중복결정
변경	②	구의동 정차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	210m	4,495㎡	건고 제232호 (1977.12.01.)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폭(m)	연장	높이	면적	
신설	②	구의동 정거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등부지원) 앞	5.6	29	19.0~31.9	157.4	-
세부사 항	○ 입체적결정 범위 - 지상부 : A = 152.3㎡(증 152.3㎡) / H = 해수면기준(+)21.15m~31.9m - 지하부 : A = 119.1㎡(증 119.1㎡) / H = 해수면기준(+)19.0m~21.15m								

※ 기정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추가한 사항(최초결정일 : 1977.12.01. [건설부고시 제232호])

■ 철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도시철도)	• 면적 및 선형 변경 - 증) 135㎡ • 입체적결정 신설 - 증) 157.4㎡	• 현행과 기정 도시계획시설(철도)이 상이한 부분 등을 정정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내 보행편의시설 및 연결통로 설치 계획을 반영(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 2018.11.29.) • 구의역 3번 출입구 개선 및 연결브릿지를 설치하는 사항임

(4)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광장	교통 광장	구의동 245-7 일대	518.1	-	518.1	서고제2009-225호 (2009.6.4)	-

(5)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	소공원	자양동 776-5 일대	862	-	862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②	-	소공원	자양동 781-3 일대	256	-	256	서고제2009-225호 (2009.6.4)	
기정	③	-	소공원	자양동 680-83 일대	605	-	605	서고제2017-332호 (2017.9.14)	-
기정	④	-	문화공원	자양동 680-81일대	2,820	-	2,820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중복결정 • 지상 : 문화공원 • 지하 : 주차장 - 지하1 ~ 2층
기정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234	-	3,234	서고제2009-225호 (2009.6.4)	

(6)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⑤	공공공지	구의동 244-4 일대	467	-	467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⑥	공공공지	자양동 776-25 일대	73	-	73	서고제2012-143호 (2012.5.31)	-
기정	⑦	공공공지	자양동 680-81 일대	750	-	750	서고제2018-15호 (2018.1.18)	-

(7)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	자양동 680-65일대	44,728	-	44,728	서고제1985-847호 (1985.12.13)	우편집중국
기정	③	공공청사	-	자양동 777일대	14,318	-	14,318	2009.6.4	광진구청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①	50%이하	150%이하	4층 이하	우편집중국
③	60%이하	400%이하	100m 이하	광진구청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④	공공청사	자양동 680-63 일대	대지 지분	5,684	-	5,684	서고 제2017-332호 (2017.9.14)	
				층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연면적	32,908	-	32,908		

※ 공공청사 대지지분 및 연면적은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8) 문화시설 (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②	문화시설	자양동 680-81일대	1,900	-	1,900	서고제2009-225호 (2009.6.4)	-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②	60%이하	400%이하	30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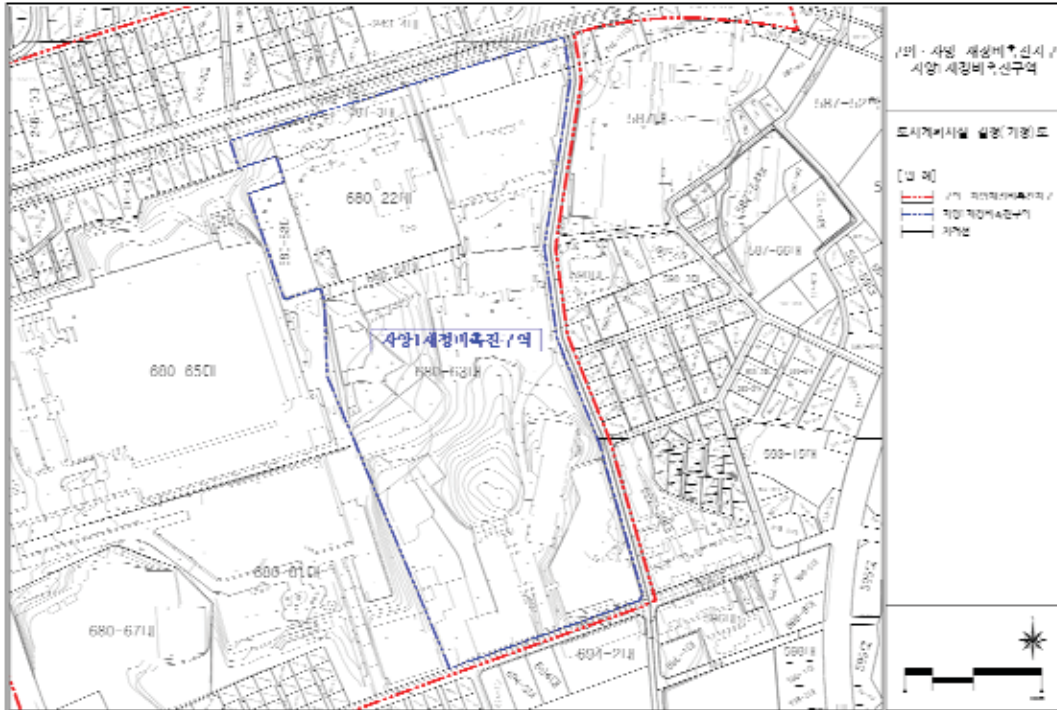
IV.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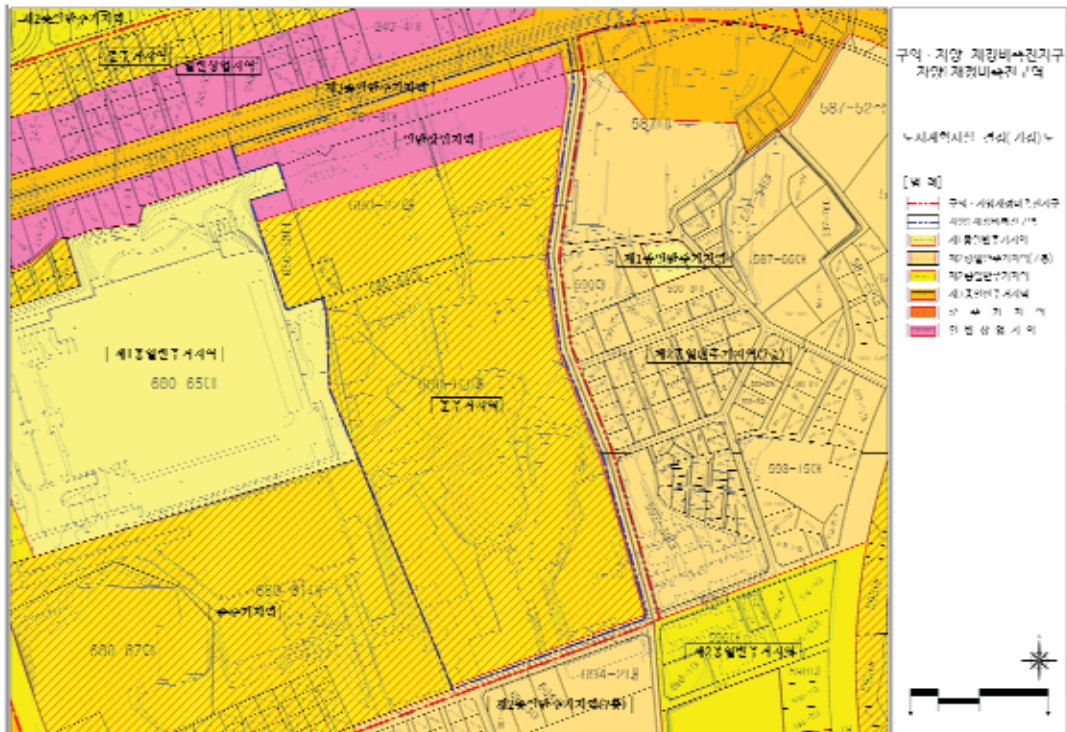
V.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 도서로 갈음)

V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8)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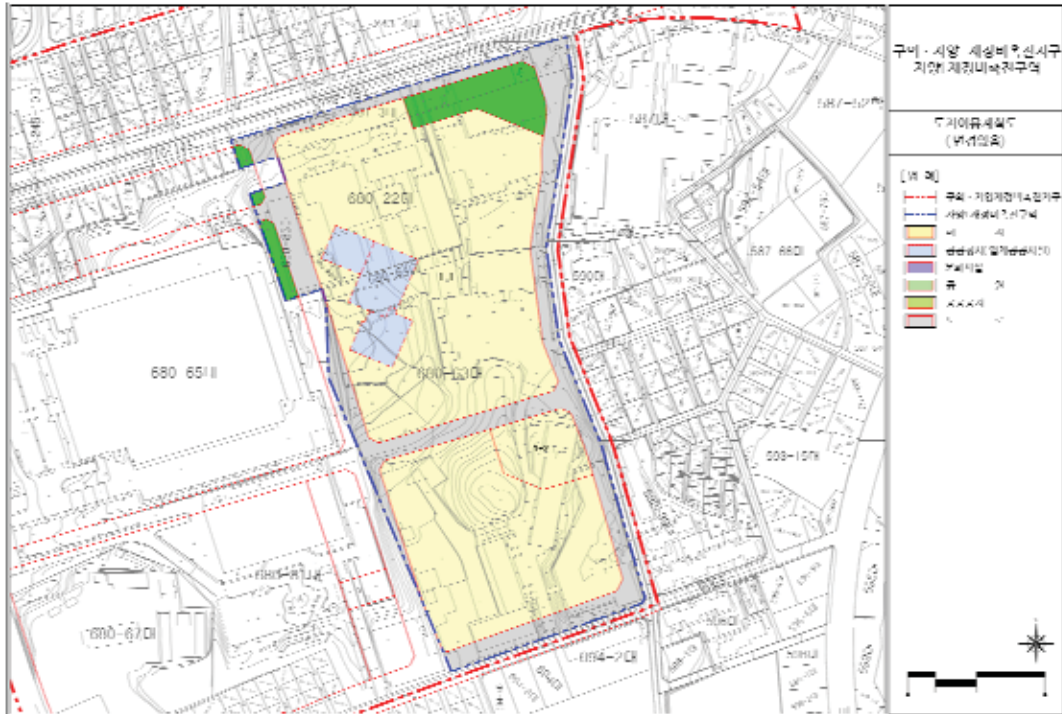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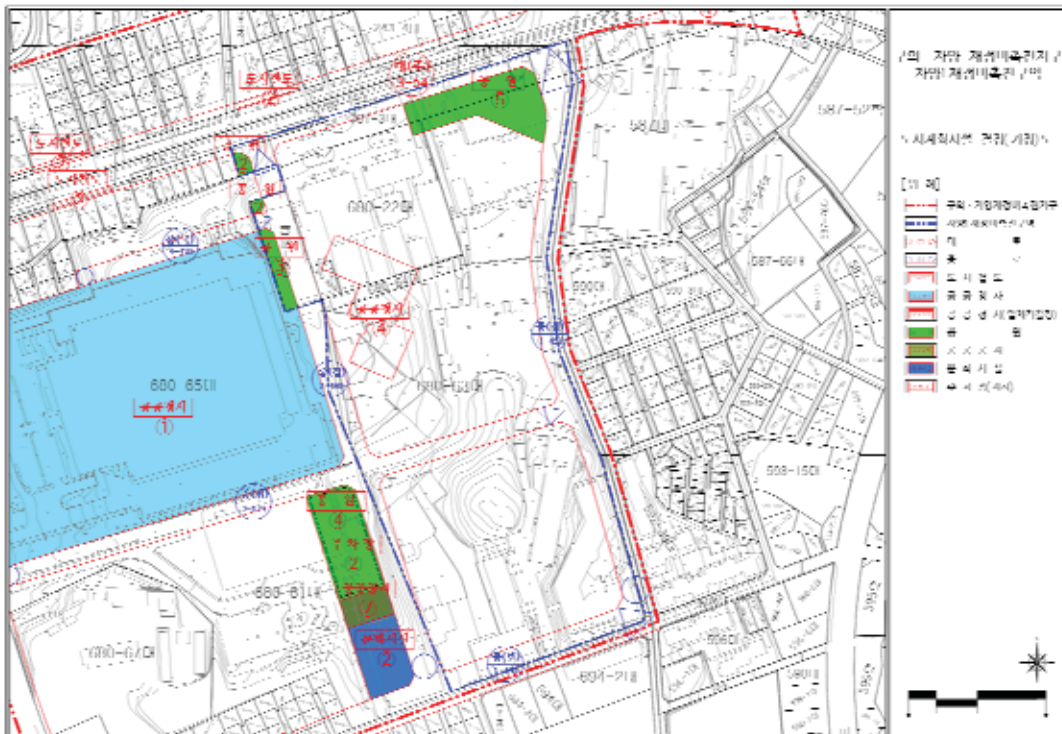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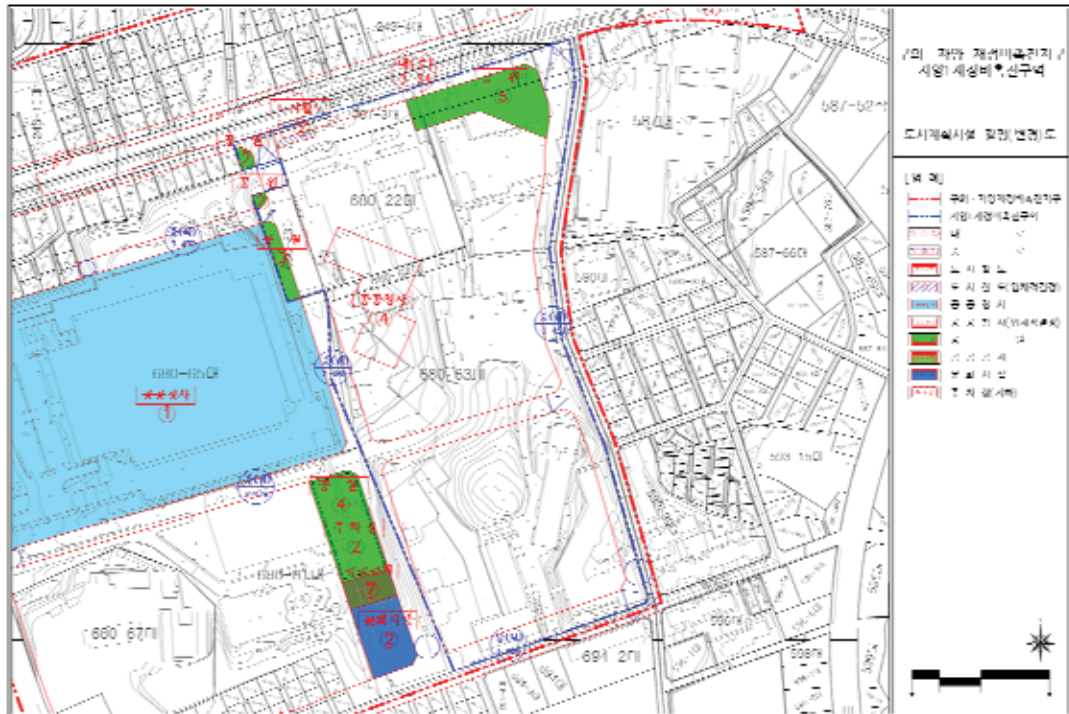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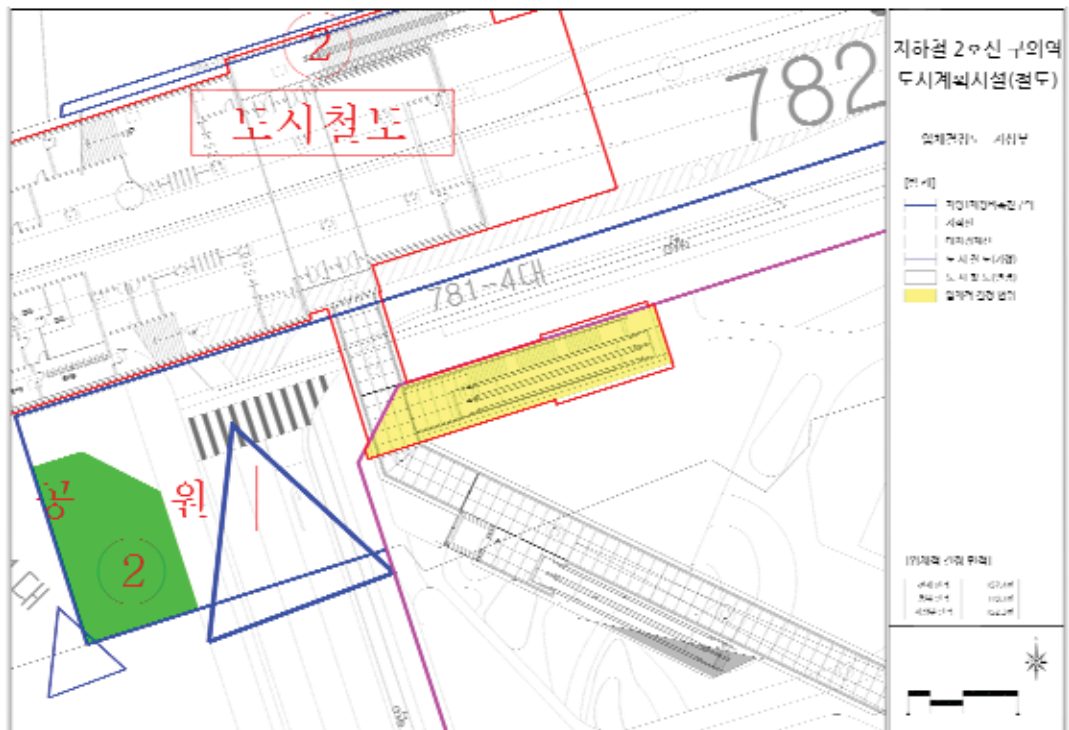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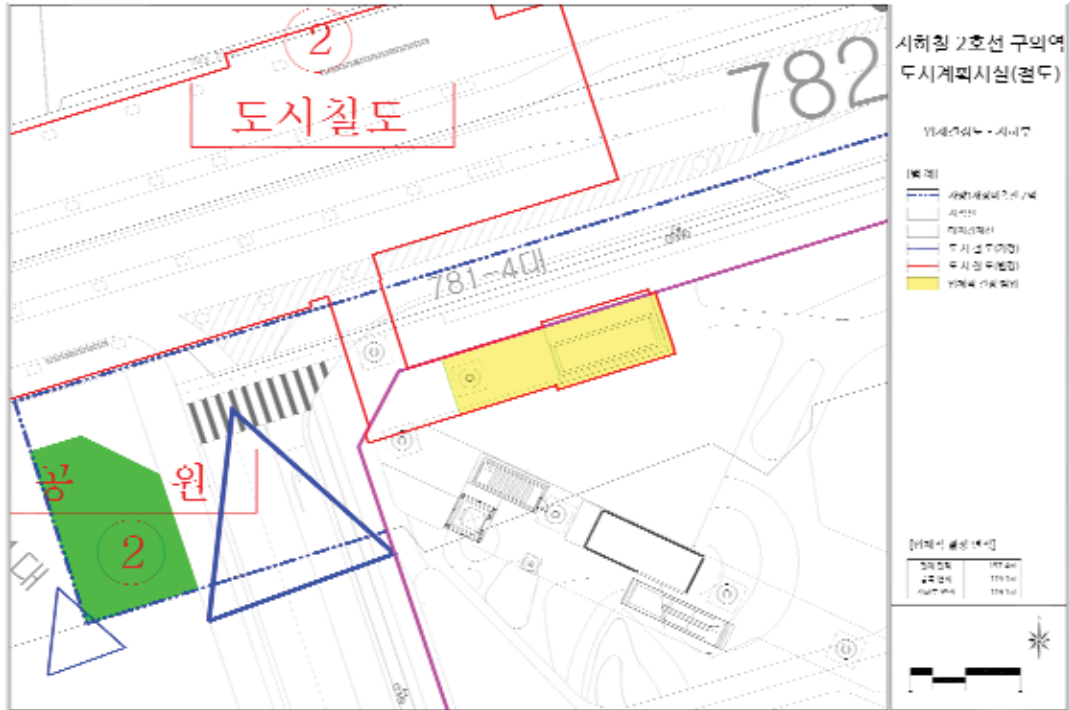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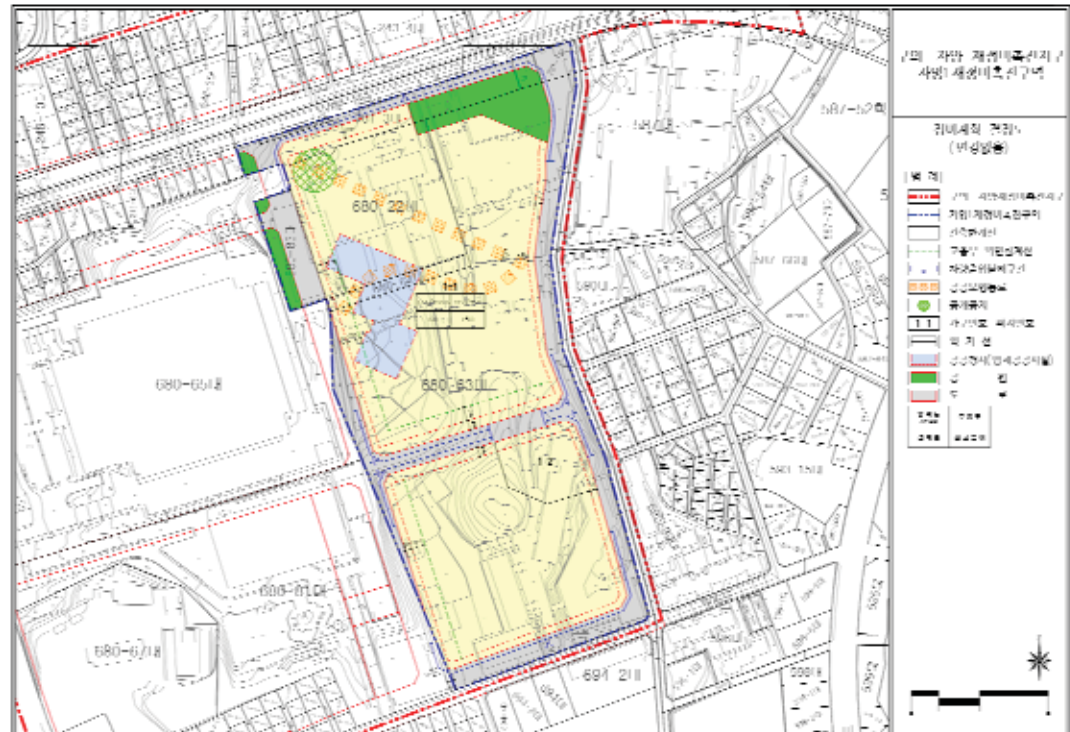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도(지상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도(지하부)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2호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4호(2017.5.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3호(202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4호(2020.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5호(2022.3.17.)로 고시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변경없음)

가. 지역의 명칭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동 일대	332,472㎡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변경)

가. 계획의 명칭 : 변경없음

나. 계획의 목표 : 변경없음

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변경)

1)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변경)

구분	단위사업명	기정	변경	비고
마중물사업	주민역량강화	' 16 ~ ' 20	' 16 ~ ' 21	

※ 전체 19개 단위사업 중 1개 단위사업 사업기간 변경

2) 도시재생사업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마중물 사업 : 3개 핵심콘텐츠, 8개 사업(변경)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지역 공동체 문화활성화 기반 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원	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및 역량강화 사업	550	275	275	-	-	기정
			497	113	384	-	-	변경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 가는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102	51	51			기정	
			97	-	97	-	-	변경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	2,260	1,130	1,130	-	-	기정	
			2,260	-	2,260			변경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신흥시장 활성화	물리적환경개선, 콘텐츠 발굴 등	2,015	1,007.5	1,007.5	-	-	기정	
			2,271	2,271	-	-	-	변경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브랜드개발 및 온라인 마켓 플랫폼 구축, 공동판매장 조성 등	237	118.5	118.5	-	-	기정	
			240	110	130	-	-	변경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테마가로 디자인포장, 가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1,980	990	990	-	-	기정	
			1,959	1,003	956			변경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정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 범죄예방 안전시설 설치 등	1,395	697.5	697.5	-	-	기정
				1,288	895	393			변경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녹색골목길 디자인 개발, 골목길 녹화, 옥상전망대 조성	1,461	730.5	730.5	-	-	기정	
			1,388	608	780	-	-	변경	
마중물사업 소계			10,000	5,000	5,000	-	-		

○ 연계(협력)사업 : 11개 사업(변경)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복합화)	시 공영주차장 복합화 (주차장+커뮤니티시설)	2,690	-	1,883	807		
	군인아파트 활용	웅산공원(예정)과 해방촌에 연계한 군인아파트 활용방안 마련	-	중·장기 추진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지역내 공공시설물 간판 개선	60	-	60	-	-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신흥시장 부분적 환경 개선	1,624	-	1,624	-	-	기정
			1,368	-	1,368	-	-	변경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상가 리모델링 지원 및 임대기간 보장/임대료 제한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공중선 정비	해방촌 테마가로 공중선 정비	663	-	-	-	663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모델링 지원 및 임대기간 보장/임대료 제한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신흥로 도로포장 정비	450	-	450	-	-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후도가 심한 하수관 정비	1,108	-	1,108	-	-	기정
			897	-	897	-	-	변경

	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개량	주택슬레이트지붕 정비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보성여중교교, 용암초교 화장실	470	-	430	40	-	
연계사업 소계			7,065	-	5,555	847	663	기정
			6,598	-	5,088	847	663	변경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마. 예산 집행 계획(변경)

○ 마중물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000	1,348	389	2,220	3,868	2,175	-	기정
		10,000	2,167	386	1,130	4,004	2,267	46	변경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원	550	175	165	80	70	60	-	기정
		497	146	108	65	57	115	6	변경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150	-	19	50	50	31	-	기정
		97	17	-	21	-	19	40	변경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2,260	1,134	44	1,082	-	-	-	기정
		2,260	1,986	100	-	174	-	-	변경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신흥시장 활성화	2,015	-	-	-	1,769	246	-	기정
		2,271	-	2	9	1,769	491	-	변경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237	19	20	23	64	111	-	기정
		240	18	20	23	63	116	-	변경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1,980	-	89	1,013	878	-	-	기정
		1,959	-	89	1,012	858	-	-	변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395	-	50	-	350	995	-	기정
		1,288	-	47	-	346	895	-	변경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1,461	-	21	-	737	703	-	기정
		1,388	-	20	-	737	631	-	변경

○ 연계(협력)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7,065	1,693	430	738	500	1,040	474	2,190	기정
		6,598	1,693	430	527	500	784	474	2,190	변경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복합화)	2,690	-	-	-	-	26	474	2,190	
	군인아파트 활용	-	중·장기추진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60	-	60	-	-	-	-	-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1,624	110	-	-	500	1,014			기정
		1,368	110	-	-	500	758			변경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공중선 정비	663	663	-	-	-	-	-	-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50	450	-	-	-	-	-	-	
	하수관로 유지관리	1,108	-	370	738	-	-	-	-	기정
		897		370	527	-	-	-	-	변경
	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개량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470	470	-	-	-	-	-	-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변경없음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8),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3)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공고-서울시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12.27.)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6호('21.12.28.)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5동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192,670	·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동 154-3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198,160.6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1. 9. 23.	192,670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1. 9. 23. (기존 구역) 2022. 12. 29. (추가 구역)	198,160.6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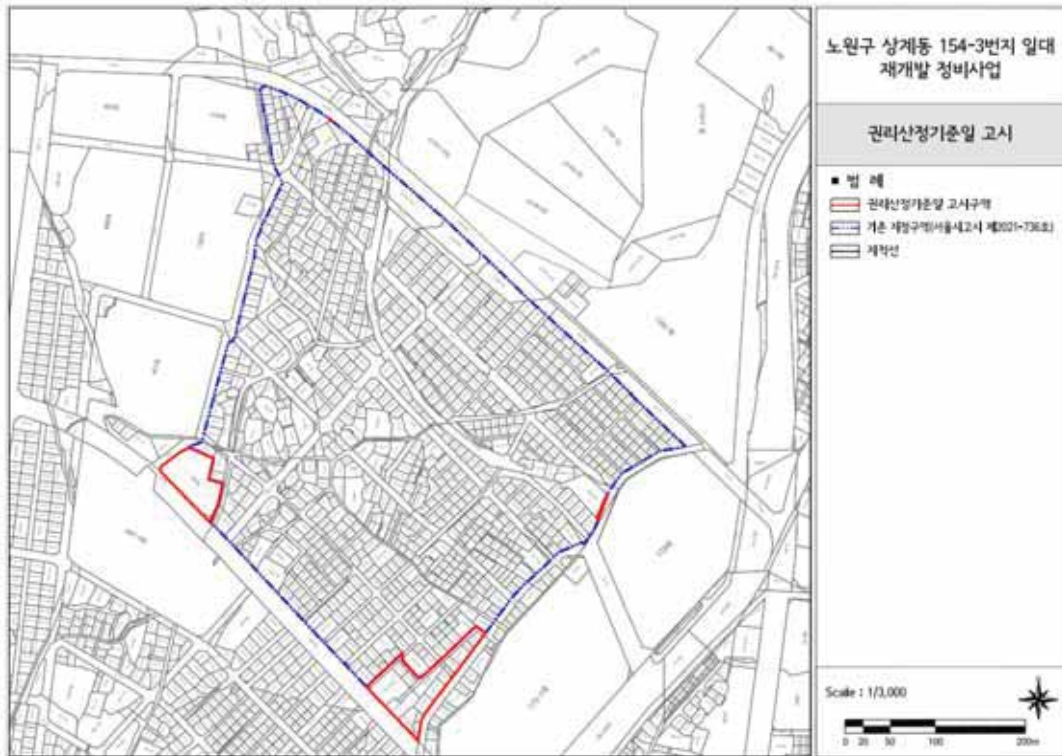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3) 또는 노원구 도시재생과(☎02-2116-39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상계5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12.27.)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6호('21.12.28.)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71,860	·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 된 홍은동 8-400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 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 경
변경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96,780.8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1. 9. 23.	71,860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1. 9. 23. (기존 구역) 2022. 12. 29. (추가 구역)	96,780.8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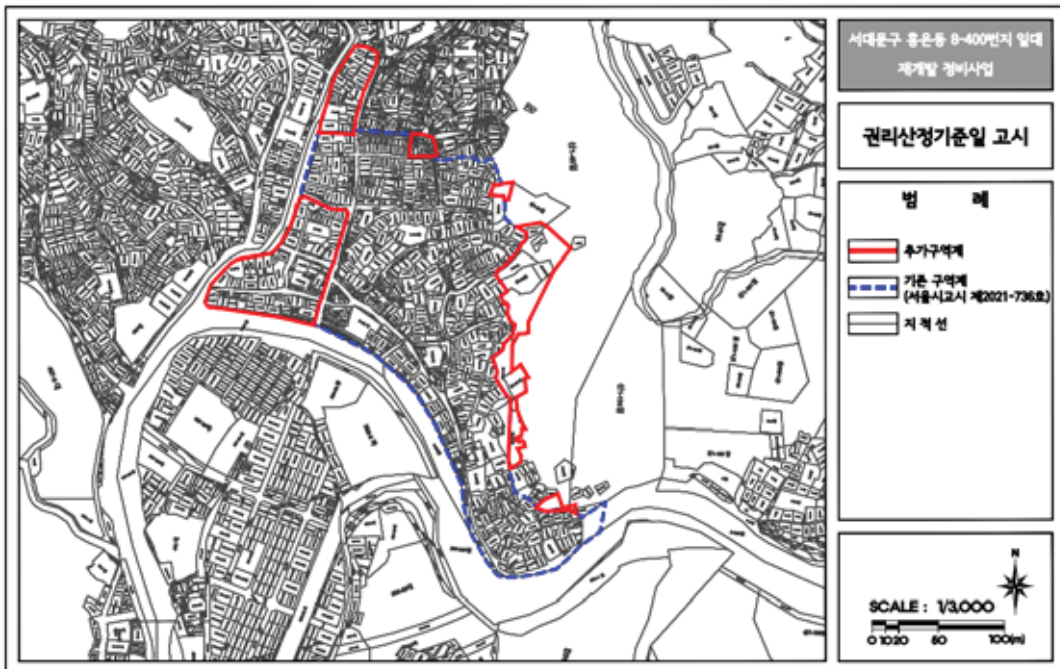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3) 또는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02-3140-8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홍은동 8-400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376호

도시관리계획(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02-2133-9443),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42)

다. 열람내용

1)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동·서빙고동, 용산동 6가 일대	-	증 212,581.2	212,581.2	-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는 서울시 누리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도서로 같음)

마. 본 열람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02-2133-9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2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승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40번길 31, A동 10*호(십정동, 금호빌라)	위반일시: 2022-08-13 09:53 위반장소: 은평구 수색로 282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4m, 초과값:0.24m 인천80자732*)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2-09-26 납기일: 2022-11-30
박병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80길 3*(독산동)	위반일시: 2022-09-01 10:47 위반장소: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앞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25t, 초과값:1.25t, 경기06코715*)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2-09-26 납기일: 2022-11-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23. 0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0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40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열람공고**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2019.6.7.)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 사업계획변경 정정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2020.7.14.)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 중 정정(2020.7.1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1-2호(2021.2.18.)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4호(2021.9.27.) 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4호(2022.9.2.) 사업계획 변경승인 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통지받을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불능 등으로 미수령 한 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오남읍 양지리·오남리. 별내동 일원

나. 규모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면적 387,059.15㎡ - 차량기지 면적 197,400㎡ - 인입선 연장 4.9km -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0.608km	도시계획시설 면적 391,864.65㎡ - 차량기지 면적 197,400㎡ - 인입선 연장 4.9km -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0.608km - 우회터널 신설 0.377km 및 현업 사무실 위치 변경 4,805.5㎡ ※ 기존 도로 매입 717.8㎡	우회터널 신설 및 현업사무실 위치변경 및 기존 도로 매입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장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 진접선(당고개 ~ 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인입선)	진접읍 금곡리 853-2	진접읍 금곡리 산50-12	-	4,768	71,192.15	변경없음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차량기지)	진접읍 금곡리 산50-12	진접읍 금곡리 산37-4	-	1,329	303,899	변경없음
기정	다	철도	도시철도 (유치선)	별내동 산207-25	별내동 산237-12	-	608	9,661.0	변경없음
기정	라	철도	도시철도 (관리소)	별내동 산255	별내동 산255	-	41	2,307.0	
변경	라	철도	도시철도 (관리소)	별내동 산239-5	별내동 산239-5	-	43	2,826.4	위치변경
신설	마	철도	도시철도 (우회터널)	별내동 산237-12	별내동 산239-4	-	377	4,286.1	금회신설

☐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	일반철도 (인입선)	- 변경없음 · 면적 : 71,192.15㎡ · 연장 : 4,768m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시설결정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나	일반철도 (차량기지)	- 변경없음 · 면적 : 303,899㎡ · 연장 : 1,329m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시설결정
다	도시철도 (유치선)	- 변경없음 · 면적 : 9,661㎡ · 연장 : 608m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시설결정
라	도시철도 (관리소)	- 변경 · 면적 : 2,307㎡ → 2,826.4㎡ · 연장 : 41m → 43m	·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등 유지보수 시 운영에 필요한 관리 소 확보 및 신규부지로 위치 변경
마	도시철도 (우회터널)	- 신설 · 면적 : 4,286.1㎡ · 연장 : 377m	·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운영에 따른 우회터널 신설

나)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68	중로2-14	별내동 산235-53	일반도로		건고514호 (06.12.7)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268	중로2-14	별내동 산235-53	일반도로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	소로3-1	- 변경 · 연장 : 268m · 면적 : 1,619.0㎡ → 1,647.1㎡ (증) 28.1㎡	우회터널 신설 및 현업사무실 위치변경 등에 따른 시설결정

2) 공간시설

□ 도시·군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별내동 805-3	1,855.5	감)28.1	1,827.4	국고5호 (15.01.12)	

□ 도시·군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경관녹지	-변경 면적 : 1,855.5㎡ → 1,827.4㎡ 감) 28.1㎡	· 우회터널 신설 및 현업사무실 위치 변경 등에 따른 시설결정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조서 참조

◦ 변경사유

－ 우회터널 신설 및 현업사무실 위치 변경 등

7.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8. 열람도서 : 토지조서, 종·평면도, 용지도 등

9.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38)

10. 기타사항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있음)

○ 사 업 명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 소 재 지 : 경기도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본선(변경없음)														
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 5	임	566,975	-	1,645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아파트 102-506	김유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해수면(+100) 152.18m ~ 126.82m	터널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 37번길 49-20	김기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20길 52-5, 101동 701호	김기수	구분지 상권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102동 3002호	정도혁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 5	임	566,975	-	1,645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아파트 102-506	김유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해수면(+100) 152.18m ~ 126.82m	터널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 37번길 49-20	김기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20길 52-5, 101동 701호	김기수	구분지 상권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102동 3002호	정도혁					
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	임	911,482	-	7,294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303호 (한남동,힐탑트레져2동)	김기수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해수면(+100) 143.72m ~ 121.72m	터널
										구분지 상권		국토교통부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	임	911,482	-	7,294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303호 (한남동,힐탑트레져2동)	김기수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해수면(+100) 143.72m ~ 121.72m	터널
										구분지 상권		국토교통부		
3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 2	임	61,690	-	72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57번길 7, 401호(별내동)	안종윤	구분지 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3.24m ~ 121.24m	터널, 경사경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7-1 2	임	58,384	-	72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57번길 7, 401호(별내동)	안종윤	구분지 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3.24m ~ 121.24m	터널, 경사경
계				기정	1,540.14 7	-	9,661							
				변경	1,536.84 1	-	9,661							
관리소(변경있음)								-						
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산255	임	33,591	2,307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64	죽산안 씨내송 공파중 중	구분지 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관리소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변경	남양주 시 별내동	산255	임	33,591	-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117-64	죽산안 씨내승 공파중 증	구분지 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 사		
계				기정	33,591	2,307	-							
				변경	33,591	-	-							
관리소(신규 추가)														
1	기정													
	변경	남양주 시 별내동	2189	답	694.0	602.2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관리소
2	기정													
	변경	남양주 시 별내동	산238-1 2	임	2,370.0	122.6	-	건설교통부	국					관리소
3	기정													
	변경	남양주 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1,803.6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근	구분지 상권	국토교통부	국		관리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33길 80(상봉동)	이효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303호 (별내동,쌍용에가아파트)	이도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6, 5313동 602호(별내동,별내하우스토리아 파트)	박진해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기정													
4	변경	남양주 시 별내동	산240	임	298.0	298.0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 (별내동)	이정희					관리소
계				기정			-							
				변경	19,875.0	2,826.4	-							
우회터널(신규 추가)														
1	기정													
	변경	남양주 시 별내동	산237-1 2	임	58,384.0	-	367.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57번길 7, 401호(별내동)	안종윤	지상권, 구분지 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 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5.05m ~ 156.16m	터널, 우회터 널
2	기정													
	변경	남양주 시 별내동	산237-8 5	임	3,306.0	-	26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5, 5703동104호(창곡동,힐스테이 트이레)	김재현	구분지 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 사 국토교통부	해수면(+100) 145.09m ~ 152.95m	우회터 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 1동 1803호(도곡동, 우성캐릭터 199.)	김범준					
3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	임	15,235.0	1,824.6	809.9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 (별내동)	이정희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해수면(+100) 155.40m ~ 170.09m	우회터 널, 갱구부
4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3	임	7,636.0	139.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112동1501호(장안동, 장안현대 홈타운)	이정희	요역지 역권				우회터 널, 갱구부
5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4	임	807.0	412.7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희 이정모	지역권				우회터 널, 갱구부
6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	469.9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근	구분지 상권	국토교통부	국	해수면(+100) 150.78m ~ 160.78m	우회터 널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80 (상봉동)	이효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303호 (별내동, 쌍용에가아파트)	이도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6, 5313동 602호 (별내동, 별내하우스토리아파트)	박진해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계				기정		-									
	변경	101,881.0	2,377.2	1,908.9											
기준 도로(신규 추가)															
1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805-3	공	1,855.5	28.1	-	남양주시	공						
2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47	임	446.0	144.2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6번길 28-5, 202호(별내동)	조정제						
3	기정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비고
						수용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4 8	임	150.0	150.0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4(별내동)	조정제					
4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8-5 3	임	258.0	66.2	-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254-38(별내동)	안원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5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4	임	807.0	9.9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6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산239-5	임	16,513.0	50.2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효근	구분지 상권	국토교통부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80 (상봉동)	이효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2동	이도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71(별내동)	황창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16, 5313동	박진해					
								602호(별내동, 별내 하우스토리아 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6(별내동)	이정모					
7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2189-4	도	300.0	111.1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254-38(별내동)	안원주					
8	기정													
	변경	남양주시 별내동	2189-6	임	220.0	158.1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45-93(별내동)	이정희	지역권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1로 254-38(별내동)	안원주					
계				기정			-							
				변경	20,549.5	717.8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4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처분통지서를 법인 소재지 및 대표 주소지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2022.12.29.~2023.1.12.

2. 송달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쥬디에스아키 종합건설 (김양열)	건축공사업 01-4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4길 11, 2층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실효)	제10조 제4호	영업정지 6개월 (2023.1.16. ~2023.7.15.)	제83조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5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 이상 승무하지 않도록 배차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후 24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운수종사자 실명제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카드 결제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 승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운전 자격증명 반납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5일(퇴직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법인택시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특별시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말(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고급 택시 및 대형승합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사업자는 1개월간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GPS 기반 애플미터기 운영	○ 택시사업자는 GPS 기반 애플미터기를 의무적으로 택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애플미터기는 자동차관리법 상 어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의미 – 애플미터기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통신규약을 준수 ○ 애플미터기를 설치(운영)하는 택시 내에 전기식 미터기가 포함된 통합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림막과 봉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시속 120km/h 이상 주행시 과속 경보음 발생 기능 탑재 ○ 애플미터기는 GPS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하여야 한다.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마그네틱 카드 및 IC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단 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 － 선·후불교통카드 인식 터치패드(교통카드 리더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다만, 고급택시 및 대형승합택시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별도의 위치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한다. ○ 설치된 카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차고지 밖 교대 금지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차고지 밖 교대금지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신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차고지 밖 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운수종사자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 후 증빙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확립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 내·외부 광고부착물 (공익성 홍보물 포함) ☐ 택시내·외부 광고부착물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광고사업 관리위원회 심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개인택시 부제운행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친환경택시 제외) ☐ 준수사항 ☐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조편성에 따라 가, 나, 다 조는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반 (04~16시)에 휴무하는 조와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목요일 오전반 (04~16시)에 휴무하는 조로 구분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단 라조는 월요일 목요일에는 16:00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 운행 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 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 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 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 운행 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 서울특별시장은 특정기간, 특정시간대 등 택시수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거나, 의무운행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특정기간이라 함은 연말연시, 명절(설날, 추석), 대학입학시험일, 폭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파업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행사(국내, 국제) 개최 등을 말한다. - 매주 금요일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의 부제를 해제한다. - 택시수급 부족 시간대 택시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달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할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무 운행 시간은 서울특별시가 별도로 정한다. ※ 단,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단서의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 으로 지정되어 부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부제운행’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개인택시 부제표시	☐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친환경택시 제외) ☐ 준수사항 ○ 외부표시 - 모 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의 형태로 사각형 안에 「개인」, 운휴조, 조합명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운휴조별로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바탕 색상을 “가” 조는 파란색, “나” 조는 오렌지색, “다” 조는 초록색, “라” 조는 보라색(목)과 자주색(월), 수요 대응형 택시 ” 9 “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글씨로 한다. 운휴조에 따라 각각  ,  ,  ,  ,  ,  로 타원형(120mm×95mm)안에 운휴조, 고유발급 번호, 조합명을 표시하고 직인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한다. ※ 가맹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양을 달리 할 수 있음 - 규격 ◦ 양 측 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뒷 유리창 : 가로120mm × 세로95mm - 부착위치 ◦ 양 측 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 뒷 유리창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한다. ◦ 단, 측면광고부착시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위치 조정을 허용한다.(일반택시의 회사명, 관리번호 위치로 이전부착 허용) ※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 때, 파훼손 되었을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단, 퇴색된 표시증을 부착하거나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1차는 적발시 경고조치를 취하고 2차 적발시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 단,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단서의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 으로 지정되어 부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부제표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 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택시운전 자격증명 등 게시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등 게시 및 갱신 ○ 규 격 - 택시운전자격증명 : 가로 148mm × 세로105mm ○ 부착위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조수석 앞 선반 위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 ○ 위 부착물상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서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위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 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로 부착된 경우 위 부착물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용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한다. ○ 부당 시계외 할증 적용 등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택시 미터기 화면에 어떠한 부착물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 위반시 조치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6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지정부착물】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 운행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구 분	현행	관련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2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너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택시 외부표시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표시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차량색상, 택시표시문자 ○ 택시표시등(방법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 부착위치 : 택시표시등(실내등을 기준으로 루프 중앙) 빈차표시등(앞 유리 중앙 상단) - 규격(택시표시등) : 가로400mm × 세로250mm × 높이140mm - 색 상 : 아래 표와 같다. <table><tr><td>구 분</td><td>앞/뒷면바탕색</td><td>앞/뒷면글자색</td><td>옆면/옆면바탕색</td></tr><tr><td>일반택시</td><td>SCN017</td><td>한강은백색</td><td>꽃담황토색</td></tr><tr><td>개인택시</td><td>한강은백색</td><td>파란색/SCN019</td><td>꽃담황토색</td></tr></table> - 글 씨 : 아래 표와 같다. <table><tr><td>구 분</td><td>전면글자</td><td>후면글자</td><td>우측/좌측</td></tr><tr><td>일반법인</td><td>서울</td><td>TAXI</td><td rowspan="2">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td></tr><tr><td>개인택시</td><td>서울</td><td>TAXI</td></tr></table> - 모범 및 대형(승용) 등 색상 및 글씨 : 아래 표와 같다. <table><tr><td>구분</td><td>바탕색</td><td>글씨</td><td>전면글자</td><td>측면글자</td><td>후면글자</td></tr><tr><td>모범택시</td><td>황색</td><td>흑색</td><td>TAXI모범</td><td>개인</td><td>모범</td></tr><tr><td>대형택시(승용)</td><td>황색</td><td>흑색</td><td>대형TAXI</td><td>법인(개인)</td><td>TAXI</td></tr></table> ※ 운송가맹사업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 택시표시등에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구 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옆면바탕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SCN019	꽃담황토색	구 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승용)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구 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옆면바탕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SCN019	꽃담황토색																																							
구 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승용)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모범운전자 택시표시등은 2010.4.16.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내용을 따른다. ○ 차량색상 - 중형택시(법인·개인)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옅은 회색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전기택시, 운송가맹점 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택시표시 문자 - 일반택시 <table border="1"> <tr> <td>내 용</td> <td>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td> </tr> <tr> <td>규 격</td> <td>□ 회사명(H60mm×W변화치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td> </tr> <tr> <td>색상 및 서체</td> <td>□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td> </tr> <tr> <td>표시위치</td> <td>□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td> </tr> </table> - 개인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 부제표시」 참조 ※ 친환경 택시의 경우  표시를 양쪽 앞문에 부착한다. ※ 단,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단서의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제가 해제된 경우에는 ‘개인택시 외부표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타 모범, 대형, 브랜드 택시 등의 표시문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 택시의 문자표시, 해치로고, 브랜드엠블럼, 콜센터 전화번호 표시 위치와 크기, 색채, 서체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표시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때, 파훼·손·훼손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 으로 간주한다. ※ 단,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위반시 조치	내 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 격	□ 회사명(H60mm×W변화치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내 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 격	□ 회사명(H60mm×W변화치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 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친절 운행 이행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 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한 입증 가능한 사항)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지시된 사항은 문서로 기록·관리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목록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지복장을 착용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운수종사자는 금지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 지정 복장이 있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 택시 금지복장 〉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금 지 복 장</th> </tr> <tr> <td>상 의</td> <td> □ 풀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td> </tr> <tr> <td>하 의</td> <td>□ 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td> </tr> <tr> <td>모 자</td> <td>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넓은 모양 또는 험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td> </tr> <tr> <td>신 발</td> <td>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td> </tr> <tr> <td>기 타</td> <td>□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 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td> </tr> </table>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법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6호 더목에 의한 운행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 더목에 의한 과징금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9호, 법제94조제3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더목에 따른 과태료 처분	구 분	금 지 복 장	상 의	□ 풀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 의	□ 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 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넓은 모양 또는 험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 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 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 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또는 - 운행정지 1차 : 3일 2차 : 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구 분	금 지 복 장													
상 의	□ 풀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 의	□ 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 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넓은 모양 또는 험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 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 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 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교 육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 교육 당일 특별근로(공가처리) 등 교육의무를 다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85조 제1항 제23호, 법 제88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43조 [별표3] 위반내용 제28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46조 [별표5] 위반내용 제2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26조 제1항 제9호, 법제94조 제3항제4호 적용 -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목록에 따른 과태료 처분	법 제25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30만원 2차 : 60만원 3차 : 9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3차 : 1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법인택시 근로현황 공개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투명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으로 지칭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사이트를 통해 각종 급여(기본급, 수당 등),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등),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한다. - 각종 급여에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금은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야한다. - 공개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의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법인택시 구인활동	☐ 대 상 : 일반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교통회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성산동, 하계동, 오류동) 부지 및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구인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택시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활동은 예외로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방역 강화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감염증 등의 유행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1급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경우 승객 탑승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 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법 제23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가 규정 위반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행개시전 마스크를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면제한다.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목록에 의한 과태료 처분		- 과태료10만원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대상 : 택시 ☐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폭행 등 위급상황시 택시 내부의 긴급상황을 외부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택시표시등에 소리가 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리가 나는 장치는 2022년 이후 신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단, 유예기간을 6개월 적용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부칙	☐ 시행일 ○ 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5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강*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13, ***동 ****호 (서현동)	일시: 2022-10-18 11:51 장소: 공향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태만	처분일: 2022. 11.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3. 1. 31.
정*학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20, ***동 ****호 (목동동)	일시: 2022-10-18 16:11 장소: 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2. 11.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3. 1.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곽*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 ****호(주안동)	일시: 2022-08-04 05:46 장소: 가양역사거리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2. 9.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2. 11.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3. 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 -

대상 단체: 1개 단체

등록번호	대장등록일	단체명	주관부서	소재지(도로명)	주된사업	대표자
2474	2022-12-23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44 (미아동) 4층 C-81호	○ 중고등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 ○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 ○ 학생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 및 세미나 진행 등	최준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6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12. 29. ~ 2023. 1. 11.(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크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005000830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4-27 (성북구 하월곡동 81-261)	수도요금	2020. 10. 31. 외 11납기	12회	1,115,970원	해당 내역은 2022. 12.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법인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건물)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4-27 (성북구 하월곡동 81-261)	윤*남 윤*숙	611120-1***** 660624-2*****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4-27		1,115,970원	2023. 1. 16.-

3.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시현 주무관 (☎ 02-3146-210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6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744	22. 12. 23.	주식회사 제이디케이에이티 (JDKAT Co., Ltd.) 정대규 110111-661076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에이동 511호(문정동,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69호
**도시관리계획【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1.24.,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911호로 주민 의견청취(2018.04.12.~ 2018.04.26.)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	증)1,071,081.0	1,071,081.0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 1	반포동 30-1일대	-	증) 13,691.6	13,691.6	삼호가든5차
신설	특별계획구역 2	서초동 1685일대	-	증) 144,012.8	144,012.8	삼풍APT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서초동 1333일대	-	증) 56,917.3	56,917.3	신동아APT
신설	특별계획구역4	서초동 1335일대	-	증) 61,643.1	61,643.1	무지개아파트
신설	특별계획구역5	서초동 1326-17	-	증) 13,081.4	13,081.4	우성5차아파트

나.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2.12.30. ~ 2023.01.12.)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4)
-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2155-6793), 주거개선과(☎02-2155-7345)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계획(시행)열람공고 에서도 확인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77호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8-4 일대 이수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1.23.,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540호로 주민 의견청취(2021.01.01.~2021.01.14.)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2.12.30. ~ 2023.01.12.)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
-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8), 도시계획과(☎02-2155-6812)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758-4 일대	-	증)81,633.6	81,633.6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 1	방배동 760-1 일대	-	증)	46,525.7	46,525.7	-
특별계획구역 2	방배동 776-3 일대	-	증)	11,757.7	11,757.7	-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계획(시행)열람공고에서도 확인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86호
천왕 도시개발사업 2차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372호(2004. 11. 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0호(2005. 12. 2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54호(2006. 12. 2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69호(2007. 12. 2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6호(2008. 12. 0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7호(2011. 01. 0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52호(2011. 12. 0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31호(2012. 08. 3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39호(2012. 12. 2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66호(2013. 12. 2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09호(2014. 11. 27.)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66호(2014. 12. 2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6호(2015. 12. 2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13호(2016. 12. 2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86호(2017. 12. 2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1호(2018. 11. 2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19호(2019. 12. 1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74호(2020. 12. 2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88호(2021. 12. 1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87호(2022. 06. 3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천왕 도시개발사업이 2차 부분준공 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천왕 도시개발사업(2공구)
2.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7,832.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준공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7,832.7	100.0	
공동주택(도시)	9,187.6	51.5	
도로	734.6	4.1	
녹지	7,910.5	44.4	

5. 준공일자 : 2022. 12. 29.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용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02-2133-8497),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280),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1)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87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현황

구분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등록일
신규	영일건설(주)	단청공사업 (07-01-0002)	194911-001 1251	최상운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422호 (수서동, 로즈데일빌딩)	02- 564- 1479	'22.12.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20)

또는 문화재관리과(☎ 02-2133-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95호
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1 시간	2 시간	3 시간
서울특별시 전지역 (중점관리지역 제외)	100 mm	148 mm	192 mm
중점관리지역 (강남역일대)	110 mm	163 mm	212 mm

※ 중점관리지역(강남역일대) : 서초3, 서초4, 서초5, 논현, 역삼 배수분구(붙임 참조)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대상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된 방재시설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우수지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대상 시설(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5호)

-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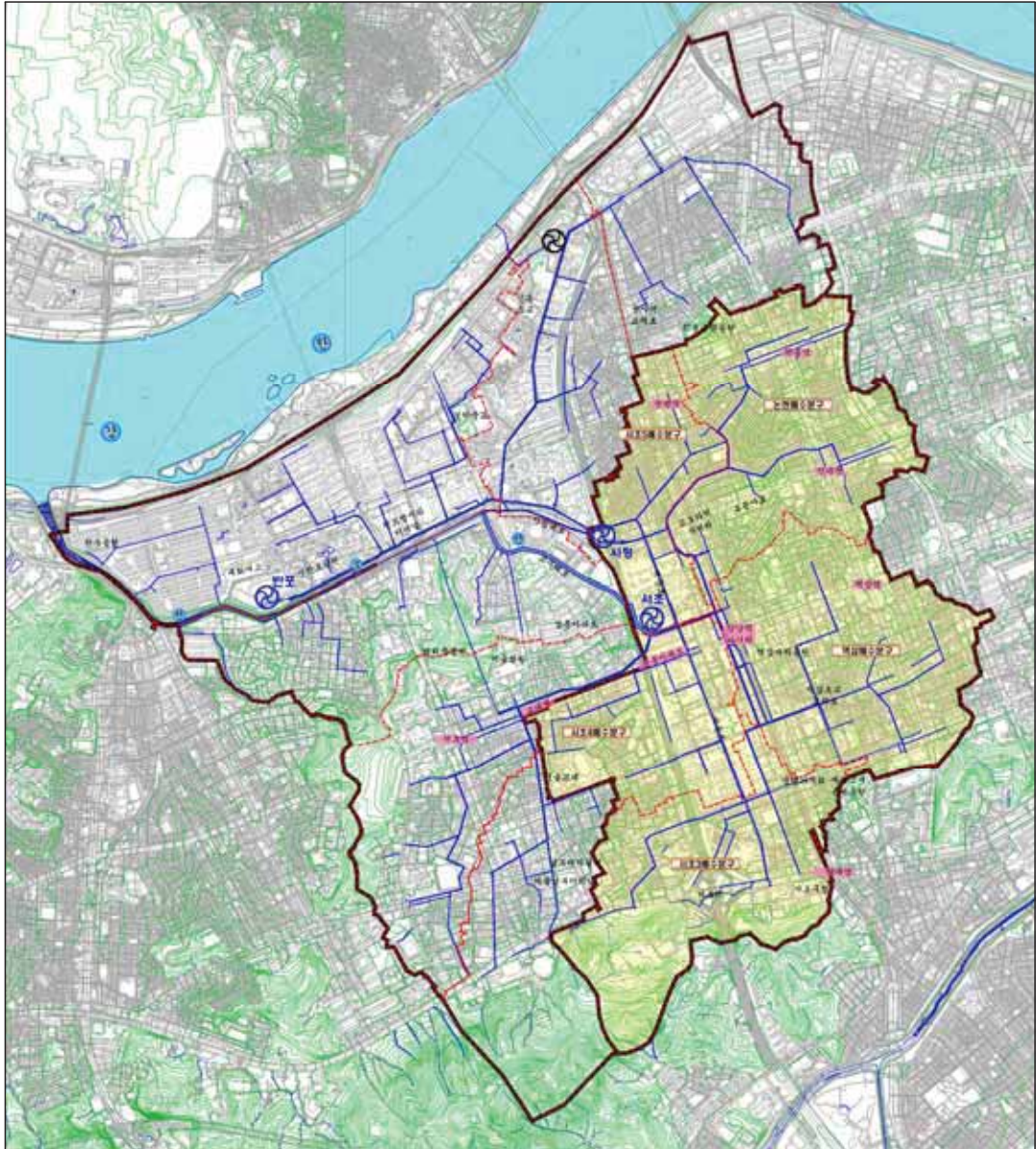
-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 펌프장
-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 ▶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 배수로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내에 기 설치된 방재시설**에 대해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처리 능력 등 방재성능을 평가
 - 평가결과 기존 방재시설의 성능 부족으로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에 대한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시 방재성능목표 적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하수관로, 배수(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류시설, 저류지, 유수지, 소하천 등
 - *** 기존 방재시설 정비(신설·증설·확장 등) 또는 배수구역 내 홍수량 분담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설치 등) 등의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대책
-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시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 평가결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부족할 경우 배수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시 적용
 - * 하수관로 등 방재시설의 계획(규격·규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른 관련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재현기간(설계빈도)을 적용하여야 함
 - ** 홍수량 분담을 위한 유수지,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설치 등의 개선대책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로부터

붙임 : 중점관리지역(강남역일대) 110mm/hr 적용 위치도
 - 5개 배수분구 : 서초3, 서초4, 서초5, 역삼, 논현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22-1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 1) 행정동 신설, 통·폐합 및 명칭이 변경된 사항 현행화(125건)
- 2)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영(상일여자중학교→상일중학교)
- 3) 신설학교 반영(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군4: 위례술중학교)

2 변동내역

- ① 본문: 종전과 동일
- ② 부칙

기존	수정
3.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생배정방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1996-23호)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3.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생배정방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1996-23호)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4.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생배정방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2021-11호)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 ③ [별표 1~11]: 붙임과 같음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별 표1>

☐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동부1	경희	청량 성일 대광	경희 정화	동대문구	제기동, 용신동, 휘경1동, 청량리동, 이문1,2동, 회기동
동부2	동대부	장평 전농 전농 전일 휘경 송인 동대문	휘경		전농1,2동, 답십리1,2동, 휘경2동, 장안1,2동
동부3		동원 대릉 봉화 원곡 장안 상봉 중랑 신원	송곡 영관	중랑구	상봉1,2동, 중화1,2동, 신내1,2동, 망우본동, 묵1,2동
동부4		면목 중화 응마	해원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망우3동

<별 표2>

☐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서부1	대성	불광 연신 연천 은평 선정 신도 진관 구산	선일 예일	은평구	녹번동, 불광1,2동, 갈현1,2동, 구산동, 대조동, 역촌동, 진관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서부2	송실	덕산 상신 연서 증산 중앙 영락		은평구	신사1,2동, 증산동, 수색동, 응암1~3동
서부3	인창 한성	홍은 신연 연북 서연 이대부 가재울 명지 연희 인왕	정원 중앙 동명	서대문구	홍제1~3동, 홍은1,2동, 연희동, 북아현동,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서부4	광성 송문	신수 아현 청천 동도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염리동, 대흥동, 용강동, 신수동, 서강동(1통~16통, 30통)
서부5	경성	성산 성서 성사 중앙 상암	홍익부	마포구	상암동, 성산1,2동, 망원1,2동, 연남동, 서교동, 합정동, 서강동(17~29통)

<별 표3>

☐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남부1	우신	오류 고척 개봉 개웅 오남 경인 천왕 향동		구로구	개봉1~3동, 오류1,2동, 고척1,2동, 수궁동, 향동
남부2		구로 영림 영서 신도림 구일		구로구	구로1~5동, 신도림동, 가리봉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남부3	문일	가산 난곡 문성 시흥 세일 안천 한울 동일		금천구	가산동, 독산1~4동, 시흥1~5동
남부4		당산 당산서 대영 대림 문래 선유 양화 영남 영원 윤중 여의도 신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여의동, 당산1,2동, 도림동, 문래동, 대림1~3동, 신길1,3,4~7동, 양평1,2동

<별 표4>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북부1		노곡 도봉 방학 백운 북서울 선덕 신방학 신도봉 청등 청북 청인 효문	정의	도봉구	도봉1,2동, 방학1~3동, 창1,2,4,5동, 쌍문1~4동
북부2		노원 노일 상계 상원 수락 신상 은곡 청원		노원구	상계1,2동, 상계5동(1~14통, 16~31통), 상계6~10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북부3		공릉 공릉암 상계제일 상명 을지 재현 중계 중원 중평 대왕 하계 한천		노원구	상계3,4동, 상계5동(15통, 32~37통), 중계본동, 중계1~4동, 하계1,2동, 공릉1,2동
북부4	광운	녹천 신창 염곡 월계		도봉구 노원구	창3동, 월계1~3동

<별 표5>

☐ 중부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중부1	동성 경신	중앙	사대부 덕성	종로구	송인 제1,2동, 창신 제1~3동, 혜화동, 이화동, 종로1~6가동, 삼청동, 가회동
중부2	대신 청운		배화 상명부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중부3	한양 강릉	대경 정원	금호	중구	신당동, 신당5동, 황학동, 광희동, 등화동, 다산동, 청구동, 약수동, 장충동
중부4	환일	덕수	창덕	중구	종림동, 명동, 필동, 소공동, 회현동, 을지로동
중부5	용산 배문	선린	보성 신광 성심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한강로동, 청파동, 원효로 제1,2동, 효창동, 용문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중부6	오산	한강 용강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 제1,2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 제1,2동

<별 표6>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강동 송파1	영파	둔촌 한산 성내 신명성 풍성 풍납	영파	강동구 송파구	둔촌1,2동, 성내1~3동, 풍납1,2동, 길동
강동 송파2	배재	강동 강빛 강일 강명 고덕 동신 명일 신암 천일 천호 한영 상일	성덕	강동구	암사1~3동, 천호1~3동, 명일1,2동, 고덕1,2동, 상일1,2동, 강일동
강동 송파3	배명	아주 잠신 잠실 가락 방이 방산 신천 해누리	정신 일신	송파구	잠실본동, 잠실2~4동, 잠실6~7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1동, 송파1,2동, 방이1,2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강동 송파4	보성 보인	가원 거원 문정 석촌 송파 세문 오금 오륜 오주 문현 송례 위례솔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2동, 오금동, 오륜동, 마천1,2동, 거여1,2동, 문정1,2동, 장지동, 위례동

<별 표7>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강서 양천1	마포	경서 공향 명영 등원 곡 마곡하 마곡하 방원 방화 삼정 성재 송정 명경 명창		강서구	가양1~3동, 공향동, 등촌1,3동, 방화1~3동, 염창동
강서 양천2	화곡	덕원 등촌 백석 수명 화원	명덕 신정	강서구	등촌2동,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본동, 화곡1,2,3,4,6,8동
강서 양천3	영도 양정	목 목 은 목 일 목 신 목 신 서 양 등 촌	봉영	양천구	목1~5동, 신정1,2,6,7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강서 양천4		강신 금옥 신남 신원 신월 신화 양강 양서 양천		양천구	신월1~7동, 신정3~4동

<별 표8>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강남 서초1		압구정 봉은 신구 신사 연복 연주 청담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2동, 논현1,2동, 역삼1동
강남 서초2	단대부 영종 영등	개원 개포 구룡 대명 대왕 대청 대치 도곡 수서 세곡 역삼 은성	진선 숙명	강남구	역삼2동, 도곡1,2동, 대치1,2,4동, 일원본동, 일원1,2동, 개포1,2,4동, 수서동, 세곡동, 성남시 신촌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강남 서초3	반포 이수	경원 방배 서운 서일 서초 신반포 신등 영등 원촌	동덕 서문 세화	서초구	방배본동, 방배1~4동, 반포본동, 반포1~4동, 잠원동, 서초1~4동, 양재1동, 과천시 과천동
강남 서초4		연남 내곡		서초구	양재2동, 내곡동

<별 표9>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동작 관악1	성남	강남 강현 국사봉 장승 대방 문창 영등포	송의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1,2동, 노량진1동(1통~32통), 노량진2동, 상도2~4동
동작 관악2	동양	남성 동작 사당 상도 상현 중대부		동작구	노량진1동(33통~55통), 흑석동, 상도1동, 사당1~5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동작 관악3	남강	미성 남우 남서울 성보		관악구	신원동, 난곡동, 신사동, 신림동, 난향동, 조원동, 미성동
동작 관악4		신관 봉림 신림 삼성 광신	문영	관악구	서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청룡동
동작 관악5		구암 관악 당곡 봉원 인현		관악구	은천동, 보라매동,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중앙동, 인현동, 남현동

<별 표10>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성동 광진1		등마 마장 행당 무학 광희 옥정 경일 성수 한대부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행당1,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응봉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동 광진2		경수 성원 구의 신양 자양 건대부		성동구 광진구	송정동, 군자동, 능동, 화양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자양1동, 자양3동, 자양4동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성동 광진3		광남 광장 광진 광양 양진 용곡	동대부	광진구	중곡1~4동, 구의1~3동, 광장동, 자양2동

<별 표11>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군별 소속학교 및 지역

학교 군별	소속학교			소속지역	
	남	공학	여	자치구별	해당지역
성북 강북1	신일 서라벌	강북 미양 변동 삼각산 수송 인수 수유 화계	성암 창문	강북구	미아동, 번1~3동, 삼각산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수유1~3동, 우이동, 인수동
성북 강북2	고명 삼선 홍익사부 용문	개운 길음 고려사부 북악	동구 성신 한성	성북구	길음1동, 길음2동 일부, 돈암1,2동, 동선동, 보문동, 삼선동, 성북동, 안암동, 정릉1~4동
성북 강북3	남대문 서울사부	석관 송곡 월곡 장위 종암		성북구	길음2동 일부, 석관동, 월곡1,2동, 장위1~3동, 종암동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22-358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2022.12.16.)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과목		23년 본예산 (A)	22년 본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합 계		12,891,521,178	10,588,635,087	2,302,886,091	21.7
이전수입	소계	11,364,362,922	10,142,376,667	1,221,986,255	12
	중앙정부이전수입	7,184,206,612	6,066,511,418	1,117,695,194	18.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172,089,734	4,067,133,593	104,956,141	2.6
	기타이전수입	8,066,576	8,731,656	△665,080	△7.6
자체수입	소계	126,383,532	112,012,330	14,371,202	12.8
	교수-학습활동수입	1,318,558	1,463,837	△145,279	△9.9
	행정활동수입	5,341,441	4,717,964	623,477	13.2
	자산수입	33,573,061	7,519,546	26,053,515	346.5
	이자수입	11,819,200	5,607,053	6,212,147	110.8
	기타수입	74,331,272	92,703,930	△18,372,658	△19.8
기타	소계	1,400,774,724	334,246,090	1,066,528,634	319.1
	전년도이월금	1,385,344,504	324,342,000	1,061,002,504	327.1
	금융자산회수	15,430,220	9,904,090	5,526,130	55.8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23년 본예산 (A)	22년 본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12,891,521,178	10,588,635,087	2,302,886,091	21.7
1.유아및초중등교육	5,357,520,756	4,941,495,290	416,025,466	8.4
가.인적자원운용	67,170,444	62,908,153	4,262,291	6.8
나.교수학습활동지원	595,010,938	564,424,836	30,586,102	5.4
다.교육복지	754,304,348	799,859,641	△45,555,293	△5.7
라.보건급식	814,468,165	690,172,168	124,295,997	18.0
마.학교재정지원관리	2,243,618,484	2,167,077,995	76,540,489	3.5
바.학교시설여건개선	882,948,377	657,052,497	225,895,880	34.4
2.평생교육	35,541,543	33,372,681	2,168,862	6.5
가.평생교육	35,541,543	33,372,681	2,168,862	6.5
3.교육일반	1,486,273,818	351,224,015	1,135,049,803	323.2
가.교육행정일반	151,400,026	173,299,321	△21,899,295	△12.6
나.기관운영	100,382,733	47,310,665	53,072,068	112.2
다.재무활동	1,234,491,059	130,614,029	1,103,877,030	845.1
4.예비비	588,809,273	10,089,193	578,720,080	5736.0
가.예비비및기타	588,809,273	10,089,193	578,720,080	5736.0
5.인건비	5,423,375,788	5,252,453,908	170,921,880	3.3
가.인건비	5,423,375,788	5,252,453,908	170,921,880	3.3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2-12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62호(2022. 7. 14.)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우리 구 봉래동2가 122-2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민자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민자역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29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민자역사) 사업
- 명 칭 : 경부고속철도 서울민자역사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

- 면 적 : 2,27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17, 304호

마. 사업의 착수일, 준공 예정일

- 착수일 : 착공일
-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사. 변경사항

- 토지 분할(봉래동2가 122-11번지) 및 분할된 토지(봉래동2가 122-32)와 기존 토지의 소유권 교환으로 인한 토지조서 및 도면 수정 : 붙임 참조

아.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에 비치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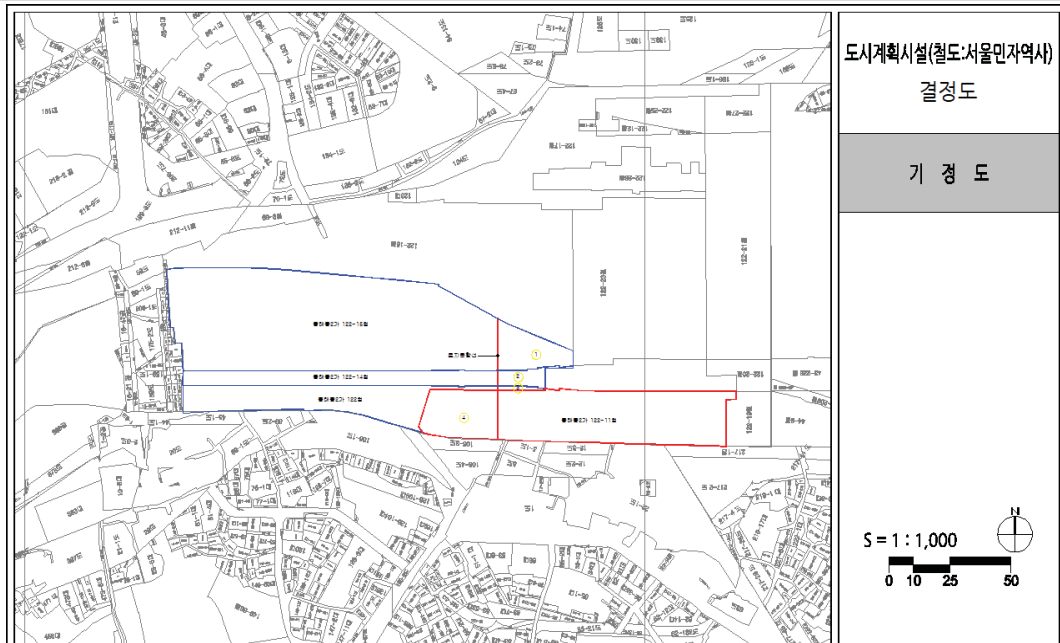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	평면면적 (㎡)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성명	관계인 주 소	
1	서울특별시 중구 명대동2가	122-29	철도용지	112.2	+112.2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	-	-
2	서울특별시 중구 명대동2가	122-11	철도용지	10,063	-2,271.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
3	서울특별시 중구 명대동2가	122-30	철도용지	545.4	+545.4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	-	-
4	서울특별시 중구 명대동2가	122-31	철도용지	1,613.4	+1,613.4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	-	-
계				12,334	0	-	-	-	-	-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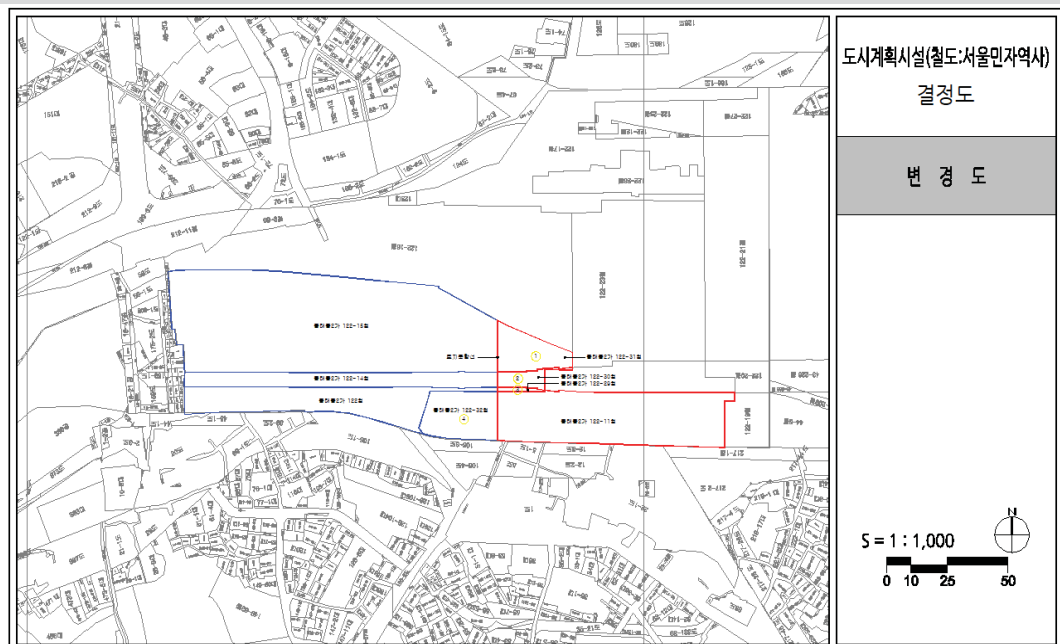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	평면면적 (㎡)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성명	관계인 주소	
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2가	122-29	철도용지	112.2	+112.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
2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2가	122-30	철도용지	545.4	+545.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
3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2가	122-31	철도용지	1,613.4	+1,613.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
4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2가	122-32	철도용지	2,271.0	-2,271.0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	-	봉래동2가 122-11번지에서 분할
계				4,542	0	-	-	-	-	-	-

[붙임2]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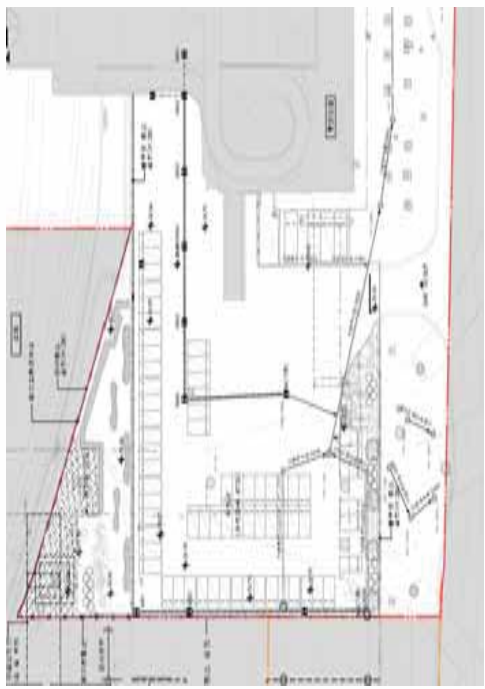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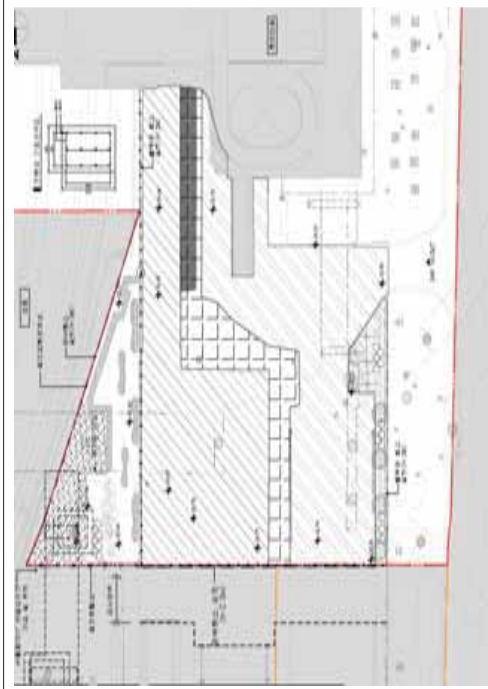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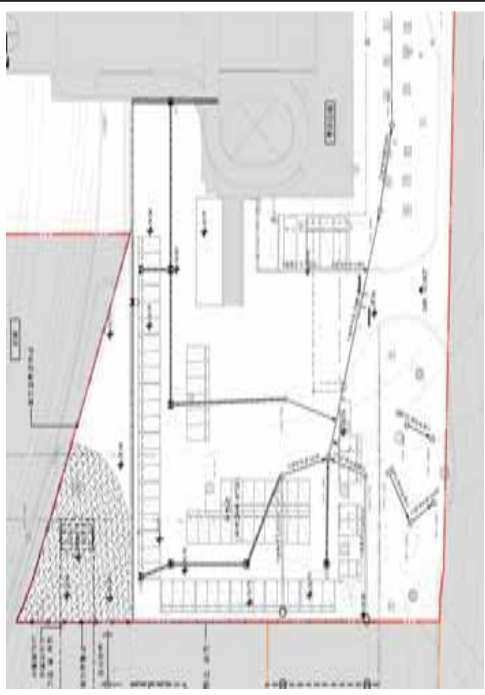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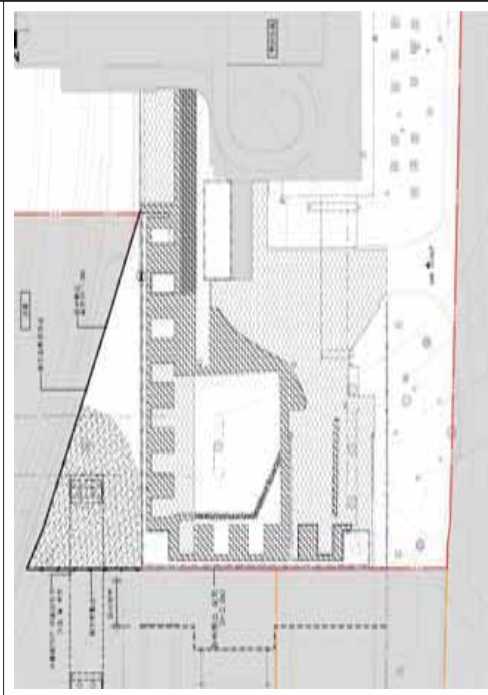
[붙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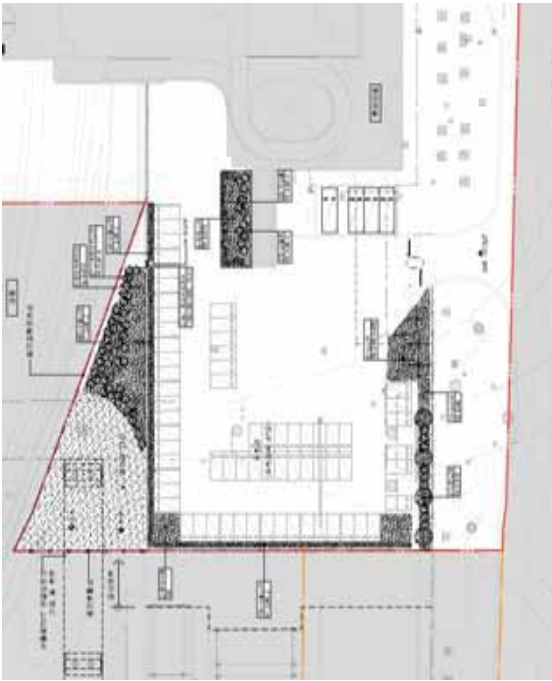
기정

변경

철거계획도

배수악하
수면도

변경		
기정		
	우수계획도	포장계획도

	기정	변경
조경계획도		

◆ 중구고시 제2022-12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980-53호(1980. 2. 27.)로 도시계획시설(철도) 최초 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12호(2021. 9. 16.)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23호(2022. 3. 24.)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우리 구 필동1가 40-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0-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철도 연결통로) 개설 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

- 규 모 : L= 27~30m, B= 2~6.6m, H= 27.5~40.7m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 면 적 : 161.6㎡(대지 124.1㎡, 도로 37.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충무로피에프브이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65호(충무로4가, 일홍빌딩)

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일(변경)

- 지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년 12월31일 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년 2월28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준공 직후 무상귀속(관련 기관) 및 사유지 내 연결통로 구분지상권 설정

아.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 소	관리의 종류	관 계 인
								성명	주 소
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0-1	대	181.8	57.1	케이비투등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1	대	67.1	22.6	케이비투등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3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5	대	30.4	29.8	케이비투등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4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6	대	5.0	5.0	케이비투등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7	대	5.0	5.0	케이비투등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8	대	4.6	4.6	케이비투등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7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13	도로	0.3	0.3	재단법인형설재단 외 2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진동 205, 영동빌딩 102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27	-	-
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13-2	도로	2,263.6	11.9	서울특별시	-	-	-
9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22-1	도로	2,688.4	1.1	국 (건설교통부)	-	-	-
1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10	도로	310.6	24.2	서울특별시	-	-	-
계				5,556.8	161.6	-	-	-	-

◆ 용산구고시 제2022-19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4호(1973.06.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08-53호(2008.09.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용산구고시 제2021-74호(2021.04.1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되고, 용산구고시 제2021-123호(2021.06.18.)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변경)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59-3번지 일원 배문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용 산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배문중·고등학교의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에 따라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범위(용적률, 높이(층수))를 변경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없음	학교	중고교	용산구 서계동 259-3번지 일원	11,759.4	서울특별시고시 제94호 (1973.06.20.)	배문중·고교

-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0	-	130	140	5층	6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건축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 건축범위(용적률, 높이(층수)) 변경 - 용적률 : 130% → 140% (증 10%) - 높 이 : 5층 → 6층 (증 1층)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에 따라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자 용적률 및 높이(층수)를 변경하고자 함.

※ 2022년 제7차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22.12.16.) : 조건부 가결

○ 조건내용

- 금회 계획된 북측 도로 상 진출입계획에 대하여 효창원로로 위치 변경 또는 다른 대안 유무 여부 등 교통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토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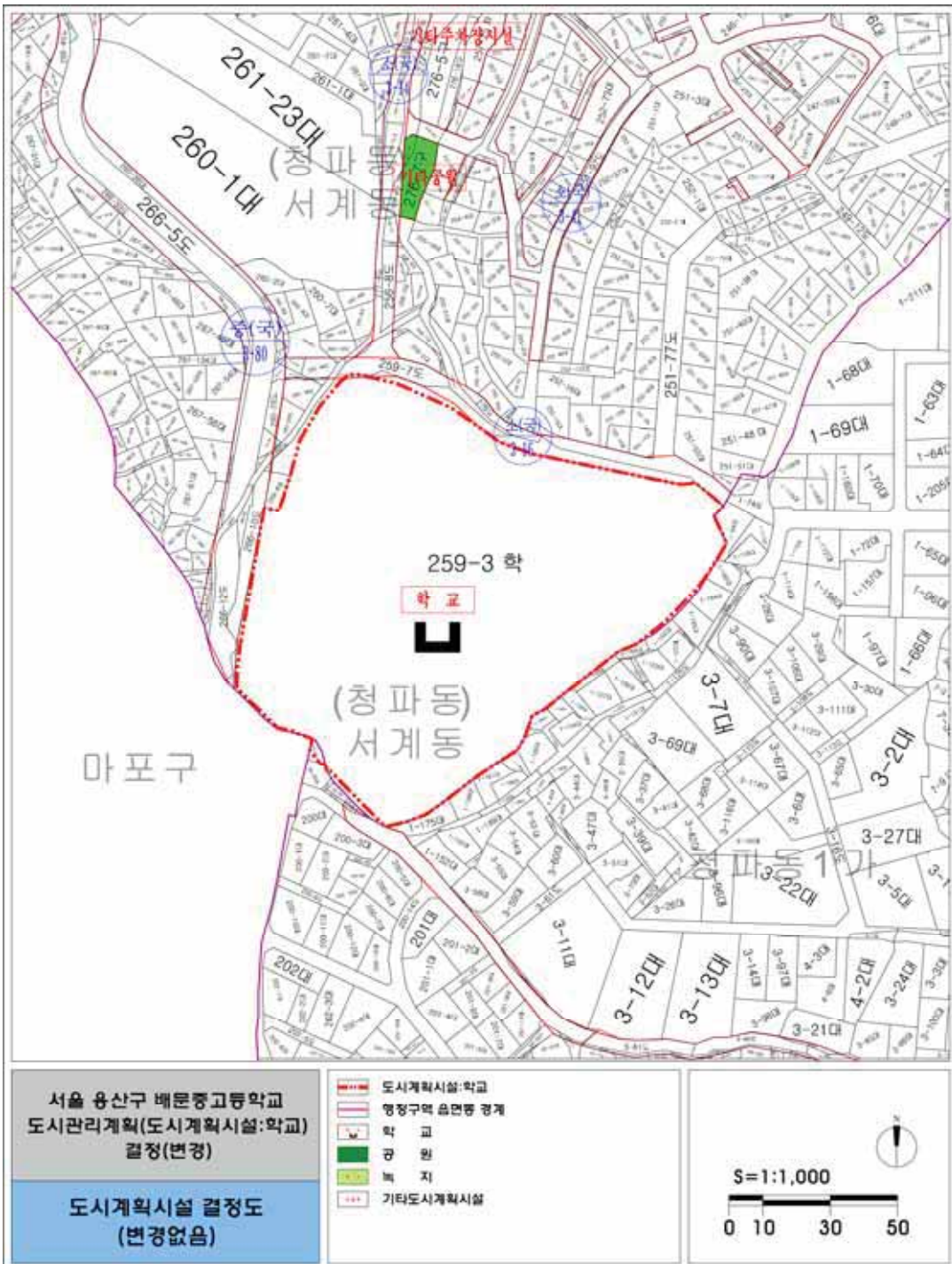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기 결정된 학교 구역계 변경 없이 학교시설 건축범위 결정(변경)도(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동대문구고시 제2022-21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1-158호(1971.3.26.)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261호(2021.12.30.)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지하연결통로 개선공사 관련 출입구(5번) 위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청량리역)	동대문구 전농동 620-67 일원	5,223.8	건설부고시 제158호 (1971.3.26.)	· 중복결정 - 도로 2,095.7㎡ - 광장 3,128.1㎡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청량리역)	동대문구 전농동 620-67 일원	5,178.5	건설부고시 제158호 (1971.3.26.)	· 중복결정 - 도로 2,141.5㎡ - 광장 3,037.0㎡

※ 면적 산정 기준 : 건설부고시 제158호(1971.3.26.) 기준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①	철도	· 선형 및 면적 변경 - 5,223.8㎡ → 5,178.5㎡ (감 45.3㎡)	· 지하연결통로 시설물 개선공사 과정에서 지하매설물(하수박스)이 발견되어 간섭이 예상됨에 따라 출입구(5번) 설치 위치 변경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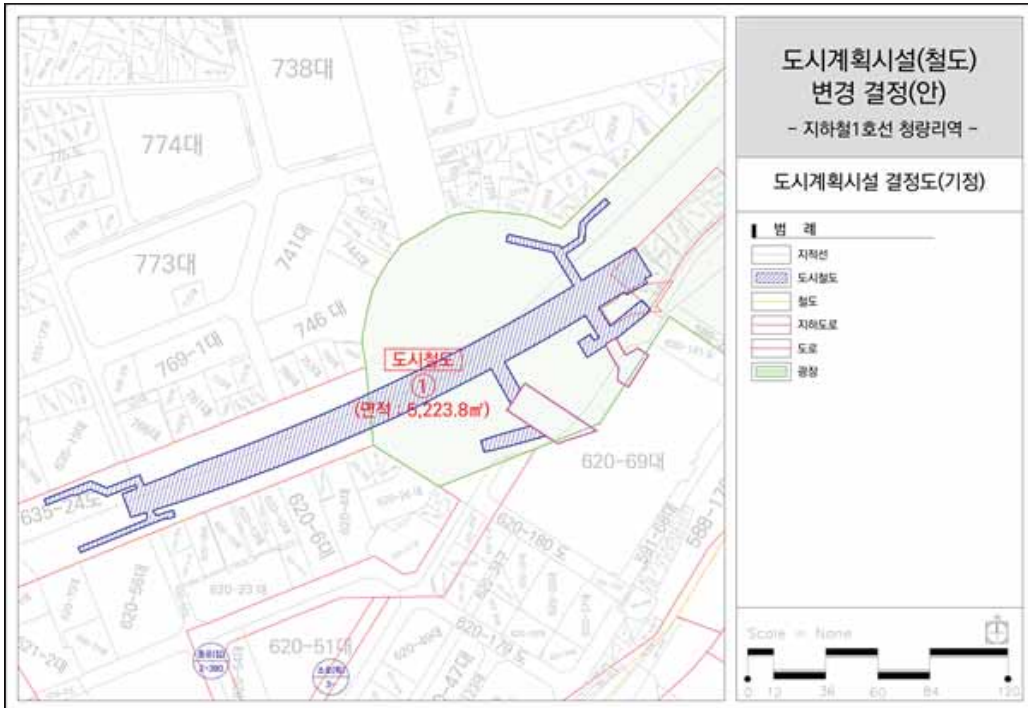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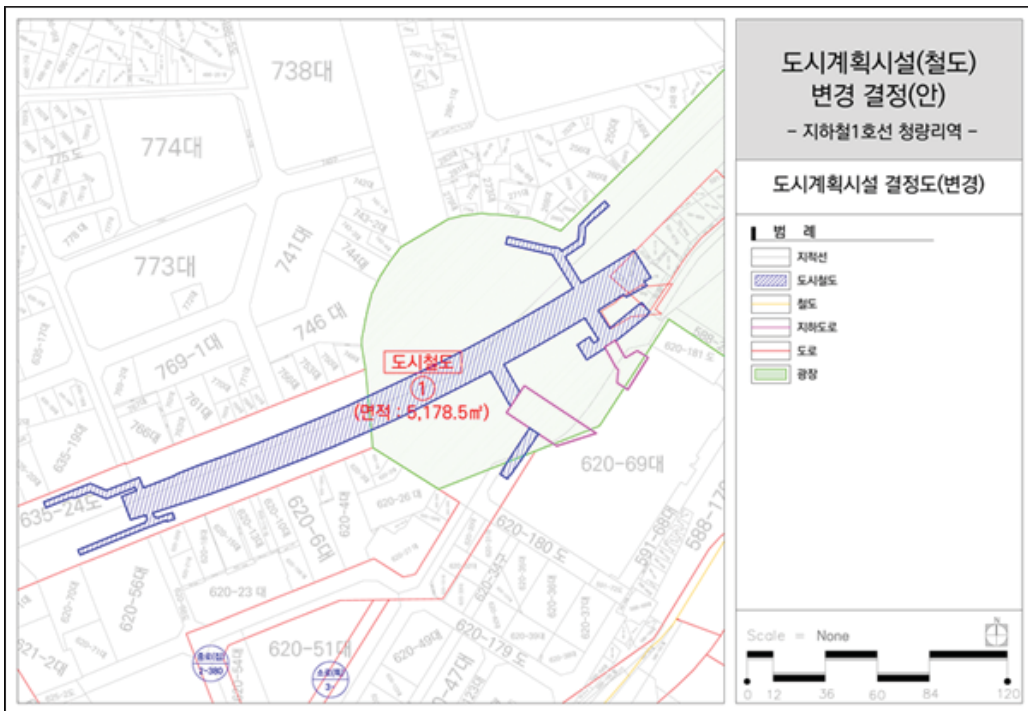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5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도 : 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도 : 변경



◆ 도봉구고시 제2022-24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봉구 창동 609-8호 일대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도 봉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도봉구 창동 609-8호, 609-9호	-	증)282	282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나. 지형도면 : 첨부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3553)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봉구고시 제2022-24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봉구 창동 657-12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도 봉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쌍문역 동측 도봉로112길 일대(쌍리단길)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 및 골목시장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도봉구 창동 657-125	-	증)175.2	175.2	-	

나. 관계도면 : 따로붙임(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355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도면



◆ 서대문구고시 제2022-1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1992-26호(1992.1.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2-1481호(2022.11.24.)로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 공고된 「홍제동 40-248~40-274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대문구6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0-248~40-27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제동 40-248~40-274 간 도로개설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8m, 연장 70m)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02-330-1762)

토 지 조 서

○사업명 : 홍제동 40-248 ~ 40-274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1	홍제동	40-248	대지	23	23*43/142	김*근	서대문구 홍제동 40-**-					
					23*99/142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2	홍제동	40-165	대지	243	24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3	홍제동	40-254	대지	42	42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4	홍제동	40-265	도로	11	1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5	홍제동	40-244	대지	13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6	홍제동	40-256	대지	4	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7	홍제동	40-264	대지	1	1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8	홍제동	40-228	대지	464	46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9	홍제동	40-243	대지	7	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연번	소재지 (위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10	홍제동	40-242	대지	34	3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1	홍제동	40-240	도로	7	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2	홍제동	40-274	대지	14	14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13	홍제동	40-263	대지	30	30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별첨 조서

○사업명 : 홍제동 40-248 ~ 40-274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역	면적 (㎡)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1	홍제동	40-51	석축	축대	10	김*철	관악구 청림*길 10, 101동 ***호(봉천동 서희스타힐스)					
2	홍제동	40-50	석축	담장	3	김*순	서대문구 통일로20길 **					
3	홍제동	40-39	석축	담장	3	이*수	서대문구 홍제동 40-**-*					
4	홍제동	40-37	건물	조적조 단층주택	7	구*국	서대문구 통일로20길 **		박*를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2/7
						구*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35, 3동 ***호(백담동, 극동아파트)		박*를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1/7
						구*정	서대문구 통일로20길 **		국민건강보험 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서대문지사)	임대	1/7
									박*를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구*영	경량구 면목로35길 63, 40여동 ****호(면목동, 면목두산아파트)		박*를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1/7
6	홍제동	40-38	건물	조적조 단층주택	10	제일사랑교회 대표자 구*선	서대문구 통일로20길 **		박*를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2/7
						최*실	서대문구 홍제동 40-**-*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임대	

위치도 및 현황

○ 연홍제동 40-248~40-274 간 도로개설



◆ 구로구고시 제2022-20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2-156호(2022.10.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1871호(2022.10.24.)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3-124, 253-171, 253-175,
253-278, 253-279, 253-28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사업의 내용 : 지평식 주차장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852㎡(주택 5필지-718㎡, 도로 1필지-134㎡)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3.12.31.

바. 사용·수용할 토지의 물건조서 : 따로 붙임

사.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로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아. 기타 사항은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2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의 명칭 :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내 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1	고척동 253-124	대	116	116	최○자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32길 ○		
2	고척동 253-171	도로	134	134	강○희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32길 ○		
3	고척동 253-175	대	102	102	황○민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93, ○호		
4					황○란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55길 ○		
5					황○연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49 ○호		
6					황○민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93, ○호		
7					황○란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55길 ○		
8					황○연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49 ○호		
9	고척동 253-278	대	143	143	조○순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32길 ○		
10	고척동 253-279	대	152	152	김○자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41길 ○		
11	고척동 253-281	대	205	205	강○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19번길 ○		

물 건 조 서

○ 사업의 명칭 :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내 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고척동 253-124	주택	연와조	1층57.84 2층57.84 지층57.84	최○자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32길 ○	개봉동 새마을 금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31-28	근저 당권	
2	고척동 253-175	주택	연와조	1층49.71 2층49.71 지층55.26	황○민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93, ○호				
3					황○란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55길 ○				
4					황○연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49 ○호				
5					황○민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93, ○호				
6					황○란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55길 ○				
7					황○연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49 ○호				
8	고척동 253-278	주택	조적조	1층69.6 2층69.6 지층69.6	조○순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32길 ○				
9	고척동 253-279	주택	연와조	1층74.24 2층75.8 지층74.24	김○자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41길 ○				
10	고척동 253-281	주택	연와조	1층89.78 2층89.78 지층70.34	강○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119번길 ○	수원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34	근저 당권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동작구고시 제2022-1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10호(2021.06.03.),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5호(2020.06.18.)로 실시계획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23호(2021.09.2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36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3동 산35 ~ 220-102	400	6	2,642.1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
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220-161	도로	72	72	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인로*** ***동 ***호(승점동, *****)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220-165	도로	19	19	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 *** ***호					
3	기정	동작구 사당동	신25-18	임야	188	188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					
							홍***	서울특별시 중구 장림동 ***					
							이**	서울특별시 중구 장림동 ***					

◆ 동작구고시 제2022-1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4-52호(1974.05.03.)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24호(2021.06.17.),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 동작구고시 제2021-210호(2021.09.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6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52호(2021.10.2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37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4동 215-37~210-18	360	6	2,342.1	상도4동 215-37	상도4동 210-18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유권리	
1	기정	동작구 상도동	216-17	도로	36	36	김*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 118, *동 *호 (도곡동, *****아파트)				
							김*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동 *호 (서빙고동, ***아파트)				
2	기정	동작구 상도동	214-455	도로	211	211	재단법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재단법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 동작구고시 제2022-2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 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 고시 제2021-110호(2021.06.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8호(2020.06.18.)호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17호(2021.09.16.), 동작구고시 제2022-43호(2022.03.1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38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2동 87-4 ~ 산20	310	6	1,465	사당2동 708-659	사당2동 128-1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관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92-20	대	2	2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동 ***-***					
							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암동 ***-***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7	대	13	1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3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2	대	5	5	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					
							김*	인천 계양구 계산동 ***-***					
							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					
							김*	인천 계양구 계산동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유(권리)	
4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3	대	9	9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5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4	대	19	19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6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5	대	36	36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7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9-18	대	1	1	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동 **호(반포동,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가 20(태평로2가) 반포지점	근저당권	
8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9-19	대	47	47	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				
9	기정	동작구 사당동	130-32	대	1	1	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				
							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				
							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				
10	기정	동작구 사당동	139-5	잡종지	31	31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번길 *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유동 ***-***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 *동 ****호(반포동, *****)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번길 **, ***동 *****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1	기정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139-105	전용지	7	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12	기정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708-1212	대	4	4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 동작구고시 제2022-20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1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39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연 번	위 치	연 장 (m)	폭 (m)	면적 (㎡)	기점	종점
1	사당3동 151~176-5	960	6	7,877	사당3동 151	사당3동 176-5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동작구 시당동	170-2	답	438	16	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동 ****호(*****)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3길 **, *동 ***호(신월동, ****)				
							고**	경기도 광주시 경춘대로142번길 **, ***동 ****호(쌍령동, *****)				
							고**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로, ***동 ***호(신관동, ****)				
							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동 ****호(아람동, ***)				
							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당로17길 **, *동 ****호(시당동,****)				
							장**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 ***동 ***호				
							고**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 *****, ***동 ***호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0길 ***-*, ***호				
고**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동 ****호											
고**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동 ***호											
고**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 ***동 ***호											

◆ 동작구고시 제2022-20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8-428호(1978.08.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24호(2021.06.17.),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 동작구고시 제2021-300호(2021.12.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4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54호(2021.10.2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40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3동 313-36~312-9	120	5~6	558	상도3동 313-36	상도3동 312-9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2	대	2	2	이*응	서울 동작구 동양로14길 ** (노량진동)				
2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19	대	20	20	이*실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황*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강서** **조함	서울 강서구 양천로 ** (양화동, 강서**로점)	근저당권	
							황*로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3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42	대	1	1	조*애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주식회사 한국*** *****은행	서울 종로구 종로 ** (****은행파)	근저당권	
4	기정	동작구 상도동	256-290	대	3	3	최*자	서울 동작구 상도로11길 6, *동***호(대방동, 대방빌리지)				
5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43	도로	3	3	홍*유	서울 관악구 노량진동 산**				
6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3	대	1	1	김*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7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1	대	21	21	이*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8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0	대	6	6	이*응	서울 동작구 동양로14길 ** (노량진동)				
9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37	도로	20	20	이*흥	서울 동작구 양녕로 *** (상도1동)				
							홍*애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차*희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 동작구고시 제2022-2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0-354호(1990.10.31.), 동작구 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 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 고시 제2021-249호(2021.10.28.), 동작구 고시 제2021-250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0-85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2-1호(2022.01.06.), 동작구고시 제2022-9호(2022.01.2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41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4동 187-3~194-10	162	6	821	상도4동 187-3	상도4동 194-1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해권리	
1	동작구 상도동	187-6	대	39	39	이*홍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0, ***동 ****호 (대방동, 대림아파트)				
2	동작구 상도동	194-44	도로	28	28	박*호	캐나다 퀘벡주 베르딩 코트 ***, ***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3	동작구 상도동	194-45	대	27	27	채*억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6길 24-*(노량진동)				
4	동작구 상도동	196-97	대	30	30	심*진	서울 동작구 상도로22길 ** (상도동)	상도4동 ***금고	서울 동작구 영평로24길 2-*	근저당권	
5	동작구 상도동	194-43	대	10	10	노*현	서울 동작구 상도로 320, ***동 ***호 (상도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영등포** 협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도선로 ***	근저당권	
						임*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20, ***동 ***호 (상도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				
6	동작구 상도동	195-53	대	33	3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설*등	서울 중구 창구로4길 ** (신당동)				
7	동작구 상도동	195-9	대	50	5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설*등	서울 중구 창구로4길 ** (신당동)				
8	동작구 상도동	195-58	대	50	50	상도스터디온지역 주택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9	동작구 상도동	195-59	대	3	3	상도스터디움지역 주택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10	동작구 상도동	194-42	대	11	11	정*영	강원 홍천군 두촌면 부재들길 127-*** (철정리)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	근저당권	
11	동작구 상도동	195-36	대	53	53	김*복	서울 성동구 천호동 423-***				
12	동작구 상도동	194-46	대	3	3	권*철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76-*				
13	동작구 상도동	195-12	대	69	69	손*호	서울 구로구 구일로 154-17, *동 ***호 (구로동, 우방아파트)				
						박*숙	서울 구로구 구일로 154-17, *동 ***호 (구로동, 우방아파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승배길로 161				
14	동작구 상도동	195-57	대	30	30	이*상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22-*(대방동)	**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세문안로 **(충정로1가)	근저당권	
						성*현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22-*(대방동)	**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세문안로 **(충정로1가)	근저당권	
15	동작구 상도동	195-54	대	11	11	정*혜	서울 동작구 성대로67길 121, ***호 (상도동, 오복빌라)	영등포** 협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 (신길동)	근저당권	
						정*철	서울 동작구 성대로67길 ***, ***호 (상도동, **빌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6	동작구 상도동	195-55	대	1	1	윤*선	서울 관악구 상도동 169-*					
17	동작구 상도동	195-56	대	3	3	배*주	서울 동작구 상도로22가길 * (상도동)					
18	동작구 상도동	194-41	대	17	17	김*숙	서울 동작구 상도로22나길 * (상도동)					
						고*의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1가길 11, ***동 ****호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19	동작구 상도동	186-12	대	33	33	방*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					
20	동작구 상도동	196-95	대	5	5	상도스터디움지역 주최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21	동작구 상도동	196-96	대	10	10	상도스터디움지역 주최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22	동작구 상도동	194-47	대	4	4	심*진	서울 동작구 상도동 196-***		상도4동 ***금고	서울 동작구 양녕로24길 2-***	근저당권	
23	동작구 상도동	196-94	대	233	233	상도스터디움지역 주최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 동작구고시 제2022-2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고시 제2021-210호(2021.09.16.), 동작구고시 제2021-249호(2021.10.28.), 동작구고시 제2021-251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7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310호(2021.12.2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43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작구청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및 토지조서 변경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2동 73-6~1155	594	6	3,848	사당2동 73-6	사당2동 1155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조서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유권리	
1	기정	동작구 시당동	68-5	도로	23	23	최**	경기 고양시 동인구 흥안대로223번길 47, ***동 ***호 (호계동, 샘마을아파트)				
							최**	경기도 광주시 벌원길 64-5, ***동 ***호 (만월동, 동아파트)				
							강**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3, ***동 ***호 (본동, 레미안트원파크)				
							강**	서울 관악구 남현4길 26, *층 (남현동)				
							강**	서울 동작구 등작대로29길 118, ***동 ***호 (시당동, 신동아파트)				
							강**	서울 동작구 등작대로29길 110, ***동 ***호 (시당동, 신동아파트)				
							강**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일로 159-** (우평리)				
							강**	서울 은평구 통일로89길 13-*(길원동)				
							김**	서울 동작구 등작대로29다길 ** (시당동)				
							강**	서울 동작구 등작대로29길 118, ***동 ***호 (시당동, 신동아파트)				
							강**	서울 동작구 등작대로32나길 27, ***호 (시당동)				
							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12-15, ***호 (도곡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울3길* (중산동)				
							한**	인천 부평구 마정로264번길 66, ***동 ***호 (신곡동, 경남아파트)				
							강**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3길 ** (도곡동)				
							전**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112, ***동 ***호 (사당동, 레미안로아파트)				
							강**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112,***동 ****호 (사당동, 레미안로아파트)				
							강**	전북 군산시 하나문로 48, ***동 ***호 (나운동, 롯데3차아파트)				
							강**	경기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69-*** (월항리)				
							강**	서울 동작구 상도로34길 42, ***동 ***호(상도동, 상도동원메이스트)				
							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0, *동 ***호 (문정동, 한성빌라)				
							김**	인천 부평구 마정로220번길 13, ***동 ****호(신곡동, 한신휴아파트)				
							김**	인천 부평구 부흥로123번길 36, ***동****호 (신곡동, 뉴서울아파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유관리	
							김**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30, ***동 ***호 (호계동, 호계 이-편해상아파트)				
							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소금정길 150, ***호 (반월리, 이순주주택)				
							김**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5길 50-** (성산동)				
							김**	서울 구로구 경서로11길 46, ***동 ***호 (고척동, 명품하이츠빌)				
							김**	인천 계양구 양지말3길 3 ***호 (등양동, 그린파크빌)				
							김**	인천 계양구 양지말3길 3 ***호 (등양동, 그린파크빌)				
							김**	인천 계양구 양지로 41-2, ***동 ***호 (등양동, 혜성하이츠)				
							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42길 35, ***동 ***호 (신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최**	인천 연수구 현남루로193번길 16, ***동 ***호 (목련동, 태평아파트)				
							이**	서울 강서구 양천로6길 28, ****동 ***호 (방화동, 방화12단지도시개발공사아파트)				
							김**	서울 강서구 양천로3길 17, ***동 ***호 (방화동, 개화산동부벤처트레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유관리	
							김**	서울 양천구 등촌로 120, ***동 ***호 (목동, 목동월드파크빌)				
							김**	서울 구로구 경인로 15-7, *동***호 (은수동, 성원빌라)				
							김**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동 ***호 (방화동, 방화2단지 도시개발아파트)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26, ***호 (화곡동, 상아하이츠빌라)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26, ***호 (화곡동, 상아하이츠빌라)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26, ***호 (화곡동, 상아하이츠빌라)				
							김**	경기 김포시 김포항로212번길 30, ***호 (장기동)				
							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42번길 18, *층 (피정동)				
							박**	미합중국 90017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드라이브 420 아파트 ***호				
							박**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317번길 15, ***동 ***호				
							박**	서울 마포구 백범로37길 12, ***동 ***호 (신공덕동, ****삼성레미안아파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박**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로 32, *** (매곡동, 드림인시티 에일먼트2차)				
							박**	미합중국 95119 캘리포니아 산호세 모라가웨이 ***				
							강**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5길 6, ***호(도곡동)				
							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 ***동 ***호 (비산동, *****)아파트)				
							임**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23, ***동 ***호 (포일동, *****)				
							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3, ***동 ***호 (구미동, *****)				
							임**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20길 28, ***동 ***호 (영등동, *****)				
							임**	경기 평택시 인중읍 인현로서7길 9, ***동 ***호 (현화리, *****)				
							강**	서울 관악구 신림로28길 53, ***호 (신림동)				
2	기정	동작구 서당동	57-91	담	3	3	김**	서울 동작구 서당동 **				
3	기정	동작구 서당동	71-61	대	2	2	송**	서울 동작구 서당동 71-**-** (서당동)	유임동 세마을금 고	서울 용산구 용인동 103-3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4	기정	동작구 서당동	68-21	대	1	1	한**	서울 서초구 동광로3길 18, ***동 ***호				
							송**	서울 서초구 동광로3길 18, ***동 ***호				
							이**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20-*, ***호				
	변경	동작구 서당동	68-21	대	1	0	한**	서울 서초구 동광로3길 18, ***동 ***호				
							송**	서울 서초구 동광로3길 18, ***동 ***호				
							이**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20-5, ***호				
5	기정	동작구 서당동	산10-53	임야	174	174	강**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3, ***동***호				
							강**	서울 관악구 관천로25길 **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8, ***동 ***호				
							강**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일로 159-**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0, ***동 ***호				
							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인대로223번길 47, ***동 ***호				
							최**	경기도 광주시 별원길 64-5, ***동 ***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71, ***동 ***호				
							임**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23, ***동 ***호				
							임**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22, ***동 ****호				
							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44번길 7, ***동****호				
							임**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20길 28, ***동 ****호				
							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42번길 **, *층				
							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원로서7길 9, ***동 ****호				
							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83길 12-15, ***호				
							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8, ***동 ***호				
							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64번길 66, ***동 ***호				
							강**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3길 **				
							강**	서울 은평구 통일로89길 13-*				
							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다길 **				
							강**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208, ***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0나길 **				
							김**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동 ****호(방화동, *****도시개발아파트)				
							강**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69-**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1길**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13, ***동 ****호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123번길 36, 202동 ****호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30, ***동 ***호				
							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3길 3, ***호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7길 34-*				
							김**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동 ***호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3길 3,***1호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3길 3, ***호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41-2, ***동 ***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42길 35, ***동 ***호				
							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98번길 **, ***동 ****호				
							김**	서울 강서구 양천로3길 17, ***동 ***호				
							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0길 **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 ***호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 ***호				
							김**	서울 구로구 경인로 15-7, *동 ***호				
							김**	서울 관악구 문성로40길 **, ***호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 ***호				
							김**	서울 관악구 당곡길 **				
							박**	경기도 수원시 정안구 수일로42번길 **, *층				
							박**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7번길 15, ***동 ****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문남서로 7, ***동 ****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박**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19, ***동 ***호				
							박**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				
							강**	서울 관악구 신림로28길 ***호(신림동)				
							강**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5길 *, ***호 (도곡동, 배관빌)				
							강**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7, ***동 ***호 (호계동, 목련아파트)				
							조**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7, ***동 ***호 (호계동, 목련아파트)				
							강**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동 ***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김**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동 ***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 동작구고시 제2022-2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동작구고시 제2021-267호(2021.11.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8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44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및 사업규모 변경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

연 번	위 치	연 장 (m)	폭 (m)	면적 (㎡)	기점	종점
기정	사당3동 산35-708	70	6	493	사당3동 산35	사당3동 708
변경	사당3동 1131-4 ~사당3동259-1	70	6	467.6	사당3동 1131-4	사당3동 259-1

※ 변경사항 : 측량(현황) 성과 반영에 따른 도로 편입면적 변경 및 도로 기·종점 주소 오기사항 정정에 따른 변경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260-2	답	182	182	김**	서울 양천구 목동					
							김**	서울 양천구 목동					
							이**	서울 강남구					
							김**	서울 강남구					
2	기정	동작구 응암동 사당동	259-3	도로	172	172	이**	서울 동작구					
							정**	광주광역시 북구					
							채**	광주광역시 북구					

◆ 동작구고시 제2022-2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2-100호(1972.07.19.)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고시 제2021-249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9호(2020.06.18.)호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2-10호(2022.01.2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45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본동 10-30~10-41	48	4	235	본동 10-30	본동 10-41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정)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관리	
1	기정	동작구 동농본동	10-51	대	7	7	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동 ****호 (식사동, 위시티일사자이2단지)					
							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					
							강**	서울 강북구 순인로7길 ** ****-**** (미아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오**	서울 동작구 본동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2	기정	동작구 동농본동	10-50	대	1	1	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동 ****호 (식사동, 위시티일사자이2단지)					
							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					
							강**	서울 강북구 순인로7길 ** ****-**** (미아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오**	서울 동작구 본동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 동작구고시 제2022-2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354호(1990.10.31.)로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고시 제2021-210호(2021.09.16.), 동작구고시 제2021-249호(2021.10.28.), 동작구고시 제2021-251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0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311호(2021.12.23.), 동작구고시 제2022-86호(2022.05.2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46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4동 201-135~204-45	110	4	458	상도4동 201-135	상도4동 204-45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4-269	대	53	53	전주*씨 **대군파종중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0-*				
2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34	대	75	75	전주*씨 **대군파종중	서울 중구 세종대로 ** (남대문로5가)				
3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31	대	9	9	김*옥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5, ***동 ***호 (창동, 창동 현신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 (을지로1가)	근저당권	
4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27	도로	15	15	정*남	서울 동작구 성대로37길 ** (상도동)				
5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28	대	3	3	정*남	서울 동작구 성대로37길 ** (상도동)				
6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30	대	8	8	우*기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9길 2-**(상도동)				
							최*애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9길 2-**(상도동)				
7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29	대	295	295	전주*씨 **대군파종중	서울 중구 세종대로 ** (남대문로5가)				

◆ 동작구고시 제2022-2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총독부 고시 제1936-772호(1936.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1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2-185호(2022.12. 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48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동(대3-18)~(중3-35)	317	12	2,235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유권리	
1	기정	동작구 양천동 상도동	264-135	대	30	30	이**	서울 강서구 양천로 *** ***동 ***호					
2	기정	동작구 양천동 상도동	264-148	대	17	17	주식회사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 (고정리)					
3	기정	동작구 양천동 상도동	264-149	대	7	7	주식회사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 (고정리)					
4	기정	동작구 양천동 상도동	264-136	대	43	43	주식회사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 (고정리)					
5	기정	동작구 양천동 상도동	264-138	도로	76	76	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 ***동 ***호					
6	기정	동작구 양천동 상도동	244-382	대	1	1	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					

□ 물건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유관리	
1	기정	상도동 264-138	주택	시멘트블록조		56	이**	강남구 개포동*** ***동***호				상도동 264- 186
2	기정	상도동 244-339	주택	연외조		1	윤**	서울 동작구 귀사동*길**, ***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송 실대역지점)		상도동 264- 185
3	기정	상도동 244-339	창고	시멘트블록조	75.30	29.2	윤**	서울 동작구 귀사동*길**, ***호				상도동 264- 185
4	기정	상도동 244-339	주택	시멘트블록조	27.16	1.3	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7(번)길**				상도동 244- 234
5	기정	상도동 244-339	점포	시멘트블록조	15.67	24.8	이**	서울 동작구 성대로**길**, ***호				상도동 244- 291
							조**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길**				
6	기정	상도동 237-3	주택	시멘트블록조	11	11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층				

◆ 동작구고시 제2022-2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2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949호(2022.12.0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동 173-3 ~ 170	106	6	1,113	사당동 173-3	사당동 17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1	동작구 신당동	173-9	대	40	36	이순	서울 중구 예관동 122-*					
2	동작구 신당동	170-2	답	438	431	고*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903, ***동 ****호(오포우림아파트)					
						고*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3길 20, *동 ***호(신월동, 제현연립)					
						고*례	경기도 광주시 경흥대로142번길 41, ***동 ****호(쌍령동, 쌍령현대아파트)					
						고*석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9, ***동 ***호(신관동, 현대아파트)					
						고*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421, ***동 ****호(야탑동, 탑마을)					
						고*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					
						고*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52, *동 ***호(사당동 대림아파트)					
						장*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73, ***동 ***호					
						고*미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46, 호성해링턴 ***동 ***호					
						고*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9길 17-2, ***호					
						고*복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53, ****동 ****호					
						고*하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96, ***동 ***호					
						고*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73, ***동 ***호					

◆ 서초구고시 제2022-24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249번지 일원 통행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J	2.5~ 6.3	특수 도로	28	신원동 248	신원동 269-11	보행자 도로	-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141호 (2017.10.26.)	-
변경	소로	3	J	4.0~ 6.3	국지 도로	28	소로 3-3	중로 3-B	일반도로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J호선	소로3-J호선	○ 도로변경(폭원, 기능, 사용형태) - 폭원: 2.5~6.3m → 4.0~6.3m - 기능: 특수도로 → 국지도로 - 사용형태: 보행자전용도로 → 일반도로 - 시종점 소재지 변경: - 시점) 신원동248 → 소로3-3 - 종점) 신원동269-11 → 중로3-B	○ 청룡마을 신원동 일원의 통행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폭원 및 기능 변경

나.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초구고시 제2022-2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39-6번지 일원 서초교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 도로소통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48	서초동 1739-4	서초동 1660-20	일반 도로	-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 3-1	○ 도로신설 - 기점: 서초동 1739-4 - 종점: 서초동 1660-20 - 폭원: 6m(현황도로 4m → 6m 확폭) - 연장: 48m	○ 서초교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 기부채납 (106.9㎡)에 따른 도로시설 결정

나.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초구고시 제2022-246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75호(2022.6.23.)로 결정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 교통시설(변경)

○ 주차장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서초동 1542-12	서초동 1542-11,12	493.9	증)300.1	794	서초구고시 제64호 (96.12.05.)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서초동 1542-11,12	-	증)794	794	-	공공청사 및 주차장 중복결정
	주차장		493.9	증)300.1	794		

○ 중복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794㎡	주민센터 청사 내 증원 인력 수용 및 부족한 사무공간, 주민문화 및 여가 활동공간 확보를 통해 협소한 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면적 794㎡	도시계획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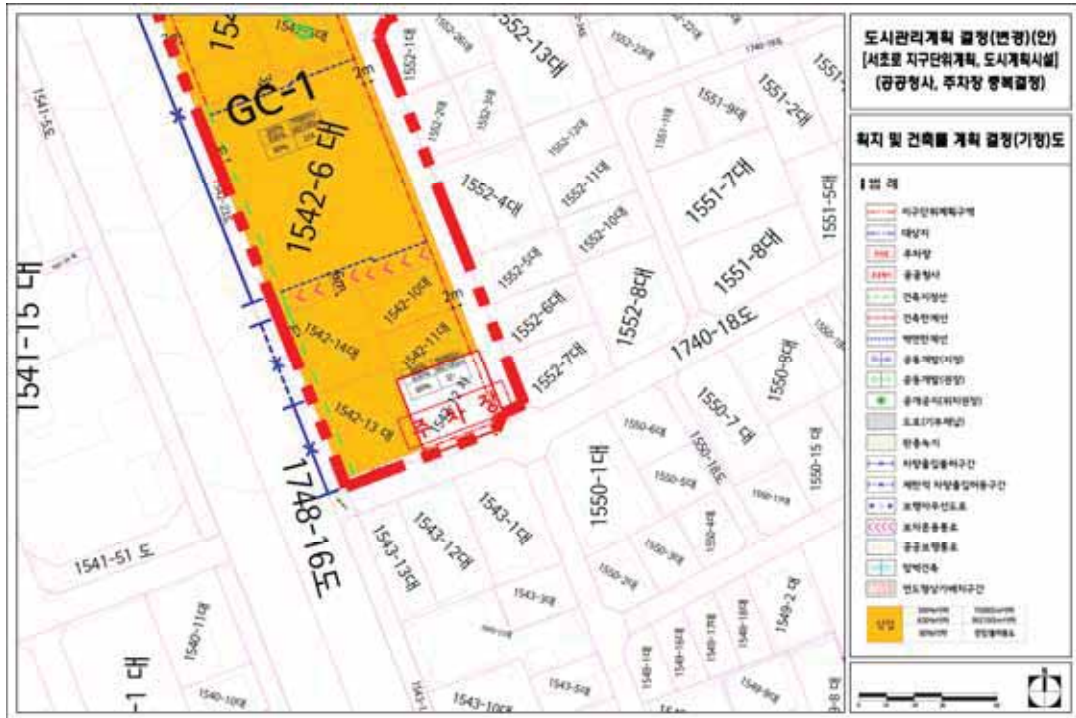
2.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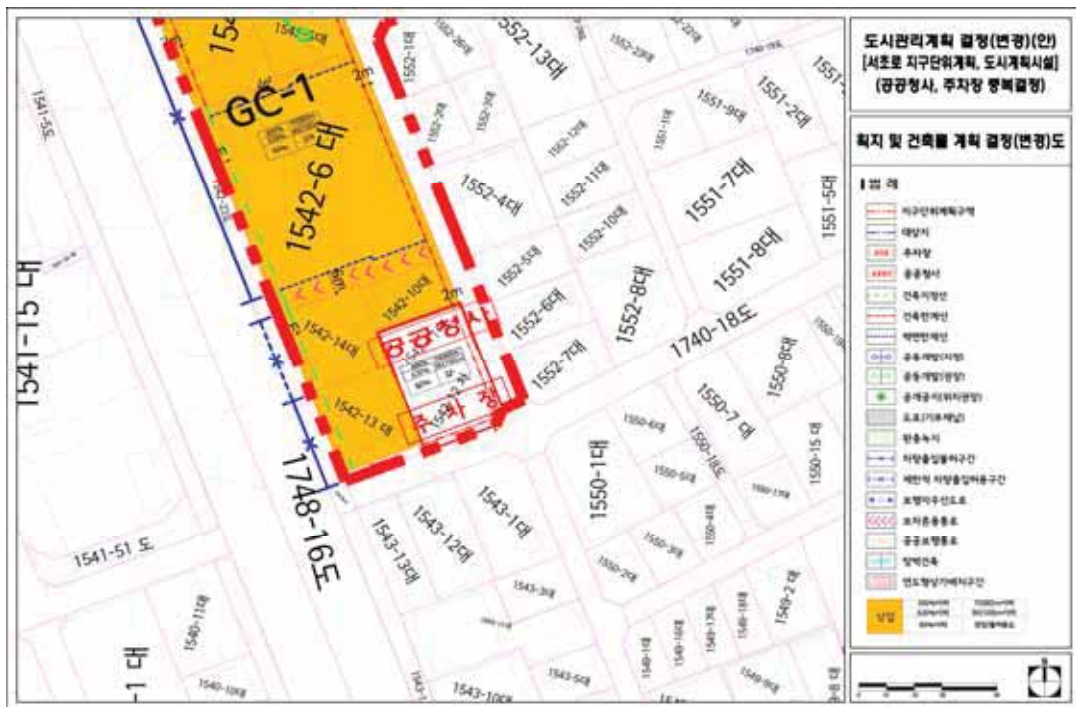
3.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획지 및 건축물계획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계획 결정(변경)도]



◆ 강남구고시 제2022-232호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3.30.)로 상세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7.15.), 제2017-74호(2017.3.2.), 제2018-32호(2018.2.1.)로 결정(변경)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3.30.)로 상세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7.15.), 제2017-74호(2017.3.2.), 제2018-32호(2018.2.1.)로 결정(변경)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및 획지 간 공동개발 지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 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경찰서	개포동 14	9,917.4	-	9,917.4	서고 제534호 (89.12.16.)	
기정	2	공공청사	주민 자치센터	개포동 12-6, 12-12	999.9	-	999.9	서고 제63호 (95.3.8.)	개포동12-6 도시철도 중복결정
		공공청사	파출소	개포동 12-9, 12-13	165.0	-	165.0	서고 제63호 (95.3.8.)	개포동 12-13 도시철도 중복결정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공공청사	주민 자치센터	개포동 12-6, 12-9, 12-13	999.9	증)165	1,164.9	서고 제63호 (95.3.8.)	개포동 12-6, 12-13 도시철도 중복결정
기정	3	공공청사	우체국	개포동 14-4	4,958.7	-	4,958.7	서고 제534호 (89.12.16.)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 주민자치센터 - 위치: 12-6, 12-12 → 12-6, 12-9, 12-13 - 면적: 999.9㎡ → 1,164.9㎡ (증 165㎡) · 파출소 - 위치 : 12-9, 12-13 → 폐지 - 면적 : 165.0㎡ → 0㎡ (감 165㎡)	· 파출소부지 폐지 후 주민자치센터로의 편입에 따른 공공청사 위치 및 면적 변경 · 주민자치센터부지 12-6, 12-12번지가 12-6번지로 합병됨에 따른 위치 변경

■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기정	개포동 14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수서경찰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개포동 12-6, 12-12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일원2동주민센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개포동 12-9, 12-13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개포동 12-6, 12-9, 12-13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일원2동주민센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개포동 14-4	50% 이하	250% 이하	61m 이하	강남우체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학교시설: 변경 없음

(3)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번 호	지 번	면 적(㎡)	
기정	BL1	149,685.8	1-1	개포동 12	28,517.73	특별계획구역1-1
			1-2	개포동 12	53,259.24	특별계획구역1-2
			1-3	개포동 12	39,263.43	특별계획구역1-3
			2	개포동 12-1	9.3	단독개발
			3	개포동 12-2	15,487.30	
			4	개포동 12-3	2,488.10	
			5	개포동 12-4	2,229.90	
			6	개포동 12-5	1,649.70	
			7	개포동 12-6	999.9	
			8	개포동 12-7	1,535.90	
			9	개포동 12-8	3,212.20	
			10	개포동 12-9	144.1	
			11	개포동 12-10	686	
			12	개포동 12-11	182.1	
			13	개포동 12-13	20.9	
변경	BL1	149,685.8	1-1	개포동 12	28,517.73	특별계획구역1-1
			1-2	개포동 12	53,259.24	특별계획구역1-2
			1-3	개포동 12	39,263.43	특별계획구역1-3
			2	개포동 12-1	9.3	단독개발
			3	개포동 12-2	15,487.30	
			4	개포동 12-3	2,488.10	
			5	개포동 12-4	2,229.90	
			6	개포동 12-5	1,649.70	
			8	개포동 12-7	1,535.90	
			9	개포동 12-8	3,212.20	
			11	개포동 12-10	686	
			12	개포동 12-11	182.1	
			7	개포동 12-6	999.9	공동개발(지정)
			10	개포동 12-9	144.1	
			13	개포동 12-13	20.9	
기정	BL2	45,960.5	14	개포동 13	13,000.5	단독개발
			15	개포동 13-1	13,568.30	
			16	개포동 13-2	1,947.20	
			17	개포동 13-3	4,188.50	
			18	개포동 13-4	404.6	
			19	개포동 13-5	12,851.40	
기정	BL3	9,917.4	20	개포동 14	9,917.40	단독개발
기정	BL4	18,439.8	21	개포동 14-1	1,807.80	단독개발
			22	개포동 14-2	1,807.70	
			23	개포동 14-3	1,652.80	
			24	개포동 14-4	4,958.70	
			25	개포동 14-5	9,238.50	
			26	개포동 14-6	414.3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동개발(지정) 1개소 신설 - 개포동 12-6, 12-9, 12-13	• 공공청사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획지 간 공동개발 1개소 신설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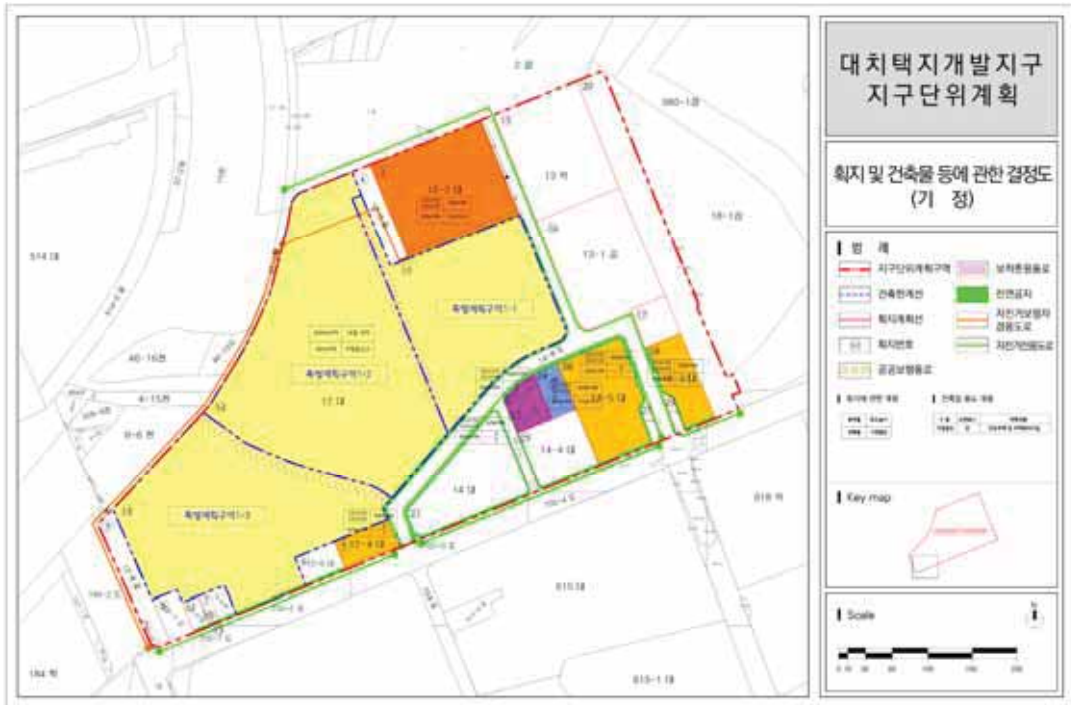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기 정



-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기 정



- 변경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22-1426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광진구 관내 2022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84), 도로과(☎450-78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광진구청장

가.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2022년)

(단위 : 백만원)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22~' 24년)			2-1단계('25~' 26년)			2-2단계('27년 이후)			
	건수	면적 (㎡)	소요 예산	건수	면적 (㎡)	소요 예산	건수	면적 (㎡)	소요 예산	건수	면적 (㎡)	소요 예산	
계	23	45,025	208,116	1	150	240	1	990	180	21	43,885	207,696	
도로	12	27,108	95,470	1	150	240	1	990	180	10	25,968	95,050	
공원	4	7,358	48,896	-	-	-	-	-	-	4	7,358	48,896	
문화시설	1	1,900	26,000	-	-	-	-	-	-	1	1,900	26,000	
공공공지	1	750	5,200	-	-	-	-	-	-	1	750	5,200	
주차장	2	5,820	21,650	-	-	-	-	-	-	2	5,820	21,650	
공공청사	1	1,029	6,000	-	-	-	-	-	-	1	1,029	6,000	
사회복지시설	2	1,060	4,900	-	-	-	-	-	-	2	1,060	4,900	

나.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 별첨

다. 관련도서 : 생략

단계별집행계획(23건)

연 번	시설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호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백만원)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1	도로	위치:구의동 80-25-620-16 규모:폭원4-6m, 연장30m	2024~	240	240	240					240						'30.04.23	
2	도로	위치:중곡동 294-16-294-1 규모:폭원6m, 연장165m	2025~	180	180	180							180				'27.12.07	
3	도로	위치:자양동 716-구의동 591-29 규모:폭원14m, 연장284m	2027~	10,700						10,700							'29.06.05	
4	도로	위치:자양동 683-6-781-4 규모:폭원18m, 연장201m	2027~	9,800						9,800							'29.06.05	
5	도로	위치:자양동 680-86-680-83 규모:폭원12m, 연장270m	2027~	8,750						8,750							'29.06.05	
6	도로	위치:자양동 779-2-779-24 규모:폭원8m, 연장170m	2027~	2,000						2,000							'29.06.05	
7	도로	위치:자양동 778-18-777-1 규모:폭원6-8m, 연장346m	2027~	2,400						2,400							'29.06.05	
8	공원	위치:자양동 680-81일대(지상) 규모:면적2,820㎡	2027~	20,000						20,000							'29.06.05	
9	문화시설	위치:자양동 680-81일대 규모:면적1,900㎡	2027~	26,000						26,000							'29.06.05	
10	공공공지	위치:자양동 680-81일대 규모:면적750㎡	2027~	5,200						5,200							'29.06.05	
11	주차장	위치:자양동 680-81일대(지하) 규모:면적2,820㎡	2027~	10,000						10,000							'29.06.05	
12	공원	위치:자양동 553-267일대 규모:면적471.8㎡	2027~	7,246						7,246							'31.01.21	
13	도로	위치:구의동 253-53-254-15 규모:폭원8m, 연장197m	2027~	13,000						13,000							'35.10.02	

연 번	시설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호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백만원)	국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지방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14	도로	위치:구의동 254-97~254-108 규모:폭원6~10m, 연장430m	2027~	5,600					5,600								5,600	'35.10.02
15	도로	위치:구의동 254-102~254-30 규모:폭원8m, 연장54m	2027~	2,700					2,700								2,700	'35.10.02
16	도로	위치:구의동 254-33~254-114 규모:폭원8m, 연장57m	2027~	5,300					5,300								5,300	'35.10.02
17	공원	위치:구의동 254-104일대 규모:면적1,066㎡	2027~	10,000					10,000								10,000	'35.10.02
18	도로	위치:자양동 582-1~482-1 규모:폭원12m, 연장454m	2027~	34,800					34,800								34,800	'38.08.31
19	주차장	위치:자양동 471일대(지하) 규모:면적3,000㎡	2027~	11,650					11,650								11,650	'38.08.31
20	공원	위치:자양동 471일대(지상) 규모:면적3,000㎡	2027~	11,650					11,650								11,650	'38.08.31
21	공공청사	위치:자양동 462-20 일대 규모:면적1,029㎡	2027~	6,000					6,000								6,000	'38.08.31
22	사회복지시설	위치:자양동 466-12일대(어린이집) 규모:면적860㎡	2027~	3,900					3,900								3,900	'38.08.31
23	사회복지시설	위치:자양동 466-16일대(경로당) 규모:면적200㎡	2027~	1,000					1,000								1,000	'38.08.31
		총 계	208,116			420			207,696			240	180				207,696	

※ 개략산출금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도로 12건(85,470백만원), 공원 4건(48,896백만원), 문화시설 1건(26,000백만원), 공공공지 1건(5,200백만원), 주차장 2건(21,650백만원)
 공공청사 1건(6,000백만원), 사회복지시설 2건(4,900백만원)

◆ 은평구공고 제2022-2047호
도시관리계획(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05.)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81호(2002.08.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3호(2012.10.2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재정비) 결정 고시된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22.12.29.(목)

나. 열람기간 : 2022.12.29.~2023.01.12.(14일)

다.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13)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녹번동 185번지 일대	125,300	증)59,500	184,800	1996.07.0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

2)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포구공고 제2022-1751호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마 포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신 설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4,720.7

■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 설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4,720.7	광흥창역(6호선)·서강대역(경의중앙선) 역세권 내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720.7	-	4,720.7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720.7	감) 4,720.7	-	-	
	준주거지역	-	증) 4,720.7	4,720.7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사유
	기정	변경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4,720.7	500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7	15~18	집산도 로	일반	1,200	신수동	현석동	62.12.8. (건고 177)
기정	중로	2	28	15	집산도 로	일반	310	신수동 91-611	신수동 98-27	53.3.25. (내고 23)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 로	일반	140	중로2-35	중로2-20	20.11.19. (마포구고시 제2020-178호)

2) 공간시설 -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위치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마포구 신수동 91-101번지 일대	821.0	-	821.0	20.11.19. (마포구고시 제2020-178호)

3. 획지 등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획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획지	A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4,720.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허용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불허용도 (a)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건축계획 57.79%
용적률	기준	200%	
	허용	430%	
	상한	475% 이하	건축계획 470.40%
높이		최고높이 92m 이하	건축계획 91.93m

다. 공공시설 부담계획

구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				비고
면적		4,720.7㎡				
공공시설부담율		20% 이상				2단계 상향
공공시설 의무면적		944.14㎡ 이상				4,720.7㎡×20% = 944.14㎡
공공시설 확보면적	합계	1,586.62㎡				
	사회복지 시설	1,114.55㎡ (환산부지면적 818.15㎡ 토지지분 296.40㎡)				지상 1층 / 연면적 : 2,386.87㎡ 다함께돌봄센터, 디지털배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부채납시설은 추후 협의에 따라 세부용도 변경 가능
	공공 임대주택	472.07㎡ (공급면적 : 5,437.49㎡ 계약면적 : 9,480.97㎡)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로 순부담율의 1/2까지(472.07㎡) 같음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체 전용면적×획지면적 = 4,261.46㎡/17,366.27㎡ ×4,720.7㎡ = 1,158.4㎡
세대수 및 면적	구분	합계	59㎡	84㎡	139㎡	공공면적(㎡)
	합계(세대)	212	104	104	4	19,937.41㎡(100.0%)
	분양(세대)	153	74	75	4	14,499.84㎡(72.7%)
	공공임대 주택(세대)	59	30	29	-	5,437.57㎡(27.3%)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를 부담률로 같은 수 있음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기여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구분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의무면적		944.14㎡ (20.0%)		
		공공시설 확보면적		1,586.62㎡ (33.6%)		
		사회복지시설		1,114.55㎡ (23.6%)		
		공공임대주택		472.07㎡ (10.0%)		

※ 계획 내용은 향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도면표시번호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A	공공임대주택은 전용60㎡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단,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용적률 증가분 = (허용-기준용적률)×1/2 = (430%-200%)×1/2 = 115% 의무면적 : 4,720.7㎡×115% = 5,428.81㎡ 전용 85㎡ 이하 : 총 59세대(115.19%)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th><th>공급면적</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tr><td>59A</td><td>59.94㎡</td><td>76.55㎡</td><td>30세대</td><td>2,296.50㎡</td></tr><tr><td>84A</td><td>84.94㎡</td><td>108.31㎡</td><td>29세대</td><td>3,140.99㎡</td></tr><tr><td colspan="3">합계</td><td>59세대</td><td>5,437.49㎡</td></tr></table>	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A	59.94㎡	76.55㎡	30세대	2,296.50㎡	84A	84.94㎡	108.31㎡	29세대	3,140.99㎡	합계			59세대	5,437.49㎡	
		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A	59.94㎡	76.55㎡	30세대	2,296.50㎡																	
		84A	84.94㎡	108.31㎡	29세대	3,140.99㎡																	
합계			59세대	5,437.49㎡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중로2-27호선(신수로)변 대지경계선	2m	
	중로2-28호선(신수로8길)변 대지경계선		
	소로1-a호선(신수로6길)변 대지경계선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전면 공지	신수로, 신수로8길, 신수로6길	보도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신수로8길 일대 단차를 없애고 통행 가능한 구조로 설치	건축한계선 2m
보행 통로	신수로6길~신수로 연결하는 보행통로 설치	폭 4m, 높이 4m 이상의 보행통로 1개소 설치 단, 구역경계부근은 지형차를 고려한 우회설치가	

4. 열람기간 : 2022. 12. 29. ~ 2023. 1. 12. (14일간)
5.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72)
6.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7.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강서구공고 제2022-2330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및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안)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에 대하여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846)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안)

1)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440,474	증) 2,718.2	443,192.2 (2,718.2)	서고시제318호 (2002.8.1)	

주) () 면적은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사업대상지 면적임

□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443,192.2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사업부지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 (증) 2,718.2㎡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0,192.2	증 2,718.2	443,192.2	100.0%	
주거지역	소 계	381,929.1	증 2,718.2	384,647.3	86.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564.0	-	12,564.0	2.8%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05.0	-	31,205.0	7.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545.0	-	250,545.0	56.5%	
	준주거지역	87,615.1 (-)	증 2,718.2	90,333.3 (2,718.2)	20.4%	
상업지역	소 계	58,035.9	-	58,035.9	13.1%	
	일반상업지역	52,669.0	-	52,669.0	11.9%	
	근린상업지역	5,366.9	-	5,366.9	1.2%	
녹지지역	소 계	509.0	-	509.0	0.1%	
	자연녹지지역	509.0	-	509.0	0.1%	

주) () 면적은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사업대상지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2,718.2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 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미관지구: 변경없음

- 시설보호지구: 변경없음

- 고도지구: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 교통시설계획: 변경없음
- ☐ 공간시설계획: 변경없음
- ☐ 공공·문화시설: 변경
- 문화시설: 변경없음
- 공공청사: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신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입체적결정		
				구분	높이(m)	면적(㎡)
신설	공공청사	지역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지상1층	9.5 ~ 15.2(해발고도)	22.64
				지상2층	15.2 ~ 20.6(해발고도)	828.79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대지지분 198.07㎡ 포함),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 될 수 있음

※ 공공청사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전기실·기계실 등 공용공간의 면적은 별도 표기 (설비시설면적: 19.18㎡)

● 결정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공청사 (지역주거복지센터)	- 위 치: 지상1층 일부 ~ 지상2층 - 연 면 적: 870.61㎡(설비시설면적 포함) - 대지지분: 198.07㎡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업무 및 대시민 교육·상담공간 지원을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 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 도면번호 E1, E-3-b, E-3-c, E-4-a, E-4-b, E-5-a, E-5-b, E-6: 변경없음
- 도면번호 E-3-a: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비 고
신설	E-3-a	10	2,718.2	준주거지역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가구 신설 - 가구번호 : 10 - 가구면적 : 2,718.2㎡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사업부지의 공행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가구 신설

- ☐ 최대개발규모: 변경없음

☐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신설	E-3-a	10	내발산동 652-4번지	2,718.2	단일필지	역세권 복합개발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획지 신설 - 획지면적 : 2,718.2㎡	단일 소유 필지인 대상지 전체를 단일 획지로 지정

마)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용도: 변경**

-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없음
-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기 정	A1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제외)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 <table><tr><th>'91.5.11이전 상업지역</th><th>'91.5.11이후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h></tr><tr><td>전체 용적률의 15%이상</td><td>전체 연면적의 30%이상</td></tr></table>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91.5.11이전 상업지역	'91.5.11이후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전체 용적률의 15%이상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 제2종근린생활시 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91.5.11이전 상업지역	'91.5.11이후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전체 용적률의 15%이상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A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제외)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 <table><tr><th>'91.5.11이전 상업지역</th><th>'91.5.11이후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h></tr><tr><td>전체 용적률의 15%이상</td><td>전체 연면적의 30%이상</td></tr></table>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편주점, 안마시술소 • 위락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창고시설	'91.5.11이전 상업지역	'91.5.11이후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전체 용적률의 15%이상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		
'91.5.11이전 상업지역	'91.5.11이후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전체 용적률의 15%이상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기 정	A3	근린상업지역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판매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종교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내발산동 647-1 일원에 한함
	B1	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는 전체 용적률의 15% 이상 적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창고시설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B2	주거지역 (이면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B3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및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공향동 11-21번지 및 염창동 275번지 일원에 한함
신 설	B4	준주거지역 (이면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및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내발산동 652-4번지에 한함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참조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성기구취급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은 불허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제⑤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등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가능함

주5) 상기내용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해당함

주6)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만족할 것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불허용도(B4) 신설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불허용도 계획 수립

－ 건축물의 지정용도 : 변경

구분			내 용	비 고
기정	가	염창동260-7 외 2필지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기정	나	등촌동 505-7번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기정	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상 1~2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공향동 11-21번지 및 내발산동 647-1일원
기정	라	염창동 2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하2층~지상2층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	
신설	마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제외)는 전제용적률의 10%이상) ●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주1) 역세권 청년주택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거 제외
 주2) 역세권 복합개발 공동주택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지정용도(마) 신설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정용도 계획 수립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기정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자연녹지지역	20%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변경
[기정]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 고
종 전	변 경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 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 준주거 8m미만대지)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 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 준주거 8m미만대지)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	800%이하	-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250%이하	630%이하	50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07.05)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이하	250%이하	360%이하	30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1996.03.06) 서울시고시 제1996-231호 (1996.08.14)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00%이하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7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0%이하		200%이하		
자연녹지지역		-		50%이하		

[변경]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 고
종 전	변 경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 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 준주거 8m미만대지)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 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 준주거 8m미만대지)	
일반상업지역		500%이하	-	800%이하	-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0%이하	250%이하	630%이하	50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07.05)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이하	250%이하	360%이하	300%이하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1996.03.06) 서울시고시 제1996-231호 (1996.08.14)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 고
종 전	변 경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 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 준주거 8m미만대지)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 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 준주거 8m미만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준주거지역	180%		200%		상한용적률 : 430%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00%이하		230%이하		상한용적률 :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7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0%이하		200%이하		
자연녹지지역		-		50%이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체계 결정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기준/허용/상한용적률 결정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공통사항 : 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 변경

용 도 지 역		유 형	비고
종 전	변 경		
일반상업지역		C1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C2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SR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준주거지역)		SR-1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R3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R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R2-2	

●인센티브 유형 SR-1 : 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준주거지역) 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E-3-a ㉔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180/200		
중점계획목표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항 목	원 화 기 준		비 고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9%	6%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6%	3%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15%	12%	9%
역사문화보전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정]

용도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구 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	65m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고도지구 (H1 : 수평표면 해발 57.86m이하, H2 : 원추표면 해발112.86m이하)를 초과할 수 없음
	이면부			
근린상업지역	내발산동 647-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60m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해발 68.0m이하를 초과할 수 없음. (내발산동 647-1일원 청년주택에 한함)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60m이하	70m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고도지구 (H1 : 수평표면 해발 57.86m이하, H2 : 원추표면 해발112.86m이하)를 초과할 수 없음
	이면부	-	45m이하	
	염창동 2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55m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55m이하	
	이면부	-	35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30m이하	
	이면부	-	25m이하	
	7층이하	-	25m이하	
자연녹지지역	-	-	-	

주1) 특별계획구역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각각의 세부 개발계획의 지침에 따름.

주2)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완화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높이 $\times \{ (1 +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당초의 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상한용
적률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변경]

용도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구 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	65m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고도지구 (H1 : 수평표면 해발 57.86m이하, H2 : 원추표면 해발112.86m이하)를 초과할 수 없음
	이면부			
근린상업지역	내발산동 647-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60m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해발 68.0m이하를 초과할 수 없 음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60m이하	70m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고도지구 (H1 : 수평표면 해발 57.86m이하, H2 : 원추표면 해발112.86m이하)를 초과할 수 없음
	이면부	-	45m이하	
	염창동 2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55m이하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	50m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55m이하	
	이면부	-	35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30m이하	

용도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구 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이면부	-		
	7층이하	-	25m이하	
자연녹지지역	-	-	-	

주1) 특별계획구역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각각의 세부 개발계획의 지침에 따름.

주2)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완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상한용적률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50m이하 신설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는 계획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내 최고높이 계획 신설

☐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건축한계선 및 건축물 디자인 외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3~5m(간선도로변)	
	• 2m(15m이상의 이면도로변)	
	• 1~2m(15m미만의 이면도로변)	
건축물 디자인	- 입면분절 및 입체적 디자인 적용을 등을 통해 리듬감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삭막하고 위압적인 이미지 완화 유도 - 건축물 내 열린 공간 형성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형성 - 필로티 조성을 통하여 보행자 시점에서 쾌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신설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이면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계획

바)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전면공지 외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공지	• 3~5m(간선도로변)	
	• 2m(15m이상의 이면도로변)	
	• 1~2m(15m미만의 이면도로변)	

※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이면도로변 2m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동선 및 주차 : 변경없음

☐ 환경친화적 요소 : 변경없음

☐ 공공기여계획 : 신설

구분	위치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내용	공공기여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26.74% 이상 (726.96㎡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532.41㎡ (19.59%)	완화된 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등 부속토지	198.07㎡ (7.29%)	
합계				730.48㎡ (26.88%)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 공공기여계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 2016.6.8.)를 적용하여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은 서울시로 무상귀속 됨

☐ 타법에 따른 기준 완화사항 : 신설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고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	용적률과 연계하여 완화범위 차등화 (용적률 400~500% 1.2배 이내)	1.2배 완화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사)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

가) 사업명 :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나) 건축개요

- ☐ 위 치: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 ☐ 구역면적: 2,718.2㎡
-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종상향)
- ☐ 용 도: 근리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공공기여시설(공공청사)
-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 건축면적: 1,507.65㎡
- ☐ 연 면 적: 15,992.352㎡(용적률 산정 연면적 11,684.1397㎡)
- ☐ 건 폐 율: 55.47%
- ☐ 용 적 률: 429.85%
- ☐ 주차계획: 139대

다)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18.2	-	2,718.2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718.2	감) 2,718.2	-	-	-
	준주거지역	-	증) 2,718.2	2,718.2	100.0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2,718.2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 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상 향

라) 공공기여계획: 신설

구분	위치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내용	공공기여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26.74% 이상 (726.96㎡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532.41㎡ (19.59%)	완화된 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등 부속토지	198.07㎡ (7.29%)	
합계				730.48㎡ (26.88%)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마)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등·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 공공기여계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 2016.6.8.)를 적용하여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은 서울시로 무상귀속 됨

바) 타법에 따른 기준 완화사항 : 신설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고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	• 용적률과 연계하여 완화범위 차등화 (용적률 400~500% 1.2배 이내)	• 1.2배 완화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2-227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구로구청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건, m², 백만원)

시설명	사업개요			단계별집행계획					
	건수	규모	사업비	1단계 (' 23~ '25)		2-1단계 (' 26~ '27)		2-2단계 (' 28~)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53	237,938	189,186	14	42,387	9	74,942	30	67,624
도 로	35	72,031	49,210	13	35,387	7	9,590	15	미정
공 원	8	134,994	미정	-	-	1	미정	7	미정
공공공지	3	8,466	66,017	-	-	-	-	3	66,017
사회복지시설	2	2,946	1,607	-	-	-	-	2	1,607
공공청사	1	3,286	미정	-	-	-	-	1	미정
녹 지	2	9,865	미정	-	-	-	-	2	미정
광 장	1	5,370	65,352	-	-	1	65,352	-	-
주 차 장	1	980	7,000	1	7,000	-	-	-	-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붙임 참조

다. 관계도면: 생략

라.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860-22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폭원 (m)	연장 (m)	면적 (㎡)		국비	계	시비	구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총 계	53건			237,938	189,186	1,300	153,899		153,899	33,987	'23	'24	'25	'26	'27	'28년이후
		도로 소계	35건			72,031	49,210	1,300	20,923		20,923	26,987	26,387	4,200	4,800	74,942	-	67,624
		도로 1단계	13건			9,763	39,620	1,300	11,333		11,333	26,987	26,387	4,200	4,800	9,590	-	-
1	도로	오류동 13-224 ~ 오류동 317-1	'23	6	95	570	2,703		2,703		2,703		1,300					2041.01.08
2	도로	고척동 76-321 ~ 고척동 76-232	'23	8	85	680	4,750		4,750		4,750		3,800					2041.01.08
3	도로	고척동 229-1 ~ 고척동 신 8-1	'23	6	100	600	2,380	300	2,080		2,080		1,400					2041.01.08
4	도로	오류동 36-8 ~ 오류동 6-2	'24	6	90	540	5,760		-			5,760		2,730	3,030			2041.04.23
5	도로	오류동 25-41 ~ 오류동 38-29	'24	6	50	300	3,240		-			3,240		1,470	1,770			2041.04.23
6	도로	공동 137-2 ~ 공동 131-1	'23	8	135	1,080	1,600	700	600		600	300	1,000					2042.02.25
7	도로	공동 131-1 ~ 공동 124-1	'23	6	150	900	1,500	300	1,200		1,200		1,200					2042.10.14
8	도로	신도림동 416-28 ~ 복측구역계																
9	도로	복측구역계 ~ 신도림동 416-67																
10	도로	신도림동 416-63 ~ 신도림동 417	'23	6~15	485	5,093	17,687		-			17,687	17,687					-
11	도로	신도림동 419-39 ~ 신도림동 416-7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세비	구비		민간	'23	'24	'25	'26			'27
																		</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호시기
				폭원 (m)	연장 (m)	면적 (㎡)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3	'24	'25	'26		'27	
25	도로	구로동 65 ~ 구로동 440	'27~	8	27	216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6.04.01
26	도로	신도림동 419 ~ 신도림동 281-132	'28~	35	301	10,535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27	도로	신도림동 416-40 ~ 신도림동 394-1	'28~	23	39	897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28	도로	신도림동 287-7 ~ 신도림동 276-57	'28~	12	680	8,160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29	도로	신도림동 396-22 ~ 신도림동 296-90	'28~	12	431	5,172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30	도로	신도림동 396-277 ~ 신도림동 286-3	'28~	10	241	2,410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31	도로	신도림동 397-24 ~ 신도림동 396-248	'28~	10	110	1,100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32	도로	신도림동 299-3 ~ 신도림동 271-8	'28~	10	236	2,360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33	도로	신도림동 296-113 ~ 신도림동 387-5	'28~	8	23	184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34	도로	신도림동 300-1 ~ 신도림동 324-4	'28~	8	68	544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35	도로	신도림동 643-1 ~ 신도림동 643-1	'28~	8	160	1,280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2.10.26
		공원 소계	8건			134,994	-					-					-		-	
36	근린공원	교척동 266-1 일대	'28~			108,120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0.05.14
37	근린공원	교척동 316-17 일대	'28~			17,464	미정	-	-	-	-	미정	-	-	-	-	-	-	미정	2030.05.14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폭원 (m)	연장 (m)	면적 (㎡)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3	'24	'25	'26		'27	
38	소공원	고척동 57-65 일대	'28~			852	미정		-										미정	2036.11.11
39	소공원	구로동 440번지 일대	'27~			1,651	미정		-									미정		2036.04.01
40	문화공원	오류동 156-15	'28~			1,561	미정		-									미정		2035.07.31
41	소공원	신도림동 396-4 일대	'28~			2,595	미정		-									미정		2032.10.26
42	소공원	신도림동 416-13 일대	'28~			1,667	미정		-									미정		2032.10.26
43	소공원	신도림동 300-5 일대	'28~			1,084	미정		-									미정		2032.10.26
		공공공지 소개	3건			8,466	66,017		66,017									66,017		
44	공공공지	오류동 331-25 일원	'28~			6,892	52,362		52,362									52,362		2028.05.30
45	공공공지	오류동 326-13 일원	'28~			1,487	13,446		13,446									13,446		2028.05.30
46	공공공지	천왕동 6-1번지	'28~			87	209		209									209		2034.12.05
		사회복지시설 소개	2건			2,946	1,607		1,607									1,607		
47	사회복지 시설	천왕동 6-7 일대	'28~			696	1,607		1,607									1,607		2034.12.05
48	사회복지 시설	신도림동 396-40 일대	'28~			2,250	미정		-									미정		2032.10.26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폭원 (m)	연장 (m)	면적 (㎡)	국비		계	시비	구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년이후			
		공공청사 소계	1건			3,286	-	-					-						-		
49	공공청사	계동동 465-9 일대	'28~			3,286	미정	미정					미정						미정	2030.05.14	
		녹지 소계	2건			9,865	-	-					-						-		
50	연결녹지	신도림동 293-4 일대	'28~			3,635	미정	미정					미정						미정	2032.10.26	
51	연결녹지	신도림동 285 일대	'28~			6,23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2032.10.26	
		광장 소계	1건			5,370	65,352	65,352		65,352		65,352					65,352		-		
52	교통광장	은수동 51-8	'26~			5,370	65,352	65,352		65,352		65,352					65,352			2028.05.30	
		주차장 소계	1건			980	7,000	7,000		-			7,000		7,000				-		
53	주차장	구로동 548 일대	'24~			980	7,000	7,000		-			7,000		7,000					2024.07.07	

◆ 영등포구공고 제2022-225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구분	계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3년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11	18,615	133,400	11	18,615	133,400
도로	10	13,981	109,172	10	13,981	109,172
공원	1	4,634	24,228	1	4,634	24,228

☐ 단계별집행계획(2단계)

연번	분 류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사업비(백만원)			비재정적	단계별 집행 계획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공사비	계		
1	도로	신길동 263-37 ~ 321-1	2025~	8	103	824	6,166	98	6,264	신길지구단위계획구역	2
2	도로	신길동 4902-16 ~ 4902-5	2025~	6	97	582	2,773	32	2,805	신길지구단위계획구역	2

연번	분 류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사업비(백만원)			비재정적	단계별 집 계 행 회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공사비	계		
3	도로	영등포동7가 76 ~ 75-3	2025~	10	43	430	2,991	22	3,013	영등포재정비촉 진지구	2
4	도로	영등포동5가 40-4~105-1	2025~	15	178	2670	25,726	409	26,135	영등포재정비촉 진지구	2
5	도로	영등포동5가 41-21~20-62	2025~	15	88	1320	15,032	205	15,237	영등포재정비촉 진지구	2
6	도로	영등포동5가 111 ~ 41-2	2025~	15	153	2295	25,054	357	25,411	영등포재정비촉 진지구	2
7	도로	영등포동5가 33-134~18-8	2025~	15	156	2340	22,320	363	22,683	영등포재정비촉 진지구	2
8	도로	영등포동5가 33-29 ~ 6-1	2025~	12	121	1452	900	203	1,103	영등포재정비촉 진지구	2
9	도로	영등포동5가 13-1 ~ 9	2025~	12	69	828	5,206	154	5,360	영등포재정비촉 진지구	2
10	도로	신길동 424-3 ~ 340-1	2025~	8	155	1240	955	206	1,161	신길재정비촉진 지구	2
11	공원	신길동 1200-1 일대	2025~	-	-	4634	23,798	430	24,228	메닉골 지구단위계획 구역(일부)	2

◆ 동작구공고 제2022-20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91호(2021.2.18.)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258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동작구 흑석동 256-1번지 등 일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의 변경(기간연장) 인가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6-1번지 등 일대
- 면 적 : 2,630㎡
- 내 용 : 공원조성(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무위임)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 업 명 :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5,406	2,630							
1	동작구 흑석동 252-21	대	126.0	126.0	최*우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2길 *-*	1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2	동작구 흑석동 252-22	대	99.0	99.0	서울특별시		1				
3	동작구 흑석동 252-23	공	75.0	75.0	서울특별시		1				
4	동작구 흑석동 252-25	대	3.0	3.0	서울특별시		1				
5	동작구 흑석동 252-31	대	70.0	70.0	서울특별시		1				
6	동작구 흑석동 252-32	대	212.0	212.0	서울특별시		1				
7	동작구 흑석동 252-36	공	75.0	75.0	서울특별시		1				
8	동작구 흑석동 252-43	대	153.0	153.0	홍*희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	1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9	동작구 흑석동 252-48	대	69.0	69.0	정*환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	1/2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차*운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	1/2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10	동작구 흑석동 252-50	대	56.0	56.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1	동작구 흑석동 252-86	대	8.0	8.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2	동작구 흑석동 252-88	대	138.0	138.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3	동작구 흑석동 256-1	공	1,956.0	199.0	서울특별시		1				
14	동작구 흑석동 256-31	공	13.0	13.0	서울특별시		1				
15	동작구 흑석동 256-50	임	2,028.0	1,009.0	서울특별시		1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6	동작구 흑석동 256-68	대	63.0	63.0	권*국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	1/2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이*정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	1/2	주택도시보증 공사		근저당권 설정	
17	동작구 흑석동 256-111	임	105.0	105.0	흑석3재정비촉 진구역주택재 개발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	1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
18	동작구 흑석동 산61-35	임	99.0	99.0	서울특별시		1				
19	동작구 흑석동 산61-46	임	58.0	58.0	서울특별시		1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구 분	내 용
위치도	
조성계획도	

◆ 동작구공고 제2022-204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33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2~2031)											
	건수	사업규모 (㎡)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투 자	공공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총 계	26 (13)	69,768 (45,401)	26,271 (18,671)	26,271 (18,671)			3,600		22,671 (15,071)	11,008 (8,708)	6,363	1,200	6,500 (1,200)	1,200	
도 로	11 (4)	21,813 (9,356)	10,990 (6,696)	10,990 (6,696)					10,990 (6,696)	6,158	538		4,294		
공 원	7 (5)	36,538 (33,428)	12,018 (11,551)	12,018 (11,551)			3,600		8,418 (7,951)	2,550	5,401	1,200	1,667 (1,200)	1,200	
공공공지	3	676	108	108					108		108				
공공청사	3 (1)	5,051 (1,941)	1,215 (316)	1,215 (316)					1,215 (316)	774	316		125		
사회복지시설	1	1,200	414	414					414				414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1	4,490	1,526	1,526					1,526	1,526					

나.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2~2031)						실효 시기	사업 시행 시기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위치	폭 (m)			연장 (m)	면적 (㎡)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도로	1	2022	노량진동 240-79 ~ 대방동 23-58	15	745	1,117.5	3,855					3,855	3,855							2022	2029			
도로	2	2022	노량진동 306-10 ~ 246-1	15	390	5,850	2,018					2,018	2,018								2022	2029		
도로	3	2022	노량진동 233-5 ~ 248-14	12	69	828	285					285	285								2022	2029		
도로	4	2023	흑석동 8-32 ~ 50-11	15	104	1,560	538					538	538								2022	2029		
도로	5	2025	신대방동 607-86 ~ 689-9	12	120	1,440	496					496	496					496			2025	2035		
도로	6	2025	신대방동 689-9 ~ 692-66	12'14	330	3,960	1,366					1,366	1,366					1,366			2025	2035		
도로	7	2025	신대방동 700-4 ~ 640-2	21	89	1,869	644					644	644					644			2025	2035		
도로	8	2025	신대방동 602-4 ~ 600-57	12	135	1,620	558					558	558					558			2025	2035		
도로	9	2025	신대방동 640-2 ~ 632-20	8	228	1,824	629					629	629					629			2025	2035		
도로	10	2025	신대방동 632-46 ~ 600-68	8	200	1,600	552					552	552					552			2025	2035		
도로	11	2025	신대방동 632-17 ~ 632-42	4	36	144	49					49	49					49			2025	2035		

○ 도시계획시설(공원)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2~2031)										실호 시기	사업 시행 시기							
		사업 기간	위치	사업규모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1년차	'23 2년차			'24 3년차	'25 4년차	'26 5년차		'27년 이후 6년차		
공원	1	2022	노량진동 296-9			13,861	2,550							2,550	2,550							2029	2022	
공원	2	2023	흑석동 105			3,786	2,246							2,246		2,246							2028	2023
공원	3	2023	흑석동 58-11			13,799.9	3,108							3,108		3,108							2028	2023
공원	4	2023	흑석동 54-28			259	47							47		47							2028	2023
공원	5	2024	상도동 477			1,722	3,600					3,600					1,200	1,200	1,200				2030	2024
공원	6	2025	신대방동 632-36			530	79.5							79.5				79.5					2035	2025
공원	7	2025	신대방동 632-73			2,580	387							387				387					2035	2025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2~2031)										실호 시기	사업 시행 시기						
		사업 기간	위치	사업규모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폭 (m)		연장 (m)	면적 (㎡)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22 1년차	'23 2년차	'24 3년차	'25 4년차			'26 5년차	'27년 이후 6년차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	2023	흑석동 225-44			189	30	30													30	30		2028
2	2023	흑석동 97-2			373	60	60						60	60		2028	2023						
3	2023	흑석동 97-38			114	18	18						18	18		2028	2023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2~2031)												실호 시기	사업 시행 시기					
		사업 기간	위치	사업규모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폭 (m)		연장 (m)	면적 (㎡)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2 1년차	'23 2년차	'24 3년차	'25 4년차	'26 5년차				'27년 이후 6년차			
																						계	시비	구비
공공 청사	1	2022	노량진동 240-1			2,280					774	774							2040	2022				
공공 청사	2	2023	흑석동 54-152			1,941					316	316			316					2028	2023			
공공 청사	3	2025	신대방동 601-26			830					124.5	124.5					124.5			2035	2025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한글) :: (한글)

[illegible]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단위 : 백만원)

[illegible]

◆ 동작구공고 제2022-2059호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1-1674호(2021. 10. 7.)로 열람·공고한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 일대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청취-동작구-공고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기관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장승배기로 161, 별관 4층)
3. 열람내용 :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결정조서(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당동 223-1번지 일대	-	증)114,382.3	114,382.3	-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4. 의견서 제출 방법 : Fax 02-820-9798, e-mail a880208@dongjak.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 · 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 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가능
[서울시도시계획포털(동작구 도시관리계획) 사이트 및 모바일용 QR코드]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4010100000?pubSiteCode=11590>)



- ※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선택 후 주민의견서 작성(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세빛섬 대표 : 노재봉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683(반포동)	서울 서초구 반포동650번지 일원 (한강 수상등)	주차장	5,575㎡	2023.1.1. ~ 2023.12.31. (1년)	2022. 12.23.
			수상레저사업용 계류장	요트 187.9㎡ 튜브스터 32㎡		
			점검용 보트운항	고무보트 1척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2-44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3. 공시송달 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통지번호	성명	주소	부과 금액(원)	사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 관련 위반 과태료	2022-12	2843	김*철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7길1*~*,*층 (가리봉동)	500,000	보관기간 경과

4. 공고기간 : 2022. 12. 29. ~ 2023. 1. 12. (14일간)
5. 자진납부기간 : 2023. 1. 13. ~ 2023. 1. 31. (18일간)
6. 수령방법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에서 고지서 수령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92)으로 문의

기 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39호****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번지 일원
 - 면 적 : 15,26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노량진배수지 송수관로 이중화 구축공사
 - 내 역 : 송수관로 L= 6,673m D= 2,200mm, 제수변실 3개소 등
송수관 연결관로 L= 155m, D300 ~ 2,200mm
5. 점용기간 : 영구
(공사기간) : (당초) 2022. 4. 28. ~ 2022. 12. 31. (변경) 2022. 4. 28. ~ 2023. 4. 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4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1번지 및 본동 475-1번지
 - 면 적 : 26.7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상수도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5. 점용기간 : (당초) 2018.02.13.~2023.02.12.
(변경) 2023.02.13.~2028.02.12.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4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81-11번지
 - 면 적 : 15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미부인 설화 조형물 설치 등
 - 개 요 : 배모양 조형물 및 돛대형 배너폴(총 1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17.06.26.~2022.06.25.
(변경) 2022.06.26.~2027.06.25.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